

연구보고 95-1

立法理論研究(Ⅲ)

# 法令用語에 관한 研究

- 用語整備를 위한 基礎理論 -

1995.7

연구자 박영도(수석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發 刊 辭

法の 定立은 그 국가의 언어, 풍습, 가치관과 같은 그 국가의 고유한 문화위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법률은 국민생활에 널리 적용될 수 있으며, 법규범이 生活規範으로서 정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法律의 의미와 내용은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과 언어감각에 친숙하고 개방된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만 법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규범에서 사용하는 用語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달리 일종의 專門言語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규범에는 법문구성상 일정한 의미가 부여되어 일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기술적인 전문용어의 체계를 구사함으로써 법률의 用語와 文章은 일반인에게는 복잡하고 난해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법언어가 전문적인 規範的 記號로서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일상언어와는 다소 차원을 달리하지만 법적 언어도 역시 일종의 日常生活上의 言語로서 사회에 개방되고 대중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인식을 가지고 이 研究는 법의 언어적 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여 일반 국민에게 이해가능한 법규범이 定立되고 그것이 適用되기 위한 몇가지 前提條件을 검토하여 본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법규범이 情報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은 그 意味를 상실하고 법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는 점과 법규범의 言語的 質의 개선이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민주적 법치국가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아직도 난해한 漢字語와 일본식 표현과 용어, 낱설은 번역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국민의 法生活를 둔감하게 하고 있는 우리의 法令用語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우리의 법규범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生活規範으로서 정착되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한 實際的인 課題를 개괄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서는 현재 政府次元에서 법령용어정비를 위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法制處의 법령용어정비사업의 추진과정과 주요실적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法言語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단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우나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연구는 앞으로 본 研究院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법령용어

및 문장에 관한 연구의 기초작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 研究院에서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의 法令用語와 文章의 개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적인 연구를 법제처는 물론 법학자·법조계 및 국어학자 등과 함께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研究報告書가 법전문가의 전문적 인식과 일반국민의 법인식의 조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로서 유용하게 참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研究報告書의 작성에 많은 수고를 한 연구자와 자료제공과 자문 등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را 드립니다.

1995年 6月

韓國法制研究院  
院長 白南辰



# 目 次

第1章 序 論 .....	11
第1節 法과 言語 .....	11
I. 法과 言語의 相互關係 .....	11
1. 法言語와 日常言語 .....	13
2. 法の 受容과 法的 言語 .....	15
3. 法에 있어서 言語理論의 適用 .....	19
II. 法·言語·民主主義 .....	23
1. 法規範의 現實的 問題 .....	23
2. 法言語의 質的 向上을 통한 民主的 法治國家의 實現 .....	26
第2節 法令文의 文章構造와 基本形式 .....	28
I. 法令文의 特色 .....	28
II. 法令文의 文章構造 .....	28
1. 一條一文主義 .....	28
2. 法令文의 主語 .....	29
3. 法令文의 述語 .....	31
III. 法令文의 基本形式 .....	34
1. 意義 .....	34
2. 法令文의 形式的 配列方式 .....	35
3. 法令文의 內容的 配列方式 .....	37
第3節 法令文의 表現基準 .....	48
I. 意義 .....	48
II. 表現의 正確性 .....	49
1. 概 說 .....	49
2. 不明確性과 法的 言語 .....	51

III. 表現의 平易性 .....	53
1. 概說 .....	53
2. 表現의 平易化에 대한 制約 .....	54
IV. 正確성과 平易性的의 相關關係 .....	55

## 第2章 法令用語의 實際的 課題 .....

59

### 第1節 法令用語의 意義 .....

59

I. 法令用語의 意義과 使用目的 .....	59
1. 意味의 差異의 明確化 .....	60
2. 條文構造의 明確化 .....	60
3. 表現의 簡略化 .....	60
4. 條文相互間의 關係의 明確化 .....	61
II. 法令用語와 關聯한 事項 .....	61
1. 法令의 用字 .....	62
2. 숫자 .....	62
3. 外來語 .....	63
4. 符號 .....	64
5. 띄어쓰기 .....	64

### 第2節 法令用語의 意味論的 課題 .....

66

I. 法規範의 規律構造와 意思傳達能力性的의 相互關係 .....	66
1. 法의 意思傳達能力性 .....	66
2. 法의 意思傳達能力性和 法의 道具性 .....	67
II. 法令用語의 表現基準으로서 受範者均等性和 一般的 理解可能性 ..	70
1. 受範者의 行動樣式의 調整을 위한 法令文의 意味 .....	70
2. 通用되는 法에 관한 意思傳達의 方法和 形式 .....	71
3. 法令用語의 判斷 .....	73
III. 法令用語의 理解可能性和 親熟性的의 問題 .....	75
1. 누구를 위하여 理解可能한 것어야 하는가 .....	75
2. 理解可能性和 簡潔성은 모순하는가 .....	76
IV. 法令用語의 理解性和 親熟性을 위한 規律技術 .....	77

第3節 法令用語의 文章論的 課題 .....	81
I. 概 說 .....	81
1. 法律의 性格으로 부터 나오는 난해함 .....	81
2. 對象과 措置內容의  복잡성 · 다양성에 의한 난해함 .....	82
3. 全體體系로서 法體系중에서 立法이라는 것에서 도출되는 난해함 .....	82
II. 理解하기 쉬운 法令文作成을 위한 規律技術 .....	83
III. 理解可能性의 向上을 위한 몇가지 課題 .....	85
1. 法令에서의 名稱의 問題 .....	85
2. 準用條文의 問題 .....	87
3. 一般條項의 問題 .....	94
第4節 法令用語와 法律學術用語 · 裁判用語 .....	102
I. 法律學術用語의 問題 .....	102
II. 判決文章의 課題 .....	103
第3章 우리나라의 法令用語의 課題 .....	109
第1節 意 義 .....	109
第2節 法令用語整備事業의 推進實績과 向後課題 .....	112
I. 法令用語整備事業의 推進經過 .....	112
1. 舊法令整理事業 .....	112
2. 法令의 한글화추진 .....	116
3. 法令用語整備基準의 制定 · 추진 .....	118
4. 現行法令整理事業 .....	119
II. 法令用語整備事業의 細部的 推進實績 .....	120
1. 基本方向 .....	120
2. 用語整備 推進節次 .....	122
3. 細部的 推進內容과 實績 .....	126

Ⅲ. 몇가지 檢討課題 .....	139
1. 法令에서 한글사용범위의 확대 .....	139
2. 日本語式表記 法令用語의 정비 .....	150
Ⅳ. 向後推進方向 .....	170

第4章 結 論 .....	175
---------------	-----

〈附 錄〉 법령용어정비관련 참고자료

○ 법령용어순화정비기준 .....	181
○ 법령에서 한글·한자사용기준 .....	182
○ 법령의 한글사용례 .....	184

參考文獻 .....	197
------------	-----

# 第1章

## 序 論



# 第1章 序 論

## 第1節 法과 言語

### I. 法과 言語의 相互關係

人間은 言語에 의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言語에 의하여 공동체에서의 共同生活을 규정하는 법칙도 배우게 되며, 또한 사회적인 생활을 실천하게 된다. 그러므로 言語라는 媒介體를 통해 인간은 세계를 정복해가며 공존자를 파악해 가고, 言語를 통해 인간은 힘을 구사한다.<sup>1)</sup>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言語를 통해서 자기자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세계를 창조해 나가며, 또한 어느 누구도 똑같은 言語를 사용하거나 똑같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타인과 동일한 世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모든 言語와 言語表現行爲에는 이미 특정한 世界觀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상이한 세계해석은 言語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전달될 수 없다. 새로운 言語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예전 單語에 다른 의미가 주어진다.<sup>2)</sup>

이러한 言語의 창조력, 인식능력은 法에 있어서 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言語를 떠나서는 실정법적인 각종 概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이 추출되는 것은 전부 言語라는 방적기 위에서 행해진다(It is on the loom of language that all law is spun). 言語는 법학자 유일의 도구(das Instrument)이며, 法律은 언어라는 假面을 쓰고 등장하고 있다(Law shows itself in a mask). 法學은 言語의 학문(Wortwissenschaft)의 하나로서, 모든 實定的 制定 法은 언어에 의한 구속을 받으며(sprachgebunden), 법개념이나 법관념이 존재하는 것도 言語를 통해서이며, 또한 언어 속에 있다. 즉 法(Recht)은 「말해지는(wird gesprochen)」 것이며, 이는 判決 즉 법의 宣言(Rechtsspruch) 또는 評決(verdict)이나 재판(jurisdiction)을 통하여 명확하게 되는 것이다.<sup>3)</sup> 요컨대 法도 言語를 통하여 비로소 자기자신을 표현한다. 법은 사회와 더불어 역사가 오

1) 金鎮宇, 「人間과 言語」, 集文堂 1992, 15面 以下.

2) 沈憲燮(譯), Arthur Kaufmann 「法과 言語(Recht und Sprache)」, 法學(서울대) 第25卷 2 · 3號, 1984, 205面.

3) Bernhard Großfeld, 「Sprache und Recht」, Juristen Zeitung(JZ), 1984, S.1f.

래되며 社會는 言語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즉 인간사회가 인간의 사회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든 그 성원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하는 言語體系가 성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법이 있는」 곳의 전제가 되는 「社會」는 그 자체 나아가 「言語」를 전제로 하거나 적어도 그 「사회」는 「言語社會」로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4)

그러면 言語가 법전반에 가지는 기능은 무엇인가. 법이 言語를 필요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나 그러나 언어를 통해서 비로소 법은 자기자신을 표현한다는 말은 매우 중요하다. 言語와 법의 결부는 문학작품보다 더욱 밀접하다. 그 이유는 언어는 보통으로는 思念을 표현하는 것이나, 법은 각종 概念(concepts)을 다루기 때문이다.5) 思念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나 法概念은 엄밀한 언어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法言語는 規範的 記號이며 이는 敘述的 記號와는 달리 언제나 사람과 사람사이의 정당한 질서상태와 관련한 의미를 담고 있다. 言語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향이 강한 우리 문화에서는 言語와 법의 사이에는 대단히 엄밀한 결부가 있으며, 일방이 타방에 상호영향을 미친다.6) 실정법(법률)은 言語를 사용하여 만들어지고 표현되며, 그러한 의미에서 법은 언어와 의사소통의 사회적인 일대체계(großes gesellschaftliches Sprach und Kommunikationssystem)라고 이해할 수 있다.7)

법은 인간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특성들의 유효한 귀속에 대한 합의에 이바지 한다.8) 그리고 이와 같은 論議的·情報傳達的 機能이 어느 정도

4) 이 법과 社會의 결부에 관해서는 통상 「사회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오랜 法彦을 통하여 법과 사회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법언의 원래의 의미, 즉 라틴어의 「Ubi societas, ibi jus」의 정확한 의미는 「人間集團이 있는 곳에서는 規則이 있다」라는 것이다. 그 規則이 분화하여 좁은 의미에서의 법이 지적되고 있다. 社會와 법의 그러한 원시적인 관계를 이 법언은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언에는 이미 言語가 介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경우의 社會와 법보다도 이미 言語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법언은 정확하게는 「言語가 있는 곳에 社會가 있으며, 社會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5) Fritjof Haft, 「Recht und Sprache」, in : Arthur Kaufmann/Winfried Hassemmer(Hrsg.), Einführung in die Rechtsphilosophie und Rechtstheorie der Gegenwart, 4. Aufl., Heidelberg 1985, S.216.

6) 法과 言語를 의미하는 말로서 독일어의 「Recht」, 「Sprache」, 라틴어의 「lex」, 「lingua」, 영어의 「Law」, 「language」, 그리스어의 「nomos」, 「logos」에서 이 두가지의 말사이에 존재하는 어원적인 결부를 보면, 최초의 시사로서는 法律(Gesetz)을 의미하는 「lex」라는 라틴어는 「Lexikon」, 즉 「單語(wort)」의 점을 말하는데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양자에 공통하는 어원은 그리스어의 「legein」이며 이것에는 「말한다(sprechen)」라는 의미도 있다. 그리스어의 「logos」라는 말도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것이며 이것에는 「생각한다(Gedanke)」라는 의미와 「말(Wort)」라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lex」 즉 法律(Gesetz), 「legein」 즉 말한다(sprechen), 「logos」 즉 생각한다/단어(Gedanke/Wort)라는 3개의 단어를 횡적으로 병렬해보면 법과 言語와 생각은 어느 것으로 부터 다른 것으로 이행하는 관계에 있음이 발견된다.

7) B.Großfeld, a.a.O., S.5.

8) Helmut Herles, 「Gesetzessprache」, in : Bundesakademie für Öffentliche Verwaltung(Hrsg.), Praxis



실효성이 있는가는 각 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체에 대한 根本規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法的 規範은 이와 같은 실용적이고 유효한 言語로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공동체구성원들의 意見對立을 중재·화해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 1. 法言語와 日常言語

인간의 言語는 「비연속적(discrete)」인 기호로서의 「單語」의 집합체이며, 「어휘」와 「문법」이라는 두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言語, 예를 들면 한글을 사용하는 때에는 한글의 어휘에 속하는 單語를 文法에 따라 조합시켜 문장을 만드는 것이다. 어휘에 속하는 단어의 수는 組合에 의하여 무한하게 복잡다양하며 매일 새로운 상황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에 인간의 言語가 지닌 최대의 특징중의 하나이다.<sup>9)</sup> 이 점은 그러나 당연히 多數의 單語, 나아가 특히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기본적인 단어의 意味나 用法이 좋게 말하면 融通성이 풍부하고 나쁘게 말하면 不明確함을 의미한다. 融通성이 있는 單語를 조합하여 문장을 만드는 때 문맥에 의한 단어의 의미의 한정이 가능하게 되며, 우리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대응한 明確性의 차원을 어느 정도까지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점은 일상생활상으로는 편리하나 科學이나 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곤란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수학, 논리학, 물리학, 경제학 등의 분야에서는 自然言語의 불명확성에 유래하는 곤란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人工的 記號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法의 경우는 어떠한가. 법은 언어적 존재이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법원은 우선 법의 문언의 의미를 해명하는 「解釋」이라는 조작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날의 과학기술시대에서도 法은 한글, 영어와 같은 自然言語로 쓰여지고 있다. 자연언어는 원래 무엇보다도 日常의 용도를 대변하기 위하여 발생·발전된 것이며, 과학적인 命題나 법적인 규정을 엄밀하게 표현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그 不明確性으로 인하여 부적당하다. 이 불명확성이라는 성질은 日常言語에서는 기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法의 分野에서는 위와 같은 과학과는 달리 자연언어에의 의존은 기본적으로 불가피하다. 특히 오늘날의 민주국가에서는 國政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따라서 一般法令은 이를 공포하여 국민에게 이를 이해시킬 것이 요청된다. 물론 法令이나 이를 해설한 문헌 등에서

der Gesetzgebung, Regensburg 1983, S.156.

9) 人間言語의 어휘조직에는 ①單語의 풍부성, ②語彙組織의 유연성, ③語彙組織의 풍부성, ④語彙의 수사적 기능과 문법적 기능의 이원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金鎮宇, 前掲書, 339~351面 참조.

는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는 기술적인 성격을 지닌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다시 말하면 法的 言語는 일상생활의 언어와는 달리 일종의 「專門言語」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상언어는 추상적이며 비유적인 것이 주가 되고 그 내용이 풍부하여 情報的인 價値를 가지는 반면, 法的 言語는 비교적 명확하며 記號的인 概念이 증시될 뿐 아니라 형식에 중점이 주어져 操作的 價値를 가지게 된다.<sup>10)</sup>

그러나 모든 專門言語가 그렇듯이 법적 언어도 또한 자의적으로 일상언어로 부터 떨어져서는 안된다. 즉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고 따라서 인간의 認識은 순수한 합리적인 행위이며 모든 인식의 궁극적인 목표는 全體世界를 완결된 체계하에 일의적으로 그리고 불변적으로 서술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一般言語가 지니는 불확정성과 이중성 그리고 은유적인 성격을 제거할 수 있는 언어, 즉 論理的으로 순화된 형식적인 언어가 필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法的 言語는 그 의도에 따르면 추상적·개념적이고, 정확하고 일의적이며 그 언어는 一次元的이며 단지 합리적인 범주의 차원에서만 움직인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의 일의적인 법적 언어만을 고집하는 경우 그러한 法的 言語는 모든 실제적인 관련성을 배제하게 되어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과 개체성을 고려하지 않는 法이 될 것이고, 개개의 人格을 고려함이 없이 맹목적인 것이 되어 버릴 것이다.<sup>11)</sup> 따라서 그러한 法은 자의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여 주지도 못하는 것이다.

法은 가능한 한 자율적인 체계이면서 동시에 사회에 開放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자연언어가 거두는 역할은 매우 크다. 法條文은 자연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의 운용도 自然言語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 확실히 법적 언어 가운데에는 전문적인 법률용어나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特別한 用語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만을 본다면 法的 言語는 전문적 폐쇄성이 매우 강한 것처럼 보인다. 법적언어에 강한 폐쇄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또한 그 閉鎖性이 독선적으로 관련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독선성은 배제하더라도 그 전문적 폐쇄성에 관해서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法律을 사용하는데에는 어느 정도 專門的 知識의 집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 이상으로 專門家(법률가)의 전문적인 임무중에 일반인과 직접 접촉하고 관계하는 것이 많다는 점이다. 법률의 경우 領域의 성질상 전문가(법률가)가 일반인과 專門的 事項에 관하여 직접 자연언어를 사용하여 접촉하기 때문에 더욱 전문적 폐쇄성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그것은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法이 자연언어를 매개로 하여 社會

10) 文章이란 기본적 단일체로서 기능하고 있는 記號序列이며, 다수의 문법적 기능을 하는 낱말로 구성되는 意味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法秩序는 기본적 의미단일체로 기능하는 文章으로 이루어진 다수의 개별법조문에 의하여 體系的으로 정리되어 있는 記號體系라고 할 수 있다.

11) Fritz Schön herr, 「Gedanken zur Gesetzessprache.», in : Theo Öhlinger(Hrsg.), Methodik der Gesetzgebung. Legistische Richtlinien in Theorie und Praxis, Wien/New York 1982, S.184f.

에 開放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연언어를 떠난 법적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여러 점에서 말할 수 있다.<sup>12)</sup>

法の 세계는 법적사고의 영역을 원리로 전개하는 특수한 문화의 세계이나, 현실적인 인간의 의지의 자유가 지배할 수 있는 세계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意志關係를 떠난 一切의 법적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법의 세계는 현실의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의욕하고 사고하는 현실사회인 것이다. 나아가 이 現實社會는 매우 복잡한 상호관계 중에 다면적인 모습을 가지며 다양한 生活志向을 가진 인간의 집단인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의 구조는 表現과 理解를 매개로서 성립하는 다수인의 체험내용의 상호적인 구조연관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法的 言語는 생산적이며 양차원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일상언어·법시민들간의 언어와 상호연관될 수 있다.<sup>13)</sup> 그러므로 日常用語와 法律用語는 상호연관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생활형태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일상세계와 법의 규범세계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이 두 세계는 모두 言語의 形狀이기 때문에 생활형태를 법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言語의인 次元에서 두 세계가 조화되어야 하는 것이다.<sup>14)</sup> 결국 法的 言語는 훨씬 구체적이며, 무엇보다도 대중적이어야 하고, 日常言語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또한 간단한 표현방식으로 규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상세하고 교훈적이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sup>15)</sup>

## 2. 法的 受容과 法的 言語

法社會學에 있어서 법의 受容이란 「異文化와의 접촉에 의한 文化變容過程」<sup>16)</sup>의 일환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경우 「一環으로서」라는 말은 두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法은 종교, 정치, 예술, 학문 등과 아울러 文化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또한 모든 문화는 스스로 고유의 법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하나의 文化現象으로서의 法이 이질적인 법과 접촉하여 야기하는 변

12) 中村雄二郎, 「法と自然言語 -共通感覺論の觀點から-」, 日本法哲學會(編), 法と言語, 法哲學年報 1980, 6~7面.

13) 자세한 것은 Jurgen Schmidt, 「Einige Bemerkungen zur Präzision der Rechtssprache」, Jahrbuch für Rechtssoziologie und Rechtstheorie, Bd.2, 1972, S.390ff 참조.

14) 沈憲燮(譯), 前掲論文, 208面.

15) 鄭鍾休, 「民法典과 法言語 -法律用語와 條文構造를 중심으로」, 司法行政 1988. 5., 56面.

16) 「受容이란 말은 영어로는 Reception, 독일어로는 Rezeption이란 용어인데, 한나라의 法이 다른 나라의 法을 받아들여 자기의 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 受容의 문제는 法學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고 文化의 수용이론으로 문학, 미술, 음악 등에서 광범하게 사용하는 개념이다. 종래 法學에서는 이 말을 繼受라는 일본식 번역어로 사용하여 왔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기 때문에 근년에는 受容이라는 말로 많이 쓰고 있다」, 崔鍾庫, 「歐美法受容과 韓國法文化」, 사상과 정책, 1989 가을호, 171面.

용과정을 전체로서 法變容過程이라는 말로서 총괄적으로 부르며 법의 수용은 그 「一環」으로서 즉 법의 변용의 매우 중요하며 전형적인 事例이나, 그렇다고 하여 그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그 부분으로서 파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수용이란 外來法의 수용에 의한 다소 국가적인 법의 변용과정이 된다. 自國을 무대로 하여 자국의 법질서전체 또는 그 중요한 부분이 外來의 법에 의하여 변용되는 과정을 통해서 두개의 異質的인 법이 접촉하고, 대립·대결하고 상호 영향을 받아 外來法이 침투하여 고유의 법에 편입된다. 이리하여 법의 수용이란 정적인 수용이 아니라 매우 動態的인 現象이며 그 동태적인 과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法의 수용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즉 ①古代法의 부활형과 ②同時代의 외국법을 수입하는 형이 있으며 이들 유형은 어느 것도 다소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意識的인 受容라는 점에서 공통요소를 지니고 있다. 또한 ③先住民이 아닌 토지에의 이민이나 植民地에 의한 법의 이식도 있으며, 이는 처음에는 무의식에서 시작한 법의 移植이 결국 전문적 법률가에 의한 母國法의 의식적·자각적 이식으로 전환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④강제로 법의 수용이 행해지는 형이 있다. 이는 國家나 民族의 합병이나 식민지화에 수반하여 발생한다.<sup>17)</sup>

외래법의 수용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외과수술에 의하여 人體에 타인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生體의 거부반응이나 주는 측과 받는 측과의 사이에 「組織適合性」과 같은 어떤 사회에 있어서 생사와 관련된 문제가 당연히 발생한다. 이 때 法의 受容에 있어서 중요한 요점이 몇가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어떠한 부문에 외래법을 移入하는 가(포괄적 수용인가,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부문의 수용인가, 후자의 경우라면 어느 부문인가), 수용모델로서 어떠한 法을 선택하는 가 라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와 아울러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것은 「土着」과 「外來」라는 두가지의 법을 가교하는 매개작업이다. 이 작업을 담당하는 것은 전문적인 법률가일 수 밖에 없으나, 그들의 임무는 이질적인 文化와 受容을 전제로 하는 외래법을 고유의 문화적 토양에 정착시킨다는 매우 미묘한 작업이다. 수용되는 법이 異質的일수록 도입된 법은 일반국민과의 사이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결합을

17) 각각에 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면 ①의 고대법의 부활의 전형으로 지적되는 것은 중세말기로부터 근세에 걸쳐 獨逸에 있어서 로마법의 포괄적인 수용이다. ②의 수입례로서는 明治時代 日本에서의 서양법의 수입이나 1927년 이후 터키에서 스위스민법전 등의 수용을 지적할 수 있다. 그 외에 최근에는 독립을 달성한 신흥아프리카제국이 과거의 중주국인 유럽국가의 法을 새로이 수입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③의 이식의 사례는 北美 및 南美國家의 경우이며 미국법에의 영국법의 이식을 하나의 전형적인 예로서 들 수 있다. ④의 강제적인 도입의 예로서는 프랑스 第1帝政時代에 행해진 프랑스에 병합된 지역의 나폴레옹법전의 적용이나 식민지화된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등에서 英佛 등의 국가의 법이 다소라도 강제적인 수용을 받은 곳이다. 이중 ③의 移植型이 외래법과의 접촉에 의한 법의 변용과정이라 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가져올 수 없다. 그 결과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사회의 死亡을 초래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病理的 後遺症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아도 수용되는 法이 이질적일수록 비전문가인 일반국민은 도입된 法規範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으며, 단지 法學에 소양있는 전문가외에는 알 수 없는 密敎的인 學問을 성립시킨다. 이리하여 법률의 난해함과 이에 수반하는 법률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신이라는 수용후유증은 法律用語에 많은 문제점으로서 등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적이며 난해한 법률용어는 대개의 경우 翻譯에 의하여 생겨난다. 번역은 外來法을 도입하여 정착시키는 구체적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즉 外來法의 번역문제는 법의 수용과정의 하나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특히 법의 수용과정에 있어서 法律用語의 번역은 매우 곤란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法 및 法學은 자연과학의 경우와 달리 가시성이 적은 추상적인 학문이며, 법은 이미 지적한 것처럼 文化現象의 일부이며 그 사회에서 문화의 전체적인 구조연관 가운데 편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연과학의 경우와는 매우 다르다. 즉 법제도는 그 사회의 표상이나 감정, 행동규범의 전체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것은 法的 言語에 반영되어 있다. 즉 법적인 언어와 문화적인 전체구조와는 대위적 관계에 있다. 따라서 異質的인 文化나 이질적인 사회적 실체를 전제로 하는 法典 또는 法體系를 수입하고 번역하는 경우에는 종래부터 존재한 單語로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유용하지도 않다. 따라서 법률용어의 「翻譯」이란 확실히 無로부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결과 법률상의 新造語는 개념적·추상적인 것이 되고, 具體性和 明瞭性을 포기하게 되어 일반국민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주로 中國을 통하여 외래문화와 접촉하고 이를 섭취하여 왔다. 그리고 학술용어, 전문용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대개 漢字에 의하여 표현되고 있

18) 위에서 살펴본 네가지의 受容類型 가운데 ①의 부활형에 속하는 독일에 있어서 로마법의 수용문제에 관해서는 근래에는 獨逸法의 「학문화」과정으로 파악되어 법의 實質(실체법)의 변화가 아닌 널리 전유럽적인 규모로 발생한 「法의 方法的 轉換」이라는 커다란 현상의 일면으로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이 고찰방식에 의하면 로마법의 수용은 獨逸文化와 고대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연관의 일부분이 된다. 이러한 고찰방식에 입각하면 독일사회의 수용에 따른 「거부반응」은 예컨대 ④의 植民地 등에서의 강제적인 도입사례에 비교하면 훨씬 작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獨逸에서도 법이 일반인의 생활로부터 멀어지는 사실과 法曹法(법률가의 법)과 民衆法이라는 법의 이중구조의 성립이 지적되어 「독일법정신은 수용에 의하여 그 창조력을 박탈당해 버렸으며,……법은 이미 민중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실정법의 정립은 국가의 임무가 되었다. 그리고 實定法學은 관료적 전문가의 수중에 파악되는 秘密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에 있어서 일반국민의 法으로 부터의 소외를 단적으로 제시하는 하나의 예증이 「법률용어의 과도한 외국화(로마법적 법률용어의 직수입)」이었다. 자세한 것은 Paul Kirchhof, 「Deutsche Sprache», in : Josef Isensee/Paul Kirchhof(Hrsg.), Handbuch de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 Heidelberg 1987, S.800f 참조.

## 第1章 序論

다. 법률적인 言語의 창조 또한 말할 것도 없이 漢學에 소양있는 자가 한자라는 표의 문자를 사용하고 漢字에 의하여 원어의 의미내용을 대체로 표현한 것으로 그 것이 단기간에 적어도 지식층이라는 사람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이해되어 정착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우리 나라는 言語構造가 비슷하고 漢字를 공용하는 일본의 압도적인 영향 아래에서 법적으로 근대화되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日本이 서구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한발 앞서 만들어 놓은 法律用語와 법기술이 검토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직수입되었다.<sup>19)</sup> 그리하여 일본어로서 만들어진 翻譯式 法律用語가 거의 그대로 우리의 법학과 법실무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같은 한자문화권인 日本에서 만들어진 법률용어의 수용은 우리 말을 풍부하게 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법률용어라 할지라도 訓讀이 있는 일본어에서와 音讀밖에 없는 한국어에서는 국민일반의 이해도가 같을 수 없다. 言語적으로도 법이 국민생활로 부터 유리되었다는 지적이 일본에도 있다면<sup>20)</sup> 우리 사회에서는 國民의 法生活로 부터 법의 유리가 한층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sup>21)</sup> 우리의 법률용어의 대부분이 造語者의 원어이해의 정확도, 일단 만든 翻譯語의 수용도, 나아가 그 정착도라는 면에서 대체로 현재 우리 사회에 충분히 정착되어 우리의 言語感情과 일치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미 독일에 있어서 로마법의 수용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法律用語의 과도한 外國化」와 「一般國民의 법으로 부터의 소외」가 우리의 경우에도 거의 그대로 해당되고 있는 실정이다.<sup>22)</sup>

19) 日本은 德川時代부터 제한된 창구를 통하여 蘭學을 접하고 있었지만 서양의 학술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明治時代이후 부터였다. 日本은 서양문물흡수의 일환으로 서양법을 수입, 번역하였으며 그 첫번째 모델은 프랑스법이였다. 日本은 유명한 난학자집안 출신인 箕作麟祥을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 관람단의 일원으로 파견하였다. 그가 1868년 일본으로 돌아오자 받은 과제가 프랑스형법의 번역이였다. 형법에 이어 그는 민법·상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헌법 등을 차례로 번역하고 그 전체를 「프랑스 법률서」라는 이름으로 출판하였으며 이것이 日本에서 六法典書의 효시였다. 江藤新平은 이를 약간 수정하여 그대로 日本법전으로 하려 하였으며, 日本이 법전편찬을 서두르게 된 데에는 日本법의 완비가 서양과의 불평등조약개정 전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한편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받지 않은 箕作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해하여도 적절한 번역어가 없어 많은 곤란에 접하였다. 한편 江平이 하야한 후 법전편찬작업을 추진하게 된 大木喬任은 프랑스인 법률고문을 초빙하여 편찬작업을 추진하여 형법전과 형사소송법전을 완성하고 1879년 민법편찬국을 개설하여 1885년 민법초안을 완성하였다. 이 민법초안은 후일 대폭 수정하여 공포되었으나, 이같이 제정된 日本法이 식민통치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 실시되어 오늘의 우리 法文化에 고착되고 있는 것이다. 日本에서의 서양법수용과 그 법률용어의 형성에 관한 것은 林大·碧海純一(編), 「法と日本語」, 有斐閣 1985 참조.

20) 이 점과 관련하여 最近의 日本에서의 논의에 관한 것으로는 星野英一 外, 「法律の現代語化をめぐる」, ジュリスト 第994號, 1992.2.1., 10~45面 ; 森脇 勝, 「民事基本法の現代語化作業」, NBL 第536號, 1994.1. 25~27面 등 참조.

21) 鄭鍾休, 前掲論文, 77面.

22) 우리나라에서의 西洋法の 受容에 관한 것은 崔鍾庫, 「韓國에서의 西洋法の 受容과 變容」, 法學

## 3. 法에 있어서 言語理論의 適用

言語란 단어의 체계이며, 단어란 記號의 일종으로서 言語는 대체적으로 말하면 어휘 및 문법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語彙라는 것은 단어의 집합으로서 그 중에서 몇가지 단어를 선택하여 그것을 일정한 문법규칙에 따라 조합하여 文章을 만들며, 그것에 의해 우리는 사회에서 상대방과 교신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란 어떠한 성질을 지닌 記號의 體系인가. 그 주된 특색으로는 ①기본적으로 音聲記號인 점(문자는 음성기호의 기호이다), ②사회적·문화적인 것으로 學習을 요한다는 점, ③도구로서 能動的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④언어기호의 다수가 一般性을 지니며 그것을 조합하여 문장을 만들어 무한하게 다양한 사태를 알릴 수 있다는 점 및 ⑤그 결과 생활의 具體的 情況에 대해 고도의 독립성을 지니고 있으며 언어기호를 현실의 사물로 부터 분리하여 操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sup>23)</sup> 이 가운데 법률가의 관점에서 言語를 보는 경우 특히 중요한 것은 ②, ④, ⑤의 부분이다.<sup>24)</sup>

우선 言語는 사회적·문화적인 것이므로 후천적으로 학습되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언어기호와 사물의 대응관계는 다분히 우연적·비합리적인 것을 포함함과 동시에 일면에서는 특정집단의 문화형에 의하여 영향받고 있다. 인간의 言語는 본능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은 어느 누구나 특정언어집단중에 태어나 그곳에서 文化의 一部로서의 언어습관을 몸에 익혀 간다.<sup>25)</sup> 일상의 단어가 우리에게 대하여 「意味」를 가지는 것은 그것이 언어학습의 과정을 통하여 일정한 事物이나 事態에 결부시켜 가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言語는 항상 인간의 삶의 형식(Lebensform)의 한 구성부분이라 할 수 있다. 언어가 삶의 형식의 한 구성부분이라면 言語의 機能은 모든 삶의 형식마다 각기 새롭게 규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행

(서울대) 제33권2호, 1992, 126~141面; 同, 「韓國의 西洋法受容史」, 博英社 1983 등 참조.

23) 碧海純一, 「法と言語」, 日本評論社 1965, 43~44面. 이외에도 기호체계로서의 인간적 언어의 특성으로는 ①二重의 分節構造(double articulation)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어휘에 속하는 단어는 분절적(articulate)이며, 하나하나가 각각 사건의 항목으로서 독립하고 있다. 다음에 각각의 單語가 음운론적인 최소단위로서의 音素(phoneme)로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문이 말을 조합시켜 나아가 말이 음소로서 이루어짐으로써 이중의 분절이 가능하게 된다. ②메타언어적용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다. 즉 인간적 언어에서는 言語를 사용하여 언어적 표현(어, 구, 절, 문 등)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對象言語, 그리고 논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메타언어라 한다.

24) 言語學의 관점에서의 法을 고찰한 것으로는 碧海純一, 「法と言語再考(1)~(6)」, 法學協會雜誌 第110卷 5號·6號·7號·9號·10號·11號, 1993 참조.

25) 金鐵宇, 前掲書, 205面.

등과 결합되는 언어의 사용형식은 삶의 형식의 숫자만큼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리적·심리적·사회적 과정을 벗어나 單語 그 자체에 고유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이러한 人間의 언어의 의미론적 특색이 법이론에 부여하되 의의는 무엇이며, 법이론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경우 그것은 바로 法解釋理論分野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법학의 주요임무중의 하나는 法條文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이러한 制定法の 解釋<sup>26)</sup>은 특히 대륙법계국가의 법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인식되었으며 그 유래는 法治國家思想 즉 현대법질서의 단계구조, 권력분립주의 및 법적안정성의 요구에 유래한다. 법치국가사상은 國家權力の 행사자의 자의를 억제하여야 할 이성적인 법의 존재를 상정하여 모든 國家活動이 이러한 법의 구체화로서 영위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成文憲法임은 말할 것도 없으나 헌법규정은 매우 고도의 抽象性을 지니므로 이를 직접 현실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사용하는데는 기술적으로 무리이다. 그래서 현실구체적인 社會統合活動과 憲法の 사이를 매개하는 중간항으로서 법률 및 명령 기타 입법이 요구되어 근대국가의 法秩序는 몇가지의 단계로 구성되게 된다. 그리고 하위단계의 법은 상위단계의 법의 통제하에 창설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문제로서는 上位法에 의한 이 통제는 하위법을 창설하는 인간의 정신활동을 매개로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이 精神活動이야 말로 우리가 「解釋」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특히 裁判에 관해서는 법관은 입법자가 만든 법률의 엄격한 구속하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權力分立의 요청임과 동시에 실질면에서는 이 요청을 수호함으로써 法的 安定性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 때문에 법치국가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制定法の 解釋, 특히 법관의 법해석이 객관적·비자의적일 것이 전제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解釋」이란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표현의 「意味」는 어떻게하여 생기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의미라는 것은 인간의 기호사용활동의 소산이며, 單語나 文章과 그 의미의 관계는 자연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人爲的인, 어느 정도까지 자유로운 약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법해석이론에서는 意味라는 것을 하나의 「객관적 존재」로 보고 법률의 조문은 각각 「고유한」, 「객관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sup>27)</sup> 따라서 법률문제의 객관적인 해결은 制定法の 解釋이나 그

26) 制定法の 解釋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로는 崔大權, 「制定法の 解釋」, 法學(서울대) 제30권1·2호, 1989, 122~137面 참조.

27) Bernd Schünemann, 「Die Gesetzesinterpretation in Schnittfeld von Sprachphilosophie」, in : Staatsverfassung und juristischer Methodenlehre (Festschrift für Ulrich Klug zum 70. Geburtstag), 1983, S.170f.



에 부수하는 각종의 순수하게 논리적인 조작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법해석이란 言語의 일반적 체계속에서 法言語보다는 좀 더 구체화된 언어기호를 사용하여 그 법언어에 대한 의사소통가능한 의미를 모색하는 행위로서, 법률단어의 의미는 그것이 法的 意思共同體속에서 사용됨으로써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다.<sup>28)</sup> 법률단어의 意味를 이와 같이 파악하는 경우 법률단어의 개념을 먼저 찾고 그 概念이 지시해주는 구체적 대상들을 확정하는 연역적인 사고는 더 이상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된다.<sup>29)</sup>

人間의 言語는 또한 우리가 지닌 추상능력에 대응하여 고도의 일반성·추상성을 지닌 單語를 그 어휘중에 포함하고 있으며, 그 사용에 의하여 우리는 환경적응력을 비약적으로 확충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現代國家의 대규모적이며 복잡·다양한 분업체계에 있어서 言語의 역할을 인식하는 경우, 사회통합은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오늘날에는 특히 法에 의한 통합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그 法律은 매우 一般性이 높은 내용을 지니고 있으며, 이 고도로 일반적인 법규정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은 이미 인식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우리의 사회질서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意義를 부정할 수는 없다. 어떠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위한 言語的 技術의 일환이며, 그 법률이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되어 비로소 통합과정은 일단 완결한다. 여기에서 社會統合이란 사회집단(국가)의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法律은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할 것이 기대되나, 근대법치국가에서 나타난 이러한 통합매카니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人間의 言語의 특색으로 위의 ④와 ⑤에 지적한 내용인 것이다. 言語的 記號를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현실의 생활 내용으로부터 분리하여 이것에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근대법체계가 지닌 대규모적이고 고도의 統一性을 지닌 사회통합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 독립성이 어디까지나 편의상의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는다면 원래는 事物의 대용물에 불과한 기호가 「물신화」되어 道具가 우리의 주인이 되며 이른바 Tyranny of Words가 나타난다. 이 위험에 유효하게 대처할 수 있기 위한 예비작업으로서 言語의 성질과 기능, 言語와 事物의 관계, 이른바 意味의 문제 등이 법학에서 중

28) 이상돈, 「법률해석 -말놀이예의 구성적 참여」, 저스티스 제27권2호, 1994, 184面.

29) 「……법률해석은 법률단어의 사용방식에 관하여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를 지양하는 실천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실천적 작업은 단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법률말놀이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은 삶의 구체적 현실의 변화와 맞물려 함께 변화하기 마련이며, 변화된 현실은 과거의 현실에 관한 질서모형을 담고 있는 법언어와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률해석은 바로 그러한 법률언어와 현실의 영원한 불일치를 극복하는 실천적 작업이다.……」, 이상돈, 前掲論文, 185面.

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다.<sup>30)</sup>

法學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사회학 등과는 달리 實在界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학문이 아니라 실재인식으로 부터 출발하면서도 나아가 일보전진하여 實踐에 직접기여하여야 할 임무를 지닌 학문이다. 즉 법학은 理論科學의 성과를 자각적으로 실천에 응용하는 일종의 應用科學인 것이다. 법이 사회통합을 위한 기호적 기술의 일종이라면 법학은 實定法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타당한 사회통합을 행하기 위한 응용과학 또는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이 된다. 법학을 이와 같이 應用科學 또는 社會工學이라고 일컫는 데에는 이종의 뜻이 있다. 그것은 이 학문이 우리의 실천활동에 직접기여하나 그것이 과거의 수공업적인 기술이 아니라 결국 넓은 의미에서의 科學으로서의 자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응용과학은 당연히 그 기초가 되어야 할 이론과학, 즉 이른바 기초과학을 요구한다. 그러면 법학의 基礎科學에는 크게 세가지 부류가 있다. 첫번째에 속하는 것은 法에 의한 사회통합의 대상, 즉 인간의 사회생활에 관한 과학이며 社會學·心理學·文化人類學·歷史學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두번째의 기초과학은 사회통합의 기호적 수단, 기술로서의 법 그 자체에 관한 지식을 부여하는 제과학 즉 言語理論 및 論理學의 일부분이다. 사회통합기술로서의 法에 있어서 특히 언어적·기호적측면의 연구는 항상 통합의 대상인 社會生活의 경험과학적 탐구와의 밀접한 연대를 지니면서 행하여야 하며 그것만을 고립하여 자족적으로 다루는 것은 法學研究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또 하나 중요한 것은 記號的 技術로서의 법연구가 과거에 자주 그러하였던 것처럼 神學的·教義學的인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결국 경험과학적 연구의 성과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사회공학으로서의 法學에 있어서 현대언어이론은 무엇을 제공해 가는가.<sup>31)</sup> 우선 言語가 우리의 사회생활일반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實定法의 타당한 운용을 위하여 유익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법 그 자체를 일종의 言語的 產物로서 취급하는데 언어이론은 적어도 다음의 주요한 세가지를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외에도 언어이론이 법학에 대해서 공헌할 수 있는 영역이 다수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이 세가지 점에 관해

30) Gerhardt Plöchl, 「Linguistik und Jurisprudenz」, in : Th.Öhlinger(Hrsg.), Recht und Sprache, Fritz Schönherr Gedächtnissymposium 1985, Wien 1986, S.81f. 또한 법에 있어서 언어이론의 적용문제에 관한 상세한 것은 李宗基, 「法에 대한 言語科學의 照明」, 서울대 석사논문 1981 참조.

31) 일반적으로 言語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영역은 ①언어적 기호와 대상의 의미관계를 연구하는 意味論(Semantik), ②기호와 기호의 결합규칙을 분석하는 文章論(Syntaktik), ③언어적 기호의 일반이론연구인 記號論(Semiotik), ④기호사용자와 기호의 맥락을 파악하여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기호의 적합한 의미를 결정하는 活用論(Pragmatik) 등이 있다. 자세한 것은 金芳漢, 「言語學의 理解」, 민음사 1994, 54~59면 참조.

서도 言語理論의 원용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떠한 言語理論은 ①기호로서의 언어의 성질·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實定法의 適用 및 解釋過程의 분석을 위하여 이바지하며, ②법에 있어서 自然言語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문제의 해결방향을 제시하며, ③보편명사의 실체화로부터 발생하는 法學上的 혼란의 해명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 II. 法·言語·民主主義

### 1. 法規範의 現實的 問題

오늘날 民主主義는 법의 지배 또는 법률의 지배라고 한다. 즉 민주주의는 법을 통하여 사회관계를 의식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법의 기초는 민주주의의 이념의 구현에 있으며, 그러한 法은 또한 시민에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법학이 秘密學(Geheimwissenschaft) 또는 단순한 專門學(Expertenwissenschaft)이 된다면 그것은 비민주적인 학문이 될 것이다.<sup>32)</sup> 그러나 현대국가는 국민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여 복잡다양한 目的과 內容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 및 수법을 사용하여 統治作用을 행하고, 국가가 사회의 각종 矛盾이나 弊害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개인의 존엄,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도모하고 있다. 즉 현대의 積極國家는 단순히 법적·정치적 차원에서의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社會經濟生活에 적극적으로 개입·배려하고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자유경쟁시장의 모순점을 시정하려 한다. 그 결과 國家의 이러한 역할에 대응하여 법의 수비범위도 단순히 종래의 交換的 내지 矯正的 正義뿐 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이익과 부담의 적정한 할당이라는 配分的 正義로 까지 확대되고 있는 등 시민의 사회경제생활의 질적 향상을 지향하는 다양한 공공정책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sup>33)</sup>

그러나 現代國家의 이러한 기능은 자유주의에 있어서는 시민의 자율에 맡겨졌던 문제영역이 국가에 의한 규제(staatliche Regulierung)의 대상이 되고 그 규제가 법의 형태를 취하게 되면서 이른바 「生活世界の 식민지화」, 「관료주의적·법적

32) Theo Öhlinger, 「Sprache und Recht -eine Problemeskizze」, in : Ders(Hrsg.), Recht und Sprache. aaO., S. 26f.

33) Anke Freibert, 「Das ideale Gesetz」, in : Bundesakademie für öffentliche Verwaltung(Hrsg.), Praxis der Gesetzgebung, aaO., S.27f.

간섭」, 「관리세계」, 「규범의 범람」, 「법률완벽주의」 또는 「法化(Verrechtlichung)」라는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sup>34)</sup> 이러한 법규의 과잉화 내지 법화는 법치국가하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원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치국가에서 生活領域에서의 法化(Verrechtlichung aller Lebensbereiche)의 지나침으로 인해 법규제의 경직화현상이 발생하며 그것이 결국 준법정신을 공동화하며, 법의 권위의 실추와도 연결되고 있다. 사정에 따라서는 법규는 양적인 - 또한 질적인 - 이유에서 오히려 비생산적으로 작용하며 法規가 촉진하거나 보호하려는 가치를 손상하기도 한다. 이러한 법규범의 과잉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여러 요인이 있으나<sup>35)</sup>, 법규범의 수신인의 理解可能性의 입장에서 몇가지 원인을 검토한다면 다음의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입법에 있어서 法規範의 과잉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모든 구체적 경우를 포함하고 정확하고 완전히 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법률상의 흠이 없이 규정하려는 立法技術上의 완벽주의의 팽배이다. 법치국가적인 규범의 명확성과 법률의 특정성에 대한 노력은 법규범이 극도로 기술화·전문화·표준화·완벽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법규범의 規律範圍가 더욱 좁아지고 법적용에서 결함이 나타나며 그만큼 개정의 필요성이 자주 제기된다. 그리하여 법의 繼續性과 豫測可能性이 약화되며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와 법의 토착화가 불가능하게 된다.<sup>36)</sup> 이러한

34) 이와 같은 국가에 의한 규제 확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위기에 직면하여 독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과도한 「法化」에 따른 「국가 내지 정치의 기능마비」 내지 「통치무능력(Unregierbarkeit)」현상을 비판하고, 현대법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해명을 시도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되고 있는 것은 독일의 「진보적」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포스트모던법모델」로서 이 경향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사법학자인 토이프너(Gunter Teubner)가 주장하는 「自省의 법(Reflexives Recht)」이론과 경제법학자인 비트헤르트(Rudolf Wiethölter)가 주장하는 「법의 節次化(Prozeduralisierung)」이론이다. 이 양인의 이론은 루만의 시스템이론으로 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으면서, 사회국가의 실현=법형식에 의한 사회개입=개인의 자유박탈이라는 法化現象을 진단하여, 그에 내재하는 각종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모델을 구상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Gunter Teubner, 「Verrechtlichung -Begriff, Merkmale, Grenze, Auswege」, in : Friedrich Kübler(Hrsg.), Verrechtlichung von Wirtschaft, Arbeit und sozialer Solidarität, Baden-Baden 1984 ; Ders., 「Dilemmas of Law in the Welfare State」, Berlin/New York 1986 ; Rudolf Wiethölter, 「Materialisierungen und Prozeduralisierungen von Rechts」, in : Gert Brüggemeier/ Christian Joerges(Hrsg.), Workshop zu Konzepten des postinterventionistischen Rechts, ZERP/MAT 4, 1984, S.25f. ; Rüdiger Voigt(Hrsg.), 「Verrechtlichung, Analysen zur Funktion und Wirkung von Parlamentarisierung, Bürokratisierung und Justitialisierung sozialer, politischer und ökonomischer Prozesse」, Königstein/Ts. 1980. 등 참조.

35) 法規範의 과잉현상에 관한 상세한 것은 Vorstand des Österreichischen Juristentages(Hrsg.), 「Die Gesetzesflut, Folge und Ausdruck der Überforderung des Staates」, Wien 1979 참조. 또한 李鳴九, 「法の 인플레와 法治主義의 方向」, 現代公法の 理論(牧村 金道飛博士華甲紀念), 學研社 1982, 246~252面 등 참조.

법규범의 완벽주의경향은 주로 立法過程에서 입법자가 상세한 규정을 통하여 가능한 한의 모든 경우까지를 규율대상으로 포함하려는 시도에 의하여 초래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향은 인간의 풍부한 상상력이나 역동적 발전에 직면하여 모든 경우를 상세하게 완전무결하게 규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및 모든 경우를 規律하려는 시도는 법규범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하며 그 결과 또 다시 不明確性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법의 완벽화추구는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다.<sup>36)</sup> 법규범의 완벽주의경향은 법의 제정에서 뿐만 아니라 改正에서도 나타난다. 즉 개정법률에서 規範受信人이 개정된 법규범의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여러가지 법자료를 변경하거나 새로이 규율하는 형식으로 법의 개정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法改正은 법의 문외한인 규범수신인들이 법을 이해하는데 곤란하며, 나아가 법적용자들조차도 그러한 법적용에서 비능률과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둘째는, 법규범의 지나친 合理性追求가 법규범의 과잉화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입법은 자명한 이치나 불필요한 것까지 법규범에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자가 실질적인 法律의 留保를 확대하고 증가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에 있어서 지나친 합리성의 추구는 결국 效率性側面에서 법의 낭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나친 합리성의 추구로 인한 법규범의 과잉은 법에 대한 권위의 저하까지도 초래한다. 그 이유는 당연한 事實까지 법규범으로 정립하여 운용하는 경우 규범수신인의 입장에서는 그 法規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일종의 거부감마저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법규범의 과잉화현상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서는 법을 이데올로기화의 도구로서 남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법이 國民의 意識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발전의 선도자임을 자처하는 경우에는 법은 역기능을 가지게 된다.<sup>38)</sup> 이러한 국민의식의 통제는 모든 자유의 상실과 다름없는 人間의 조작을 의미하며, 본질적으로는 국가에 인정된 활동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법규범의 教育的 機能을 무시할 수도 없으나 순수한 개인의 자율영역에 까지 규범화하여 이를 규제하려는 것은 결국 법의 不遵守와 법의 회피를 초래하여 국민의 법감정과도 조화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기타 법규범의 과잉화현상이 초래되는 주요한 원인으로서는 현실의 사회적,

36) Josef Isensee, 'Mehr Recht durch weniger Gesetz', ZRP 1985, S.141f.

37) Hermann Maassen, 'Die Freiheit des Bürger in einer Zeit Ausfernder Gesetzgebung', NJW 1979, S.1474.

38) Hans Dietlich Weiß, 'Verrechtlichung als Selbstgefährdung des Rechts', DÖV 1978, S.606f.

경제적 요청에 의한 立法의 必要性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법률입안자의 업적주의 내지 실적주의경향 및 광범위한 정책전개 또는 선거공약의 남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관계의 복잡화에 따른 利害關係의 다원화와 개인·집단의 이기주의로 인한 다원사회에서의 合意의 결여도 입법에 반영되어 법규범의 과잉화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의 다원화로 인한 조직화의 증대도 규칙, 결정과정, 갈등해결을 요구하며 결국 법규범의 과잉화현상을 가져오고 있다.<sup>39)</sup>

## 2. 法言語의 質的 向上을 통한 民主的 法治國家의 實現

법규범의 과잉화현상은 법의 適用이나 執行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생활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법집행에서의 그것보다 궁극적으로는 규범의 수신인인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법규범의 과잉화현상이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 우선 법규범의 과잉의 결정적인 부정적인 측면은 個性伸張의 기능성의 근거가 되는 개인의 자유상실에 있다. 현대의 법치국가는 법률만능의 법률국가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實質的인 法治國家라고 할 때 법규범의 과잉으로 인한 개인의 자유상실은 법치국가의 존립에 중대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인간이 법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의 自律領域을 보장하고 보증하는 것이며, 법질서는 인간의 자유신장의 경우에 하나의 부분질서라고 할 때<sup>40)</sup> 국가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개인의 자유영역이 위축되어 결국 自由喪失을 초래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사회적 감정이 법화로 악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법규범의 과잉은 개인의 자유상실과 함께 국민의 독자적인 판단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 국민의 자유행사가 더욱 소극적이고 수동적이 된다. 法規範의 과잉화현상으로 국민은 私人으로서 뿐 만 아니라 민주주의 기관으로서 그의 자유와 활동에 낙담하게 되며, 국민이 자신의 권리로 부터 도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으로서의 責任意識의 약화를 가져와 경우에 따라서는 복잡하고 소극적이고 비능률적으로 자기규제장치를 파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유의 상실, 국민의 수동성, 책임의식의 약화를 초래하는 법규범의 과잉화현상은 불가피하게 법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법치국가의 목표인 자유와 정의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法治國家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의 문제는 국가권력의 제한과 국민의 자유보호와 함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法的 安定性

39) 이 점에 관해서는 특히 李鍾洙, 「現代法治國家에 있어서 法律의 過剩과 國民의 法感情」, 연세대 석사논문 1988, 27~29면 참조.

40) H.D.Weiß, a.a.O., S.604f.

은 법규범자체의 안정뿐만 아니라 법생활의 안정을 포함하며 이는 바로 국가권력 행사의 예측가능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법규범의 과잉으로 인하여 국가권력의 예측가능성이 상실된다면 이는 법의 不安定性을 가져와 법생활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약화시킨다. 또한 법규범의 과잉이 국민의 법생활에 초래하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바로 법의식의 저하라고 할 수 있다. 법규범의 과잉은 규범에 대한 진정한 倫理的 責任意識을 가지게 하지 못하며, 결국 법의식의 결여를 초래하여 법의 준수가능성이 상실되고 법의 기능이 무력하게 된다. 특정한 법규범내용의 정신적 현실화인 법의식은 오늘날 법재료의 증가로 그 결핍을 쉽게 개선할 수 없게 되며, 법규범에 대한 낮은 인식상태는 비법적 사회질서의 약화로 법의 유효성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어버리는 것이다.<sup>41)</sup>

어떻든 법규범의 「과잉화(Normenflut)」, 「일상생활의 법화(Verrechtlichung der Lebenswelt)」, 「조문의 복잡화(Paragrafendickicht)」, 또는 「법률의 인플레이(Gesetzesinflation)」라는 현상은 법치국가하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원래 人權保護를 목적으로 하는 법치국가가 그러한 현상하에서 역작용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비난의 사태가 발생한다는 점, 사회적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생활에 대한 국가의 후견적 개입이 필요하게 되나 사회생활관계가 복잡하게 되면서 법규의 상세화의 요청이 발생함과 동시에 그 지나침으로 인해 법규제의 硬直化現象이 발생한다는 점, 사회적 법치국가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유주의적 국가사상의 수정원리로서 등장하는 것이며, 법은 법주체로서 자유로운 인격자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행동의 매우 상세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법률로서 규제하는 것은 위의 이념에도 반하며, 그것이 결국 준법정신을 공동화하며, 법의 권위의 실추와도 연결된다는 점 등에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sup>42)</sup> 바로 이 점에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情報傳達의 문제이며, 국민에게 적시에 전달되지 않는 법률은 국민에게 준수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법규범의 과잉화현상에서는 규범수신인인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法規範이 정보로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목적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의 민주적 법치국가는 다수의 法規範을 요구하나, 그러한 법규범의 언어적 질이 民主主義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법치국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의 言語的 質을 평가하여 이해가능한 법규범이 정립되고 그것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sup>43)</sup>

41) Klaus Obermeyer, 「Über das Rechtsgefühl」, JZ 1986, S.3.

42) Bundesministerium der Justiz(Hrsg.), 「Mehr Recht durch weniger Gesetze?」, Köln 1987, S.10f.

43) B.Großfeld, 「Sprache, Recht, Demokratie」, NJW 1985, S.1577.

## 第2節 法令文의 文章構造와 基本形式

### I. 法令文의 特色

법령문은 법규범을 文章化한 것이므로 문학작품이나 학술서 등에 비하여 그 문장구조에 있어서 논리성·추상성·간결성·명확성·유형성 등 많은 특색이 있다. 법령문은 법규범의 내용을 文章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현실로 일어나거나 또는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事案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후에 一切의 불필요한 것을 배제하여 요건과 효과를 간결·명료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法令文은 문학작품과 같이 사상·신조·정서 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려한 명문일 필요는 없으며,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역사서·기록문 등과 같이 사실에 따른 구체성이나 기록적인 정확성과는 거리가 멀다. 法令文은 요건·효과라는 필요한 요소이외에는 전부 이를 배제하며, 構文도 간소한 1조(항) 1문장이라는 단문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그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法令特有의 法令用語가 사용되며, 句讀點 사용방법 등에도 엄격한 원칙이 있다. 나아가 오랜 기간에 걸친 입법기술적 검토의 성과로서 인허가에 관한 규정, 처벌규정 등에서도 對象事項의 내용에 상응하여 일정한 형식이 갖추어져 있다.<sup>44)</sup>

이 때문에 法令文은 무미건조한 문장처럼 보이거나 이는 모든 법령문의 특질로 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지 않고 자주 법령문은 惡文이라고 비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확실히 법령문 가운데에는 立法技術的으로 교묘하게 일반인의 감각과 거리가 먼 악문·난해문이 지적되고는 있으나,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는 별도로 법령문의 성격에서 나오는 이러한 特色은 충분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한편 법령문중에서도 憲法前文 등과 같이 제정이유와 이념을 격조높은 문장으로 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법령문으로서의 어디까지나 例外이며 보통 일반적인 법령문에는 이러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 II. 法令文의 文章構造

#### 1. 一條一文主義

法令文은 1條(그 조가 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1항)는 1文으로

44) 우리 현행법령에서 定型化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과태료규정」, 「청문규정」, 「양벌규정」, 「과징금규정」, 「부담금규정」, 「법칙 및 통고처분규정」, 「결격사유규정」, 「공무원의체규정」, 「위원회규정」 등이 있다. 자세한 형식은 大韓民國國會 法制司法委員會, 「法律案審査事例集 -體系·形式·字句-, 1993, 147~161面 참조.



완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근의 법령에서는 長文의 형태의 조문도 있으나 이것은 요건이나 효과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條件文이나 수식어, 병렬어 등이 덧붙여지면서 복잡하게 보일 따름이며 기본적 구문자체는 대체로 단순한 것이 많다. 이 一條一文主義의 예외로서 전단·중단·후단·본문·단서의 형태를 구비한 것도 자주 보이나 이들에 관해서는 다음에 설명한다. 法令文에 있어서는 하나의 항목은 하나의 條 가운데 함께 두는 것이 통례이다. 이 때문에 하나의 條에 몇 개의 項을 가지는 것도 있으나 항이 많거나 대상사항이 복잡다기한 것일 경우에는 이해하기 쉽게 수개의 조로 나누어 규정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수개의 條를 정리한 공통사항이 부가되며 그들이 하나의 그룹의 사항을 다룬 것이 된다. 아울러 法令이 아주 간단하여 조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조로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sup>45)</sup>

## 2. 法令文의 主語

法令文에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때문에 주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각종 원칙이 정해져 있으며 이 원칙을 파악하여 주어를 우선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法文을 이해하는 첫번째 조건이다. 법령문의 주문의 主語는 일반적으로 「……은(는)……」이라는 형식으로 표현된다. 주어는 법령문에 있어서 권리의무의 主體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하여 중요하며 조문의 冒頭에 두는 것이 통례이다.<sup>46)</sup> 그러나 假定的 條件을 나타내는 중문이 있어서 이것이 장문일 경우에는 주문의 주어와 중문을 교체하여 주문의 主語와 述語가 직접 연결되게 하는 경우도 있다.<sup>47)</sup>

그러나 법령문에서는 반드시 主語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이를 생략하는 사례도 있다.<sup>48)</sup> 그리고 법령문에서는 目的語를 도치하여 이를 주어와

45) 예를 들면 「年號에 관한法律」,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46) <사례>

憲法 제10조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의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진다

47) <사례>

憲法 제58조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외에 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1章 序 論

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예를 들면 附則의 시행기일의 규정은 「이 법률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말하면 「이 법률」이라는 것은 본래의 주어가 아니라 意味的으로는 목적어이며, 따라서 「이 법률은 ○년○ 월○ 일부터 시행된다」라고 수동형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법률은 ○년 ○월 ○일부터 이를 시행한다」라고 하여 「이를」이라는 形式的 目的語를 삽입하여야 하나 현행법령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외에도 意味를 강조하기 위하여 목적어를 도치하여 이를 형식적으로 主語와 같이 취급하는 표현은 법령문에서는 자주 찾아볼 수 있다.<sup>49)</sup>

法令文에서는 가정적 조건을 널리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 가정적 조건을 나타내는 종문은 보통 「경우에는」, 「때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종문이 長文化하여 조문을 복잡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경우」는 가정적 조건을 가리키는 용어이나 「전항의 경우」, 「이 경우」와 같이 이미 규정된 사례를 인용하는 포괄적 조건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하며<sup>50)</sup>, 「때」는 시점 또는 시간이 문제로 된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sup>51)</sup>

48) <사례>

憲法 제118조 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49) <사례>

憲法 제8조 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法院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法院의 審判에 의하여 解散된다

50) 「전항의 경우」라는 표현은 전항에서 규정된 사항의 보충적인 사항을 항을 다시 바꾸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예를 들면, 『민법 제1082조(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①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라는 표현은 그 내용이 간단하여 항을 다시 바꿀 필요가 없는 곳에 사용한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 제50조②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사례>

民法 제1073조 (유언의효력발생시기)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 3. 法令文의 述語

법령문의 술어는 그 내용에 상응하여 여러 가지 표현이 사용된다. 종래에는 법령문에는 난해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현재에는 日常生活에서 사용되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각각 범규범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의 기술성의 관계나 법령이 지닌 독특한 표현 등 때문에 日常用語와는 다른 법령상 사용되는 法令用語라는 것이 있으며, 그 중 주요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法律上의 권리·능력·권한 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하며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법률상의 권리·능력·권한이 없음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法律上 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들 행위를 할 수 있어도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 아니면 법률상 유효한 취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문상 사용되는 것은 事實上의 能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나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법률상의 權利나 能力이 있거나 없음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는 법률상 흠이 있는 행위로서 그 效力이 문제가 되며, 그 효력에 관하여 明文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석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통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2)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법률상의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作爲義務)를 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것은 법률상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不作爲義務)를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위반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와 관련한 法律行爲의 효력에는 직접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 통례이다. 作爲義務違反이나 不作爲義務違反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있는가의 여부, 처벌규정외에 制裁規定(허가취소, 영업정지, 징계 처분 등)이 있는가의 여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가의 여부 등은 사례별로 각각 다르며 그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며, 이에 관해서는 各法律規定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위반행위가 중대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법령상 明文으로 부

## 第1章 序論

정하기도 한다. 또한 해석상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은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중대한 것인가 경미한 것인가라는 점에 관하여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罰則이나 기타 制裁措置도 없고 위반행위의 효력에도 관계가 없는 것은 訓示規定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며 이는 일반국민에게 의무를 과하는 경우에 나타나며 이른바 기본법<sup>52)</sup>에 많이 사용된다.

### (3) 「한다」, 「하지 아니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을 創設的으로 宣言하는 때에는 「한다」, 「하지 아니한다」라는 형식으로 정한다. 법령상 이러한 형식으로 법규범의 내용을 창설적으로 규정하는 條文은 대단히 많으며 이와 같이 창설적으로 내용이 法定되는 경우에는 그 이면의 의미로서 이른바 구속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 (4) 「예에 의한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에 의한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법령용어는 어떤 사항에 관한 법령상의 制度나 법령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른 同種의 것에 적용하여 동종의 效果를 부여하려는 경우에 사용된다. 후술하는 「準用한다」가 어떤 사항에 관한 개별규정을 다른 사항에 차용하려는 것인데 반해 「예에 의한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경우는 제도전체를 차용하는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예에 의한다」의 변형으로서 「중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法令用語가 있으나 이는 경과규정을 정한 부칙규정 중에서 사용된다.<sup>53)</sup>

### (5) 「추정한다」, 「본다」

법령에 있어서는 일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려는 경우에 「추정한다」, 「본다」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前者는 일정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통상 예측되는 사태를 전제로 일련의 사실을 추측하여 그 법령상의 취급을 정하는 것으로서 이 法令用語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취급을 일단 단정하여 이것이 원래의 사실과 다른

52) 「基本法」에 관한 상세한 것은 朴英道, 「基本法の法制上の位置」, 법제연구 제5호, 1993, 273 ~287面 참조.

53) 예를 들면, 「統計法」 부칙 제2조②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중전에 예에 의한다.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그 推定事實을 부정할 수 있다. 반면 後者는 본래 성질을 달리하는 것을 일정한 사실관계에서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써 그렇다고 擬制하여 같이 취급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다」의 경우에는 본래 성질을 달리하는 것을 특별히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상의 관계에서 동등한 것으로서 취급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反對의 證據를 제시하여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본다」라는 法令用語는 종전에는 「간주한다」라고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본다」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으며<sup>54)</sup>, 특히 이 용어는 행정법규에서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각 法令의 附則의 경과 규정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편리한 법령용어이다.

(6) 「준용한다」, 「적용한다」

「準用한다」라는 법령용어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그와는 다르나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그 의미에서 본래 그 규정이 對象으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수정없이 그대로 다른 곳에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適用한다」와는 구별된다. 입법기술상 법령문에서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규정의 반복을 피하고 「準用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준용에 의해서 法文을 간결하게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 물론 준용조문을 두지 않고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같은 규정을 두는 것도 일반인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으나, 이렇게 하면 法令이 매우 번잡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準用規定이라는 것은 기술적이며, 번거로운 형식으로 규정되는 것이므로 준용조문을 널리 인정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準用되는 조문이 긴 경우에도 그것이 한곳에 정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준용되는 조문을 보아도 이해하는데 곤란이 발생하지 않고 나아가 條文이 간결해지고 편리해지게 된다. 그러나 준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결되는 곳에 準用을 인정하거나, 준용되는 조문의 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또는 그것이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각종의 법령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이 복잡하게 되어 분명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어떠한 준용규정에서는 개별규정을 인용하여 이를 準用한다고 정하는 것이 통례이나, 때로는 다수의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경우도 있다.<sup>55)</sup>

54) 현행 법령중 「간주한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 법령은 58개에 이르고 있다.

55) 예를 들면 家事訴訟法 「제34조(준용법률)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 Ⅲ. 法令文의 基本形式

#### 1. 意義

법령은 그 내용이 되는 사항을 확정하면 일정한 形式을 갖춘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성문법주의법제하에서의 일반적인 입법형식이다. 법령의 내용이 아무리 충실하게 연구·검토되었다 하더라도 그 法令이 실제에 있어 문자로 표현된 일정한 형식을 갖춘 것에 따라 해석·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表現方法 및 形式을 결여한다면 법령의 진정한 의도는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령은 법문구성상 뿐만 아니라 그 형식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技術과 體制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것은 수법자에게 가능한 한 법령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또한 사회구성원에게 효과적으로 요구된 행위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행하여야 할 通知技術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법령의 內容이 불필요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입법실무적 입장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인 것이다. 이러한 법령의 기본형식을 준수하는 것은 立法者에게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法에 대한 理解를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령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形式을 취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일정한 규칙이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法令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준으로는 법이 법다운 모양을 갖추도록 짜임새가 있어야 하고 법의 적용대상인 일반국민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條文이 그 전체적인 면에서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어야 한다는 「順序의 원칙」과, 법령의 불필요한 조항을 설정하거나 수식을 달거나 표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축소·의제·준용·변환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經濟의 원칙」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 양원칙에 입각하여 立法者가 입법시에 고려하여야 할 문제로서는 입법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분배하는 「分配의 문제」, 서로 유사한 유형이나 내용을 순서에 따라 분류하는 「分類의 문제」, 법형식이 수직적 일관성 즉 법질서가 총괄성·통일성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順序의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sup>56)</sup> 또한 입법활동을 통한 경험 등을 통하여 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일정한 방식이 채용되고 있다. 즉 本則, 附則의 구분이나 편·장·절·관·목, 조·항·호 등이 소정의 용법에 따라 사용되어 법령내용의 표현에 이용되고 있다. 이들 법령의 基本의 形式을 이해하는 것은 법령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식이 되며,<sup>57)</sup> 이 점에 관해서는 「立法

56) 이 점에 관한 상세한 것은 韓國法制研究院, 「立法理論研究(Ⅰ) -立法基礎理論과 立法技術-」, 1991, 187~189面 참조.

理論研究(I)」에서 이미 상세하게 검토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 2. 法令文의 形式的 配列方式

### (1) 章·節 등의 區分

법령의 이해와 검색인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수의 조문으로 된 법령은 논리적 체계하에 조문을 정리하여 몇개의 群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법률에 한하지 않고 법령 전반을 통하여 조문수가 많은 것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그 구분은 일차적으로 「章」이지만 장으로 구분하는 것이 부족하여 그 아래에 다시 소구분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節」로 하고, 절을 세분하는 경우에는 「款」으로, 관을 세분하는 경우에는 「目」으로 각각 구분한다. 그리고 특히 조문수가 많은 경우에는 장의 위에 「編」이라는 대구분을 두는 경우도 있다.

章·節 등으로 사항을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하며 그 장이나 절에 어떠한 제목을 붙이는가는 그 법령의 각각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章을 예로 들면 통상은 제1장에는 법령전체를 통하는 총칙적인 규정을 두게 되므로 「總則」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법령전체를 통하는 공통적 규정인 것은 하나 총칙에 넣을 정도의 원칙적 규정이 아닌 장을 종합한 제목은 「補則」으로 붙이게 된다.

그리고 「通則」이라는 제목은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장안에 절의 구분을 두는 등 그 장 전체에 통하는 총칙적 규정을 종합한 절의 제목과 같이 법령전체에 대한 총칙적인 규정의 부분의 제목으로서가 아니라 그 법령의 어떤 부분내에서의 총칙적인 규정을 한데 묶은 구분의 제목으로 붙이는 것이 보통이다.<sup>58)</sup>

57) 成文法主義法制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령이 일정한 형식을 갖는데 필요한 기준 내지 지침을 마련하여 실제 法令立案時에 반드시 그에 따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法制處에서 그동안 입법관행으로 되어왔던 것과 실무상 축적된 결과를 종합하여 「法令立案審査基準」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총무처에서도 「行政法令立案業務要領」을 작성하여 법령입안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法制實務」등을 발간하고 있다. 기타 법령입안과 관련한 입법기술상의 요령에 관한 해설서로는 權寧敏, 「立法實務」, 研修社 1977 ; 朴銳旻, 「立法技術講座」, 國民書館 1970 ; 서울특별시, 「法務行政實務」, 1991 ; 立法技術研究所(編), 「法令作成의 常識」, 1990 ; 同, 「法制實務研修資料集」, 1989 ; 中央公務員教育院, 「法制實務」, 1988 ; 內務部, 「自治立法實務要覽」, 1991 등이 있다.

58) 法制處, 「法令立案審査基準」, 22面.

(2) 條·項·號·目

부칙은 법령의 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매우 간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구성단위인 「條」로 구분한다. 하나의 조문 중 다시 그 내용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조문을 「項」으로 구분하며, 항의 표시는 ①·② 등으로 아라비아숫자에 동그란 테를 둘러 사용한다. 조문을 항으로 나누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법문의 내용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사 관련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項의 수가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내용을 분류하여 이를 수개항의 조문으로 하는 것이 법령의 이해와 검색인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條·項중에서 몇 개의 사항을 열거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2·3 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번호를 붙여 열거하는데 이를 「號」라고 한다. 그리고 호를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나·다 등 「目」으로 구분한다. 부칙은 항 또는 조로 구분하되, 5개항 이하인 경우에는 項으로, 5개항을 초과한 경우에는 條로 구분한다. 다만 1개항일 경우에는 項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부칙을 항 또는 조로 구분할 때에는 각각 題目을 붙인다. 그러나 부칙을 조로 구분하는 경우 그 조의 조명에 대하여는 본칙과 같이 조명을 붙이는 방법과 부칙은 부칙대로 따로 조명을 새로이 붙이는 방법이 있으나, 현재는 본칙과 통변으로 하지 않고 따로 조명을 새로이 붙이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기존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령의 부칙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부칙만으로 제1조·제2조라는 조명을 붙인다.<sup>59)</sup>

(3) 기 타

①前段·後段

조 또는 항의 내용에 상응하여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項을 새로이 들 필요가 없는 때에는 같은 條 또는 項 가운데 법문을 몇개의 문장으로 구분하며, 이 경우 법문을 두개의 것으로 구분하여 앞부분을 前段, 뒷부분을 後段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단·후단과 같이 하나의 條 또는 項 가운데 문장을 구분하는 경우 後段이 전단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후단은 但書로 시작하며 이를 단서라 한다. 이에 대해 원칙을 정하는 전단부분을 本文이라 한다.

59) 法制處, 「法令立案審査基準」, 22~23面.



②表·別表·樣式·書式 등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은 이를 상세하게 전부 나열하기 보다는 간편한 表의 형태로 정리해두는 것이 이해가 쉽다. 이러한 목적하에 법문중에서는 표가 많이 사용된다. 이들 表는 형식으로 본다면 표자신이 비교적 간단한 것일 경우에는 본 조 가운데 삽입된 表와 법령의 말미에 두는 別表라는 형식의 표가 있다. 이 別표는 표자신이 방대한 것이거나 표의 내용이 몇가지의 조와 관계되는 경우에 개개의 조와 분리하여 別표를 사용한다. 別表가 두개이상의 경우에는 別표1 등과 같이 표시하여 구별하고 있다. 別표방식은 근거가 되는 조문과 분리하여 이해하기가 쉽다는 결점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關係條文을 명시하거나 別표의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 表題를 붙이는 사례도 있다. 표 또는 別표는 여러 형식이 있으나 대개의 경우 그 외측을 선으로 그어 중·횡으로 구분하는 선을 둔다.

別표와 유사한 형식으로 附錄, 樣式, 書式, 圖表 등이 있다. 이들은 법률에는 그리 흔하지 않으나 절차적인 사항이나 기술적인 사항을 정하는 施行令·施行規則 등에서 자주 나타난다. 어느 것도 別표와 같이 각각의 법령의 附則 다음에 두며, 別표가 있는 때에는 別表 다음에 둔다. 부록은 주로 계산식 등을 규정하는 때 사용한다.<sup>60)</sup> 樣式이나 書式은 신고서 등의 양식을 정하는데 사용하며 그 종류가 다양한 경우에는 번호를 붙여 구별한다.<sup>61)</sup> 圖表 등은 문자로 쓰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 그림으로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한다.<sup>62)</sup>

### 3. 法令文의 內容의 配列方式

#### (1) 題名

현재 法令에는 각기 그 명칭이 있으며, 이것을 법령의 題名이라고 한다. 제명은 법률·대통령령·부령 등 형식의 종류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한다.<sup>63)</sup> 법률의

60) 「稅法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복잡한 계산방법등도 文章으로 쓰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각 조 문중에서 式으로 나타내거나 別表에서 式으로 나타내면 편리하다」, 法制處, 「法令立案審査基準」, 22面.

61) 참고로 종전에는 각종 書式을 대통령령에서 정하였으나 국민의 權利·義務와 직접 관련이 없는 形式的·節次的 書式은 가능한 하위법령 또는 주무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部令 또는 主務部長官이 정하여 쓰도록 하고 있다. 法制處, 「法令立案審査基準」, 115面.

62) 「服制 또는 建築의 기술적 기준등은 文章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문장으로 표시하더라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각 조문중에서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附圖로 나타낸다」, 法制處, 「法令立案審査基準」, 23面.

63) 법령종별에 따른 제명의 일반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法律의 題名은 대개 「○○법」, 「○○에

제명에는 끝에 法 또는 法律로 표현하지만 그 구별은 법일반에 관한 이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표현형식상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題名은 그 법령의 주요 내용을 간결하게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題名만 봐도 그 법률의 기본적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제명을 붙이는데 있어서는 우선 그 법령내용의 전모를 잘 표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그 다음은 될 수 있는 한 간결한 題名을 붙여야 한다는 점이다.<sup>64)</sup> 그러나 이 두가지 요청은 상호모순이 되므로 內容을 잘 표현하려면 제명이 부득이하게 길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臨時的·特例的인 사항을 정하는 법령에서 자주 지적된다.<sup>65)</sup> 그러나 법령에서 題名이 길어지게 되면 법령을 인용하는데 불편하게 되며 법령중에 정식으로 인용하는 때를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이를 인용하는 때에는 정식의 제명에 대신하여 간결하게 요약한 略稱을 사용한다.<sup>66)</sup> 그리고 대부분의 條約의 정식명칭은 국내법령의 題名에 비하여 비교적 장문이 많으며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식명칭이 아닌 약칭명을 사용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법령내용을 빠짐없이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 題名이 길어지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의 표현을 적당한 곳에서 멈추고 나머지는 「등」 또는 「중간점」을 사용한다.<sup>67)</sup>

## (2) 目次

章·節 등으로 구분한 법령에는 목차를 두는 것이 보통이다. 이 目次는 복잡한 법령에 관하여 우선 그 전체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목차를 살펴보면 어떠한 구조로 그 法令이 편성되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 때문에 목차에는 반드시 關係條文이 부기되어 있으며 자신이 찾으려는 조문이 어느 부분에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법령집에는 目次를 생략하거나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관계조문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관한 법률」, 「○○특별법」, 「○○임시조치법」, 「○○특별조치법」, 「○○법시행법」등으로 되어 있으며, 大統領令의 題名은 대개 「○○법시행령」, 「○○규정」, 「○○직제」등으로 있으며, 總理令이나 部令의 경우에는 대개 「○○법(영)시행규칙」, 「○○규칙」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64) 法制處, 「法令立案審査基準」, 21面 참조.

65) 이 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韓國法制研究院, 「特例法の現況과整備方向」, 1992, 75面以下 참조.

66) 題名과 法令內容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美國에서는 이것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른바 「one, subject, close」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명에 대한 사고방식은 우리의 경우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법령의 題名이 길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법령의 제명이 대단히 길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다른 法令에서 인용하는 때 약칭을 미리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立法技術研究所(編), 「法令作成의常識」, 52面 참조.

67) 法制處, 「法令立案審査基準」, 21面. 그리고 법률제목의 경우에 일반적인 國·漢文混用原則에 따라 국·한문을 혼용한다.

(3) 前文

前文이란 법령의 각조문의 앞에 두어 그 法令의 제정목적이나 유래, 그 법령의 기본원칙 등을 서술한 문장을 말한다. 이들 前文에 관해서는 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 법령을 制定하는 때의 경위나 運用方針 등이 언급되어 있으며 그 법령의 각규정을 해석·운용하는 경우에 기본적인 지침으로서 작용한다.

(4) 本則

題名이나 目次 다음 그 법령의 본체를 이루는 조문이 내용에 상응하여 본칙과 부칙으로 구분하여 배열된다. 附則에는 그 모두에 「부칙」이라는 표제가 부기되나 본칙에는 특히 「本則」이라는 표제는 붙이지 않는다. 즉 법령의 본체를 이루는 각 조항중 부칙을 제외한 부분이 本則이라고 할 수 있다. 본칙은 그 법령의 제정목적이 되는 本件的·實質的 規定을 두며 부칙에는 본칙의 제규정에 수반하여 필요로 하는 부수적·경과적 규정을 둔다. 이와 같이 규정을 그 내용에 따라 본칙과 부칙으로 구분하여 법령을 구성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법전체의 질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本則이 간단한 법령의 경우에는 1項 또는 수개항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법령에서는 條를 기본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本則에는 그 법령의 실체를 이루는 실질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령의 내용이 천차만별이므로 그곳에 들어가는 규정내용에 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유형적인 방식으로 확립되어 있다.

① 總則에 관한 事項

總則에 어떠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원칙이 없으며, 실제 법령을 제정할 때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정하는 수 밖에 없다. 또한 어떤 사항을 總則에서 규정할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로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으나, 결국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규정이 그 法令全體를 통한 원칙 또는 기본적 사항에 관한 것인가 또는 그 법령의 本體를 이루는 실체적 규정에 부수하는 절차적인 사항 기타 부수적인 것인가에 따르게 될 것이다. 總則的 規定으로서의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목적규정, 취지규정, 정의규정, 해석규정 등을 두고 있으나, 최근의 규제적 입법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우선 「目的規定」이란 법령의 입법목적을 간명하게 요약한 문장을 말한다. 이것

은 제명과 함께 그 법령의 목적을 명확히 하며 또한 그 법령규정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68) 이 의미에서 목적규정은 다음의 정의규정과 함께 법령의 규정의 의미를 그 법령 또는 다른 법령중에서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목적규정은 법률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命令에서 목적규정을 둘 필요성은 적다.69)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는 목적규정에 대신하여 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의 내용을 요약한 것을 그 제1조에 두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을 「趣旨規定」이라고 한다. 제1조에 목적규정을 둘 것인가 또는 취지규정을 둘 것인가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다만 최근의 법률에서는 目的規定을 두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目的」이라는 것을 부가하고 있어도 그 실제적인 내용은 취지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다수 있으나, 그것은 본래적으로는 취지규정으로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적당하다.70)

최근의 법령 가운데 특히 條文數의 다수가 하나로 된 내용을 가지는 것 등에 관해서는 目的規定 또는 趣旨規定에 이어서 그 법령 가운데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중요한 용어 또는 그 법령에 관한 일반적인 용법과 약간 다른 의미를 지니게 사용하는 용어 등의 정의를 하나의 條(또는 복수의 조)로 정리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定義規定」이라고 한다.71) 이러한 정의규정은 모든 法令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法令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중요한 용어라든가 또는 그 법령에서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소 다른 의미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용어의 의의를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설치하는 규정이다.72) 과거에는 法令에서 사용하는 用語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

68) 目的規定은 법적용이나 법발견시에 있어서 직접적인 解釋指針이 될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특성 판단 및 법률에 의한 침해·조치·규제의 유용성의 입증 및 法律의 受範者에게 법규정의 내용 및 의미의 전달을 쉽게하는 다양한 역할을 한다. 자세한 내용은 Werner Hugger, 「Ziel- und Maßnahmenfindung」, in : Bundesakademie für öffentliche Verwaltung(Hrsg.), Praxis der Gesetzgebung, aaO., S.244f.

69) 目的規定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① 법령의 直接目的만을 언급하는 것(도로교통법 제1조), ② 법령의 直接目的 내지 高次의 目的과 그 달성의 수단을 정한 것(약사법 제1조), ③ 법령의 직접목적과 그 달성수단외에 公利적 목적으로 公共의 福利의 향상까지를 정하고 있는 것(도로법 제1조), ④ 立法의 動機까지 규정한 것(산업교육진흥법 제1조) 등이 있다. 法制處, 「法令立案審査基準」, 57面.

70) 法制處, 「法令立案審査基準」, 58面.

71) 用語의 定義에 관한 규정의 기본형은 「이 법(令)에서 ○○이라 함은 ……을 말한다」라는 방식이다. 정의하여야 할 用語가 2개 이상인 때에는 그 용어별로 몇개의 項 또는 號로 나누어 열거한다. 그리고 어떤 法律과 그에 의거한 명령에 있어서의 용어를 그 법률에서 동시에 정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發하는 命令에서 “○○”이라 함은 ……을 말한다」라고 쓴다. 그런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用語나 빈번하게 나오지 않는 용어에 관하여는 정의규정의 형태가 아니라 법령 중에 그 用語가 수시로 나오는 곳에서 정의를 내려 둔다. 法制處, 「法令立案審査基準」, 59面 참조.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오히려 예외이며, 다소 특수한 의미로 사용되는 用語에 대하여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런 정의도 내리는 일이 없이 이를 사용하고 그 의미는 오로지 法院의 判例나 주무부처의 法令解釋指針 등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은 법령민주화의 견지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또한 國家機關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현재에는 법령의 대부분이 가능한 한 다수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령 가운데 어떤 用語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는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意味의 多樣性과 그 용어가 법령상 차지하는 法的 效力의 중요성 여하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73)

그리고 목적규정과 정의규정도 法令의 解釋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나, 이들 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한 方針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에서 해석규정을 두는 예가 있다. 74) 이러한 解釋規定에 대하여는 비록 그것이 이론상 다소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그것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그 해석에 구속된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는 것이다. 解釋規定은 해당 규정에만 관계되는 것은 그 규정과 같은 장소에 두게 되나, 그 法令全般에 적용되는 것은 최초의 총칙적 부분에 정의규정의 다음에 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

## ② 實體規定에 관한 事項

총칙적 규정에 이어서 법령의 주된 내용인 實體規定을 규정하게 되며, 그것은 각 법령의 本體部分을 이루는 것이다. 법령의 본체부분을 어떻게 구성하고 배열할 것인가는 입법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이론이 부가되어야 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필요에 따라 입법의 대상으로서 생각되는 모든 사회적 사실 가운데에

72) 定義規定에 유사한 것으로서 이른바 「略稱規定」이 있으나 이것은 본래 정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약칭을 둠으로써 법령의 규정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생략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兩者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서로 혼동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또한 약칭규정은 省略效果를 거두는 취지에서 그것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항상 그 후의 부분은 약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韓國法制研究院, 「立法理論研究(Ⅰ)」, 196面 참조.

73) 「일반적으로 어느 법이 그 법에서 기본적으로 쓰일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의규정자체가 더 이상의 해석상 의의(疑義)를 남기지 않을 만큼 항상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그 규정을 다시 제반 헌법원리나 일반법리에 맞도록 확대 또는 축소해석할 수 있음은 법해석론상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특히 국민의 행위를 규제하고 그 규제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가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행위의 정의규정은 당해 법률에 내포되어 있는 합헌적 의미를 밝혀내어 분명히 하는 것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 憲法裁判所 決定 1994.4.28. 91헌바14(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 第2條 등에 대한 憲法訴願).

74) 이러한 解釋規定의 유형으로서는 ① 정면으로 단적으로 解釋의 方針 내지 법률적용의 指針을 정하는 것(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과 ② 법령의 적용의 한계를 명시하고 擴張解釋을 금지하는 것(생활보호법 제22조3항)이 있다. 法制處, 「法令立案審査基準」, 60面.

서 법적인 규율에 불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法的인 規律에 필요하며 충분한 사실만을 법적인 요건으로서 선택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결합하면서 입법의 구체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그 요목에 따라서 규정을 배열하게 되는 것이다. 實體規定이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가에 따라 일반적으로 事業團東法規, 助成法規, 資格賦與法規 등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다.<sup>75)</sup>

우선 事業團東法規라 함은 어떤 자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어떤 업무와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許可 등의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 등을 정하는 법령일반을 말한다.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福利行政의 적극화에 따라 행정관계입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은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이들 행정관계입법은 적극적인 福利目的을 위하여 규제행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편, 그러한 입법에서 특색적인 점으로서 다분히 行政便宜主義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업단속법규를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유의하여야 할 점이 대단히 많으며, 특히 그 用語의 사용에 있어서 학문상 용어의 의의를 정확히 이해하여 적절히 사용한다든가 또는 그 신청·처리기준, 有效期間 등에 관하여 조문배치나 구성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助成法規란 일반적으로 「行政主體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私人 또는 사기업자에 대하여 경영의 안정, 공공적 수요의 충족 등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금 기타 재산상 가치가 있는 利益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규를 말한다.<sup>76)</sup> 조성행정은 현대복지국가에서 국민의 경제적·문화적 영역에 있어서 公共福利의 증진을 위한 하나의 행정작용의 형태로서 대두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하여 國家는 개인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자의 입장에서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技術情報를 제공하는 등의 급부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개입을 하게되어 이러한 조성행정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조성의 방법에 관해서는 조성대상인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 종류, 조성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나 일반적으로 法令에서 많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1)보조금교부, 2)손실보상, 3)채무보증, 4)기금조성, 5)저리자금의 융자 또는 알선, 6)국유재산의 무상 또는 저가양도 또는 대부, 7)稅制上的 특별조치 등의 형식이 있다.<sup>77)</sup>

75) 자세한 내용은 韓國法制研究院, 「立法理論研究(I)」, 198~208面 참조.

76) 助成法規, 助成行政의 관념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韓國法制研究院, 「立法理論研究(I)」, 202~203面 참조.

77) 助成法規에 있어서 공공적 사무 또는 개인의 사업에 대해 경제적인 원조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①助成의 내용·정도 또는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가, ②個人에 대한 조성에 있어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의 관계, ③조성에 대하여 충분한 合理的인

資格制度라 함은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 및 기능의 보유를 설정·공증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러한 자격제도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職業體系를 구성하는 기본적 구조의 하나이며 職業에 관한 법제도도 이 자격제도를 중요한 기반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sup>78)</sup> 이와 같은 자격제도의 입법기술적 측면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그 자격부여의 方法과 節次 등을 규정하는 법규를 자격부여법규라고 한다. 국민의 生命·財産·安全에 밀접하게 관련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제하여 법의 감독아래 돕과 아울러 다른 한편 자격자에게 그 업무독점체제를 용인한다는 원칙이 자격부여법규의 본래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자격부여법규의 내용으로서는 1)資格者만으로 한정하는 업무 또는 행위의 범위에 관한 규정, 2)자격자의 名稱 및 명칭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3)자격부여의 方法에 관한 규정, 4)자격자의 決定基準에 관한 규정, 5)자격자의 시험절차에 관한 규정, 6)자격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7)자격자에 대한 處分에 관한 규정, 8)자격자의 단체조직에 관한 규정 등이다. 한편 법제실무상 주요한 것으로는 자격부여의 방법에 관한 규정과 자격자의 단체조직에 관한 규정등이다.

### ③補則에 관한 事項

법령의 本體를 이루는 실체적 규정의 다음으로 벌칙에 앞서 그 실체적 규정에 부수하는 사항이나 절차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補則的 規定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규정은 법령이 장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補則」이라는 장명을 둔다. 또한 보칙적인 규정을 실체규정의 영역 가운데 두는 예도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칙적 규정으로서는 ㉠보고의 제출(자료제출의 요청), ㉡출입 검사 또는 조사, ㉢청문, ㉣처분의 부관, ㉤이의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손

理由가 있는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감독관청의 설치필요성의 유무, ㉤국유재산법·예산회계법등 관계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검토는 立法政策의 問題라고 볼 수도 있으나, 어쨌든 그 조성의 財源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韓國法制研究院, 「立法理論研究(I)」, 202~205面 참조.

78)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각종의 資格制度를 그 제도의 의의·목적에 따라 분류한다면 ①국민의 생명·재산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 두는 「業務獨占資格」, ②일정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기 쉬운 위험·유해한 또는 소비자에게 예측하지 아니한 손해를 줄 사태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업활동을 유자격자의 관리·감독하에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두는 「必要資格」, ③그 사업활동자체는 제약하지 않으나 국민의 이익과 직업인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유자격자에 대해 일정한 칭호를 부여하거나 또는 단순히 그 취지를 공증할 것이 필요한 경우에 두는 「名稱獨占資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分流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어떠한 자격도 명칭독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必要資格은 또한 그 자체 업무독점자격이기도 하다.

## 第1章 序論

실보상, ㉞권한의 위임, ㉟수수료, ㊱관계인의 의견청취, ㊲심의회 기타 부속기구의 설치·조직·운영, ㊳관계행정기관과의 협조·조정, ㊴다른 법령과의 관계등 가운데 필요한 것을 둔다.79)

### ④罰則에 관한 事項

罰則이란 어떤 법령에 규정하는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위반자에게 상당한 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예고함과 아울러 현실적으로 그러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자에게 그 예정된 罰을 과하는 취지를 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또한 그것은 법령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설치한다. 법령의 實體規定에 있어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를 부과한 경우에 그 위반이 있을 때 그 상태가 방치된다면 법령의 實效性을 확보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법령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하고 국민의 준법정신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가지의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때문에 법령에 있어서 罰則規定을 두어 법령의 의무에 위반하는 상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예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동시에 실제로 그러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벌칙규정의 배열은 法令이 장·절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補則事項 다음, 즉 본칙으로서의 말미에 배열한다. 그러나 벌칙수가 적을 경우에는 보칙의 장 속에 포함시키거나 實體規定의 장 속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이것은 바람직한 입법례라고는 할 수 없다. 법령이 장·절로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규정과 보칙규정을 전부 배열한 다음에 配置하며, 벌칙조항 상호간에는 法定刑이 무거운 것부터 순차로 배열하고, 만약 같은 벌칙조항에서 둘 이상의 실제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조명이 빠른 것부터 배열한다.

罰則을 정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며, 범죄로서 처벌되는가라는 범죄구성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범죄구성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결국 그 벌칙규정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80) 犯罪構成要件의 규정을 쓰는 방법으로서의 구성요건을

79) 상세한 내용은 韓國法制研究院, 「立法理論研究(I)」, 208~229面 참조.

80)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입법권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



법률의 벌칙규정 자체에 표시하는 방법과 실체규정 중에 일정한 작위·부작위의 의무를 부과하는 뜻을 정하여 두고 罰則規定에서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형을 과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방법의 두가지가 있다. 前者는 무엇이 범죄를 구성하는가가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충분히 인식되고 있는 자연법에 관한 규정이며, 行政犯에 관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행위자체는 사회도의적으로 해악하다기 보다는 법령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한 의무에 위반하기 때문에 범죄로 되는 것이므로 후자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行政法規에 있어서도 전자의 방법에 따른 것도 있으나, 이것은 예외이며 후자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sup>81)</sup>

(5) 附則

法令의 규정은 목차 등의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령의 이른바 本體의 事項을 규정하는 부분과 부수적·경과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그 가운데 전자가 本則이며 후자가 附則이다. 부칙에 있어서 규정해야 할 사항은 법령의 시행기일·그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관계법령의 개정폐지의 조치등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법령의 施行地域에 관한 규정이나 그 법령의 有效期間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도 있다. 이러한 부칙규정의 순서에 관해서는 일정한 원칙적인 순서가 있으며, 통상 ①당해 법령의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 ②당해 법령의 시행지역을 한정하는 규정 또는 당해 법령의 유효기간 내지 유효기한에 관한 규정, ③당해 법령의 각규정의 적용관계의 규정, ④당해 법령의 제정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⑤당해 법령의 제정에 따른 폐지하여야 할 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및 그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⑥당해 법령에 관련된 타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및 그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등의 순서로 규정한

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憲法裁判所 決定 1994.7.29. 93헌가4,6 병합(舊 大統領選舉法 제36조 제1항 違憲提請, 舊 大統領選舉法 제34조 등 違憲提請).

81) 그런데 특히 後者の 방법에 따른 경우에는 벌칙규정과 그 전제가 되는 義務規定과의 조화에 관하여 충분히 배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으로서 불명확하게 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점에 유의하여 사후에 문제를 남기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後者에 의한 규정형식을 현행법상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유형으로 분류하면 ①가장 기본적인 형식으로서 「제○조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라는 형식, ②「제○조의 規定에 의한 ……」을 하지 아니하고 ……」을 한 者는 ……」라는 형식, ③「제○조의 規定에 위반하여 ……」을 한 者는 ……」 또는 「제○조의 規定에 위반하여 ……」을 하지 아니하고 ……」을 한 者는 ……」라는 형식, ④「……의 行爲로서 ……」을 한 者는 ……」라는 형식, ⑤기타 複合形式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형식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입법례에 있어서는 반드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지 않다.

다. 82)

여기에서 ②의 당해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최후에 배열되는 경우도 있으며, ④의 경과조치에 관해서는 본칙의 규정의 순서에 대응하여 소정의 규정을 두는 것이 통례이다. 그리고 ⑥의 타법령이 복수인 경우의 배열에 관해서는 본칙과의 실질적인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배열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의 법률에서는 후자의 방법에 의한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에도 조직법에 관한 것은 최후에 종합하여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附則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이 대단히 많고 복잡한 경우에는 부칙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 가운데 施行期日에 관한 부분이외의 부분을 독립시켜 단독입법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신법령의 제정에 따른 다수의 관계법령의 개폐를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부칙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고 單獨法令을 제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단순한 整理만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整理」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실질적인 내용의 정비인 경우에는 「整備」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부칙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 가운데 중요한 것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83)

우선 施行日에 관한 규정이다. 법령은 각각의 법형식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정되면 그 내용은 확정된다. 그러나 法令이 법규범으로서 현실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공포되어 시행될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법령은 각각 특별히 시행일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과 같이 다른 법령의 시행일을 정하는 것만을 目的으로 하는 법률도 있다. 그러한 법률을 둔 이유는 법령의 실제규정은 법규범으로서의 성질에서 스스로의 적용을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법령이 그 施行時期에 관하여 규정을 두는 것은 사실은 법령의 실제규정의 적용을 일정시기까지 제어하는 것인데 대해, 법령의 시행일을 정하는 法令에 관해서는 다시 그 시행시기를 제어할 필요는 없기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다.

법령의 시행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우선 국민이 그 법령을 주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며, 下位法令의 입법소요시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法的 安定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현행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에서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제 13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82) 附則에 규정되는 사항의 순서는 法制處, 「法令立案審査基準」, 86面 이하 참조.

83) 상세한 것은 韓國法制研究院, 「立法理論研究(I)」, 245~259面 ; 法制處, 「法令立案審査基準」, 86~92面 등 참조.

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의 2).

둘째, 經過措置에 관한 규정이다. 법령을 제정개폐하는 경우의 기본적인 유의사항의 하나로서 新舊法令下에 있어서 법질서의 변천을 원활하게 하여 구법령하에 있어서 또는 적용되는 법령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地位나 利益을 침해하지 않게 보호하고, 또한 사람들의 지위가 급격하게 변동되지 않게 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법령을 制定改廢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질서를 어느 정도 용인하거나 새로운 질서에 관해 잠정적인 特例를 둬으로써 신구질서의 원만한 교체를 위한 소정의 경과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과조치를 정하는 규정을 일반적으로 경과규정이라고 하며, 이것은 부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경과규정의 작성은 立法技術上 가장 어려운 것이며, 그것은 종래의 제도와 그 운용을 전제로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과 신질서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新制度 자체의 규정화보다도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과규정에는 각종 立法技術을 구사하여 대단히 기술성이 강한 용어가 사용되며, 기술적인 규정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法命에 따라서는 타의 법령의 제정개폐에 따른 경과적 사항이 바로 그 법령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經過的 事項을 정하는 것 자체가 그 법령의 목적이므로 경과적 사항이 바로 그 법령의 본칙에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된다.84)

셋째는, 罰則에 관한 經過規定이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그 시행시로부터 폐지시 까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한 法律에 있어서 벌칙에 관한 규정 역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법률의 시행후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犯罪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나 행위시법 범죄를 재판시법에 의하여 재판하는 경우와 같이 행위시의 법률과 재판시에 있어서의 法律이 서로 다를 때에는 적용하여야 할 법이 행위시법이나 아니면 재판시법이나 하는 것이 문제된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처럼 범죄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벌칙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위한 경과규정이다.85)

84) 經過措置는 법률의 제정·개정등에 따른 신구법률상태의 조정을 위한 조치이므로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그 유형도 다양하지만, 新舊法律의 적용관계에 대하여 과도적 조치를 하고 있음이 공통적이다. 따라서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는 舊法律을 한정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가하면 新法律의 시행전에 발생한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신법률을 소급적용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경과조치로서 규정을 두어야 할 사항에 관한 유형으로는 ①기득의 권리·지위의 존중·보호 또는 승계를 위한 사항, ②機關의 신설·폐지와 관련된 사항, ③舊法과 新法의 적용에 관한 사항, ④구법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效力등에 관한 사항, ⑤新法施行前에 존재한 상태를 신법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으로 용인하도록 하는 사항 등이 있다.

85) 참고로 附則에서 罰則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는 방식으로는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 第3節 法令文의 表現基準

#### I. 意 義

成文法은 문자·문장의 표현방법을 통하여 인식되는 법이므로 성문법에 있어서 표현방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결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法이 성문법으로서 일단 성립하면 그 법은 이른바 立法의 의도나 그 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예정된 政策이 어떠한 것이더라도 문자·문장 등의 표현방법을 통하여 획득된 의미내용을 기초로 인식되고 또한 운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成文法의 문자·문장 등으로 표현되는 것에 의해 인간의 권리의무가 규제되고, 사회·경제·문화 등의 제반활동이 영위되며 또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규율되어 공행정이 실현되는 것이다. 86) 따라서 입법에 있어서는 表現의 問題에 관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령의 표현에 관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그것이 입법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타당하며 정책결정자의 意思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87) 법령의 표현이 법령의 내용으로서 예정되는데 正確하게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표현을 통하여 얻어진 의미내용이 법령의 의도와 다른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만약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그 法令의 目的이 달성될 수 없으며, 정책결정자의 본래의 정책의도와 다른 법이 국민생활을 규율하게 됨으로써 본래 의도된 방향과 다른 방향의 정책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등 여러가지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한다. 立法實務에 종사하는 자는 법령에 사용하려는 표현이 그 내용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으로써 그러한 불합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법령에 있어서 표현에 의해 법령의 內容을 정확하게 틀림없이 표현하는 것은 법령에 있어서 표현의 기본적인 과제이며, 立法實務에 종사하는 자의 필연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표현·입법의 형식면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에 관해서는 일찍부터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88) 결국 法令의 表現

---

는 종전의 예에 의하고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서 행하여 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의 제○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다」 등이 있다.

86) Harald Kindermann, 「Gesetzessprache und Akzeptanz der Norm.」, in : Ders.(Hrsg.), Recht und Sprache, aaO., S.56f.

87) Rudolf Wassermann, 「Die moderne Gesetzessprache als Ausdruck politischer Kultur」, in : Th.Öhlinger(Hrsg.), Recht und Sprache, aaO., S.38.

方法은 규율대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령의 입안자는 제정권자가 의도하는 입법의 내용이 「正確」하고 「明瞭」하게 또한 「平易」하게 그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용자·용어 및 문체를 작성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는 立法表現에 있어서 명확성에 강조를 두는데 비하여, 英美에서는 확실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입법표현방식을 보아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II. 表現의 明確性

### 1. 概說

表現의 明確이라는 것은 입법자가 그 법령에 담으려고 하는 법규범의 내용이 이를 후에 이르러 독자에게 그 法文에 사용되고 있는 문자와 문장으로 부터 그 소기하는대로 틀림없이 받아들여지게 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이는 立法關與者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고 不正確하거나 애매모호한 법문을 작성하는 것은 입법관여자의 실력을 의심하게하는 것이며 만약 그러한 法文을 만든다면 수치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법령이라는 것은 원칙으로 개개의 구체적인 것을 그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 사회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성질을 지닌 것에 一般的·普遍的으로 적용할 수 있게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므로 그

88)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그의 저서 「法の精神」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①법의 문체는 간결하고 또한 용이하여야 하며, 수사적인 문구는 주의를 산만하게 할 뿐 아니라 군더더기 말이 된다. ②법의 언어는 개별적인 의견의 차이가 생길 여지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절대적이어야 하며, 상대적인 것이어서는 안된다. ③입법은 평범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만들어 지는 것이므로 난해하여서는 안된다. ④입법은 진실되고 현실적인 것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비유적이거나 가정적인 것이어서는 안된다. ⑤입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나 한계 또는 제한을 많이 첨가함으로써 주제를 혼동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⑥입법은 기초적인 이성과 정의와 사물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 C. Montesquieu, 「The Spirit of Laws」, Berkeley 1977, pp.376~378 【申相楚(譯), 「法の精神」, 乙酉文化社 1963, 492~496面】. 또한 崔大權, 「憲法學-法社會學的 接近-」, 博英社 1989, 350面 參照. 또한 O. Weinberger는 「①立法은 분명하고 모순이 없고 명확하여야 한다. ②立法은 규율되어야 하는 모든 경우를 사실상 規律한다는 의미에서 완벽하여야 한다. ③立法은 장래의 해석에 미칠 수 있는 반사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法學的 解釋論에 대해 원하지 아니한 效果를 극복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Ota Weinberger, 「Syntaktische und semantische Problem der Gesetzgebung」, in : Th. Öhlinger(Hrsg.), Methodik der Gesetzgebung, aaO., S.178.

법령의 형식이나 법문의 표현은 어느 정도 일반적·추상적인 用語나 포괄적인 價値概念을 포함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입법관계자가 어떻게 유의하여 신중한 법문을 작성하더라도 그 법문을 실제의 구체적 사건에 해당하려는 경우 그곳에 解釋의 여지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실제적으로도 ①文字·文章에 의한 표현능력의 한계, ②지나치게 세밀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의욕, ③專門用語의 사용, ④법률에서 복잡다난한 사실관계규율, ⑤진부하고 기계적인 法案의 작성, ⑥입안자의 자만심, ⑦입법과정 중 정치적 이유나 타협 등으로 인한 본래의 법문의 변질 등으로 인하여 正確性이 결여된 입법이 발생하게 되기도 한다.<sup>89)</sup>

이러한 不明確한 法은 몇가지의 중요한 가치를 침해한다. 즉 첫째, 인간은 합법적인 행위와 비합법적인 행위를 자유로이 할 수 있으므로 法은 통상의 지성을 가진 자에게 어떠한 것이 금지되어 있는가를 알려 그 자가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不明確한 法은 이러한 공정한 고지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중요한 가치를 침해한다는 점이다.<sup>90)</sup> 둘째, 자의적·차별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은 執行者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불명확한 법은 기초적인 정책사항을 자의적·차별적 적용의 위험이 있는 法執行者에게 주관적 해결에 맡기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sup>91)</sup> 셋째, 불명확한 법령이 특히 憲法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그 자유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자유에 대한 악영향을 가져온다는 점이다.<sup>92)</sup> 그

89) H. Hill, 'Einführung in die Gesetzgebungslehre', Heidelberg 1982, S.129f.

90) 여기에서 公正한 告知는 현실로 법을 완전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실제상 곤란한 이상 법을 一般社會에 대해 알 수 있게 하는 상태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경우 법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公正함을 유지하고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이 通常의 知識을 가지고 법문을 볼 때 그 법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法律家에게만 告知되는 법문은 公正한 고지의 이념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다.

91) 그러나 어떠한 法도 자의적으로 집행될 여지가 있으며, 여하히 理想的인 法이라 할지라도 裁量의 여지가 있으며 그 때문에 차별적 집행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明確한 法은 일정성·확실성·예견가능성·공정성을 촉진하며 남용이 발생하더라도 그 발견·시정의 능력이 탁월하나 明確한 法은 법으로서의 柔軟性이 결여된다는 약점도 있다. 따라서 법문의 明確性을 고려하는데 있어서는 법의 유연한 집행의 여지를 남기면서 濫用의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92) Gregory E. Maggs, 'Reducing the costs of Statutory Ambiguity : Alternative approaches and The Federal Courts Study Committee', Harvard Journal on Legislation Vol.29, 1992, p.143. 또한 不明確한 法은 비용면에 있어서도 ①법적 조사비용의 증가, ②소송비용의 증가, ③사법체계비용의 증가, ④비합법적인 행위의 증가, ⑤합법적 행위의 감소, ⑥차별화, ⑦권력분립상의 문제, ⑧입법비용의 증가, ⑨효율과 정의의 감소 등을 초래한다. Ders., Ebd., p.126~130. 立法經濟的인 면에서의 불명확성에 관한 검토는 Herbert Ent, 'Gesetzgebungsökonomie', in :Th.Öhlinger(Hrsg.), Methodik der Gesetzgebung.

러나 不明確性이라는 것이 원래 언어의 성질상 본래적인 것이며 명확성·불명확성이라는 기준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에 불과하며, 특히 일반적으로 法令은 규정의 文言의 표현력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질상 다소 추상성을 불가피하게 가지므로 모든 법령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그것은 立法을 불가능하게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 될 것이다.<sup>93)</sup>

## 2. 不明確性和 法的 言語

言語上的의 문제로서의 표현의 명확성, 불명확성이란 어떠한 성질의 것인가. 우선 불명확성<sup>94)</sup>에는 두 가지의 다른 경우가 있다. 즉 불명확함(vagueness, Unbestimmtheit)이며, 다의성(ambiguity, Vieldeutigkeit)이다.<sup>95)</sup> 양자는 각각 단어에 관해서도 문장에 관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어떤 單語가 명확(precise)하다는 것은 임의의 사물이 그 外延에 들어가는가의 여부의 판정이 용이하게 되면 그 단어는 명확하나, 그 판정이 곤란하여 사람에 따라 판정결과가 다양한 단어는 불명확하다. 한편 어떤 單語가 다의적이란 그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다른 外延을 가지는 것이다. 이 경우 외연을 원으로 보면 두개 이상의 원이 교차하거나 어떤 원이 다른 원을 포함하거나 각각의 원이 교차하지 않고 분리되어 존재한다. 실제 문제로서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단어의 거의 대부분은 다소 不明確하거나 多義적이다. 그 때문에 다의적인 단어는 대부분은 동시에 불명확하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多義性이 언어의 특수한 현상이며 자각적인 노력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까지 제거할 수 있는 것인데 대해 不明確性은 오히려 언어가 지닌 정상적인 성질이며 확실히 그 때문에 원리상 제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不明確性은 언어가 지닌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언어생활에서 자주 장점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상의 불명확한 單語가 법률상 중대한 논점과

aaO., S.67f 참조.

93) 「완전히 불명확한 制定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정법은 입법부에 의하여 결정된 행위기준을 전달하는 방법이며,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目的的 行爲이다. 起草者는 모법적이며 명백한 事案을 의도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정법은 항상 핵심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H.L.A.Hart, 「The Concept of Law」, Oxford 1961, p.139.

94) 일반적으로 「不明確」이란 「만약 言語가 어떤 문맥에서 일시적인 推量이나 언어학상의 용법에 관한 오해없이 그 言語에 관한 올바른 지식에서 실제 독자에게 다른 범위의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95) 「不明確性」은 언어철학에서는 통상 개방된 意味를 지닌 일반적인 용어와의 관련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言語가 論述에 사용되면 그 의도하는 범위가 자주 불명료하게 된다. 다른 한편 「多義性」은 일반적 용어가 어떤 객체에 명백하게 해당함과 동시에 동일객체에게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은 경우를 지칭한다.

결합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법학의 숙명적인 난관은 그것이 한편으로 엄밀성을 요구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 자연언어의 표현수단에 의지한다는 점이다. 自然言語는 신축성이 있고 일상생활에서는 매우 편리하나 엄밀성이라는 점에서는 불완전하다. 다의성의 문제는 신중한 입법에 의하여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어도 불명확성의 문제는 자연언어의 성질상 원리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

그런데 言語에 있어서 불명확성 때문에 법이 대단히 널리 사회적 기능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sup>96)</sup> 즉 불명확성은 법에 있어서 보다 세련된 사회통제방법으로서 사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立法者가 달성하려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일반적 개념을 지니고는 있으나, 어떠한 특정의 행위를 禁止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확신이 없는 경우에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法令에서 불명확한 언어를 사용하여 그 법령의 개별적 적용을 통하여 사회통제를 하고 사회변화에도 대응한다. 불명확한 일반적 기준이 이에 해당한다. 不明確性이 사회통제의 규범적 방법에 부여하는 유연성은 중요하다. 그것은 事前에 특정의 구체적인 방식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고 사회의 진전에 대해 일반적으로 統制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 유연성이 없으면 전혀 규제를 할 수 없거나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엄격히 열거하는 거의 불가능한 임무를 선택하여야 한다.<sup>97)</sup>

96) 이 입장에서는 우선 言語의 불명확성이 명확히 법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이어 불명확성과 법과의 매우 현저하지 않은 관계에 관해 초점을 둔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認識된 法과 言語에 있어서 불명확성과의 상호관계를 다루면서 불명확성에 의존하는 두가지의 법적테크닉에 착안한다. 첫째는 不明確性의 목적있는 탐구(the purposive search for vagueness)이다. 둘째는 어떤 권력집단이 하위권력집단에게 위임되지 않을 수 없는 권한에 대한 필요한 통제를 인정하는 수단으로서의 불명확성의 목적있는 사용(the purposive use of Vagueness)이다. 상세한 내용은 George C.Christie, 「Vagueness and Legal Language」, 48 Minn.L.Rev. 885, 1964 참조.

97)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법이나 국민의 이해관계가 침해하게 대립되는 법률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내용의 법률용어가 허용될 수 없으며, 만일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용어의 개념정의, 한정적 수식어의 사용, 적용한계조항의 설정 등 제반방법을 강구하여 동 법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봉쇄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하여 명확성의 산술적인 관철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사용은 부득이 하다고 할 수 밖에 없으며,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타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 또는 불확정개념의 용어가 사용된 경우에도 동일한 법률의 다른 규정들을 원용하거나 다른 규정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거나 기회 확립된 판례를 근거로 하는 등 정당한 해석방법을 통하여 그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어, 그 결과 개개인이 그 법규가 보호하려고 하는 가치 및 금지되는 행위의 태양과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국가의 대응책을 예견할 수 있고 그 예측에 따라 자신의



그리고 표현하려는 복잡한 概念을 전부 포괄하는 정확한 의미의 전문용어가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그러나 그러한 專門用語는 충분하게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확한 전문용어가 완전히 있더라도 그 유효성이 문제가 된다. 어휘는 새로운 용어를 공급하기 위하여 방대하게 擴大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정확한 전문용어가 사용될 수 없는 영역은 항상 존재한다. 그리하여 현실문제로서 실현가능한 正確性を 확보하는 다른 수단이 필요하며, 불명확성의 이용은 그 하나의 수단이다. 즉 몇개의 一般用語를 사용하여 그들의 중복된 부분에 그 意味를 한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正確성이 확보된다. 이 방법은 실정법이나 계약에 있어서 불명확한 일반적 언어를 정의하는데 사용된다. 不明確한 用語를 거듭함으로써 이들 용어의 내용이 용이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불명확성의 사용은 어휘를 방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意思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不明確性은 광범하고 부정확한 의미를 지닌 용어의 운곽을 충전하는데 사용된다. 때로는 불명확성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의사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휘의 양을 삭감하는데 이바지 한다. 예를 들면 다른 적절한 말이 없기 때문에 不明確한 言語를 그 제2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통상 그다지 사용되지 않은 의미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그 말이 통상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 이 방법은 적절한 언어감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법률가는 새로운 言語를 만들 필요가 없으며 또한 적절한 주요한 또는 가장 유용한 언어사용방법을 판단한다. 98)

### Ⅲ. 表現의 平易性

#### 1. 概 說

成文法에 있어서 그 내용은 표현을 통하여 인식되는 것이며, 특히 현대에 있어서 법은 당연히 민주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입법형식이라던가 용어·용자 등의 표현에 있어서는 평이성이 요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법이 支配者의 지배수단이었던 봉건시대 내지 전제군주시대와는 달리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 법은 이른바 국민

행동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규정내용이라면 그 범위내에서 명확성의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憲法裁判所 決定 1992.2.25. 89헌가104(軍事機密保護法 第6條 등에 대한 違憲審判).

98) 그러나 이러한 技術을 사용하는 경우 독자가 순환논법에 빠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起草者가 대개 법률가는 이미 정의된 말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확실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技術은 법령을 이해하는데 거의 이바지하지 못한다는 결점이 있다.

의사의 표현이므로 민주적인 성격을 가질 것이 요청된다. 또한 법은 國民意思의 表現이므로 국민들에 의하여 이해되고, 나아가 그 준수가 기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표현이 난해한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表現이 난해하거나 불적절하다면 법의 집행 또는 적용에 즈음하여 국가기관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되어 이들 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광범하게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입법의 民主化, 법령의 민주화의 일환으로서 법의 평이한 표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 法令의 平易性이라는 것은 종래에는 문어체를 사용하고 용자·용어의 선택에도 제한이 없고 그 위에 간결한 문장, 문체를 지향하였던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법령의 평이성이라는 점이 별로 강조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법령에 평범한 구어체가 채용되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用語의 점에서도 종래의 난해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벗어나 다른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立法形式의 면에서도 법령을 외형적, 형식적으로 이해하기 쉽게하기 위하여 법령에는 전부 題名을 붙이고, 조문에 표제를 붙이고 項에 항번호를 달고 긴 법령에는 目次를 달고 장·절 등의 구분을 두고 조항의 개정이나 삭제방식을 종래의 것에 비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조문중에 필요에 따라 목적규정, 취지규정, 정의규정 또는 해석규정을 삽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채용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立法形式과 입법기술상의 요령을 적절하게 구사함과 아울러 실제로 법문상의 용어·용자도 이해하기 쉽거나 쓰기 쉬운 것을 사용하거나 하는 것이 바로 표현의 평이성과 직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表現의 平易化에 대한 制約

법령의 표현의 평이화라는 요청과 더불어 고려하여야 할 점은 법령의 字句가 성문화된 권리의무의 규범이라는 법령으로서의 성질에서 생기는 기술적인 제약이다. 실제로 법령의 立案에 즈음하여 가장 노력하여야 할 점은 바로 이 점이며 평이한 용어로 이 제약에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法令에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서로 상위·하위의 관계, 전법·후법의 관계 및 일반법·특별법의 관계라는 것이 있다.<sup>99)</sup> 각 법령은 이러한 관계에서 각각 論理的으로 통일된 법질서의 일환으로서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표현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한 법령자체에 있어서도 法規範으로서의 논리적 통일, 동일한 의미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동일한 字句의 사용, 후문의 전후관계의 명확한 표현 등이 요청된다. 이들 요청을 충족시키면서 법문의 평이화를 실현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매우 어려운 사례도 있

99) 이 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韓國法制研究院, 「立法理論研究(1)」, 152~171面 참조.

고 日常用語에 사용하는 구어체의 문장으로는 도저히 다룰 수 없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는 文字 등의 표현방식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 스스로 특수한 표현방식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法令의 表現方式에는 법령자체의 성질에서 생겨나는 특수한 요청과 국민에게 이해가능하기 위한 평이성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 상호 모순된 두가지의 명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sup>100)</sup> 법령으로서의 기술적 제약에서 일반일상 용어에 의한 구어체가 반드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法令의 규정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생활현상자체에서 반드시 平易한 用語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법령이 대상으로 하는 사회생활은 고도로 발달하여 고도로 분화된 현대문화와 문명을 바탕으로 영위되어 있으므로, 그 복잡한 社會關係를 권리의무의 관계에서 규율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분야에서만 통용하고 일반인에게는 난해하다고 생각되는 用語에 의하여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아무리 平易한 用語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내용과 경우에 따르는 것이며 복잡한 현상을 파악하는데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난해한 전문용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있다.<sup>101)</sup>

#### IV. 正確性和 平易性의 相關關係

이상과 같이 법령에 있어서 표현의 기본원칙으로 「正確性」과 「平易性」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았으나, 이 양자 가운데 어느 것에 중점을 둘 것인가는 사안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표현의 正確性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입법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한 이 양원칙을 양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표현의 정확성을 위하여 표현의 평이성을 희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法令의 대상자체의 복잡성, 기술성, 전문성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것을 무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立法에서 간결한 표현이 강조되면서 함축성있는 표현이 많이 규정되고 있다. 법령을 가능한 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며, 이것이 평이성으로 통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만약 簡潔性和 平易性의 양자택일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평이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간결성을 지향한 결과로서 법조문의 다양한 해석을 낳게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쉬운 用字·用語라는 점에서 말한다면 법령상 나오는 용자용어를 전부 일

100) Willibald Liehr, 「Verständliche Gesetzestexte」, in : Th.Öhlinger(Hrsg.), Recht und Sprache, aaO., S.175.

101) 立法技術研究所(編), 「法制實務研修資料集」, 1989, 178~180面 참조.

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로 하면 이상적일지 모르나 어느 학문·연구분야에도 어느 정도 專門用語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종래부터 사용되어온 법률상의 용어, 입법상 관용되는 용어(법령용어) 또는 입법상의 각종약속 등을 전부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表現의 정확이라는 것은 법령의 제정에 있어서 결여될 수 없는 요건이므로 이 면에서 전문적인 법률용어, 법령용어 또는 입법상의 약속도 여전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법령상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등은 正確한 法令을 작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법령용어의 존재는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별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법령용어의 意味와 使用用途를 분명히 하는 것은 현실의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대단히 필요한 것이다. 法令用語나 立法技術이 일반인에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독선적인 것이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은 당연하며 그 점에서는 다양하게 개량할 점이 있음은 물론이나, 이 점에 관하여 어느정도 法令을 읽는 일반인, 법령의 문외한인 사람들도 이러한 관용되는 어구나 형식을 이해하는데 노력하고 그러한 점에서 정확히 법령의 意味를 파악하는데 노력할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용되는 語句와 形式을 사용하는 것이 인정된다는 조건하에 법령에 사용되는 용자·용어 및 입법형식은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檢討, 선택되어야 한다.

## 第2章

# 法令用語의 實際的 課題



## 第2章 法令用語의 實際的 課題

### 第1節 法令用語의 意義

#### I. 法令用語의 意義와 使用目的

法令條文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되더라도 특별히 그 의미의 차이가 명확히 의식되지 않은 用語가 입법기술의 하나로서 법령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각각 특유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를 일반적으로 法令用語로 지칭하고 있으나, 법령용어의 의미나 용법을 정한 法令이라는 것은 특별히 없으며 오로지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이 때문에 법령용어라 하더라도 그 범위는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法令條文에 있어서 법령용어를 사용하는 곳에는 그에 상당하는 이유가 있으며, 이를 단적으로 말한다면 입법내용을 簡潔·明瞭하게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령중에 사용되는 用語의 意義를 미리 명백히 정하는 것은 법령해석상의 의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법령의 민주화를 도모하는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법령상 자주 관용되는 法令用語는 학문으로서의 법학분야에 존재하는 전문적 술어로서의 소위 法律用語와는 다소 다른 것이며, 법문구성상 일정한 의미가 부여되고 일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기술적인 용어인 것이다. 따라서 입법기술을 습득하는데 있어서는 이 관용되는 法令用語를 충분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령에 있어서 用語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법령에 있어서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약속되어 사용하는 용어의 문제이다. 법령의 세계에서 法令用語라는 특수한 영역의 용어가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으나, 立法의 내용으로 해야 할 행정의 복잡다기화, 전문화는 당연히 立法自體에 반영되어 그것이 법령의 복잡다기화, 전문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본래 법령자체가 지닌 專門技術性이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현실문제로서 사실상 곤란하며,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조건 존재가 단순히 法令用語 뿐만 아니라 기타의 면에서도 立法技術自體의 기술성이라는 것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나, 이러한 기술을 될 수 있는 한 감추지 않고 그 공개를 도모하면서 또한 다른 한편 그것을 정확히 구사하는 것이 일면에 있어서 정확한 법문을 작성하는 기본조건이 됨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어떻든

다수의 法令用語를 개관해 보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따라 보다 세밀하게 분류한다면 다음의 4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意味의 差異의 明確化

법령용어가 법령상 일정한 意味內容을 지니는 것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다소 조문의 의미를 명확화하려는 의도로 부터 나온 것이므로 모든 法令用語에는 명확화의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는 그 의미의 차이가 그다지 의식되지 않거나 같은 것으로서 혼동되어 사용되는 것도 法令上으로는 명확히 의미가 다른 것으로서 의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sup>1)</sup>

### 2. 條文構造의 明確化

長文의 조문에서는 어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조문의 문맥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법문에서는 接續詞를 사용하여 문맥의 연결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 있다. 이 경우 사용되는 것이 선택적 접속사인 「또는」, 병합적 접속사인 「및」 등이며 이들 接續詞는 법문중에 대단히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용법을 엄두에 두는 것은 法文을 해독하거나 작성하는데 매우 유용하다.<sup>2)</sup>

### 3. 表現의 簡略化

법문은 명료함과 동시에 간결하여야 함은 이미 살펴보았으나,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간결·명료하게 작성되는 것이 法文의 필수조건이다. 이 때문에 법령을 작성하는 때에는 모든 면에서 簡潔한 表現을 지향하고 있으나 특히 같은 사정에

1) 예를 들면 「본다」·「추정한다」, 「이상」·「이하」, 「초과」·「미만」, 「즉시」·「지체없이」, 「경우」·「때」, 「기일」·「기한」·「기간」 등 이 대표적인 예이며,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法令用語는 대단히 많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權寧敏, 「立法實務」, 研修社 1977, 223面이하 및 朴鉉炳, 「立法技術講座」, 國民書館 1970, 38面이하 참조.

2) ①「또는」은 2개 이상의 사항중에서 選擇的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선택적 접속사로서, 3개 이상의 사항중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앞에만 「또는」을 쓰고 그 앞에서는 중간점(·) 또는 구독점(.)으로 연결한다.

②「및」은 2개 이상의 사항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併合的 接續詞로서, 3개 이상의 사항을 모두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앞에만 「및」을 쓰고 그 앞에서는 중간점(·) 또는 구독점(.)으로 연결한다.

그러나 「또는」과 「및」은 위와 같이 그 의미가 전혀 다르지만 실제 立法에 있어서는 그 어느 쪽을 사용할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으며, 「또는」과 「및」의 양자의 의미를 부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또는」이 쓰이고 있다. 法制處, 「法令立案審査基準」, 16~17面 참조.



관하여 같은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번거로울 뿐 아니라 그 때문에 중요한 文言이 사장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표현을 간략화하여 단축화하는 방법이 여러 모로 강구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準用한다」, 「예에 의한다」라는 법령용어를 사용하며, 이들 法令用語는 법령상 대단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 4. 條文相互間의 關係의 明確化

법령규정중에는 一般法이 널리 포괄적으로 정해짐과 아울러 特別法이 개개의 경우의 특칙을 정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규정내용이 일반법·특별법의 관계에 있다면 그러한 것으로서 각각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구태여 형식적 문언을 사용하여 兩者의 관계에 언급할 필요는 없으나, 법령에 따라서는 그 관계를 명기하여 두는 것도 자주 있다. 이렇게 해두어야만 法令相互間의 관계가 명확하게 되어 해석상의 문제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령내용의 명확화의 견지에서 최근의 법령에는 일반법·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조문에 「별도의 규정」, 「특별한 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법령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많다.

## II. 法令用語와 관련한 事項

法令用語의 실례를 상세하게 해설하는 것은 여기서는 불가능하며, 그 자세한 것은 법제처가 발간한 「法令立案審査基準」 등을 참조하면서 구체적인 법령의 규정을 해독하고 실제 법문을 입안할 때 충분한 지식을 익히도록 할 것이 요망된다. 여기서는 법령용어의 사용일반에 관해 약간의 유의사항을 지적하고, 법령용어와 관련한 몇가지 사항을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법령용어도 立法技術의 일환으로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니는 기술성에 충분히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技術은 그 자체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에 봉사하는데 그 존재의의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法令用語의 사용은 법문을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것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유해하다. 법령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국민일반에게 적절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 용어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法令用語의 의의는 법학에서 일정한 관용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의를 살려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行政法學에서 許可는 일반적인

금지의 해제를 의미하며, 認可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충적인 행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실정법상으로는 이 양자가 혼동되는 예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가능한 한 학문상의 용법과 일치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단지 人的인 許可에 관해서는 실정법상 용어로서 오히려 免許를 사용하는 관례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것에 따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셋째, 법령용어는 가능한 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미로서 사용할 것이 요망된다. 法令用語가 본래 특수한 법령상의 용어인 이상 상당히 난해한 문제는 있으나, 보편적인 용법에서 현저히 거리가 먼 것은 오해의 원인이 되므로 가능한 한 사회일반에서 사용되는 용법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거꾸로 사회일반인에게는 마찬가지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법령용어의 기술성에서 각각 별도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그 일반에 대해 취지를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법령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同一趣旨의 표현을 하기 위하여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 요구되며, 또한 어떻게 하면 법령의 목적·취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것이며 正確한 表現이 되는가에 관해 항상 배려를 하면서 용어를 선택할 것인가를 인식하여야 한다.

## 1. 法令의 用字

법령의 用字로서 통상사용되는 문자는 각국의 고유한 문자로 표현되며, 우리 법령에 있어서의 용자는 「한글」을 전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漢字를 병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정부공문서규정」 제11조제1항은 「문서의 용어는 한글로 띄어서 가로쓰되, 표준말을 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하게 법적으로 보면 大統領令인 정부공문서규정만으로는 법률의 용어를 기속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대해서는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필요한 때에는 漢字를 병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정부공문서규정」 제39조제2항에서는 「법규문서중 법률문서에 대하여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하여 법률의 경우에는 한글·한자를 혼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法律題目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국·한문혼용원칙에 따라 국·한문을 혼용하며, 한글로 된 법률을 인용할 때에는 한글로 된 법률은 한글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한자사용의 범위에 관해서는 특별한 원칙이 없으나, 법령중에는 법률분

야 이외의 각종 전문적·학술적 분야의 專門語도 상당한 정도로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므로 이러한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를 전혀 무시하고 법문을 작성할 수도 없기 때문에 법령을 순수한 한글로 쓰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한편 法制處에서는 「법령에 있어서의 한글·한자표기기준」을 마련하여 법령의 한글화작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sup>3)</sup> 그 외에도 ①法令을 한글사용원칙에 따라 가급적 한글로 쓴다. 다만 한글로 표기할 경우 뜻이 혼용될 우려가 있는 용어는 한자로 쓸 수 있다. ②어떠한 경우에도 하나의 法令에서는 한자혼용기준이 통일되어야 한다. ③복합어는 모두를 한자 또는 한글로 쓴다. ④중간점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一般混用原則에 따라 혼용한다. ⑤법령용어의 한자·한글표기는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제안자의 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審議過程에서는 바꾸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sup>4)</sup>

## 2. 숫 자

법령에는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법령을 공포할 때에는 반드시 그 법령에 番號를 붙이고 법령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한 개성이 題名외에 부여될 뿐 아니라, 법령의 내용에서도 예를 들면 시행일·연령·수량·순위·계급·비율·기간·금액 등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숫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法令과 분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법령에서 숫자를 쓰는 방법은 오식·오기의 염려가 많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法令에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령에 표시하는 숫자가 천단위 이상일 경우에는 漢字 또는 한글로 표시하고 있다.<sup>5)</sup> 그러나 別表 등에서 복잡한 숫자를 도표로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다.

## 3. 外來語

법령에 있어서 外來語의 사용은 표현의 평이성이라는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 3) 자세한 내용은 김승렬, 「법령한글화사업에 관한 소고」, 法制 제227호, 1988.4., 19~24面 참조.
- 4) 法制處, 「法令立案審査基準」, 111面 참조. 또한 漢字와 관련하여 한자자체에 이른바 간이자체(略字)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약자자체를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5) 법령에서의 숫자사용과 관련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면 ①수의 표현에 있어서는 1千, 1萬, 10萬, 100萬, 1千萬, 1億 등으로 표현한다. ②법령에서 서수는 반드시 「第」자를 붙이며 「第〇章」, 「第〇條」, 「第〇項」등으로 하여 수자의 상하의 매듭을 명확히 표현한다. ③봉급표, 정원표등에서 計數의 규정을 하는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를 그대로 사용한다. ④단위구분으로서 「倍」는 1倍, 2倍등으로 표현한다. ⑤分數를 문장중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2分の 1, 3分の 2등으로 표현한다. ⑥期日 또는 期間을 나타내는 숫자는 1月, 2年등으로 표시한다.

국가의 언어정책이나 국민의식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外來語는 되도록 쓰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널리 常用되고 있는 외래어로서 바꾸어 쓸 우리말이 적절한 것이 없는 것은 그대로 쓸 수 있으며, 또한 우리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 外來語라 할지라도 외래어를 씀이 더 적절한 때에는 그대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외래어를 쓸 때에는 「교육부 제정 외래어표기법」에 따른다.<sup>6)</sup> 법령에서 외래어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外來語가 하나의 부호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예컨대 외래어를 翻譯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그 외래어의 본래의 의미를 분명히하기 위하여 外來語를 괄호쓰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條約에서는 외국어가 정본일 때에는 공포할 때 한글의 譯文의 외래어에 의한 正本이 동시에 공포되는 것이 예이다.

#### 4. 符號

법문에서 사용하는 부호는 한글맞춤법에 따르지만 다소 특수한 용법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우선 「마침표와 쉼표」는 一行의 법문에도 필요하며 이것은 부호라기 보다 오히려 자구 그 자체와 불가분의 의미상의 연관을 가지고 자구와 一體가 되어 문자와 같은 작용을 한다. 마침표는 문장의 완결의 표시이지만 ①號나 목이 명사·대명사 등으로 끝나는 법문에는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며, ②號나 목이 명사·대명사 등으로 끝나는 경우에도 계속 단서로 이어질 때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하며, ③號나 목 또는 그 단서가 서술문으로 끝날 때에는 다시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용법에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쉼표의 사용법은 매우 복잡하여 그 용법은 어렵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둘째로, 法令의 「부호」중 기술적인 법문의 의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호로서는 중간점·반점·쌍점 등이 있다. 중간점을 원칙적으로 두개의 단어가 연결된 경우에는 「및」을 사용하여야 하나, ①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연결할 때, ②의무상의 선후관계 등 연관성을 갖는 단어를 연결할 때 중간점을 사용한다.<sup>7)</sup> 반점은 문장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내는 符號로서 주로 띄어쓰여져 있는 구절 또는 문장을 계속 연결할 때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간점과 구별된다. 쌍점은 종류의 구분, 설명 등을 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별표와 별표서식에서 주로 사용된다.

셋째, 부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는 「括弧」가 있다. 우선 맞춤법상 가로쓰기의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를, 세로쓰기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것이

6) 法制處, 「法令立案審查基準」, 14面.

7) 法制處, 「法令立案審查基準」, 14面.

원칙이지만 법문에서는 가로쓰기이지만 낫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낫표는 말을 정의하는 경우, 다른 조문을 準用함에 있어 준용조문을 고쳐 읽는 경우 및 법문 중의 자구의 개정, 부가 또는 삭제하는데 그 부분을 표시하는 경우등에 사용한다. 그리고 괄호는(( ))소괄호·중괄호·대괄호가 있으며 법문표현상 이것을 전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나, 그러한 표현은 法文의 理解를 어렵게 하므로 괄호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하튼 괄호는 그 앞의 용어를 요약하여 일종의 약칭 또는 보충적 정의를 정하는 경우, 그 앞의 용어에서 특정한 범위의 대상을 제외하는 경우, 그 포함되는 대상의 범위를 분명하게 하는 경우, 그것이 특정한 경우에는 별개의 것으로 바꿔 읽게 되는 경우 및 인용된 법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표시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넷째, 법문중에는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밑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別表의 제목에 밑줄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법령에는 旗章이나 服制등과 같이 그림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圖表를 사용하기도 하며, 數式 또는 方程式을 사용하지 않으면 법문이 난해하고 복잡하게 되거나 정확한 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式이 사용되기도 한다.

## 5. 띄어쓰기

법문에 있어서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을 표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는 몇가지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바, ①3원 20전은 「3원20전」으로, 말 한필은 「말1필」로, 나무 두 그루는 「나무 2그루」로, 1969년 3월14일 하오 1시30분은 「1969년 3월14일하오 1시30분」으로 한다. ②한글 학회는 「한글학회」로, 덕수 국민학교는 「덕수국민학교」로 한다. ③「기간이내에」, 「구역안에서」, 「기일이전에」,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학생중에서」, 「30일이상」, 「20일이하」, 「법 제4조제1항 및 제3호 내지 제6호」는 여기에 쓴대로 쓴다. ④법령의 제호는 붙여쓴다라는 것 등이 그것이다.<sup>8)</sup> 그러나 이 점에 관해 법령문의 띄어쓰기는 일반국민의 이해를 위하여 한글맞춤법 원칙에 대한 예외는 가급적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위의 특례에 대해 「3원20전」, 「기간이내에」, 「구역안에서」, 「기일이전에」는 각각 「3원 20전」, 「기간 이내에」, 「구역 안에서」, 「기일 이전에」로 하는 것이 보다 한글맞춤법에 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sup>9)</sup>

8) 法制處, 「法令立案審査基準」, 12面.

9) 國會事務處, 「法制實務」, 1990, 108面.

## 第2節 法令用語의 意味論的 課題

### I. 法規範의 規律構造와 意思傳達能力性的의 相互關係

#### 1. 法の 意思傳達能力性

法令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입법뿐만 아니라 국가법을 연구하는 자에게도 자명한 共通原則으로 인식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점은 특히 오늘날 법규범의 과잉생산하에서 볼 때 법규범의 規律構造와 법의 이해성을 상호 연관시켜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 전부는 법이론적·법정책적 전체구상속에서 구축되며, 입법에 있어서의 세가지 주축, 즉 立法者, 法學者 및 國民을 상호연관하여 검토할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래에는 이러한 제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으며, 최근에 이르러 法言語에 대한 사회적·법정책적 가치가 새로이 인식되어 법의 通用力에 관한 전반적인 구상의 한 요소로서 법의 意思傳達能力(Kommunikationsfähigkeit)의 개선에 관한 일반론적인 고찰이 부각되면서 종래와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sup>10)</sup> 물론 법령이 간결하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문제는 고대부터 사회나 국가의 이상으로서 많은 학자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며<sup>11)</sup>, 그러한 지적도 법의 의사전달능력의 개선에 대한 하나의 진전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進展은 단지 철학의 분야에서 논의된 것이었으며 법의 의사전달능력에 대한 實用的인 改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나, 다만 법의 의사전달능력과 그 제약에 관한 복잡성의 문제에 다소간 이론적인 뒷받침을 형성하는데에는 유용하였다. 이 法史的인 관점을 도외시하더라도 어떠한 사회현상에 있어서 법의 의사전달 능력과 언어적 형성의 역할은 대단히 다양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모든 立法者는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가정할 때, 입법자가 이해성에 노력하려는 경우 법의 규율대상과 내용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그 사회적 기능과 목표정립을 완화하지 않고 어떠한 手段과 方法으로 이해성을 추구

10) Eberhard Baden, 「Gesetzgebung und Gesetzesanwendung im Kommunikationsprozeß. Studien zur juristischen Hermeneutik und zur Gesetzgebungslehre.», Baden-Baden 1977, S.18f ; Friedrich Lachmayer, 「Untersuchung von Referenzen und Kommunikationen in der Gesetzgebung.», in : H.Kindermann(Hrsg.), Studien zu einer Theorie der Gesetzgebung 1982, Berlin/Heidelberg/New York 1982, S.46~52.

11) 이 점에 관한 자세한 것은 Fritz Schönherr, 「Recht und Sprache, ein altes Thema, aber aktueller denn je.», in : Walter Barfuß(Hrsg.), Recht und Sprache. Aufsätze und Vorträge von Fritz Schönherr, Wien 1985, S.80~85 참조.

하여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즉 법규범의 이해성의 단계를 판단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점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法에 의하여 규율을 받으며 법에 복종하는 일반시민(Bürger)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 또는 사회적 관심사를 자기 책임하에 법을 이용하고 적용하는 受範者(Normadressaten)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법의 의사전달능력, 특히 理解可能性은 모든 법질서의 현실적 문제일뿐 아니라 이론적·실제적으로도 전문적인 법규범을 정립하는데 있어서도 영원한 과제이며, 법체계적인 관점과도 관련있다.<sup>12)</sup> 이는 결국 法의 本質問題와 결부된다. 사회에 있어서 법의 개별화는 法律家集團이 분업체계상 소극적 또는 적극적으로 특별한 부문으로 형성한 결과로서 수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法律家없는 법이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몇가지를 근거로 보는 경우 결국 법률가와 법의 수신인간의 관계에서 그 중간 내지 중개역할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점에서는 법의 의사전달능력의 향상은 法律家の 직업적 임무이며, 자신이 그러한 임무를 어느 정도 자각하여 사회적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법의 의사전달능력의 향상유무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법의 意思傳達能力의 향상은 그 목표를 모든 자에게 이해가능한 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하나의 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양적으로 엄청나게 방대함과 질적으로 수준높은 것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이해가능한 法規範을 상징하는 것은 법학자에게는 불필요한 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 2. 法의 意思傳達能力性과 法의 道具性

오늘날에 있어서 법의 의사전달능력을 강조하는 경우 다음의 두 가지 관점을 상호 결부시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법의 運用과 그 合理化에 있어서 자동화된 정보전달장치와 연계시켜 나가야 할 가능성<sup>14)</sup> 내지 기대와 법규범생산의 과잉, 법의 사용과 조망에 대한 가능성, 法과 言語의 관계, 현재의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의 위치 등에 대한 법학적인 논의의 강화 내지 재검토이다. 법은 단순한 전문적인 관점에서 政策遂行의 道具일뿐 아니라 그 포괄적인 범위에서 형성된 정책을 사회적인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의 위치를 이러한

12) Karl A. Mollnau, 'Wechselbezüge zwischen Regelungsstruktur, sprachlicher Gestalt und Kommunikationsfähigkeit des Rechts', in : Th. Öhlinger (Hrsg.), Recht und Sprache, aaO., S. 70.

13) K. A. Mollnau, a. a. O., S. 71f.

14) Carl-Eugen Eberle, 'Gesetzgebung and ADV - Beiträge der Rechts und Verwaltungsinformatik', in : Waldemar Screckenberger (Hrsg.), Gesetzgebungslehre, Grundlagen-Zugänge-Anwendung, Stuttgart/Berlin/Köln/Mainz 1986, S. 128.

社會的인 과정의 형성과 조정에 두는 것은 법의 활동영역과 작용방식의 하나의 변화를 의미한다. 법의 이러한 기능변모는 법의 사회적 효력과 그 규율의 量 및 質의 측면에서 종속과 상호관계속에서 새로운 경험과 의견을 낳게 한다.<sup>15)</sup>

법의 의사전달능력성과 도구성의 상호모순성은 兩者를 분리하여 상호 대립되는 전제하에서 논의하여 볼 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법의 우수한 의사전달성은 효율적 도구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의 사회는 사회적·법정책적인 동기나 제약으로 인하여 법의 道具論的·社會形成的인 포섭이 필요하며 그러한 경향은 법적으로 규율하려는 대상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이다.<sup>16)</sup> 법규범의 과잉과 법적 규율의 형태는 그 사회에서 法的 規律의 필요에 상응하여 확정되나, 이 경우 일반적으로 법의 본질인 意思傳達能力 - 선명성, 이해성, 상대적 명확성과 간결성 - 은 감퇴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여기에서 언급한 모순은 단지 법의 언어적 형성에 있어서 질만을 관계시킨 것이다. 현재의 法規範體系가 수많은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는 개별법규범 또는 법규범전체의 언어적 이해상태가 지나치게 세밀하고 난해하게 되어 있음을 제시하는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sup>17)</sup>

법규범의 道具論的 필수불가결성을 강조한다면 다소간 법의 의사전달가능성의 향상은 감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법이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조정하는 수단이라는 법의 속성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의 法的 規律은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국가에서 법적 규율대상의 복잡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평등성의 보장을 위해서는 법의 道具論的 觀點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 통용되고 있는 법적 규율의 양이 도구론적 관점에서 전부 타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sup>18)</sup> 결국 사회관계의 규율필요성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측정하고 필요한만큼의 法的 規律의 양과 질을 확정하여 법을 제정한다면 법의 의사전달능력의 속성은 비교적 향상된 모습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法の 도구론적 관점과 의사전달능력성의 간장관계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결국 이 문제는 일정 한도에서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 意思傳達能力性은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법적 규율강도와 법규범의 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의사전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과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言語的으로 형성하

15) K.A.Mollnau, a.a.O., S.71f.

16) Th.Öhlinger, 「Das Gesetz als Instrument gesellschaftlicher Problemlösung und seine Alternativen」, in : Ders.(Hrsg.), Praxis der Gesetzgebung, aaO., S.18.

17) Hans Schneider, 「Gesetzgebung」, 2 Aufl., Heidelberg 1991, S.50.

18) 이 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K.A.Mollnau(Hrsg.), 「Probleme einer Strukturtheorie des Rechts」, Berlin 1984 참조.



여야 한다. 나아가 법규범의 정확한 言語的 形成은 법의 구조의 개선과 전체의 법적 규율절차와 관련시켜 검토하여야 한다.<sup>19)</sup> 법규범의 구조적 개선은 향상된 법의 의사전달능력성을 형성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법규범의 구조적 개선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法과 社會의 상호관계속에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다.

- 법령문은 社會의 實在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법의 사회경제적인 決定論의 관점과 법정책적인 基本原理에 입각하여 용어를 적절하게 구사하여야 한다.
- 법문의 構造形成은 사회적 사정과 제약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계적이거나 변증법적으로 치우쳐서는 아니된다. 법규범의 구조는 社會秩序와 독립적인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사회질서의 내부에서 그와 상응하여 다양하게 변용되는 법유형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 법의 構造와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법의 機能은 동일선상에서 관련시켜서는 아니된다. 이 기능은 오히려 다양한 법구조를 낳음으로써 가능하다.

결국 법의 구조적 향상의 기초는 전체로서 사회에 향한, 아울러 그 사회관계에서 법적 규율의 허용성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社會關係에서의 법적 규율 필요성의 확대는 법규범의 수나 다른 규율형태의 증가와 동일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정식화한다면 構造的 改善 + 정확한 언어구사 = 法의 意思傳達能力性의 상승을 가져오며, 그것은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의 이론적 전제가 된다. 법의 구조적 개선은 의사전달능력성의 향상을 가져오며 그것은 전체 법규범의 구조의 향상과 관련한다. 따라서 법의 구조적 개선의 향상을 위해서는 법규범체계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法과 言語의 관점을 연관시켜 법규범을 형성하여야 한다.<sup>20)</sup> 사회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절차에 있어서 言語的 觀點을 도입하는 것은 우수한 법규범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법규범은 법학자에게만 이해가능한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일반인이 보편적으로 이해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법규범을 언어적인 차원에서 보는 경우 법의 制定, 適用 및 效果의 통일성이라는 목표에 적합한 언어수준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 같은 의미에서 법규범의 언어적 형성과 관련한 몇가지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 Richard Motsch, 'Überlegungen zur Struktur von Regelungsinstrumenten', in : H.Schäffer/O.Triffterer(Hrsg.), Rationalisierung der Gesetzgebung, aaO., S.88.

20) F.Schönherr, 'Gedanken zur Gesetzessprache', in : W.Barfuß(Hrsg.), Sprache und Recht, aaO., S.36f.

- 언어로서의 法言語는 법규범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 法學用語는 법규범의 생성, 내용, 구조, 작용과 효력에 관하여 논하여야 한다.
- 법을 적용하여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法適用言語는 그 결정에 법학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 일반인이 日常用語를 사용하여 법에 근접하거나 법을 모색하려는 경우 법학자는 일반인이 동기부여적이며 행동조장적으로 法規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용어를 구사하여야 한다.
- 법규범에서 상세하고 확정된 自然科學 또는 技術的인 用語를 사용할 경우에는 법적 관련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법의 의사전달능력의 향상은 적절한 用語使用의 구사에만 집중하는 것으로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며, 사회관계에서 법적 규율에 대한 言語의 의사전달기능을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 II. 法令用語의 表現基準으로서 受範者均等性和 一般的 理解可能性

법률은 일반적으로 이해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하고 명확하게 모든 시민이 그 意味와 觀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청은 매우 오래되었으며 그 리고 항상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立法者는 스스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또한 법률을 실재적으로 정식화 하는데 모든 사람 또는 모든 관련된 시민에게 이해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우선 수범자의 行動調整을 위한 법령문을 분석하고, 통용되는 법에 관한 정보의 형식과 방법을 음미하여 法律用語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인 기준을 마련해 보기로 한다.

### 1. 受範者의 行動樣式의 조정을 위한 法令文의 意味

법령의 수범자균등성(Adressatengerechtigkeit)과 일반적이해성(Allgemeinverständlichkeit)에 대한 요구는 시민의 행동은 오로지 법규범에 의거하여 수행하며 그것이 이해될 때 법률에 복종한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sup>21)</sup> 또한 일반적으로 市

21) Georg Müller, 「Adressatengerechtigkeit und Allgemeinverständlichkeit -der Verständnishorizont des Adressaten als Kriterium der Gesetzessprache-, in : Heinz Schäffer/Otto Triffterer(Hrsg.), Rationalisierung der Gesetzgebung. Jürgen Rüdiger Gedächtnissymposium.

민은 법률의 용어에 즉시 반응하며 방향을 설정한다. 그리하여 법령문 스스로 수범자의 행동을 조정한다. 이러한 것은 단지 前提條件일뿐 아니라 특히 다음의 두 가지에 근거하고 있다.

우선 시민은 개별적인 법률의 제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현대 급부·행정국가가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교정하는 수많은 法規範의 洪水을 이해하고 항상 현재에도 타당하는 개별적인 법률의 諸概念을 이해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22) 그것은 법학자에게도 간신히 알 수 있을 따름이며, 기껏해야 법소재를 다루는 특수한영역에 종사하는 자들에게만 한정될 뿐이다. 그렇지만 法認識은 사회적 행동양식을 습득하는 가운데 법률과 법외적인 규범체계사이에 규정된 소재의 요소와 일치의 정도, 불이익한 영향을 받는 강도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나, 23) 법령에서 개별적인 문제를 충분히 규율한다고 해도 한정된 受範者部類가 법령을 수용하는데에는 보다 많은 지식수준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아울러 立法은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유일한 도구는 아니다. 다른 국가제기능 - 예컨대 집행, 계획, 예산편성 등 법적용과 관련한 전부 - 도 일반적 추상적 법규범화의 작용의 보충 및 수정작용을 한다. 일반시민은 특수한 경우에 권위적이고 구속력있는 법에 호소하나,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法을 통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法官 또는 行政을 통한 구체화에 의지한다. 최근의 새로운 방법론이 제시하는 바에 의하면, 법의 적용이란 규범과 실제의 비교를 통한 단순한 포섭 내지 배타적인 論理的 推論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결정내용을 지닌 法創造力의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24) 법률의 일반적이해성의 요청은 법률의 작용방식에 대한 그릇된 관념에 의한다. 일반인은 법령문에 부여된 動機와 決定에 즉각적으로 규율적합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정보수단으로서 법령문 자신이 쓸모가 없을 때 어디로 나아가야 하며, 법에 대한 지식없이 어떻게 合法的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 2. 通用되는 法에 관한 情報傳達의 方法과 形式

법령문은 때로는 법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근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시

Baden-Baden 1984, S.36

22) Ernst E.Hirsch, 'Die Steuerung des menschlichen Verhalten', JZ 1982, S.44ff.

23) Th.Öhlinger, 'Das Gesetz als Instrument gesellschaftlicher Problemlösung und seine Alternativen', in : Derg(Hrsg.), Methodik der Gesetzgebung, aaO., S.22f.

24) 이 점은 특히 Arthur Meier-Hayoz, 'Strategische und taktische Aspekte der Fortbildung des Rechts', JZ 1978, S.417ff ; Rene A.Reinow, 'Rechtsetzung und Methodik', Basel/Stuttgart 1979, S.240ff 참조.

민은 새로이 제정된 법률과 그 절차에 관하여 言論媒體 등의 도움으로 구체적 사건에 법이 적용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대화 등을 통하여 법령의 생소한 내용을 습득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公的인 통지, 고시, 공고 등을 통하여 법령이 지시하는 바를 인식한다. 때로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는 그들의 私的 團體(경제단체 등 각종 직능단체)를 통하여 규율내용에 대한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이해관계있는 일반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sup>25)</sup> 이러한 情報은 정확하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법령의 대략적인 개요와 함께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전달을 통한 법의식 내지 법감정을 형성은 「문외한의 영역에서의 평가의 일치」를 도모함으로써 법률을 사회적 규범으로써 一般人에게 친숙하게 하려는데 기인하며, 법령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국가적 制裁매카니즘으로 합리화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sup>26)</sup> 이러한 선택적이고 단편적인 이해는 점차적으로 법에 대한 좋은 느낌 내지 감정을 가지게 하여 법질서의 갈등을 해소하고 법의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법에 대한 이와 같은 기본인식의 획득은 法治國家의 課題를 수행하게 할 뿐 아니라 국가적 규범의 준수를 위한 전제를 이루며 결국 법질서의 실제적 통용과 국가지배체계의 존립을 이룬다.<sup>27)</sup>

이러한 實定法에 대한 정보는 여러 가지 관점 -공적 또는 사적, 서면 또는 구술-에서 수범자에게 적합한 형태로 이해되어 효과를 거둔다. 또 한편으로는 정보의 요소와 강도는 규율기관, 규율소재 및 수범자영역을 변모하게 한다. 정치적으로 증대하는 赦免, 특히 헌법적단계의 규범과 주로 형사 및 민사와 행정법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 규범, 논란이 되는 判決 등은 여론의 주의환기를 받는다. 법규범을 생활경험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강력한 주지를 필요로 하며, 그를 통하여 사회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禁止와 警告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면 사람들은 목적설정이나 조직된 규율에 대한 좀더 상세한 정보를 알고 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그것이 적으면 한정된 受範者들만이 그것을 알고 노력한다. 즉 복종받는 시민은 규범의 존재와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나아가 사적 단체를 통하여 방향설정을 한다.<sup>28)</sup> 국가는 법인식에 이러한 구별되는 욕구를 仲裁하여 그 활동을 적합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25) Ferdinand Kirchhof, 「Rechtspflicht zur Zusatzveröffentlichung Kommunalen Normen」, DÖV 1982, S.399f.

26) 이 점은 Manfred Rehbinder, 「Rechtskenntnis, Rechtsbewußtsein und Rechtsethos als Problem der Rechtspolitik」, Jahrbuch für Rechtssoziologie und Rechtstheorie, Bd.3, Düsseldorf 1972, S.30ff 참조.

27) Klaus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 München 1977, S.651f.

28) F.Kirchhof, a.a.O., S.399ff.

### 3. 法令用語의 判斷

受範者의 이해력, 즉 어떤 규율이 일반적으로 복종할 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법주체가 법률의 정식화하는데 있어서 권위적이어서는 아니된다. 일반적 이해가능성의 요구는 실제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제시된다. 法律은 현실적으로 「평이하고」 「친숙성」이 있어야 하며,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불명료한 것을 포함하여 다른 규율과의 관계 등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해명되어야 한다. 註釋的인 性格을 가진 법령문 자체는 통용되는 법으로서 시민에게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재판이나 행정작용을 통한 법률의 법형성적 구체화를 단념하는 것이다. 따라서 立法者는 그 표현에 즈음하여 법 적용의 체계적 정리보다는 법인식이 전달되는 기관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나아가 입법자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自己理解性). 이러한 관점에서 법률안을 작성하고 법정립 기관이 협의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다음의 세가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법 적용은 立法者가 국가사회발전의 영향을 통하여 성취하려는 목표와 일치할 수 있게 가능한 한 명확하고 엄밀하게 표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것은 법령용어의 판단의 척도를 이해력에 두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法適用의 방법은 기대되는 법해석에 선행하여 「통상적」인 규율로 행하여질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29) 입법자는 물론 법학자, 행정공무원, 사법서사, 국가적 과제를 사적 또는 단체 기능적으로 사회분업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자는 전문적인 用語를 구사하지 않고 법적척도를 평범한 일반인에게 적용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특정한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특별법도 법문을 작성하거나 적용하는데 있어서 그에 상응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입법자는 어떤 專門的인 表現과 법적 개념사용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된다. 즉 입법자는 전문적 지식을 사용하여, 규율되는 要素의 정통함과 법적발효의 전제의 친숙성을 종합하여 특히 그 규율을 장황한 설명이나 법적 내용을 부가함에 있어서 기초를 빠뜨리지 않고 다른 法令에 규정된 것을 반복함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법률은 그 지배력을 전개하고 강제력을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간결하고 함축성있게 형성하여야 한다는 것이 첫번째의 유의사항이다. 30)

두번째로, 법문은 法素材에 관하여 문외한의 언어로도 이해할 수 있게 번역되는 중재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확실히 이러한 受範者에 유의하는 것은 법률의 일반

29) H.Schneider, a.a.O., S.234.

30) Gerhart Wielinger, 「Bedingungen der Vollziehbarkeit von Gesetz」, in : Th.Öhlinger (Hrsg.), Methodik der Gesetzgebung, aaO., S.163f.

적 이해가능성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명료하고 간결하고 함축성있는 법령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것은 역시 전문적인 豫備知識으로 이해하기 까다로운 법문을 친숙하게 정식화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여 통용될 수 있도록하는 적합한 전문가의 조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법문의 理解性을 강조하는 이유와 가능성을 위한 부수적인 설명이 존재한다.<sup>31)</sup>

셋째, 이와 비슷한 상황을 법률의 수범자로서 國會議員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전문적인 해석과 반복된 법률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간결한 법령용어를 사용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法令文 그 자체에 우선하기 보다는 공적인 영역, 제안, 정부와 각료의 보고, 의회심의과정 및 회과 과정에서의 태도표명, 동료의원과의 토의, 언론 및 관련이익단체의 지원 등을 지향한다. 따라서 그들은 법령에 대한 중요한 情報擔當者로서 그들의 법령에 관한 정보는 일반 시민에 대응하여 여러번 조정하기도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법률용어의 수범자균등성이 의미있는 요청이 되기 위해서는 「수범자」를 그 규율에 구속되는 시민뿐만 아니라, 一般性을 고려하여, 규범의 적용 또는 규범내용의 일반성을 「조정」하고 「전환」하는데 있어서 법률의 결정에 책임있는 의원도 법적 척도로 고려하여야 한다.<sup>32)</sup> 낙관적인 조정력과 번역력을 가지고 법률의 일반적 이해가능성에 도달하려 해서는 아니되며, 法の支配의 전제는 규범내용의 명확, 간결, 함축성있는 법문의 형성과 조정인 것이다. 법률이 일반적으로 이해가능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내용이 가급적 드러내지 않아야 하며 專門的表現과 법개념의 적용이 완화되어야 하며, 엄밀한 조정력과 강제력이 적절하게 감소되어야 한다. 결국 법령은 법학자의 전문적 인식뿐 아니라 일반인의 法認識을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법령은 단지 전문가에게 한정되어 제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컨대 법령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있어서 입법자는 法令文과 친밀하게 교류하여 수범자에게 본질적인 법내용을 알리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결국 議會가 규범내용을 조정하는 가운데 성취될 수 있다. 입법자는 새로운 법률의 형성에 몰두하는데 있어서 그 결정이나 계획에서 일반성의 인식을 지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률은 一般的 理解可能性과 受範者均等性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법률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31) H.Kindermann, 「Gesetzessprache und legistische Ausbildung」, in : Ders.(Hrsg.), Studien zu einer Theorie der Gesetzgebung 1982, aaO., S.259.

32) 規範受信人의 개념은 애매하고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관한 것은 E.Baden, a.a.O., S.61f ; Peter Noll, 「Erfahrungen mit Gesetzen」, in : Jürgen Rödiger(Hrsg.), Studien zu einer Theorie der Gesetzgebung, Berlin/New York/Heidelberg 1976, S.552ff 참조.

### Ⅲ. 法令用語의 理解可能性과 親熟性의 問題

#### 1. 누구를 위하여 理解可能한 것이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法令用語의 문제는 한결같이 법령문의 이해가능성(Verständlichkeit)의 문제로 환원되고 있다. 법령은 일반적·대중적 요구에 의하면 이해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나, 그러나 여기에서 누구를 위하여 이해가능한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理解可能性이라는 관념도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이해가능한 것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平均的 市民을 위하여 이해가능한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sup>33)</sup>

이 가정하에 법률용어에 대한 實際的 問題를 살펴보면, 우선 법률이 문외한에게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해가능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 즉 법률이란 法學者에게 향하며 그들을 통하여 구체화되므로 법률을 직업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이해가능한 것이면 되지 않는가라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서 理解可能性이라는 관념은 법관이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이해가능하면 된다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는 어떤 의미가 부여된 때로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 立法者라는 의미로 파악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자가 법을 적용하는 경우 법률용어는 「立法者의 意志」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오늘날의 법률용어를 보면 입법자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불명확하고 불충분한 점이 많다. 法適用者는 더 명확한 법령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입법자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사안을 규율하려 한다. 어떤 법령에서 법적용자의 관점과 다른 用語를 사용하게 되면 그 법령은 불명확한 것이 되기 쉽다. 그 결과 때로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해가능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여기에 法律用語의 불충분성에 대한 실제적 문제가 있다. 즉 모든 자에 대한 이해가능성의 결여가 아니라 법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명확성, 확실성 및 간결성의 결여가 그것이다.

법률은 法認識을 확산하는 기능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우선적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법령문에 대한 광범한 인식없이 裁判過程 또는 법실제에 대한 폭넓은 인식이 충족될 수 없으며 복잡한 문제를 처리할 수도 없다. 법적으로 고차의 기준과 세련된 논리성으로 법률을 정립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法的位相이라 할 수 없으며 법의 규율내용에 대한 인식의 확산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33) Ernst Strouhal, 「Rechtssprache und Bürokratismus. Aspekt der Kritik und einer Reform der Rechtssprache」, in : Th.Öhlinger(Hrsg.), Sprache und Recht, aaO., S.129f.

## 2. 理解可能性과 簡潔성은 모순하는가

규율에 대한 명확성과 간결성은 일반적 이해가능성의 측정기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가치는 복잡하게 획득된 것이다. 이 복잡한 가치세계를 규율하는데 있어서 그 복잡성에 상응하여 단지 專門用語로 표현한다면 간결성은 강조될 수 없으며 일상적이고 평범한 용어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법령용어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법학자를 통하여 입법과 법적용에 있어서 分業의 전제가 된다. 그러한 전문용어없이 숙련된 법학자는 그 存立基盤을 상실할 것이며, 나아가 민주적 이념을 제공하는 법률의 요청에도 부합될 수 없을 것이다.<sup>34)</sup> 이들 숙달된 법학자에게 전문적이고 특수한 용어를 배제한다면 裁判이나 行政에서도 문제 해결능력이 급격히 감퇴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법률의 일반적 이해가능성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법체계에 있어서 法令에 대한 言語的 形成의 첫번째 요청은 바로 법령은 일반적 이해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법적용자의 관점에서 볼 때 명확하고 간결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한편으로 理解可能性, 다른 한편으로 명확성과 간결성의 요청은 동등한 요구이며,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sup>35)</sup> 모든 규율에는 법적인 명확성과 간결성을 추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바람직한 규율은 言語를 규범화하는데 최대한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가능한 한 非法律家에게도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 이해가능성과 법적인 명확성과 간결성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문장구조의 單純性과 一貫성은 이해성의 요소이며, 법적인 명확성과 간결성에 유용하다. 명확한 문장은 이해성을 향상시키나 지나치게 간결한 문장은 법적인 含蓄性에 역행한다. 법령문은 장황한 說明文(Breitbandtexte)이 되어서는 아니며, 전문적으로 작성될 때 유효한 것이 된다. 法令文은 법적인 명확성과 간결성을 지향하여야 한다. 일반적 이해가능성은 당연히 추구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간결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아니된다.<sup>36)</sup> 결국 법학자가 법령의 理解可能性에 유의하여 그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平均人을 겨냥하여 그들의 경험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야말로 이해가능성에 접근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해가능성과 명확성 및 간결성은 실제적으로도 同一한 內容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34) E.Strouhal, 「Fachsprache Gesetz : Sind Verständlichkeit und juristische Präzision Gegensätz?」, ZG 1986, S.117ff.

35) Ders., Ebd, S.129ff.

36) Ruth Wodak, 「Bürgernahe Gesetzestexte. Soziolinguistische Bemerkungen zur Verständlichkeit von Gesetzestexten」, in : Th.Öhlinger(Hrsg.), Sprache und Recht, aaO., S.115f.



#### IV. 法令用語의 理解性和 親熟性을 위한 規律技術

법령문이 일반인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령이 구비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法令에서 규율한 구체적 내용은 법 집행자에게도 이해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은 매우 보편적이고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오늘날의 법령은 이 점을 도외시한 채 여전히 불명확한 법령문을 가지고 있다. 최근 言語學의 발달에 따라 문장의 이해가능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방법론적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장의 이해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言語論的인 方法論을 구사하여 법령표현에 관한 기준으로서 ①단순성 ②배열성과 정리 ③간결성과 함축성 ④기타 부가적인 자극요소 등의 네 가지를 가지고 그 최적조건을 측정하면 다음과 같다.<sup>37)</sup>

우선 바람직한 法令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성질, 즉 단순성과 배열성 - 정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簡潔性和 含蓄성은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는 아니된다. 최상의 이해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간결성과 함축성은 最適條件과 평균치의 중간영역에 두어야 한다. 기타 부가적인 자극요소는 법령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정에 따라 강조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參考事項일 따름이다.

##### 1. <기준 1> : 單純性

〈最適條件〉				
+2	+1	0	-1	-2
단순성			복잡성	
단순묘사			복잡한 묘사	
간결·간단한 문장			길고 복잡한 묘사	
친숙한 용어			친숙하지 않은 용어	
전문적 용어로 설명			비전문적용어로 설명	
구체성			추상성	
명확성			불명백성	

37) R.Bender, 'Die Sprache des Gesetzes, ein Problem der Verständlichkeit und der Regelungstechnik.', in : H.Schäffer/O.Triffterer(Hrsg.), Rationalisierung der Gesetzgebung, aaO., S.46f.

단순하게 작성된 법령은 左側에 열거한 필요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반면 매우 복잡하게 작성된 법령은 우측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 모든 法令은 이 중간영역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2. 〈基準 2〉 : 配列性-整理

〈最適條件〉				
+2	+1	0	-1	-2
배열성 - 정돈성			혼란성 - 관련상실성	
일관성			관련성상실 - 혼란성	
개괄성 - 명료성			비개괄성	
연결성			비연결성	
체계성			혼동성	
명백성			불명백성	

배열성과 정리성은 법령문작성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잘 정돈되고 명료한 법문은 情報의 提供에 이바지한다. 이 점은 다음의 두가지 관점으로 구분된다. 즉 하나는 내부적 정리로서 문장이 상호 論理的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傳達의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차례대로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점과 다른 하나는 외부적 배열로서 법령문의 작성이 전체적인 관점 또는 章·條·項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가라는 점이다.

3. 〈基準 3〉 : 簡潔性-含蓄性

〈最適條件〉				
+2	+1	0	-1	-2
간결성			방대성	
본질적인 부분을 요약			비본질적 부분을 나열	
간단함			복잡성	
집약적 정보전달			산만함	
요점만 서술			불필요한 부분의 상세함	

간결성과 함축성을 강조하는 것은 법문이 集約的이어야 한다기 보다는 지루하고 산만한 문장이 법령의 理解性을 침해한다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확실한 법령은 정보의 전달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4. 〈基準 4〉 : 附加的인 자극要素

〈最適條件〉				
+2	+1	0	-1	-2
활력있는 문체			무미건조한 문체	
흥미있는 내용			특색없는 내용	
다양성			일관성 - 중립성	
주관적			객관성	

상기의 부가적인 자극요소도 활용한다면 바람직하고 最上의 법령문을 작성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부가적인 자극요소는 法學者의 경험에서 도출되며, 법령의 해석문제에 즈음하여 하나의 근원을 이룬다.<sup>3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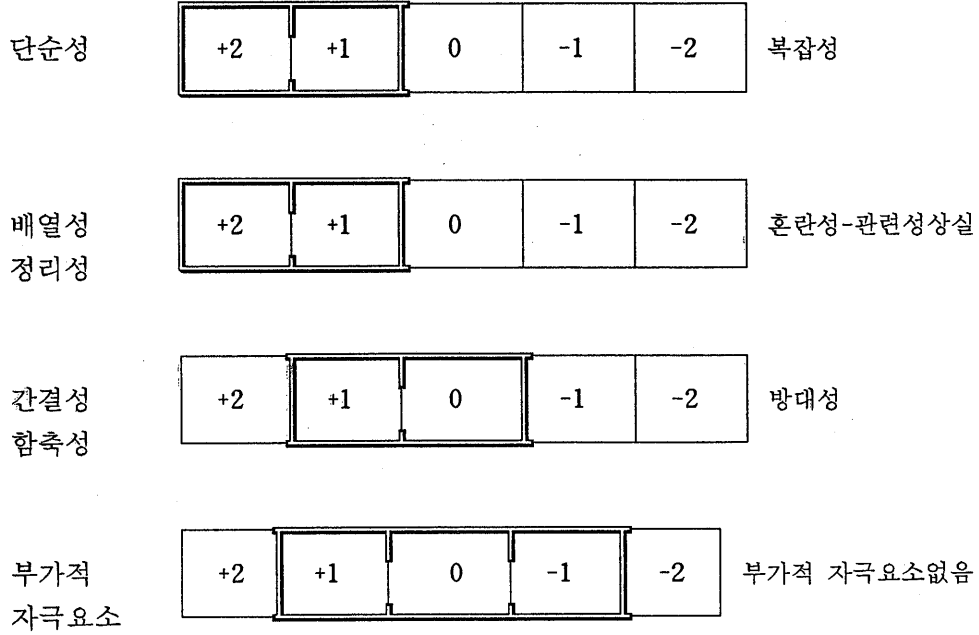
이상을 종합하면 最善의 法令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어야 한다.<sup>39)</sup>

38) Heribert Leßmann, 「Das Hamburger Verständlichkeitskonzept -Ein Weg zur optimalen Gestaltung schriftlicher Information.」, in : Bundeskanzleramt (Hrsg.), Schriftenreihe zur Verwaltungsreform 6, 1982, S.48f.

39) Friedemann Schulz von Thun, 「Können Gesetzestexte verständlicher formuliert werden?」, in : J.Rödig(Hrsg.), Studien zu einer Theorie der Gesetzgebung, aaO., S.436f. 또한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일반적 이해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몇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border="1" style="width: 50px; height: 50px; margin: 0 auto;"> <tr><td style="text-align: center;">0</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0</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r> </table>	0	-1	0	-1	⇒	<table border="1" style="width: 50px; height: 50px; margin: 0 auto;"> <tr><td style="text-align: center;">+1</td><td style="text-align: center;">0</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0</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r> </table>	+1	0	0	-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50px; margin: 0 auto;"> <tr><td style="width: 50%;">단순성</td><td style="width: 50%;">배열성-정리성</td></tr> <tr><td>간결성</td><td>부가적 자극요소</td></tr> </table>	단순성	배열성-정리성	간결성	부가적 자극요소
0	-1															
0	-1															
+1	0															
0	-1															
단순성	배열성-정리성															
간결성	부가적 자극요소															
(법령문의 원문)		(향상된 법문)		(측정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50px; height: 50px; margin: 0 auto;"> <tr><td style="text-align: center;">-1</td><td style="text-align: center;">0</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0</td><td style="text-align: center;">-2</td></tr> </table>	-1	0	0	-2	⇒	<table border="1" style="width: 50px; height: 50px; margin: 0 auto;"> <tr><td style="text-align: center;">+2</td><td style="text-align: center;">+2</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0</td><td style="text-align: center;">0</td></tr> </table>	+2	+2	0	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50px; margin: 0 auto;"> <tr><td style="width: 50%;">단순성</td><td style="width: 50%;">배열성-정리성</td></tr> <tr><td>간결성-함축성</td><td>부가적인 자극요소</td></tr> </table>	단순성	배열성-정리성	간결성-함축성	부가적인 자극요소
-1	0															
0	-2															
+2	+2															
0	0															
단순성	배열성-정리성															
간결성-함축성	부가적인 자극요소															
(법령문의 원문)		(향상된 법문)		(측정기준)												

第2章 法令用語의 實際的 課題



## 第3節 法令用語의 文章論的 課題

### I. 概 說

法令文의 文章은 원칙으로 가능한한 명확하여야 한다. 나아가 중요한 것은 현대 민주제하에서의 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權力抑制機能이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법령의 문장이 가능한 한 명확하여야 한다. 만약 법령의 문장이 막연하다면 법관이나 행정관이 그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운용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法令이라는 것은 일단 제정공포되면 그것을 改正하는 것은 실제상 곤란하기 때문에 입법자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여 포괄적·체계적인 법률의 運用을 법원에게 맡겨 그 조문의 時勢에 따른 실제운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立法者가 자각적으로 의도한 불명확성의 예도 있으나 법문이 日常言語로서 작성되는 이상 입법자가 의도하지 못하였던 불명확성이 자주 법령의 운용에 있어서 문제를 발생하게하는 것은 원리상 불가피하다. 어쨌든 법령의 문장구조와 문체가 난해하고 불명확한 이유를 몇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 1. 法律의 性格으로 부터 나오는 난해함

법률의 立案이라는 것은 말할것도 없이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그를 위하여 특정의 대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규제하거나 어떠한 사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다.<sup>40)</sup> 근래의 입법에는 이 目的을 법률중에 명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현대는 사회관계가 복잡다기하고 사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이해에 관하여 의식, 이익주장이 강하며 그러한 背景에서 우선 목적을 정하는 방식이나 그 목적달성의 수단에 관한 고찰방식의 차이로 부터 贊反兩論의 의견이 있으며 또한 목적달성의 수단에 관해서도 이익을 지키려는 입장이나 이론적인 주장을 하는 입장 등 다방면으로부터 의견이 있다. 이러한 복잡다기한 利害를 조절하여 가는 것에서 입법은 필연적으로 복잡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결과 用語, 文章도 복잡한 것이 된다. 법률문장이 난해한 것이 文章만이 난해한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실체가 복잡하고 난해한 것이 많다. 간략하게 말하면 法律에서 무엇을 정하는가에 의해 법률의 문장은 복잡하고 난해하게 되거나 또한 간단한 것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文章의 表現이 간결한 것은 그 취급대상이 복잡하게 됨에 따라 해석상의

40) 韓國法制研究院, 「立法理論研究(Ⅱ) -立法過程의 理論과 實際-, 1994, 46面.

문제를 발생하게 하며, 判例와 學說이 이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상세한 문장은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방지하며 행정청의 자의적인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를 지니나, 반면 狀況의 變化에 대응할 수가 없다는 결점이 있다. 나아가 상세하게 정하면 정할수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對象外라는 해석이 되기 쉬우므로 법망을 피하여 이익을 얻는 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脫法行爲禁止規定도 필요하다.

## 2. 對象과 措置內容의 복잡성·다양성에 의한 난해함

법률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지적하려는 對象을 명시하는 때 복잡한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헌법이 정하는 租稅法律主義의 정신으로부터 각종 세법에서는 국민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평적정한 과세가 행하여지게 하도록 위하여 상세한 조건을 정하거나 복잡한 稅額의 계산방법을 정하게 된다. 그리고 과세의 기초가 되는 경제활동이 다기에 걸쳐있으며 그 사이의 公平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며 상세한 조건이 상세하고 복잡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또한 행정청이 강제에 해당하는 處分이나 行爲를 하는 때에는 법률은 엄격한 조건을 달거나 또한 할 수 있는 처분이나 행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경우의 조건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는 반면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도 되므로 利害調節이나 利益의 비교형량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문에 규정도 난해하고 복잡하게 된다.

## 3. 全體體系로서의 法體系중에서 立法이라는 것에서 도출되는 난해함

국가의 法律은 말할것도 없이 헌법을 정점으로 전체가 하나의 법체계로 편성되어 있다. 이 법체계에서는 각각의 적용범위를 지니는 규정이 중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결부되어 있으며 그것에 의하여 全體法體系가 유기적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새로운 입법을 하는 때에는 이 전체로서의 법체계시스템중에 새로운 부분을 삽입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예컨대 종래의 體系와 규정의 모순, 충돌하는 것이 없는가, 특히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用語는 없는가, 새로운 용법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종래의 규정의 해석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새로운 입법에 의해 전체로서의 법체계시스템중에 새로운 부분을 편성하는 때에 지금까지의 同種의 制度, 관련있는 제도와의 관계도 방치할 수 없다. 동종의 제도 또는 관련있는 제도를 폐지하여 전혀 새로운 것으로 할 것인가 오래된 것은 범위

를 한정하여 남겨둘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 결과가 法律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때에 附則에서 경과규정으로서 정해지게 된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의 법률제도에 의해서 겹쳐진 질서나 사회적 실태를 어느 정도 존중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고 이에 改善을 가하려는 입법도 있으나, 새로운 제도가 새로운 목적, 새로운 이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오랜 제도는 가능한 한 빨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그 경우 오랜 制度로 얻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모순을 해결하여야 한다. 그것만으로 경과규정은 상세하고 복잡한 내용을 지니며 文章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법률의 文章이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 되기 어려운 점을 언급하였으나, 이들 용법은 법령의 문장에 확립된 원칙이며 일상의 용법의 경우와 다소 다르다. 그러나 정서, 감각과는 다른 論理性, 明確性을 필요로 하는 법령의 문장으로서 통일된 특별한 용법을 채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가지고 법률의 문장의 난해함을 지적하는 것은 법률의 文章의 논리성을 부정하게 될 지도 모른다. 어떠한 이해하기 쉬운 법률문장을 위한 방법으로서 ①구두점, 부호사용(접속사 문장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주의깊게 사용), ②상용한자사용, ③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약자사용, 난해한 한자, 고전적 용법의 회피, ④문장의 상세기술, 목차사용, 장절구분, 예시, 도표의 실행, ⑤법령의 동기, 이유, 목적 등의 명기, ⑥표준서식의 부기, 관계조문의 열기, 법령개폐부분의 명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용법은 현재에 거의 완전히 統一되어 있으며, 법령문장의 작성의 기초가 되어있다.

## II. 理解하기 쉬운 法令文作成을 위한 規律技術

입법에 즈음하여 법령 및 조문의 작성방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령명은 어떠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가가 분명하여야 한다. 條文은 독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이해하기 쉬운 법령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령의 규제를 받는 受範者의 관점에서 개념선택과 형식이 질적인 평가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법실제적인 관계상 법문의 언어적인 개념, 의미와 내용이 受範者에게 친숙하고 개방된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만 법에 대한 인식의 획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sup>41)</sup> 아울러 조문의 起草에 있어서는 입법자는 조문은 탈법행위의 여지가 없도록 법원의 심사에 견딜 수 있도록 중요시하여야 한다. 法令用語의 이해성을

41) Werner Hugger, 「Gesetz - Ihre Vorbereitung, Abfassung und Prüfung」, Baden-Baden 1983, S.293.

위한 적절한 언어심리학적 요청의 차원에서의 구울기술에 관해서는 앞서 살펴보았으나, 이하에서는 법령용어와 관련하여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몇가지 관점을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우선 법령문의 理解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①意味論的(Semantik) 관점에서 용어의 의미내용을 검토하고, ②文法論的(Grammatik) 관점에서 문장결합에 있어서 지시와 용례에 따라 단어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검토하며, ③文章論的(Syntax) 관점에서 문장구조가 제대로 배열되어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들 관점을 제대로 이행하는 경우에 비로소 법령문이 실용적인 言語次元으로 되며, 법령문이 수범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sup>42)</sup>

첫째, 意味論的 觀點에서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실제적·법기술적인 표현과 일반언어적인 의미간의 상충, 법적·전문과학적으로 통용되는 개념과 일상언어적인 표현간의 상충, 내용적 명확성요청과 언어적 다의성 등의 상충으로 인하여 매우 어렵다. 실제적으로 意味에 적합한 개념을 선택하는 것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정을 직접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떤 개념적 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상세한 것이라는 의미는 精神的 또는 情緒的인 관점에서 모든 집단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 단어가 습관적이며 비자의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의미론적 관점에서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충되는 요청간의 共通分母를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 공통분모란 정확성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미론적 관점에서 언어의 정확성요청이란 ①그 言語使用基準이 최상의 가능한 척도위에서 완전하게 형성되어야 하며, ②그 언어사용기준이 다수를 겨냥하여 가능한 한 상세하여야 하며, ③그 가능한 한의 상세함이 다수에게 客觀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④그 가능한 한의 상세함이 중립적인 사람에게도 인정되어야 한다. 결국 明確性과 抽象性, 이해가능성과 정확성의 실제적 조화는 민주 국가의 가치로서 단순성과 이해가능성중 어느 것을 우위에 둘 것인가라는 점과 관련하는 것이다.<sup>43)</sup>

둘째, 文法論的인 觀點은 특히 법령문의 작성에 즈음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법령문의 이해가능성을 위해서는 標準發音法에 의한 용어를 사용하고, 수동형과 도치법의 빈번한 사용을 회피하여야 하며 지나친 名詞化를 지양하여야 한다. 아울러 간접적인 화법을 구사하여 문장을 장문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법령문을 작성하는 것도 일반인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셋째, 文章論的인 觀點에서 부사구문의 삽입, 동의어반복 등으로 불필요하게 복

42) W.Hugger, a.a.O., S.294f.

43) H.Hill, a.a.O., S.130.



잡하거나 장문인 문장은 문장론적으로 결함이 있다. 法令에 규정된 조치의 내용과 범위는 그 필요성을 감안하여 시의적절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때로는 집약된 상태로 간략하게 서술하거나 때로는 매우 상세하게 내용을 서술하여야 한다. 결국 복잡하거나 다의적이거나 산만한 문장구조는 理解可能性을 침해하는 치명적인 것이며 법령의 간결함의 요청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Ⅲ. 理解可能性의 向上을 위한 몇가지 課題

#### 1. 法令에서의 名稱의 問題

##### (1) 法令名에서의 「等」의 문제

법령의 題名은 법령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며,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제명도 심의의 대상이 되며, 題名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도 법령개정절차를 필요로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법령의 제명은 간결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가능한 한 正確하게 표현한다는 요청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그런데 법령명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법령명에 부가된 「等」이라는 자를 생략하고 그 약칭을 법령과 동시에 공표할 것이 필요하다. 略稱을 부기하는 것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여기서는 등을 생략하는 필요에 관하여 설명한다. 법령명에 「等」을 붙인다면 독자에 따라서는 「等」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며, 법령명을 이해할 수 없게 느끼는 자도 적지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 법령에도 등이 부가된 것이 많다.<sup>44)</sup> 이러한 법령명을 보면 우선 「等」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발생한다

44) 현행 법령 가운데 「等」이 삽입된 법률은 전부 53개이며, 이를 살펴보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광주민중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세법등의입시특례에관한법률」,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물수급품등처리에관한입시특례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벌금등입시조치법」,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별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채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별법」,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선박소유자들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별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

다. 조문이 간단한 것은 조문을 읽어보면 분명하다. 예를 들면 「罰金等臨時措置法」의 조문은 3개뿐이며 그 내용은 벌금외에 과료의 금액을 정한 것이다. 법령명을 붙이는 경우에 그 법령의 내용전부를 법령명에서 표현한다면 법령명은 길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立法者로서는 법령의 중요부분만을 법령명에 붙여 기타 내용은 「等」자를 붙여서 법령명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독자에게는 최초에는 주로 무엇을 규정한 법률인가를 알면 좋은 것이다. 독자에 따라서는 법령명에 「等」자에 관해서도 쉽게 파악하는 자도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일정한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조문을 보려는 자는 별도로 법률명에 「等」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조문을 보면 당해 조문을 알 수 있는 것이다.<sup>45)</sup> 결국 장래에는 법령명에서 가급적 「等」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예외로 내용을 전부정리하면 長文이 될 수 있는 법령명은 장래입법을 하는 경우에 「等」에 대신하여 내용전부를 법령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

## (2) 法令名の 略語의 問題

將來制定되는 법령에 관하여 법령명의 약어를 법정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다음의 두가지이다. 첫째, 법령명이 長文이 되면 읽기도 쓰기도 분명하게 되나 법령명 외에 약어도 법정하여 공표하면 이해하기 쉽고 읽기도 쓰기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법률에 법령명과 동시에 그 略語도 法定하여 공표되는 것이 많다.<sup>46)</sup>

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재외공관용재산의 취득·관리등에관한특별법」, 「재외공관용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 있다.

45) 獨逸에서는 「等」이 있는 법령명은 비교적 오랜 법률인 하나뿐이다. 그것은 1871년 6월 7일의 「철도, 광업등 경영에 있어 야기된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법률(Gesetz betreffend die Verbindlichkeit zum Schadensersatz für die bei dem Betriebe von Eisenbahnen, Bergwerken u.s.w. herbeigeführten Tötungen und Körperverletzungen) : 라이히책임법(Reichshaftpflichtgesetz)」이며 等이라는 것은 전기시설이나 가스시설에 의거한 死傷을 포함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동법외에 等자가 붙은 법령은 발견할 수 없으며 日本에서는 하나의 법률 또는 명령에 하나의 等이 붙은 것은 많으며 그 가운데에는 하나의 법률명에 等자가 여러개 붙은 것도 있다.

46) 대표적인 예로서 獨逸의 法令集에서는 각항의 상단에는 하란에 기재되어 있는 법령명의 略語가 기재되어 있다.

법률에 따라서는 약어와 그것보다도 간단한 약어의 두 가지를 공표하는 사례가 많으며, 또한 법정되지 않은 略語도 거의 일정하게 약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약어사전을 구비하여 이 사전을 통하여 법령, 판례집, 법률잡지 등의 약어와 그 완전한 명칭을, 또한 완전한 명칭으로 부터 그 약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래의 입법에서는 법령명에 그 약어를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유로 현재 법령명의 약어는 저서에 따라 또는 법령의 출판사에 따라 각각 달리 표현되어 일반인에게 불편하다. 물론 저서나 약어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약어표만을 보면 분명하나 약어표가 있는 저서 이외의 저서를 읽는 독자는 약어만을 보는 것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은 것도 많다.

略語가 法定되면 약어만을 보아도 어떤 법령인가가 분명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약어를 법정하여도 저자나 법전문찬자에게 약어를 만들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으나 가급적 약어는 통일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본래 略語의 필요는 법령명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에게는 판례집의 약어나 타인저작물의 약어도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법령명칭의 약어필요는 略語統一의 필요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일부만으로도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편리하며 이것이 法令名의 略語를 법정하려는 이유이다. 그러나 약어를 법정한다는 것은 장래제정되는 법령에 관해서이며, 종래의 법령에 관해서는 다소 불통일하여도 일반적으로 약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법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 2. 準用條文의 問題

### (1) 準用條文의 意義와 沿革

準用은 법문을 간단화하기 위하여 발달한 입법기술이며 유사한 규정을 중복하여 제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준용이라는 입법기술은 법률안의 起草者의 법률안기초의 기술에 관한 자기 만족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고 法律의 수임자인 국민이 어디까지 이해할 것인가를 의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법문이 準用條文을 사용한 것은 법문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에는 이 준용조문 때문에 法文을 이해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準用條文을 두는 것은 법문의 기재의 절약과 경우에 따라서는 법문기초자의 시간의 절약도 있으나 이 방법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立法技術의 입장에서 준용의 사용은 필요에 따라 최소한도에 한정시키고,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sup>47)</sup>

그런데 법문에서 이와 같은 準用條文을 두게된 것은 법률의 체계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발달한 것으로서, 獨逸에서 준용조문을 두게 된 것은 독일민법(1900년 1월 1일시행)의 제1초안에서 비롯한다.<sup>48)</sup> 당시 독일은 민법시행이전에 獨逸民法은 「독일보통법(Gemeines Recht)」, 「프로이센보통법(Allgemeines Landrecht für die Preußischen Staaten)」, 「나폴레옹법전(Code Napoleon)」, 「작센왕국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für das Königreich Sachsen)」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이들 법전에는 準用規定이 없었으며,<sup>49)</sup> 1814년 독일에 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독일을 통일하는데에는 民法 기타 法律의 統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어났다. 이에 입법은 개별의 경우에 관한 규정을 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를 포괄한 추상적인 규정을 두어 이를 체계적으로 配列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면서, 그 일환으로 준용조문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法律體系化의 필요를 처음으로 주장한 자는 독일역사법학자이며 법학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비니(Friedrich Karl von Savigny)였다. 그는 1814년 하이델베르크의 로마法教授인 티보(Anton Friedrich Justus Thibaut)가 「통일민법전의 필요에 관하여(Über die Notwendigkeit eines allgemeinen bürgerlichen Gesetzbuches für Deutschland)」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여 獨逸統一을 위해서는 우선 민법 기타 법률의 통일이 필요함을 역설한데 대하여, 「입법 및 법률학에 대한 현대의 사명에 관하여(Vom Beruf unserer Zei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라는 주제의 소책자를 간행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하였다.<sup>50)</sup> 동서는 역사법학파의 綱領으로서 유명하나 그 가운데 티보의 소론에 대한 反對論이 쓰여져 있으며, 반대의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法典을 제정하는데는 법의 체계화가 필요한데 법학이 미숙하여 법을 체계화하는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둘째, 법률을 制定하는데 필요한 법률용어가 결함이 있다. 셋째, 프

47) 「既存의 規定을 제차 반복함이 없이 유사한 상태에 적용하는 準用은 항상 위험을 수반하는 방법이다」, Reed Dickerson, 「The Fundamentals of Legal Drafting」, Boston 1986, pp.96~99.

48) 準用規定의 역사에 관한 상세한 것은 山田 晟, 「立法技術の一斷面 -準用・讀み替え條文について-」, 國家と市民(國家學會百年記念) 第3卷, 有斐閣 1987, 266~272면 참조.

49) 「獨逸普通法」은 중세 로마법을 계수하여 발달한 독일법이며 그 법원의 주된 것은 로마법학시대의 법률의 교과서 및 個別事例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설을 집대성하여 다소의 수정을 가한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나 학설을 법률로 한 것이므로 준용조문이 있을리 없다. 「프로이센普通法」은 민법뿐 아니라 행정법·상법·형법 등을 포함한 대법전이었으며, 이어한 대법전이 된 것은 구체적인 각 경우를 조문으로 규정하면서 비롯하였으며 이러한 발상하에서는 準用規定을 둔다는 관념은 없었다. 「나폴레옹法典」, 「작센王國民法」, 등도 마찬가지였다.

50) 사비니와 티보의 法典論爭에 관한 것은 Mathias Reimann, 「The History School Against Codification : Savigny, Carter and The Defeat of the New York Civil Code」,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37/1, 1989, p.73이하 참조.

로이센 및 오스트리아는 대법전을 제정했을 뿐이며(프로이센보통법 1794년, 오스트리아민법 1812년) 따라서 統一民法典을 제정하더라도 그것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이외의 지방에 적용되어 독일에 관한 법전이 세 종류나 있게 된다. 나아가 法典이 제정되면 사람들의 주목은 法典에 모아지며 종래 독일에서 행해진 귀중한 로마법은 지금부터 더욱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소홀하여져 버린다.

이상이 세가지 이유이나 첫번째의 이유와 準用條文의 적용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우선 사비니는 그 저서에 「體系」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체계를 幾何學의 정리에 따라 설명한다.<sup>51)</sup> 그에 의하면 법은 民衆의 공동의 의식에 의하여 자연히 발달한 것이다. 이 자연히 발달한 言語를 문법에 적용한다. 즉 언어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法도 언어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발달한 것이며 그 가운데에는 體系가 포함되어 있다.<sup>52)</sup> 입법은 확실히 이 整理(체계)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법률이 아무리 개개의 경우를 상세히 규정하여도 장래 생각지 않은 사태가 야기된 경우에는 그 해결에 고민한다. 그러나 整理를 규정하여 둔다면 용이하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법학은 아직 정리를 발견하거나 완성하는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立法을 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sup>53)</sup> 이에 대해 로마법은 민중의 공동의 의식에 의하여 발전한 것이 아니라 學說에 의하여 발전한 것이라는 반대론이 있으나, 사비니에 의하면 學說은 민중의 의식을 대표하는 것이라 한다. 사비니의 학설은 모순도 있으며 잘못된 점도 있으나 그 후의 법률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sup>54)</sup>

51) Walter Wilhelm, 「Savignys überpositive Systematik.»,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37/1, 1989, p.139.

52) 여기에서 「法」이라는 경우 로마법을 의미하며 나아가 그것은 기원전 6세기에 동로마황제 Justinianus가 제정한 로마법전이며, 그 가운데도 사비니가 염두에 둔 것은 그 중요한 부분인 學說集成(Pandekten)이었다. 그는 이 로마법에 대해서 상당한 미적관념을 가졌다. 학설집성은 기원 2,3세기의 일정한 대법학자의 학설을 모은 것이다. 로마초대황제 Augustus는 법원에 제기된 事件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일정한 학자에 황제의 권위로서 답할 권리(Jus respondendi ex auctoritate principis)를 과하여 이들 학자의 해답은 法院을 구속하였다. 따라서 판덤펜은 판례집이라고 할 수 있었다. 동로마제국이 멸망하여 로마법도 망각된 무렵 이탈리아의 볼로냐(Bologna)대학에서 복고사상의 영향을 받아 로마法研究가 성행하게 되고 로마법 특히 판덤펜은 後期註釋學派(postglossatoren)가 가한 주석에 의하여 그 시대에 적용되도록 변경되어 13세기중반부터 16세기중반에 걸쳐 독일에 계수되었다. 계수된 판덤펜은 判例集에 불과하였으므로 판덤펜에 쓰여진 학설은 각각의 개별소송사건에 관한 천차만별의 것이었다. 그러나 사비니에 의하면 이들 학설을 연구하면 民衆의 공동의 의식에 의하여 자연히 발달한 言語가운데 문법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민중의 공동의 의식에 의하여 발달한 로마법의 천차만별의 학설도 널리 연구하면 幾何學의 정리(체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53) Karl A. Mollnau, 「The Contributions of Savigny to The Theory of Legisl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37/1, 1989, p.121.

54) 사비니의 견해에서 본다면 獨逸固有의 法律인 「게르만법」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로마법」에 관해서도 민중의 공동의 의식에 의하여 생겨난 후기주석학파의 소설도 참고하여야 할것인데 이를 배제하여 최초의 순수한 로마法을 명확히 하여 이를 체계화하는데 노력하였다. 그 성과로서

이러한 티보와 사비니의 논쟁은 사실상 사비니의 승리로 끝났으나 통일민법전제정의 요망은 변함없었다. 이 요청에 부응한 것이 體系化의 주장에 따라 19세기 후반 로마법의 체계화를 완성한 판덱텐법학이며, 그 대표자라 할 수 있는 자는 빈트샤이트(Bernhard Windschied)였다. 그는 1871년 독일의 정치적 통일이 일단 완성하여 독일제국(Deutsches Reich)이 성립하면서 조속히 종래의 각주의 민법에 대신하는 통일민법전의 제정에 착수하는데 그 제1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제1위원회에서 기초된 제1초안은 빈트샤이트의 體系에 따른 것이며, 통일민법전은 제2초안, 제3초안을 거쳐 제정되었으나 체계화는 民法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제법률에 관해서도 행해졌다.

이와 같이 準用條文은 법률의 체계화와 더불어 나타난 것이라고 추정된다. 프로이센보통법과 같이 개개의 모든 사건을 전부 규정하면 엄청난 條文을 두게 되게 본건에 관해서는 제○편제○장제○절제○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도 그 제○조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이 허비된다. 이 점은 별도로 하더라도 法律은 개개의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준용이라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法律의 體系化가 완성된다면 비슷한 사정을 여러가지 규정하는 것은 번잡하게 되며 제○조를 준용한다고 하면 제○조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가는 용이하므로 비슷한 조문을 몇개라도 규정하는 것은 독자에게 번거로운 것이 된다. 그보다도 準用條文을 두는 편이 간편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입법자에게 부각될 것이다. 물론 체계를 세우지 않고 개개의 사례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立法에 즈음하여는 개개의 사례를 생각한대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규정한다. 이러한 순서도 넓은 의미에서 체계라고 할 수 있으나 여기서 體系라는 것은 장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 사실상은 불가능할지라도 그 法律部門의 전부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體系가 가능한 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법률의 어느 부분의 조문을 탐구하는가가 용이하게 된다. 조문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準用條文을 두면 좋다고 생각하여 준용조문을 규정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의미에서는 준용조문은 體系의 所産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간행된 것이 현대로마법체계(System des heutigen römischen Rechts)이다. 그의 어떠한 사건도 整理(체계)만 한다면 직접 결론이 있다는 견해로 부터는 體系가 정돈된 법에는 결함이 없다는 견해를 낳으며 또한 법은 민중의 공동의식에 의하여 생겨난다는 견해는 法社會學의 단서가 되었다. 그의 설명은 특히 Rudolf von Jhering에 의하여 입법을 경시하는 것이라는 비판받았으나 그의 후계자는 게르만법을 중시하는 게르만법학자와 로마법을 중시하는 로마법학자로 나누어졌다. 사비니의 법학에 관한 자세한 것은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37/1, 1989에 특집으로 게재된 「Savigny in Modern Comparative Perspective」의 論文 참조.

(2) 準用條項의 난해성 극복

우리 법제에서 준용조문의 현상을 보면 확실히 準用에 의해서 법문이 간결해지고 준용의 의미도 분명한 경우도 있다. 準用되는 조문이 긴 경우에도 그것이 한곳에 정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준용되는 조문을 보아도 이해하는데 곤란이 발생하지 않고 나아가 조문이 간결해지고 편리해지게 된다.<sup>55)</sup> 그와 반대로 美國처럼 준용조문을 두지 않고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같은 규정을 두는 것도 일반인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으나 법령이 매우 복잡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準用條文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에 이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준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해결되는데 준용을 인정하거나, 준용되는 조문의 수가 많거나 또는 그것이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각종의 법령규정을 準用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준용되는 조문의 규정을 어떻게 준용하면 좋은가라는 의문이 발생한다. 그 결과 법령의 규정이 복잡하게 되어 분명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獨逸에서도 준용하여도 이해하기 쉬운 다른 법률의 부분에 관해서는 준용을 인정하나 같은 사항이더라도 준용에 의하여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準用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 법제에서 준용규정이 사용되고 있는 몇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準用條文이 분명한 사례

민법 제10조(限定治産者의 能力)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準用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제8조(영업의 허락)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동등하게 취급이 되는 사항에 관해서 규정의 반복을 피하여 「準用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法文을 간결하게 그 내용을 표현하고

55) 法制處의 「法令立案審査基準」에서는 준용하는 경우의 표현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同, 前掲書, 107面 참조.

(가) 준용하는 경우의 표현은 가급적 「제○조의 규정은 ○○에 이를 준용한다」로 한다. 다만, 그 내용으로 보아 반드시 ○○에 한정한다기 보다 좀 넓은 의미로 쓰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의 규정은 ○○에 관하여(또는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로 할 수 있다.

(나) 준용되는 조항의 어떤 부분을 다른 용어로 바꾸어 주는 경우의 표현은 「이 경우 제○조중 “××”는 “○○”으로 본다」로 한다.

## 第2章 法令用語의 實際的 課題

있다. 아울러 준용되는 조문도 바로 앞에 두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준용되는가를 비교적 분명하게 알 수 있다.

### ② 準用되는 조문의 수가 많은 사례

상법 제613조(準用規定) ①제228조,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 제264조, 제520조, 제531조 내지 제537조, 제540조와 제54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準用한다.

②제209조, 제210조 제366조제2항·제3항,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9조 내지 제402조,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413조, 제414조제3항, 제450조, 제466조제2항, 제539조, 제562조, 제563조, 제564조제3항, 제566조, 제571조, 제572조제1항과 제58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준용한다.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準用되는 조문의 숫자가 대단히 많으며, 이들 조문중에도 준용조문 또는 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다. 立法技術的으로는 편리할지 몰라도 일반인이 이 條文을 이해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전문가도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난해한 사례는 우리 법제에서 대단히 많다.

### ③ 準用되는 조문이 다른 법률인 사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競賣等에관한特則) ②압류등기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제2호 또는 경매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사례에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同法중의 조문 또는 항을 준용하는 규정외에도 민사소송법·경매법 뿐 아니라 民法規定의 준용(제4조제3항, 제5조제5항), 破産法規定의 준용(제17조제2항) 등 다른 법률의 조문이 준용되어 그 각각의 법률규정을 검토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수반된다.



④ 包括的인 準用規定을 둔 사례

상법 제66조(준상행위) 본장의 규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의 행위에 준용한다.  
 ※본장 : 제2편(상행위) 제1장 (통칙)을 의미

부동산등기법 제186조(송달) 송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외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규정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규정을 인용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多數規定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거나 법률단위로 준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준용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어느 규정이 준용이 되는가를 분명히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준용되는 조문의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의 해결방법으로서 우리 입법기술은 그다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規定이 복잡해지고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고 있다.<sup>56)</sup>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準用條文을 전부 없애는 것은 찬성할 수 없으며, 準用되는 조문이 수도 적고 준용되는 조문이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준용조문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국민에게 법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관하여 同文의 조문을 법령에 나오게 하여 명칭 이외의 사항을 전부 동문으로 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準用條文을 줄이거나 난해한 준용조문을 가능한 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방법을 취함으로써 법문의 의미는 법률가, 일반국민에게도 이해하기 쉬운 것이 된다. 최근의 법령에서는 준용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다른 규정을 준용하는 때에는 그 조문의 要旨를 기입하거나<sup>57)</sup> 해석상 의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56) 참고로 우리의 현행법령집에 수록된 법률중 準用條項을 비교적 많이 두고 있는 것을 간추려보면 공무원범죄에관한물수득례법(21개조), 공증인법(26개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43개조), 군사법원법(49개조), 농업협동조합법(24개조), 문화재보호법(19개조), 민법(133개조), 민사소송법(99개조), 보험업법(64개조), 부동산등기법(55개조), 비송사건절차법(70개조), 사립학교교원연금법(27개조), 상법(188개조), 상표법(21개조), 선박소유자책임제한등에관한법률(25개조), 소방법(19개조), 수산업협동조합법(20개조), 실용신안법(31개조), 원자력법(33개조), 의장법(22개조), 전파법(18개조), 조세감면규제법(30개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27개조), 증권거래법(33개조), 지방세법(19개조), 축산업협동조합법(21개조), 특허법(36개조), 파산법(67개조), 항공법(27개조), 형사소송법(44개조), 호적법(23개조), 회의법(21개조), 회사정리법(69개조) 등이다.

5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등)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제2항 및 제26조(직권심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락조사의 효

준용되는 규정의 어구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여 이를 법령문에 명시하는 방법<sup>58)</sup>을 널리 채용하고 있다.

### 3. 一般條項의 問題

#### (1) 一般條項의 意義

법문장은 항상 一般的 文章, 즉 가장 정확하고 보편타당한 문장이어야 한다. 그런데 입법에 있어서 표현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정확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에 있어서 構成體系·정확한 용어 등을 기본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나, 이 점에 관한 일반적 지침으로서 입법에 있어서 표현수단은 「明確性」을, 입법에 있어서 표현상의 구성은 「體系性」을 각각의 지침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법령문에는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고도의 不確定性(große Unbestimmtheit)과 고도의 一般性(große Allgemeinheit)을 지닌 법률 표현으로서 이른바 불확정적 법개념(Unbestimmter Rechtsbegriff), 규범적 개념(Normativer Begriff), 재량개념(Ermessensbegriff), 일반조항(Generalklausel) 등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法的 構成要件의 특징은 내용상으로 구분되는 간결·명확성에 있다. 법률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의 영역에는 내용적으로 감하거나 더하여 확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 법률의 解釋이나 判決에 의해 한계 지워지는 법률상의 요건처럼 일의성을 나타내는 것들도 있으며,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具體的 事件과 관련하여 확정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예컨대 「공공복리」, 「공공의 이익」, 「상당한 이유」, 「신뢰」, 「필요」 등이 이에 속한다. 법령에 있어서 이러한 표현의 사용은 그 解釋과 구체적 사건에로의 適用에 매우 큰 어려움이 따르며, 일반인의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수반되고 있다.<sup>59)</sup> 물론 법률표현의 일반성과 특수성, 추상성과 구체성은 결코 경계를 명백히 갈라놓을 수 있는 分類的 概念이 아니라 양자는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때 법령의 표현에 있어서 고도의 일반성, 추상성, 불확정성은 그 어느 하나가 결정적인

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의 규정을 제외한다.

58) 출입국관리법 제16조(재난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난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운수업자, 수난구조법에 의한 구조업무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재난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는 “재난상륙허가서”로, “승무원상륙허가”는 “재난상륙허가”로 본다.

59) W.Hugger, a.a.O., S.282.

것이 아니라 각각은 단지 相對的 比重을 가지고 있는 것일 따름이다. 어떤 규범 맥락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일반적인 그리고 또는 매우 불확정적인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고 매우 一般的인 構成要件과 相關하고 있거나 또는 매우 추상적인 법문장<sup>60)</sup>은 국민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나 法解釋과 適用에 있어서 위험을 부담하게 될 뿐 아니라 명확한 입법의 원칙이라는 입법기술상의 요청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명확한 개념이 전혀 없는 법률은 하나의 理想論에 불과하며 이러한 「一般條項」<sup>61)</sup>의 빈번한 적용이 실제이고 보면 이를 法機能的인 側面에서 유형화<sup>62)</sup>하고 일반조항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肯·否사이에 양자택일이 있으며, 법적인 시야에서 양쪽이 똑같이 타당하다거나 동가치일 수 없고 하나의 정당한 결정만이 가능하고 적법하게 평가받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무엇이 정당한가라는 한계영역에 결정의 애매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일반조항의 문제는 認識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意思決定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sup>63)</sup> 이러한 개념을 개별사건에 적

60) Klaus Lambrecht, 「Generalklauseln und technischer Fortschritt」, DÖV 1981, S. 700.

61) 一般條項의 개념적·언어론적 특징을 명확히 하는 연구는 주로 법철학·법이론의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법의 現實適合성과의 相關에 있어서 일반조항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一般條項은 결정기준으로서의 일의적 명확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불명확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명확성이라는 특징은 통상의 法命題와의 상대적·단계적인 구별을 의미하는데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해 두기로 한다. 一般條項에 관한 개념적·언어론적 연구는 Karl 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5.Aufl., 1983, S.214f ; Karl Engisch, 「Die Idee der Konkretisierung in Recht und Rechtswissenschaft unserer Zeit」, 2.Aufl., 1968 등 참조.

62) 一般條項은 여러가지 시각에서 다양하게 유형화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도 實定法秩序內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①규범내용에 따라 실체법적 요청과 금지 및 허용을 하는 「實體法的 일반조항」과 절차와 관할 및 권능에 관련된 「節次法的 일반조항」, ②조문구조에 따라 구성요건과 법적 효과로 구성되어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법적 효과가 항상 발생하는 「條件的 일반조항」과 목표의 성취를 의무로 하는 「目的的 일반조항」, ③개념의 불확정성의 종류에 따라 구성요건 측면 또는 법적효과 측면 또는 이들 양자에 있어서 가치충전이 필요한 개념에 의하여 정의된 「評價的으로 開放된 일반조항」과 기술적 개념에 의하여 정의되어 있고 이것에 의하여 경험적으로 탐지되어질 수 있는 행동기준을 원용하는 「經驗的으로 모호한 일반조항」, ④효력근거에 따라 「實定法的 일반조항」, 「慣習法的 일반조항」, 「判例法的 일반조항」, 「法原則的 일반조항」, ⑤법체제적인 기능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규정된 법조항들을 유연하게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는 「調停的 일반조항」, 엄격한 법규정의 효력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광범한 권한을 설정하는 「擴張的 일반조항」, 다른 개별조항없이 독자적으로 파악되는 「規律的 일반조항」 등이 있다. 姜熙遠, 「이른바 一般條項에 관한 基礎法學的理解」, 高鳳法學 창간호, 1994, 254~259面. 또한 일반조항을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법률상의 지위를 무시할 수 있게 하고 일정한 구성요건징표에 호소함으로써 다른 결정도 할 수 있게 하는 「救濟的(완화적) 일반조항」과 개별적 수권조항과의 관계에서 확대된 외연을 가지는 「擴張的(수권적) 일반조항」 및 독자적인 규율내용을 가지고 있는 「規律的 일반조항」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상세한 내용은 沈憲燮, 「一般條項小考 -分析的 素描-」, 法學(서울대) 제30권1·2호, 1989, 114~116面 참조.

용시키는 경우에 평가 또는 미래에 대한 예견이 필요하다. 물론 그 자체로서 유일하고 적법한 결정이 늘 一義的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여하튼 이 不確定法概念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법문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一般條項의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一般條項의 機能

오늘날의 立法에서 불명확한 법을 낳는 일반조항의 사용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입법자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두가지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첫번째는 입법자 스스로 構成要件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이다. 즉 입법자는 많은 가능한 부류와 다양한 형태의 사안들중 경험을 통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並列的으로 나열하여 이들에 각각 필요한 法的 效果를 부여하거나, 또는 개인에게 부여될 법적 지위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다양한 형태의 事案을 확정된 구성요건을 근거로 하여 개별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으로 법률을 규정하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立法者가 법률의 構成要件을 가능한 한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입법자가 모든 개별현상이 당연한 귀결로서 그 자체속에 포함될 수 있는 一般的 原則만을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 양자의 방법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구체-추상의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첫번째의 방

63) 참고로 獨逸에 있어서 일반조항은 다양한 모습으로 논하여 졌다. 고전적인 것으로는 예를 들면 一般條項의 진출의 불가피성과 권리행사의 측면에 있어서 위험성을 지적한 Hoeniger의 연구와 법관에 의한 일반조항의 해석·적용의 문제와의 관련에서 「일반조항으로의 도피」의 위험성을 지적한 Hedermann의 연구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제2차대전후의 一般條項論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특히 나치기에 있어서 일반조항의 운용에 의 심각한 반성도 있어서- 決定基準으로서의 일의적 명확성을 결여한 一般條項을 여하히 구체화·명확화할 것인가라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일반조항론의 중심적모델로서 간주되었던 BGB 242조(이른바 信義則)의 논의에 있어서도 동조를 매개로 하는 法形成의 機能에 적응하여 유형화하는 시도가 전개된 것이었으며, 그러한 연구의 효시가 된 것이 전후 바로 발표된 Wieacker의 연구였다. Wieacker는 BGB 242조의 문제를 「法の 새로운 形成(Rechtsneubildung)」의 문제로서 위치하여 이 법형성의 합리성·안정성을 여하히 보장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同條에 관해서 집적인 판례를 단서로 동조에 의한 법형성의 기능적 분류를 시도하여 그것을 「法官의 직무(officium iudicis)」적 기능, 「惡意의 항변(exceptio doli)」적 기능, 「법관의 법창조(richterliche Neuschöpfung)」기능의 세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는 법의 形成에 있어서 전통적인 「법률에 따른 법형성(Rechtsbildung secundum legem)」, 「법률을 초월한 법형성(Rechtsbildung praeter legem)」,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Rechtsbildung contra legem)」의 세가지 분류로 대응하고 있다. 이것으로 부터 알 수 있듯이 BGB 242조의 기능적 분석에 있어서의 기본적 시점은 制定法과 法官의 관계였다. 이 연구이래 BGB 242조에 의한 법형성의 기능적 분류를 시도한 것이 동조를 둘러싼 논의의 중심적 과제가 되어 있다. 독일에 있어서 一般條項의 논의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Klaus Lüderssen(Hrsg.), 「Generalklauseln als Gegenstand der Sozialwissenschaften」, Baden-Baden 1978 및 姜熙遠, 前掲論文, 211~219面 참조.

법에서 두번째의 방법의 형태로의 이행은 「抽象化」, 「一般化」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64) 이러한 두가지 형태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인가를 교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첫번째의 방법은 高度의 正確性에 기하여 개념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용의 正確性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동시에 중요한 단점으로 작용한다. 즉 법규범의 規律목적과 관련하여 많은 缺陷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단점은 법규범에 의하여 파악된 사상의 복잡성이 가중되면 될수록 점점 현저하게 된다. 그리하여 法規範의 결합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에 대한 법의 적응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두번째의 방식에 의한 規律이 불가피하게 된다. 사회가 복잡하고 變化可能性이 크면 클 수록 두번째의 방법에 의한 規律, 즉 일반조항의 사용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며 또한 그 의미도 가중된다. 이렇게 볼 때 두가지의 規律방법은 背反的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65)

그런데 立法者가 이러한 일반적·추상적인 표현으로 개념을 구성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의문은 일반조항이 법질서내에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가라는 기능론적 질문과 관련한다. 66)

첫째는, 立法技術的 機能이다. 입법자는 그가 規律하려는 복잡한 현실영역을 법조문으로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자는 모든 事案을 개별적으로 規律할 수는 없으며, 입법에 있어서 최대한의 경제성의 원리에 입각하여야 하므로 구체적 사례를 최소한의 構成要件으로 추상화·보편화하여야 종합화를 기도하여야 한다. 일반조항은 바로 입법자에게 이러한 가능성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67) 법조항을 개별사안과 구체적으로 연관하게 된다면 그러한 規律狀況을 어떠한 징표로 기술하는가는 상당히 자의적이 되며, 특히 사용되는 개념으로는 規律 목적을 인식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많은 보편화된 事案을 열거함으로써 規律 영역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되며 비경제적일 뿐 아니라 특히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변화된 새로운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社會的 正義가 강하게 요청되는 시점에서 사회적 요구를 신속하게 충족시켜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질서와 법질서의 포괄적인 가교의 외양을 갖추기 위해서 또 유일하게 강한 安

64) 첫번째의 방법은 결의론적(Kasuistische) 規律로서 이른바 「個別的인 것의 포착(Haften am einzelnen)」, 「우연한 것의 목록(Verzetteln im zufälligen)」이라는 징표로 설명될 수 있으며, 두번째의 방법은 原理的(prinzipielle) 規律로서 이른바 「가치충전을 필요로 하는(wertausfüllungsbedürftige) 개념」, 으로서 전자의 방법에 의한 결점은 후자의 방법 즉, 「一般的인 것으로의 집중과 승화」, 「本質的인 것과 동종의 것으로의 집중과 승화」, 「普遍化」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姜熙遠, 前掲論文, 210~219面 ; 沈憲燮, 前掲論文, 107~109面 참조.

65) 姜熙遠, 前掲論文, 249面 참조.

66) C.Lambrecht, a.a.O., S.700~704.; W.Hugger, a.a.O., S.284~285.

67) 沈憲燮, 前掲論文, 114面.

全裝置인 法을 통한 윤리적 안정을 기하고 나아가 개별적 정의를 기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法的 規律를 도모할 필요성에서 일반조항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둘째, 政治的 機能이다. 일반조항은 그 고도의 추상성·일반성으로 인하여 법적 용기관(사법부와 행정부)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一般條項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세밀한 구성요건징표를 더 이상 고려할 필요도 없이 또는 특별수권의 결함을 자신의 規準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용기관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격상하게 하는 기능을 가져온다. 일반조항에 의한 規律形態를 통하여 사회적·정치적 결정은 입법자의 손에서 부터 法執行者의 수중으로 사실상 이동하게 된다. 입법자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견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 경우 입법자는 一般條項을 통하여 구성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구성요건을 司法化하는 것이다.<sup>68)</sup> 그러나 일반조항을 두어 구체적 사건에서 그를 적용할것인가의 여부의 판단을 法適用機關에 맡길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행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만약 이 기준이 어떠한 형태로 명확하지 않다면 법적용기관에게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하게 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sup>69)</sup>

셋째, 社會的 機能이다. 입법자는 일반조항을 사용함으로써 법률의 구성요건의 외연을 상당히 일정하게 確定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 일반국민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결점이 있으나, 반면 一般條項은 그 개념적 내용이 미확정적이기 때문에 法主體의 유연한 법생활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일반조항에 있어서는 사회적 발전과 변화에 따른 새로운 法의 可能性이 열려져 있으므로 다양한 법생활영역에서 고유한 관행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조항은 범영역과 범외적 생활영역을 연결하는 창구기능(Fensterfunktion)을 수행한다.

넷째, 法體系的 機能이다. 법의 일반원칙은 고도의 추상성과 일반성을 가지는 개념들로 이루어진 일반조항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반조항은 다양한 법률조항으로 이루어진 법질서를 一體性을 가진 하나의 체계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확정적·구체적 입법은 그 사용된 개념들의 높은 확정성으로 인하여 안정된 法適用을 보장하나, 이 경우 입법은 규율할 법소재를 언제나 단편적이고 잠정적으로만 다룰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規律目的과 관련하여 보면 필연적으로 결함을 가지기 마련이며 또 규율할 사태의 변화와 복잡성에 적응할 수도 없게 된

68) 「立法에 참여한 여러 政黨들이 하나의 공통적 외연을 가지는 규정을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일반조항에 의한 규율방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政治的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경우에 概念의 擴張은 법원의 판결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정당간의 불일치가 제거될 수 있다.……」, 姜熙遠, 前揭論文, 251面.

69) 이 점에 대한 지적으로는 특히 沈憲燮, 前揭論文, 117~118面 참조.

다. 그러나 一般條項은 그 높은 일반성으로 인하여 커다란 사태의 集合을 결함없이 또한 적응력있게 규율할 수 있게 결함보완기능(Lückenfunktion)과 적응기능(Anpassungsfunktion)을 수행한다. 아울러 일반조항은 다양한 個別事案에 있어서 구체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正義機能(Gerechtigkeitsfunktion)을 수행한다. 규범이 확정적·추상적일 수록 개별적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확실히 오늘날의 法治國家의 요구인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법규범은 당사자의 부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實質的 正義·衡平을 실현하는 제한기능(Schrankenfunktion), 종래의 법규범이 사회의 진전·변화에 의하여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실정법을 수정하는 授權機能(Ermächtigungsfunktion) 또는 구체화 내지 보완기능(konkretisierungsfunktion oder Ergänzungsfunktion), 사회의 요청에 적합시키는 새로운 법률을 창조하는 修正機能(Korrekturfunktion) 등을 담당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서 살펴본 일반조항의 각종 기능을 검토하는 경우 일반조항은 규범적 폐쇄성과 인지적 개방성을 결부시키는 구체적인 매카니즘으로서 위치된다. 따라서 一般條項은 법의 현실적합성과 사회적합성을 높이는 커다란 역할을 거두고 있다.<sup>70)</sup>

그러한 의미에서 법규범에서의 一般條項의 확대와 일반조항의 불명확성의 증대(Steigerung/Ansteigen von Unbestimmtheit der Generalklauseln)를 주장하는 논의도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sup>71)</sup> 즉 일반조항의 不明確性은 법체계의 다른 체계에 대한 개방성이 방대함과 관련하는 것이며 일반조항의 불명확성의 증대에 의하여 법은 그 구조를 다른 부분체계의 구조에 적합하게 하는 能力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일반조항은 그 고도의 불명확성 때문에 상호 자율적으로 진화발전하는 부분체계상호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구조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일반조항의 不明確性은 법을 현실적합적으로 유연하고, 상황적합적이고 조정적으로 하는데 커다란 역할 거두고 있다고 한다.<sup>72)</sup> 요컨대 전통적인 일반조항이론과 같

70) Gunther Teubner, 'Recht als autopoietisches System', 1989, S.123ff.

71) 대표적인 학자로서 G.Teubner, 'Reflexives Recht -Entwicklungsmodelle des Rechts in vergleichender Perspektive', Archiv für Rechts - und Sozialphilosophie, Vol.68, 1982, S.13ff.

72) 토이프너에 의하면 「一般條項의 明確化」프로그램은 일반조항을 유형화에 의해 몇가지의 법관법적인 조건프로그램으로 「기계적으로 구체화(herunterkonkretisieren)」하여 버림으로써 일반조항의 사회적 기능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일반조항의 機能이란 토이프너에 의하면 「사회적 변동에 대한 법의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것」이며, 환언하면 「一般條項의 고도의 불명확성은 확실히 사회의 부분시스템간에 있는 갈등의 저축법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인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것이며, 이 不明確性을 성급하게 감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일반조항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거꾸로 그 불명확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 한다.

이 구체화·명확화에 의하여 처음부터 불명확성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당분간 不明確性을 철저하게 증대시키는 때 규범구조의 세가지 차원 - 내용적, 시간적, 사회적 차원<sup>73)</sup> - 전부에 있어서 풍부한 구체화의 선택(eine fülle von Konkretisierungsalternativen)이 발견된다는 것이다.<sup>74)</sup>

(3) 一般條項의 評價

오늘날 一般條項은 법의 유연성과 사회적 적응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질서에 있어서 과소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조항은 개별사안의 정의와 공공복리의 요청을 고려하여 實定法을 유연하게 하는 적극적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기능은 바로 그것이 국민의 法生活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소극적 기능과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소극적 기능은 한편으로 국가권력행사의 예측가능성이라는 法治國家原理를 약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분립체계를 변동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일반조항의 등장과 함께 법의 전반적인 유약화를 가져와 전체 법생활의 불안전성을 초래시키므로 일반조항은 「法과 國家에 대한 하나의 위협」<sup>75)</sup>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며, 일반조항은 법률을 적용하는 법관의 가치판단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며, 법관이 一般條項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리게 될지는 법조항 그 자체를 통해서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일반조항은 수범자에게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고도의 추상성, 다의성, 모호성, 가치충전성, 임의성, 불확정성을 구성요건적 징표개념으로 하는 一般條項은 법치국가원리가 요청하는 법규범의 확정성의 원칙과 충돌한다. 그러나 일반조항은 오늘날의 법치국가원리, 즉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一般條項은 입법이 비워놓은 부분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권력분립원리에 충실한 법치국가에서 입법자에게 부여된 가치판단과 형량의 과제를 행정과 법관에게 위임하는 결과가 되어, 權力分立原理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반조항은 권력분립의 원칙이 形

73) 토이프너에 의하면 일반조항의 不明確性을 증대시키는 것이란 불명확성을 이미 규범의 요건사실 요소의 불명확성으로서만 일차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 규범구조의 다양한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불명확성」을 세가지의 차원 즉, 內容的(sachlich) 차원, 時間的(zeitlich) 차원, 社會的(sozial) 차원으로 관계지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여기에서 내용적 차원이란 규범의 내용이 언어로서 어떻게 동시에 정해지는가 라는 것과 관련하며, 시간적 차원이란 규범의 시간적 유지, 즉 規範에 표현되고 있는 당위내용의 항사실적인 안정화에 관련되며, 그리고 사회적 차원이란 규범이 사회집단 가운데 어떠한 광범하게 존재하는 가(합의되고 있는 가)에 관련하고 있다. 토이프너는 이들 세가지 次元 전부에서 불명확성이 증대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74) G.Teubner, a.a.O., S.20ff.

75) J.W.Hedemann, a.a.O., S.2.



骸化되지 않고 확정성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한에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의 구조변동에 관한 새로운 이해에 의거하여 일반조항의 不明確性을 증대시키는 논의를 전개하는 곳에서는 일반조항의 의의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부여되어 있으며, 법시스템의 현실의 분석에 있어 흥미깊은 시점이 제공되고 있다. 아울러 그것은 法시스템의 사회적합성·현실적합성을 높일 것을 목적으로 하는 두드러진 실천적인 「戰略」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一般條項의 不明確性的의 增大」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법관에게 만능의 힘을 부여하는 「帝王條項(königlicher paragraph)」<sup>76)</sup>의 현대적 재생과 법관에 대한 백지위임과 관계될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

76) J.W.Hedemann, a.a.O., S.6.

## 第4節 法令用語와 法律學術用語·裁判用語

### I. 法律學術用語의 問題

法令에서 법문구성상 일정한 의미가 부여되어 일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기술적인 용어로서의 法令用語는 학문으로서의 법학분야에 존재하는 전문적 술어로서의 이른바 法律學術用語와는 다소 다르다. 물론 법령용어의 의미는 법학에서 일정한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가능한 한 그 의미를 살려 學術用語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은 당연하다.<sup>77)</sup> 우선 사회과학을 인문과학과 구별한다면 法學은 전자의 영역에 속하며 사회과학용어는 자연과학의 그것과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우선 무엇보다도 學術用語이며, 그곳에는 궁극적으로 진리탐구라는 목적하에 정보의 정확한 전달이라는 것이 첫번째의 사명인 것이다. 법률용어는 우선 학술용어의 일종이므로 學術用語一般의 요건인 문제의 명확함·정확성·선명한 문제의식·논리의 일관성·기승전결이 분명한 구성·충분한 논증·지적성실성 등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법령용어에서와 마찬가지로 法律學術用語에 있어서도 그 문체상의 첫번째 요건은 明確性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명확하다는 것은 그것이 명백할 뿐 아니라 일의적이라는 것이며, 어떤 용어가 명확하다는 것은 어떤 사물, 현상, 성질 등에 그 어구가 해당하는 가에 관하여 사람들의 판단이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대부분은 우리가 自然言語(natural language)를 사용하는 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융통성을 지니므로 불명확성이라는 것은 불가피할뿐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조건이며, 日常生活에서는 불명확하고 다의적인 것은 오히려 장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술용어에서는 그 성격·목적상, 고차원의 명확성이 요구되므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自然言語의 범주 가운데 술어를 명시적인 규약으로 정하거나 또는 자연언어와는 별도로 엄밀한 규약에 의거한 人工言語인 전문용어의 체계를 사용한다. 특히 법률학술용어는 다른 학술용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문언어보다 각 용어의 개념을 정밀하게 세분하여 사용함으로써 가능한 한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표현을 구사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一般人이 전문적인 법률학술용어로 표현된 법률서적을 대하는 경우 이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것처럼 法規範이라는 것은 사회통합의 일익을 담당하며 사

77) 法制處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도 「法令用語는 되도록 學術用語와 일치시킨다」라고 하고 있다. 同, 14面 참조.

회통제를 위한 기술로서 일반국민의 생활과는 분리될 수 없으며, 특히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은 물론 일반법령도 가능한 한 일반국민에게 널리 이해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sup>78)</sup> 이러한 원칙의 당연한 일환으로서 法規範이나 法現象에 관하여 논하는 법률학술용어도 법전문가사이에서 엄밀한 개념정의나 이론구성을 위하여 특수한 용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해 理解可能性的의 요청이 희생되어야 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언어와 결별할 수 없다. 法律學術用語는 통상 전문가나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학술용어와 같이 이해가능성을 요구를 희생하여 엄밀성의 요건이나 학문상의 情報內容에 충실한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률학술용어와 일반국민의 언어의식을 괴리시키는 것이며, 법률가와 일반국민간의 의사전달의 고장을 유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理解性」과 「明確性」은 대체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나 전문법학분야에서는 상호 어울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선 법률학술용어에서는 다른 學術用語와 같이 기술적인 용어사용이 불가피하다. 이해성을 요구하여 기술적인 용어를 피하여 일상용어를 사용한다면 언뜻 이해하기 쉽다는 인상을 주는데는 성공하여도 필요한 명확함과 엄밀성이 희생된다면 學術用語로서의 중요한 요건이 결여되게 된다. 이와 같이 이해가능성과 명확성이라는 두가지의 조건이 반드시 양립하지 않을 때 일방을 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선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의 해답은 그 論文이나 著者가 예상하고 있는 독자층에도 의존한다. 상대방이 專門家일 경우에는 물론 명확성이 우선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위의 두가지의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어느 인문·사회과학의 분야에서도 그러하나 특히 法學者는 외부의 인간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專門用語를 남발하여 논의하는 것이 심도있는 학문상의 연구를 진행한다는 착각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 II. 判決文章의 課題

判決文章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판결이유의 내용에 관해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설명하는가 일반적인 法律解釋論을 어느 정도 전개하는가 학자의 문헌을 인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등의 문제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하나,<sup>79)</sup> 여기에서는 표현방법인 文章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판결이라는 것은 국가의 의사표

78) 李鍾河, 「法和 말」, 現代民商法の 研究(威廷 李在澈博士華甲記念論文集), 法文社 1984, 8面.

79)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상돈, 「법관의 말행위와 올바른 법 -고도산업사회에서의 법률적용의 대화이론적 재구성-」, 저스티스 제25권2호, 1992.2., 155~175面 참조.

시의 일종이다. 그리고 그 의사표시는 국가기관인 司法府에 의하여 행해진다. 그렇게 보면 판결의 문장화인 판결문의 주체도 국가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法院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을 구성하는 자로서 그 法官의 판결문은 한 법관으로서의 그 개인의 문장이 아니며 法院의 문장인 것이다.<sup>80)</sup>

그런데 이러한 판결문의 주체가 法官이라는 것은 판결문장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국가의 의사표시라는 本質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그 내용에서 그러할뿐 아니라 문장의 면에서도 어느 법관이 작성하더라도 같은 文章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본다면 判決文이라는 것은 본래 무미건조한 것이 당연하다. 실제 또한 판결문은 문장의 흥미성이라는 것은 그 성질상 당연히 없으나, 그러나 그곳에는 判決文을 기초하는 법관의 심정이 내포되어 있다. 실제문제로서는 行政文書등과 달리 복잡다기한 내용을 지닌 판결문의 경우 집필자의 문장을 쓰는 방식에 따라 문장벽이 나오는 것은 피하기 어려우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一般人이 잘 이해하기 힘든 느낌을 주는 것은 결국 판결문의 방식이 무의식적이든 일반법관을 염두에 있기 때문이다.

판결문은 우선 첫째로 判決을 받는다 즉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등,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을 향하여 쓰는 것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판결의 언도는 반드시 公開法廷에서 하여야 하는 것은 일반국민도 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결문을 읽는 자임을 나타내고 있다. 본래 判決文의 역할은 그것에 그치지 아니한다. 그것은 판결의 內容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후일을 위하여 보존되며 재판을 집행하는데도 필요하나 그 외에도 그 판결에 대해서 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의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를 판결문의 第2의 機能이라고 한다. 이들 기능은 어느 것도 판결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나 그중에서도 당사자 및 일반국민에게 판결의 내용을 고지한다는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sup>81)</sup> 그 점에서 判決文은 검사 또는 소송대리인,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해되고서야 비로소 그 내용도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理解하기 쉽더라도 그곳에는 성질상 일정한 한계가 존재

80) 判決文이 그와 같이 법원을 주체로 하는 文章이라는 점은 법원이 合議體인 경우에는 대단히 명백하다. 그곳에는 합의체의 어느 1인의 法官이 판결문의 원안을 기초하는 것이나 외부에 대해서는 그 합의체인 法院의 문장으로서 발표되는 것이며 실제 그 작성과정에서도 다른 법관이 참여하여 완성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單獨體의 법원의 경우에는 일인의 법관이 작성한 문장이 다른 어느 누구도 가담하지 않고 그 대로 判決文이 되므로 그곳에는 개인으로서의 면이 나오기 쉽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원을 구성하는 자로서 국가의 意思表示에 관련한 입장과 자기개인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의식하여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個人으로서의 법해석에 반하는 判例의 법해석에 따르는 것도 가능하다.

81) 이 문제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이상돈, 「법률해석 -말놀이-의 구성적 참여-」, 저스티스 제27권2호, 1994, 186面이하 참조.

함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法律의 解釋에 관하여 판시하는 부분 등은 평이하게 작성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가 난해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이외의 부분은 대체로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다면 그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그 점에서 判決文을 기초하는 법관의 자세가 중요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 「사법의 민주화」라는 이념 아래 다수의 제도를 개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司法이 그 본래의 사명인 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욕구에 진정한 의미에서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 재판절차와 재판 내용도 국민들에게 이해하기 쉬울 필요가 있다. 專門家集團, 즉 법조계에서만 통용되고 일반사회로 부터 유리된 용어를 구사하여 작성된 판결문은 일반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도 없으며, 그것이 사법의 민주화 내지 국민을 위한 사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판결문은 그 作成方法이나 用語例를 포함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결과의 산물이다. 그 역사와 전통을 답습하여 하나의 기본 형이 채택되어 그것이 바람직한 것으로서 현재에도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본래 그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부단히 개선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일단 정착된 기존의 형태를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既存의 慣例에 안주하여 시대의 요청이나 변화를 무시하는 것은 판결이 당사자나 국민일반에게 이해하기 쉬운 것이 될 수 없으며, 일반국민으로 부터 유리된 司法이라는 인상을 불식시킬 수 없는 것이다.

우선 判決의 文章은 오래전 부터 주어와 술어가 지나치게 분리되어 있거나 전체의 정리가 불충분하거나 조건문의 삽입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sup>82)</sup> 이러한 비판을 개선하기 위해서 判決文에 특유한 종전의 관용적인 문장표현을 재검토하고 가능한 한 평이한 일상용어를 사용함과 아울러 하나의 문장을 短文으로 간소화하고 또한 불필요하게 상세한 기술을 피할 것이 요망된다. 물론 법관이 판결시에 적용하는 법령이 난해한 文語的 表現을 사용하고 있는 결과 지금까지의 판결문은 법에 충실하여 정확성이라는 점에 강조하여 이러한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을 받는 當事者 또는 그 판결을 청취하는 傍聽人에게 과연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간다. 판결인 이상 누구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표현을 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결과는 正確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건적인 문장이 삽입되고 그 때문에 주어와 술어가 지나치게 분

82) 「……판결문은 그 특유의 장문으로 엇가락처럼 길게 늘어져 한참 읽다 보면 옳다는 말인지 그르다는 말인지 종잡기 힘들 때가 많다. 게다가 직설법을 피하고……긍정과 부정이 엇치락 뒤치락하는 우회논법이 자주 쓰여 언뜻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성질 급한 사람이 판결문 읽다간 숨 넘어간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이다」, 이혁주·김창수(편), 「법조기자가 본 法官과 재판」, 考試界社 1987, 67面 참조.

리되어 장문의 문장이 되고 있다. 본래 판결이라는 것은 그 성질상 正確性을 유지하여야 하나 그것이 필요이상으로 지나치게 正確性을 강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거의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이다.

그리고 판결문의 作成에 독창적으로 사안에 따라 평이하고 간결하며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하기 보다는 재판실무상 일정한 基本型을 참고하여 정형적인 판결문을 작성함으로써 기재의 필요성과 정도를 감안하여 간소하고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되고 있다. 물론 판결문을 平易化하는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판결문이 재판과정에서의 심리에서 형성된 내용을 표현하는 것인 이상 판결을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대전제로서 충실한 이해하기 쉬운 審理가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변호를 충분히 듣고 실질적인 쟁점이나 당사자가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그 점에 초점을 두어 효율적인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해하기 쉬운 裁判은 이해가능한 審理와 이해가능한 判決이라는 점이 상호 조화되는 곳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본래 판결문장의 평이화의 문제는 판결문자체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기소장의 文章, 변호인의 변론요지의 문장 및 법정에서의 소송행위자체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으며 여기에서도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sup>83)</sup>

83) 「당사자의 대리인이 변호사때문인지는 몰라도 법정에서는 일반용어이외에 법률용어를 자주 쓰는 것을 발견한다. 당사자의 쟁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과거에 겪었던 생활관계이므로 일반적인 평이한 용어가 사실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더욱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文仁龜, 「韓國法の 實相과 虛相」, 三知院 1985, 127面 참조.

## 第3章

# 우리나라 法令用語의 課題





## 第3章 우리나라 法令用語의 課題

### 第1節 意義

民主國家에 있어서 법의 기능은 민주시민의 권리·의무의 실현수단 내지 정치권력의 통제수단에 그치지 않고 國家機能全般의 운영규범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의 법의 준수여부는 바로 국가사회의 안정과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관건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民主國家에 있어서 법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함은 물론 마땅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法意識을 민주시민은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는 경우 과연 국민들이 법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社會安定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마땅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법의식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는지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법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구체적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1), 그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는 법률의 내용과 용어, 表現方法 등이 고도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지나치게 난해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一般國民이 용이하게 알 수 없도록 한다면 법률은 그 適用의 적정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은 법적 생활에 항상 불안감을 가지게 되어 국민들의 법생활화의 습성을 이루기도 어렵다. 2)

- 1)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올바른 法意識을 갖지 못한 요인으로는 ①법은 국민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통치수단에 불과하다는 儒敎的 傳統思想下의 법의식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점, ②서구에서 발전된 개인주의·합리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법제를 계수한 우리 現行法制가 전통사상을 탈피하지 못한 현실사회와 거리가 있다는 점, ③법의 적용이나 집행에 있어서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는 信賴度가 희박하다는 점, ④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의 급격한 변화로 不信과 物質萬能主義의 풍조가 만연되어 법질서가 문란하게 된 점, ⑤多元的인 산업사회에서 외래의 사조와 문화의 영향으로 올바른 가치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점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자세한 것은 高昌鉉, 「市民生活과 法律」, 東亞法學(동아대) 제3호, 1986, 433~446面 참조.
- 2) 참고로 本院이 1994년도에 전국의 20세이상의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國民法意識調查研究에서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라는 설문에서 전체응답자의 93%(1059명)가 이를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소득수준이 높고 연령이나 직업 등에 있어서 法條文이나 法律用語에 관심이 많은 자들 가운데에서 법령문이나 용어의 난해함을 긍정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 국민의 法生活에 법률의 난해함이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분석은 韓國法制研

우리의 법률의 內容과 用語, 그 표현방법의 면에서 난해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된 요인으로는 우선 日本式 表現, 난해한 한자어, 비문법적인 표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의 현행 법제는 우리의 고유한 傳統法文化를 계승발전한 것도 아니며 우리의 자주적 결정에 의하여 다른 나라의 法制를 수용한 것도 아닌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통한 타율적인 법의 수용이었다. 이러한 日帝에 의한 강제적인 법수용은 아직도 우리의 법문화, 법학교육, 실정법체계의 내용과 형식에 많은 영향을 가져오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3) 법의 定立은 그 국가의 언어, 풍습, 가치관과 같은 그 국가의 고유한 문화위에서 이루어질 때 그 법률은 國民生活에 널리 적용될 수 있으며, 법규범이 생활규범으로서 정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는 우리의 언어생활과 언어감각과는 전혀 다른 日本의 法概念을 그대로 받아들여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말과 우리말은 여러가지 풍습이나 전통, 가치관 등에 의하여 言語感覺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입법기술상의 편리함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일본의 법률개념과 용어를 남발하여 國籍不明의 법률을 양산한 것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4) 이러한 일본의 法言語로 형성된 우리 법제가 우리의 언어감각을 둔하게 하고 결국 일반국민들이 법을 대하는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法令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또하나의 문제성은 법령중에 난해한 한자어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5) 물론 전문적인 法概念인 경우 그 개념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技術的인 方法으로 한자를 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일반 보통명사에 까지 난해한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어서 우리 고유의 한글은 단지 助詞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정이다. 이에 대하여 1948년 10월 9일 법률 제6호로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모든 공문서는 한글을 전용하되 얼마동안은 한자를 병용하도록 하였고, 1961년 10월 1일에는 각령 제137호 정부공문서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공문서는 한글을 전용하되 법령은

究院, 「94 國民法意識調查研究」, 1994, 91~93面 참조.

3) 이 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상범, 「한국법문화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 教育科學社 1994 참조.

4) 「일본사람의 언어생활과 언어감각이 우리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는 한 일본의 법개념을 송두리째 우리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른 분야도 아닌 法學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그 문제성의 정도가 더욱 높다. ……법학은 지식의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行爲를 규율하는 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해의 필요성과 요청은 현실적으로 매우 절실하다」, 배중대, 「우리 법학의 나아갈 길 -형법학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창간호, 1989, 237~238面 참조.

5) 曹圭昌, 「韓國民法과 獨逸民法의 關係 -우리 민법전의 난해성을 중심으로-」, 韓獨法學 제4호, 1983, 57~68面.

여전히 한문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으나 1969년 5월 2일에 정부공문서규정을 개정하여 법률을 제외한 법령도 한글을 전용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는 대부분의 法令이 한글로 표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法律에 관해서는 아직도 한자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이른바 헌법·민법·형법·상법 등 국가법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法規範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에서 조차 난해한 한자어가 표기되어 국민의 법생활을 둔감하게 하고 있다.<sup>6)</sup> 日常言語와 법언어의 간격이 넓어짐으로써 법이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법전상의 난해한 법언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음미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령문의 文章構造와 文體에 있어서도 논리적 모순이 있거나 문법에 맞지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자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난해한 文語體表現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우리 法制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 등에서 꾸준히 일반국민에 대한 우리 법제의 理解度提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에도 이 작업은 정부 및 학계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부분적이거나 단편적인 개선에 그치고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達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法令用語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의 법령용어의 위치를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법령용어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그동안의 作業推進體系와 그 성과를 개관하여 보면서 법령용어의 순화, 나아가서는 법령문전체의 순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6) 이 점에 관해서는 특히 윤철홍, 「한국민법학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과사회, 제3호, 1990, 195면 이하 참조.

## 第2節 法令用語 整備事業의 推進實績과 向後課題<sup>7)</sup>

### I. 法令用語整備事業의 推進經過

#### 1. 舊法令整理事業

법령용어순화 정비사업은 정부수립이후 추진되었던 舊法令整理事業과 함께 병행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우선 구법령정리사업의 추진배경과 그 연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법령정리사업은 1948년 정부수립이후에도 舊韓末法令·日帝法令(조선총독부)·美軍政法令이 우리나라의 법령과 같이 시행됨에 따라 당시의 制憲憲法에의 저촉 등<sup>8)</sup> 불분명하고 국민감정에 맞지 아니하며, 文字·用語의 표기가 부정확하거나 혼란을 주어 일반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구법령정리사업의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sup>9)</sup> 이러한 구법령정리사업은 制憲憲法의 공포와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수립직후부터 각계각층의 요구에 의하여 착수하였으나, 6.25사변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5.16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法典編纂委員會의 설치(1948년)

8.15해방이후 헌법의 제정과 정부의 수립에 따른 긴급한 법률의 제정<sup>10)</sup>은 일단

7) 이 부분의 내용은 法制處 신각철 법제연구관의 원고를 필자의 동의를 얻어 본 보고서의 취지에 맞게 재편집·구성하고 일부내용을 정리·보완한 것이다.

8) 制憲憲法 제10장부칙, 제100조는 「現行法令은 이 憲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效力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美軍政法令 제21호 「法律諸命令의 存續(1945.11.2 공포)」에서 「모든 法律 및 朝鮮舊政府가 발표하고 법률적 效力을 갖는 규칙·명령·고시 기타 문서로서 1945.8.9 실행중인 것은 그간 이미 廢止된 것을 제외하고, 朝鮮軍政部의 특수명령으로 폐지할 때까지 모두 效力을 가지고 존속한다(동 법령 제1조)」라고 규정하여 大韓民國政府樹立이후에도 구법령의 效力이 존속하게 되었다.

9) 8.15解放 및 대한민국정부수립 당시 우리나라에 시행된 法令은 舊韓末의 법률과 칙령, 日帝의 제령·조선총독부령 및 일본법률등, 軍政時代의 군정법령·과도정부법률등 다양하고 불분명하였다. 法令用語의 경우도 당시에 공포·시행한 「未成年者勞動保護法(1947.5.16 군정청 법률제4호)」에 사용된 용어를 예로 들면 「比를 禁함, 其生命等」으로 거의 일본식 또는 한자표현이었다.

10) 이 당시에 제정된 주요 법률로는 우선 정부수립에 앞서 정부조직법(1945.7.17 법률 제1호)을

마무리되었지만 民生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민상사·형사법은 제정을 미룬 채 일본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이러한 基本法은 행정법규와 달리 졸속으로 제정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의 제정을 위한 특별기구로서 「法典編纂委員會職制(1948.9.15 대통령령 제4호)」를 제정하여 법전편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대통령감독하에 법전편찬위원회를 두고 民事·商事·刑事關係 기본법전과 기타 訴訟·行刑 등 사법법규의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그 초안을 기초·심의하도록 하고(동직제 제2조), 위원장 1인과 위원 50인을 법조계·법률학교수·행정부 법무담당 기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동직제 제3조).<sup>11)</sup> 法典編纂委員會는 주로 司法關係法令의 기초 작업에 상당한 업적을 남겼고, 법령정리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제를 개정·보완하기도 하였다.<sup>12)</sup>

## (2) 法令整理刊行委員會의 설치(1951년)

1951년에는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던 舊法令의 유효·무효를 조사심의하고 이에 대체할 새 법령의 기초를 준비하며, 통일된 법령집의 편찬·발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法令整理刊行委員會(1951.5.12 대통령령제499호)」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法制處長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위원회의 실무를 법제처가 담당하였다. 그러나 동위원회는 당시 6.25사변중이어서 豫算措置가 없어 이렇다 할 업적은 없었다.<sup>13)</sup>

제정하고, 국회법·국회의원선거법·법원조직법·검찰청법등을 제정하여 국가통치조직에 관한 입법사항을 마무리 지은다음 그 후 국군조직법·병역법을 비롯하여 재정경제관계법, 지방자치법, 농지개혁법, 교육관계법, 문화관계법, 노동관계법등을 제정하여 민주국가로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반민족행위처벌법(1945.9.22 법률 제3호), 년호에관한법률(1945.9.25 법률 제4호), 한글전용에관한법률(1945.10.9 법률 제6호)등을 제정하여 자주독립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1) 위원장에는 金炳魯가 임명되었으며, 위원은 기초위원과 일반위원으로 나누어 졌다. 일반위원에는 법률가만이 아니라 경제학자, 사학자, 교육학자 등 학계의 대표들도 참여하였다. 法典編纂委員會는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부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各法別로 개별분과위원회와 기초위원을 두고 이에 一般委員을 배속하는 것으로 하였다.

12) 法典編纂委員會의 활동뿐 아니라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의 제정과정에 대한 자료 등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고 또 남아있는 것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와 관련된 자료의 종합적 정리와 발간이 요청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張明根, 「現代法制的 歷史的 形成過程」, 저스티스 제27권2호, 1994, 126~127面 참조.

13) 法制處, 「法制處四十年史」, 1988, 127面.

(3) 法令整理委員會의 설치(1956년)

6.25사변중에 법령정리사업의 추진이 거의 중단된 상태였으나, 전쟁이 끝나고 질서가 회복되면서 이 事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법령정리간행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하여 「法令整理委員會(1956.7.19 대통령령 제1169호)」를 두었다. 이 위원회는 法制室(1955.2.7 법 제354호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법제처가 법제실로 명칭을 바꿈)소속하에 법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법률학을 전공한 국회의원·법조계·행정부공무원 기타 법률학교수 등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위원·참사 등을 임명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400여건의 舊法令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sup>14)</sup> 이 당시의 구법령정비사업은 위원회를 통하여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새로운 행정의 필요에 따라 신법령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구법령을 廢止 또는 失效함으로써 구법령정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sup>15)</sup> 그러나 이러한 구법령의 정리사업은 法令內容上의 미비점·모순과 저촉, 법리상의 타당성 뿐만 아니라 일본식의 용어표현과 한자식 표현 및 지나치게 어려운 法令用語 등을 쉽게 풀이하여 쓰는 등 법문내용의 표기에 있어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sup>16)</sup>

(4) 舊法令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の 제정(1961년)

5.16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구법령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짓기 위하여 「舊法令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1961.7.15 법 제659호)」을 제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각수반 감독하에 「법령정리위원회」를 두어 委員長은 내각사무처장(1961.10 법제처설치후 법제처장)으로 부위원장은 법제처장으로 하여 1962년 1

14) 당시 정리된 400여건을 법령별로 보면 舊日本法律 30건, 구제령 73건, 구칙령 25건, 구총령 218건, 기타 일제때의 제법규 20건, 軍政法令 46건 기타 군정법규 5건 등이다. 法制處, 「法制處四十年史」, 127面 참조.

15) 「……5.16이전의 舊法令整理事業은 원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정부수립이후 국정이 안정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6.25라는 비극을 맞아야 하였고 행정부와 國會의 관계도 원활하지 못하여 政府가 제출한 구법령정리법안이 의사일정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번번히 그대로 폐기되어 行政府에 되돌아 왔기 때문이다. ……」, 金鎔珍, 「舊法令整理事業에 관한 小考」, 法制 제218호, 1988.1.20, 36面.

16) 法制處, 「法制處四十年史」, 127~128面.

월말까지 약 5개월동안 400여건의 법령을 새로이 제정하고 500여건의 구법령을 폐지하는 등 일단 구법령정리사업을 마무리하였다.<sup>17)</sup>

이러한 구법령정리사업의 추진단계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 기	근거규정	주 요 내 용	실 적
제1공화 국시대 (1948~ 1961)	<1948~1951> 법령편찬위원회 직제(1948.9.15, 대통령령 제4호)	○대통령감독하에 「법전편찬위원회」설치 민사·상사·형사 등 사법관계법령정리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50인이내 대 통령이 임명(판사·검사·변호사·법률 학교수 등) ○위원장 : 대법원장(김병로) 부위원장 : 법무부장관(이 인) ○대법원주도로 추진	6.25사변발발 로 활동부진
	<1951~1956> 법령정리간행위원 회규정(1951.5.12, 대통령령 제499호)	○위원장 : 국무총리 부위원장 : 법제처장 ○행정관계법령정비	6.25사변등으 로 실적부진
	<1956~1961> 법령정리위원회 (1956.7.19, 대통 령령 제1169호)	○위원장 : 법제실장(부위원장은 폐지) ○위원 9인(내무차관, 재무·법무차관과 심계위원장, 민의원의원, 변호사, 사정 위원 등) ○전문위원 20인이내, 참사 20인이내	국회와 행정부 의 협조미비로 추진실적 부진
제3공화 국시대	<1961~1962> 구법령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 7.15, 법 제659호)	○구법령은 1961.12.31까지 정리완료하 고, 정리되지 아니한 구법령은 1962.1. 24에 폐지로 간주 ○법령정리위원회 설치(내각수반 수속) - 위원장(내각사무처장) - 부위원장(법제사무담당차장) - 위원 5인이내 ○61.10.2 법개정으로 위원장이 법제처 장, 부위원장이 법제처차장이 됨	국가재건최고 회의에서 신속 처리

17) 구법령정리사업은 불과 165일동안 193건의 법률과 250일동안 각령 196건을 제정하여 총 389건의 법령을 제정하였고, 618건의 과거법령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의 舊法令整理事業은 지나치게 신속성을 강조한 나머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법령을 정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法令用語의 정비도 병행하였으나 충분한 검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세한 내용은 金鎔珍, 前掲論文, 38면이하 참조.

## 2. 法令의 한글화추진

해방과 더불어 새정부가 수립함에 따라 우리 민족고유의 글자인 한글을 전용하여야 한다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한글전용에관한법률(1948.10.9 법률 제6호)」이 제정되었으며, 이 法律에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한글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한글전용은 크게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부터 한글타자기가 보급되면서 公文書 등에 있어서 한글화를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60년대 후반부터 경제발전과 아울러 중등 및 고등교육의 확대에 의하여 법령을 모두 한글화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法令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법령한글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法令의 한글화사업을 더욱 촉진시킨 또 한가지는 제3공화국헌법(1962.12.26)제정 당시 알기쉬운 헌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문학자의 도움을 받아 한자보다는 한글을 많이 쓰도록 하였던 것도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sup>18)</sup> 이러한 법령의 한글화사업은 앞에서 밝힌 「한글전용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法令의 한글·漢字表記基準 설정

정부에서는 1969년 5월 1일 「법령의 한글·한자표기기준」을 설정하고 앞으로 법령의 制定 또는 改正에 있어서 한글로 표기하기로 하고, 이미 제정된 부령은 1969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은 1970년 12월 31일까지 한글화작업을 마치고 법률에 대하여도 한글화하도록 노력하였다.<sup>19)</sup> 그리하여 정부의 모든 공문서를 비롯하여 法令도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공문서규정(1969.5.2 대통령령 제3923호)」을 개정하고 법규문서의 표기에 있어서도 한글로 띄어서 가로쓰며, 한글맞춤법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러한 法令의 한글화추진은 1970년말까지 대통령이 1,024건, 총리령·부령이 748건 등 전부 1,722건에 이르렀으나, 법률의 한글화는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sup>20)</sup>

18) 制憲憲法에서 한자를 사용하던 것을 제3공화국헌법에서 한글로 표기한 용어중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면 ①定한다→정한다, ②如何한→어떠한, ③爲하여→위하여, ④依하여→의하여, ⑤對하여→대하여 등이 있다.

19) 法令의 한글화작업에 따른 용어정의의 구체적인 자료는 法制處, 「法令의 한글화작업에 따른 用語整理」, 1973.7. 참조.



(2) 法令用語整備要綱의 제정

법령의 한글화작업은 현행법령의 한자용어로 된 文章을 그대로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漢字用語로 되어있는 것을 한글화할 경우 그 뜻을 알 수 없거나 다른 뜻으로 해석될 염려가 있는 용어에 대하여는 알맞게 우리말로 바꾸어 쓰도록 하였다. 이러한 원칙아래 法制處에서는 그 세부적인 지침으로서 1969년 5월 「법령용어정비요강」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sup>21)</sup>

〈법령용어 정비요강〉

현행법령에 쓰이고 있는 용어 가운데에는 아직도 어렵고 까다롭거나 고유한 우리말과 동떨어진 것이 있으며, 민족감정에 거슬리거나 민주주의 이념에 맞지 아니한 용어가 남아있는 실정에 비추어 이것을 평이화하고 순화된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제의 민주적 발전을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법령용어 정비요강을 정한다.

(1) 한글의 전용

①법령은 한글전용한다.

②고유명사나 학술·기술분야의 전문적 용어에 대하여는 한글전용에 관한 정부의 일반 원칙을 따른다.

(2) 알기쉬운 용어의 사용

①법령에는 알기쉽고 널리 사용되는 평이한 용어를 사용한다.

②상용되는 용어라도 비민주적인 것은 적절한 다른 말로 바꾼다.

(3) 용어 및 표현의 통일

①두개 이상의 용어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정확하고 적절한 한 가지로 쓴다.

②법령용어는 되도록 학술용어와 일치시킨다.

(4) 외래어의 정리

① 외래어는 되도록 쓰지 아니한다. 그러나 널리 상용되고 있는 외래어로서 바꾸어 쓸 적절한 우리 말이 없는 것은 그대로 쓸 수 있다.

②우리 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외래어라 하더라도 외래어를 씀이 더 적절한 때에는 그대로 쓴다.

(5) 외래어를 쓸 때에는 문교부제정 외래어표기법에 따른다.

20) 國務總理訓令 제68호(1968.12.24)에 의하여 1970년 1.1 부터 한글전용을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法律도 한글전용을 추진하였으나 1973년도 법제처장 입회하에 國會法制司法委員會에서 국회의원의 요청과 반론에 의하여 결국 합의로 한자혼용의 방침을 정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權寧敏, 「立法實務」, 研修社 1977, 31面.

21) 法制處, 「法令立案審査基準」, 13~14面.

### 3. 法令用語整備基準의 制定・추진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부터 꾸준히 法制處가 중심이 되어 과거의 일본 법령의 영향하에 적용되던 법령을 총정리할 때에 법령용어도 많이 정비한 바 있고, 또한 1969년 法令의 한글화 작업으로 대통령령과 부령을 모두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여 쉬운 법령용어로 바꾸어 쓰기 등 많은 실적을 쌓기도 하였지만, 특히 1972년 7월부터는 法令用語整備를 좀 더 적극화하기로 하고 「법령용어정비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법령용어의 순화정비를 추진하여 왔다.<sup>22)</sup> 한편 법제처에서는 법령문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1973년 7월 「法令用語의 統一」에 관한 지침을 발간·배포하기도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법령상의 관용어사용 원칙·법령상의 외래어·한글바로쓰기·법령한글화작업 채택용어·참고자료의 순서로 되어있다.

이러한 제1차 법령용어정비기준에 의하여 法制處에서는 계속적으로 법령용어정비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도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인 용어와 국민감정이나 시대감각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가 우리 법령의 내용중에 쓰이고 있어 국민들이 法令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각계각층의 요구에 의하여 1983년 4월에 제2차로 「法令用語醇化整備基準」을 제정하여 법령용어의 순화정비업무를 지침으로 관계 부처에 통보하였다.<sup>23)</sup> 제2차로 제정된 「법령용어순화정비기준」은 종전의 법령정비 및 한글화 추진이 대부분 日本式 表現을 바꾸거나 한자용어의 한글화 등 형식적인 면을 중요시 하였으나 새로 제정된 정비기준은 法令用語를 될 수 있는 한 쉬운말로 쓰고,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

22) 1972년 7월에 제정된 제1차 법령용어정비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동음이의어로서 그 뜻이 서로 혼동될 염려가 있는 것은, 자주 쓰이는 말은 그대로 두고 그 밖의 것은 다른 적절한 말로 바꾸어 쓴다. ②2개 이상의 말이 같거나 비슷한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정확하고 알맞는 것 하나만을 골라 쓰거나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③표현이 너무 간단하여 알기 어려운 용어는 알맞게 풀어쓴다. ④한자로 이루어진 말로서 이를 그대로 한글로 옮겨쓰는 경우 그 뜻을 알기 어려운 말은 일반에 널리 쓰이는 말로 바꾸거나 알맞게 풀어쓴다. ⑤국민감정이나 시대성에 맞지 아니한 말은 알맞는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 ⑥기타(정비대상에서 보류되는 것) 학술·기타 전문용어는 합리적으로 바꾸어 쓸 알맞는 말이 없을 때에는 당분간 그대로 사용한다. 法制處, 「法制處四十年史」, 247~248面 참조.

23) 법제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大統領指示(국행이 100-98, 1983.2.28)」에 의하여 1983년도 「법령용어정비·개선계획 실시(법실 182, 1983. 4. 18)」에 관한 공문을 「법령용어순화정비기준」과 함께 用語整備의 요령 및 절차에 관하여 각원·부처청에 통보하였다.

〈법령용어순화정비기준〉

- ①한자용어는 가능한 한 한글용어로 풀어쓴다. 그러나 한글로 풀어쓰으로써 오히려 그 뜻이 이해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쓴다
- ②중등교육을 받은 정도의 사람이면 누구나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는 가능한한 쉬운 용어로 바꾸어 쓴다.
- ③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용어와 국민감정이나 시대성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
- ④표현이 너무 간단하여 알기 어려운 용어 또는 간략하게 풀어쓰는 약어는 가능한한 알맞게 풀어 쓴다.
- ⑤발음이 같고 뜻이 다른 용어는 가능한 한 서로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적절한 말로 바꾸어 쓴다.
- ⑥같은 용어라도 쓰는 곳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용어는 가능한 한 그 뜻이 명백해지도록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
- ⑦고유명사나 학술·기술분야의 전문용어로서 우리의 언어감정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관계 부처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이에 맞는 용어로 바꾼다.
- ⑧외래어는 가능한 한 쓰지 아니한다. 그러나 바꾸어 쓸 적절한 우리말 용어가 없는 것은 그대로 쓴다.
- ⑨문교부 기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국어순화운동에 의하여 결정된 용어중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검토를 거쳐 가능한 한 그 결과에 따른다.

4. 現行法令整理事業

법령정비사업은 1961년도에 구법령정리위원회를 설치하여 日本式法令을 전부 우리 법령으로 정리한 바 있고, 1969년도에 법령 한글화 작업으로 대통령령 이하의 법령을 모두 한글로 정리한 바 있으나, 이는 과거의 법령을 現代化하는 형식적 의미의 정비에 불과하였으므로 법령상호간의 모순·저촉 등 불합리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現行法令整理事業은 1977년 부터 2년간에 걸쳐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해 전반적으로 1차 검토하여 정비한 바 있다. 그 결과는 총 2,790개 법령(법률 675·대통령령 1,210·총리령과 부령 905)을 검토하여 그중 288개 법령에 대한 정비안을 작성,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정비하였는데 1978년까지 정비 완료한 것이 154개 法令이며 나머지 131개 법령은 정비내용이 경미한 것으로 그 후 다른 개정요인이 있을 때 정비하도록 하

였다. 구체적인 실적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4)</sup>

〈법령정비안의 유형별 분석〉

유형별 / 법령별	합 계	법 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법령·제도개폐에 따른 법령의 미정비	265(55%)	105	104	3
인용조항의 오류	34(7%)	26	5	3
용어 등의 부정확한 사용	29(6%)	25	4	
법령상호간의 모순·저촉	25(5%)	18	4	3
법리상·조리상 타당성 결여	23(5%)	20	2	1
기 타	109(22%)	73	28	8
합 계	485(100%)	267	147	71

위에서 「용어의 부정확한 사용」이 전체의 6% 수준에 불과하나, 법령용어순화정비 및 한글·한자표기기준에 대한 용어의 정비에 관하여는 기타사항(22%)으로 분류되었다.

## Ⅱ. 法令用語整備事業의 細部的 推進實績

### 1. 基本方向

法制處에서는 법령에서 쓰이는 용어를 보다 알기 쉽고 명확·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그동안 법령용어순화정비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법령에서 쓰이는 용어는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울 뿐만 아니라 국민감정과 시대성에 맞는 용어가 되어야 할 것이나, 아직도 우리 法令에 쓰이고 있는 용어중에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 시대성에 맞지 아니하는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더 나아가서는 일본식 용어 그밖에 외래어가 쓰이고 있어 이를 순화·정비하는 작업이야말로 法制의 民主化와 법의 생활화를 위한 기초적인 과제라고 보겠다. 따라서 法制處에서는 그동안 제정·시행하여 오던 「법령용어정비요강」과 「법령용어순화정비기준」의 내용을 앞

24) 法制處, 「法制處四十年史」, 264~265面 참조.

으로 계속 적용하되, 이를 보다 체계화·명확화하기 위하여 ①用語의 民主化, ②用語의 平易化, ③用語의 明確化, ④用語의 標準化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의 민주화·법의 생활화를 위한 순화정비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用語의 民主化

우선 법령용어순화정비기준 제3항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용어와 국민감정이나 시대성에 맞지 아니하는 用語는 다른 말로 바꾸어 쓰며, 민주발전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적합한 용어의 선택 등 「用語의 民主化」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순화·정비를 추진한다.<sup>25)</sup>

- 〈보기〉 · 출두(出頭) ----- 『출석』(出席)으로 한다.  
 · 하명(下命) ----- 『명령』(命令)으로 한다.  
 · 하달(下達)하다 ----- 『알리다』로 한다.

### (2) 用語의 平易化

漢字用語는 가능한 한 한글용어로 풀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오히려 풀어쓰므로써 그 뜻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대로 쓰며, 또한 中等教育을 받은 정도의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바꾸어 쓴다(정비기준 1.2.4항 참조).<sup>26)</sup>

- 〈보기〉 · 구거(溝渠) ----- 『도랑』으로 바꿈(암거(暗渠) : 덮은 도랑)  
 · 감능(堪能) ----- 『감당할 능력』으로 풀어씀  
 · 건錠(鍵錠) ----- 『자물쇠』로 한다(시건(施鍵) : 잠금)

### (3) 用語의 明確化

표현이 너무 간단하여 알기 어려운 用語 또는 간략하게 쓴 약어는 될 수 있는 한 명확한 말로 풀어쓰며, 같은 용어라 하여도 쓰임이 다르거나, 발음이 같고 뜻이 다른 용어(同音異意語)는 될 수 있는 한 그 뜻이 혼동되지 않고 명백해지도록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정비기준 5, 6항).

25) 「법령용어순화정비업무추진(1988. 10.12, 법조 02101-1505)」과 관련 기본방향설정.

26) 박갑수, 「법률용어·문장 왜 이리 어려운가」, 언론비평 1988.7., 76 ~ 77면.

- 〈보기〉 · 공용(共用) ----- 『공동사용』으로 풀어씀  
 · 잡칙(雜則) ----- 『보칙(補則)』으로 함  
 · 사위(詐僞)·허위(虛僞) ----- 『허위』로 통일

(4) 用語의 標準化

법령용어를 비롯하여 법조문의 문장표현에 있어서 문장부호·띄어쓰기 등 교육부에서 제정, 고시한 「한글맞춤법·표준어규정」에 의하여 표기한다. 外來語는 될 수 있는 한 쓰지 아니하되 바꾸어 쓸 적절한 우리말 용어가 없어서 외래어를 쓸 경우에는 「외래어표기법」에 맞추어 표기하고 고유명사·학술용어·전문용어의 표기는 관계 專門家의 자문을 들어서 표기한다(정비기준 7,8,9항).<sup>27)</sup>

- 〈보기〉 · 회계년도(會計年度) ----- 『회계연도』, 『과세연도』  
 · 귀절(句節) ----- 『구절』(句節)  
 · 도시가스(gas) ----- 『도시가스』로 한글맞춤법·외래어표기법에 의한 표기 원칙을 통일한다.

2. 用語整備 推進節次

법령용어정비의 추진절차는 정비대상용어의 수집단계, 관련기관 등의 검토단계, 최종확정단계 등 크게 나누어 3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1) 整備對象用語의 선정

법령용어순화정비업무는 그 기본방침으로서 日常生活共用 法令用語整備의 추진(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순으로)과 固有法令用語整備의 2가지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前者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의 용어정비·개선에 중점을 두고, 後者는 고유법령용어 검토 및 대체용어를 선정한 다음 이를 보다 신중히 하기 위하여 「法令用語審議會」의 1차심의를 거친 다음, 학계·전문가의 자문회의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행정용어순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한 후, 국무회의의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sup>28)</sup> 「정비대상

27) 外來語表記에 관하여서는 「외래어표기용례집(문교부, 1988. 8. 30)」의 사용례에 따라서 표기한다.

28) 「행정용어바르게쓰기에 관한규정(1991.12.11, 국무총리훈령 제252호)」 제5조, 제9조, 제10조

용어」의 선정방법은 「법제처 자체정비안」과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정비안」으로 二元化하여 추진하고 있다.

①法制處 자체정비대상용어 선정

법제처에서는 法令用語의 민주화작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컴퓨터시스템 이용등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비대상용어」를 선정하고 있다. 29) 종전까지는 정비대상용어를 선정함에 있어서 手作業으로 법령조문을 하나 하나 읽어가면서 對象用語를 조사·검토하였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확성도 없었다. 또한 관련부처에서는 전체 소관법령에 대한 전면적인 용어의 조사가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주요법령에 대한 形式的인 調査로 그치거나 또는 정비대상용어가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30) 아울러 정비대상용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法制處에서 법령심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제관이 부처별 소관법령에 대한 정밀검토를 하고 整備하여야 할 용어들을 선정하고 이를 취합하여 컴퓨터에 의한 관련조문 검색과 함께 종합하여 자료집을 작성한다.

②關聯機關 정비의견 접수

작성된 법령용어순화정비대상자료집(안)을 각 국회·대법원,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에 발송하여 각 기관 소관법령용어를 중심으로 整備意見を 제출토록 한 후, 제출된 정비의견을 통합·정리하여 담당법제관실에 통보하고 1차심의과정을 거친다. 제출된 정비안을 토대로 이를 참고하여 擔當法制官室에서 연구·검토하여 제1차정비안 작성하고, 담당법제관은 1차정비안을 실무반장에게 제출하고 종합정비안을 작성한다. 이러한 법제처 자체정비안(가)과 관련기관의 정비의견(나)을 취합하

참조.

- 29) 法制處에서는 대한민국헌법법령집에 수록된 모든 법령 약 3,000여건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검색하는 「법령전산화시스템(LIRES - Legal Information Retrieval Electronics System)」을 1983년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1987년에 완전히 실용화하여 현재 法令審査業務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법령용어정비사업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업을 착수하고 있다. ① 法令用語의 키워드화(key word) : 현행법령집(총 50권)에 수록되어 있는 용어는 법령용어 뿐만 아니라 생활용어까지 포함하여 약 10만개의 용어집(key word file)을 출력·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법령에서의 사용빈도에 따라서 분류한다. ② 整備對象用語 豫備資料作成 : 위와 같이 용어의 사용빈도에 따라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분류로 「정비대상용어 예비자료」를 작성하고 이 자료를 중심으로 「정비대상용어」를 서식에 의하여 선정한다.
- 30) 「1986년도 법령용어순화정비추진계획(1986. 4. 16. 기획 02101-685)」에 의하여 각부처로 부처의 整備意見 접수현황은 중앙행정기관 41개 기관(발송처)중에서 의견회신기관은 21개 기관으로 약 50%수준에 불과하였다.

第3章 우리나라 法令用語의 課題

여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최종적으로 「整備對象用語」를 확정한다.

(2) 整備對象用語의 관련기관 검토

법제처작성 자체정비의견과 相關기관의 정비의견을 종합한 「整備對象用語資料集(案)」을 국회·대법원,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등 相關기관과 국립국어연구원·한글학회·대한변호사협회등 相關연구단체에 발송하여 정밀검토하도록 한다. 相關기관 및 연구단체등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이 「對比資料集」을 작성하여 법령용어 심사과정에서 비교·검토하는데 활용한다.

〈법령용어정비 각계의견대비자료집〉

정비대상자료(법제처원안)				자문 위원	각기관 검토의견		
대상용어	바꿈말	정비 의견	사 용 레 (반대의견제시이유)		중앙행정	지방행정	국회, 법원
				조정	바꿈말· 의견	바꿈말· 의견	바꿈말· 의견
내방 (來訪)	찾아옴	→	관세 §30등 7건		= (재무)○	= (충남)×	= →
내부 (內部)	안, 속	○	금융실명거래 §5 등 361건		= ○	= (전북)×	= ○
내수용 (內需用)	국내소 비용	○	관세규칙 §28 등 4건		= ○	= (전남)×	= (대법)×
내역서 (內譯書)	명세서	×	개발이익환수 §20 등 28건		= (외무)→	= ×	= (국회)×
내왕(來 往)하다	오가다	○	오지개발촉진령 §2 등 3건		= ○	= (충남)×	= (대법)×

※약자·기호표시

(재무)·(외무)는 재무부·외무부의 약칭이고, 충남(충청남도)·전북(전라북도)는 각각 지방행정기관의 정비의견 표시이며, 원안찬성(=), 바꿈말만 사용(×), 병행사용(○), 권장사용(→) 표시임.



(3) 國語學者 등 각계 전문가자문

위의 양식에서와 같이 法制處原案에 대하여 相關기관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客觀적 立場에서 심사할 수 있는 國어학자·한글학자 및 법률가(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는다.<sup>31)</sup>

(4) 法令用語審議會의 심사

정비대상이 되는 법령용어에 대해서는 法制處 次長을 위원장으로 하며, 실·국장·법제관 및 판사·검사를 위원으로 하는 「법령용어심의회」에서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확정한다. 또한 심의회의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제고와 각 원·부·처·청의 의견수렴 등 공동으로 法令用語整備業務를 추진하기 위하여 相關법제관의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하고, 쟁점이 되는 용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 및 소관법제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5) 官報公告·國務會議報告 및 便覽發刊

법제처에서 심사·확정된 「법령용어순화정비자료집(안)」은 정부 행정용어순화위원회에 통보하고, 이 委員會의 의결을 거친 다음 관보에 公告하여 일정기간 예고하여 국민일반의 의견을 취합한 후 이를 다시 재검토·정리한 다음 國務會議에 보고하여 최종확정하며, 확정된 法令用語에 대해서는 「법령용어순화편람」을 발간·배포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용어순화편람 서식〉

대상용어	바  꿈  말	정비의견	사  용  례
가(假)수용시설	임시수용시설	→	도시재개발 § 34, 도시재개발령 § 18①, 건축령 § 10①
가도(假道)	임시도로/통로	○	도시계획 § 5①, 택지개발 § 10①, 토지구획 § 36①
가병(假病)	피 병	×	교정시설경비 § 11⑥

31) 현재 자문위원으로는 최광률(헌법재판소재판관), 박갑수(국어학 서울대교수), 이오덕(국어학자), 정재도(한글학회 전이사)등을 위촉하여 자문을 받고 있다.

※ 『정비의견』에서 기호표시

○(병행사용), →(권장사용), ×(정비된 용어만 사용)

『사용례』의 표시

- 도시재개발 §34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 도시재개발령 §18① -----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8조제1항

### 3. 細部的 推進內容과 實績

#### (1) 法令用語整備의 基盤造成(1983~1986)

법제처에서는 정부수립이후 추진하여 오던 법령용어정비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활성화하여야 한다는 大統領指示(국행이 100-98, 1983.2.28)를 근거로 1983년 부터 법령용어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일상생활공용법령용어 정비·개선」을 위하여 법제관실로 하여금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대상용어의 검토를 통한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한편 법령용어정비총괄담당관(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법제관실사무관을 반원으로 하며 법제기획관실사무관을 간사로 하는 法令用語實務作業班을 두었다. 작업추진은 소관별로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개선이 필요한 法令用語는 심의회에 부의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확정·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원·부·처와의 공동정비계획을 추진하여 소관법령 검토 및 대체용어를 선정하여 법제처 법령용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 채택된 용어를 확정·시행하였다.

또한 「고유법령용어의 정비·개선」을 위하여 법령용어정비총괄담당관이 주관하여 고유법령용어 검토 및 대체용어 선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선정된 용어에 대해 법령용어심의회 제1차 심의와 학계·정책자문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이를 다시 제2차 법령용어심의회를 개최하여 확정·시행하였다. 그리하여 제1차적으로 법률만을 대상으로 用語整備를 실시하였으며 그 실적은 다음과 같다.<sup>32)</sup>

32) 한편 소관부처별 법령용어정비 검토실적으로서 1983·1984년도 법제관실에서 제1차 검토건수는 법률 99건, 445개항목으로 부처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관부처	검 토 법 률	법제처 실·국
경제기획원 총 무 처 건 설 부 교 통 부	· 예산회계법, 조달기금법 등 7건 · 연호에관한법률 등 3건 · 도시재개발법, 측량법, 토지수용법 등 13건 · 철도법, 선원법, 선박법 등 7건	법제조정관실소관  계 30 건

일상생활공용 법령용어정비 현황	구 분	대상법률	대상용어	비 고
	자체정비안 마련	99	445	
	관련부처정비안마련	187	481	
	계	286	926	
고유법령용어 정비·개선	695개 법령용어선정, 대체용어 검토			

①법령용어순화편람 제1집 발간(1985)

위와 같은 1983부터 1984년에 걸친 추진결과를 편람으로 발간하여 법령용어순화정비에 참고로 하며 法令案審査에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용어순화편람(법률부문)」을 발간하였다. 발간내용은 1983년부터 1984년도에 걸쳐 법률에서 추출한 대상용어 1,360여개의 용어를 가, 나, 다순으로 정리하여 바꿈말을 재검토 하고 조정하여 1,000여개의 용어를 선정하였다. 또한 바꿈말에 대하여 전문가의견을 들은 후 소책자형식으로 발간하여 각 법제관실에서 활용하고 각 부·처·청에도 배부·활용토록 하였다.

②법령용어순화편람 제2집발간(1986)

1986년도에는 정비대상용어를 大統領令에서 대상용어를 선정하는 한편 특히 건

내 무 부 문교부·체육부 보건사회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법, 도로교통법, 교물영업 등 10건</li> <li>· 도서관법, 사회교육법, 교육법등10건</li> <li>· 식품위생법, 보건소법등 9건</li> </ul>	제 1 국  계 29 건
재 무 부 노 동 부 농수산부 상 공 부 동 자 부 체 신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전매법, 홍삼전매법등 4건</li> <li>·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등 6건</li> <li>· 농업기본법, 농촌진흥법 등 15건</li> <li>· 중소기업기본법, 계량법등 7건</li> <li>· 전기공사법 등 4건</li> <li>· 전기통신법, 우편법 등 4건</li> </ul>	제 2 국    계 40 건
총 계		법률 99건

설·수산업분야 등 특수전문분야의 법령용어정비에 주력하였다. 추진방법으로는 각 부처가 소관법령 대상용어를 法制處에 제출하여 법제처가 단일안을 작성하고 이를 법령용어심의회에 심의하였다. 그리하여 220여개의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각 부처가 선정한 1,700여개 대상용어중 이를 검토·보완하여 필요없는 용어를 제외하고 180여개의 대상용어를 재선정하여 법령용어순화정비안을 마련하였다. 이 결과 1983년부터 1986년도의 추진결과를 총정리한 「법령용어순화편람 제2집(증보판)」을 발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각원·부·처·청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 (2) 法令用語의 民主化推進(1988~1990)

이 기간은 6·29선언 이후 憲法改正을 비롯하여 많은 법령을 새 헌법의 민주화 이념에 맞도록 대폭적으로 보완·정비하는 등 법제개혁이 크게 이루어졌다.<sup>33)</sup> 따라서 법제개혁추진과 병행하여 法令用語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쓰이는 일상생활 용어 및 법령문장의 표기형식도 「민주화이념」에 맞도록 순화정비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을 「법령용어의 民主化 推進期間」이라고 볼 수 있다.

### ① 法制處 자체정비안 작성

법제처에서는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수준이면 알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할 것을 목표로 모든 法令(약 3,000건)을 대상으로 비민주적인 용어(권위주의적 용어) 또는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 용어, 한글맞춤법·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등 맞춤법에 맞지 않는 용어, 같은 뜻이 다르게 표현되는 용어(同意異音語), 외래어·약어·특수전문용어 등 표기가 부정확한 용어 등을 중심으로 「정비대상용어」를 선정하였다. 아울러 법령전산화시스템에 의하여 위와 같이 對象用語의 선정과정을 거친 용어를 키워드검색형식으로 당해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법령명칭·해당조문을 컴퓨터로 검색하여 整備對象用語 745건이 수록된 「법령용어순화정비 대상자료집(안)」을 발간하였다. 한편 법제처에서는 법령용어순화정비 기본계획(법조 02101-1007, 1988.7.2)에 의하여 국회·대법원,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所管法令을 검토하게 하고 정비대상용어를 선정하여 통보하도록 공문서를 발송하였다. 用語整備의 기본방향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용어의 민주화」에 중점을 두고, 권위주의적·비민주적 용어는 대폭적으로 순화·정비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관련기관의 의견제시유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4)</sup>

33) 상세한 내용은 法制處, 「민주발전을 위한 법제개혁」, 1990, 31~44면 참조.

34) 이외에도 교통부 31건, 동력자원부 28건, 농림수산부 22건, 내무부 20건 등 25개 기관에서 모두 395건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法務部提出 整備意見

「법무부제출 정비의견(1988. 8. 13, 법심 2301-11293)」은 민법·민사소송법·형법 등 총 28개 법령을 검토하고, 62개 정비대상용어를 선정하였다. 法務部의 정비의견은 「용어의 민주화」 측면에서 검토한 부분이 많은 것이 특색이다.

대상용어	바 꿈 말	정비의견	사 용 례
감항능력	안전항해능력	○	상 법 §787
속구(屬具)	비 품	○	상 법 §696
추 업	친한 업종	→	형 법 §288
상 신	건 의	→	사면법 §11
송 검	검찰송치	×	소년법 §7
초두(初頭)	첫머리	×	수표법 §2
임 검	검사, 조사	→	출입국관리법 §65, §66, §82
잡 구	기타 생활용품	→	행형법시행령 §74
잡 서	기타 서류	→	사법경찰관리집무집행법 §61
본범(本犯) (이하생략)	본래의 범죄	×	형사소송법 §11

○財務部提出 정비의견

「재무부제출 정비의견(1988. 8. 8, 법무 02101-305)」은 재무부소관 물품관리법 등 25개 법령을 검토하였고, 용어검토의견이 162건이었다. 재무부 정비의견의 특색은 재정관계 「용어의 명확화」에 많은 비중을 두고있다.

대 상 용 어	바 꿈 말	정비의견	사 용 례
잠 관	수중관	○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2
장대교	긴다리	○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2
처분대전	처분대금	○	의자도입법시행령 §34
활척관세	가격연동관세	○	관세법시행령 §4
회 시	회답	○	관세법시행령 §5
성상(性狀)	성질과 상태	→	관세법시행령 §109
기설(既說) 報	이미 설정	×	긴급통화조치법 §10
출 급	내어줌	○	물품관리법시행령 §28
(이하 생략)			

②법령용어순화편람 제3집 발간(1990)

법제처에서는 각 부처로부터 접수된 정비의견을 통합·정리한 「제1차 정비안」을 중심으로 제1차 法令用語審議會를 개최하여 각 부·처·청의 정비의견을 검토하고 구체적 심의방법을 논의하는 한편 각부처의 정비의견에 대하여 법제관(부처담당별)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그 의견을 제출받았다. 이를 토대로 각부처 의견, 법제관실 의견과 상치되는 용어 약 150개에 대해서는 국어학자의 자문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법제관실 검토와 각계 전문가의 자문 및 「법령용어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용어 1,820여건('86년이전정비 1,180건, '90년추가 640건)의 용어를 수록하여 다음의 형식으로 「법령용어순화편람」 제3집을 발간하고 관련기관에 배포하였다.<sup>35)</sup>

정비대상용어	정비된 용어	정비의견	사 용 례
가가호호(家家戶戶)	집집마다	×	근로기준령 §45
가각(街角)	길모퉁이, 길모서리	×	도로구조령 §28. 도시계획규칙 §3의 2 등 4건
가건물(假建物)	임시건물	○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규칙 §99 등 3건
가검물(可檢物)	검사할 물건	×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규칙 §99 등 3건
가금(家禽)	집짐승, 집새	×	조수보호및수렵 §2, 수의사 §2 등 28건
가급적(可及的)	되도록이면, 될 수 있는대로	×	한국은행 §76
가내(家內)	집 안	×	자연공원 §16
가능(可能)한	할/될 수 있는	→	건설기술관리 §36, 관세령 §2의3 등 58건

(3) 法令用語의 한글화 및 외래어정비(1991~1992)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동안 법령용어정비의 기

35) 법령용어순화편람에는 ①법령용어순화정비자료 1,820여건 ②법령에서 한글·한자사용기준 550건 ③헌법에서 한글사용례 171건 ④법령의 한글화작업시 채택용어 172건 ⑤법령의 한글사용례 782건 등 총 3,495건이 수록되었다.

본방향이 「용어의 민주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것이었다면 1991년부터 1992년의 기간에는 그 기본방향을 어려운 漢字用語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용어의 평이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sup>36)</sup> 그리하여 우선 정비방향의 취지에 맞도록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어려운 한자용어를 조사하여 整備對象用語를 선정하였다.

정비대상용어의 선정에서 한자용어의 조사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간한 「국어 순화자료집(1988. 12)」을 참고로 순화대상용어 중 현행법령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일상생활공용법령용어 1,054건,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외래어 122건 등 모두 1,176건을 수록한 「정비대상용어자료집(안)」을 1991년 4월에 발간하였다. 동자료집에 수록된 대표적인 풀어쓰기 용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비대상용어	바꿈 말	정비의견	사 용 례
가납(假納)	임시로 냄, 임시납부	→	관세 § 227, 형사소송 § 334, § 477 등 41건
가사용(假使用)	임시사용	×	건축 § 7④ 등 10건
가인(加人)	추가 도장 찍음	○	국회의원선거 § 107
가제(加除)	같이 끼움	○	서식제정절차 § 11 등 9건
가중(加重) 됨	더 무거워짐	→	밀항단속 § 2, 조세범처벌 § 2 등 146건
가출(假出)	임시 내보냄	○	법원사무규칙 § 30
가해(加害)	해침, 해를 끼침	→	특허 § 65 등 37건
간과(看過)	보아넘김		민사소송 § 126
간수(看守) 하는	지키는		형사소송 § 172⑥ 등 47건
간헐(적)(間歇的)	이따금		전기설비기술기준규칙 § 187
갈취(喝取)	빼앗음		군형규칙 § 47
감경(減輕)	가볍게 줄임		형 § 10 등 42건
강하(降下)	내 립		군인사 § 57 등 40건
개개(個個)	날 날		군인복무규율 § 45 등 3건
개임(改任)	다시 임명		유해화학물질관리 § 6

※ 바꿈말만 사용(×), 병행사용(○), 권장사용(→)

그리고 法令用語 整備基準에 제시된 외래어표기원칙에 따라 현행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외래어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모두 122건의 외래어를 정비대상용어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36) 「법령용어순화정비업무추진의 기본방향과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제출에 대한 공문발송(1991. 4.20, 법제 01270-560)」.

第3章 우리나라 法令用語의 課題

정비대상용어	바꿈 말	정비의견	사 용 례
가솔린(gasoline)	휘발유	×	산업안전기술기준규칙 §256 등 6건
게임(game)	경기	×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령 §22의 2 등 2건
그래프(graph)	도표, 그림표	×	원자력령 §8
기어(gear)	톱니바퀴	○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규칙 §474
너트(nut)	암나사	×	건축물의구조기준규정 §63 등 2건
네온사인(neonsign)	조명판	○	국회의원선거령 §30 등 2건
댄스홀(dance Hall)	무도장	×	전기사업규칙 §2
덤프(dumping)	부당염매, 막팔기	×	관세 §20 등 13건
드럼(drum)	강철통	○	발전용화력설비기술령 §7 등 19건
드릴(drill)	송곳, 기계송곳	○	산업안전기준규칙 §44
디자인(design)	설계, 도안, 의장	×	디자인·포장진흥 §1
라벨(label)	(상)표	×	부가가치세령 §46
램프(lamp)	등	×	소방용기계 §487

※ 바꿈말만 사용(×), 병행사용(○), 권장사용(→)

①關聯機關의 檢討意見

법제처에서는 「정비대상용어자료집」에 수록된 1,176건(법령용어 1,054건, 외래어 122건)에 대하여 국회·대법원,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등과 연구단체 등 97개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인천직할시·강원도 등)에서 추가로 정비요청한 용어 약 200여건을 포함하여 정비대상용어의 총 건수는 1,382건으로 늘어났다. 또한 정밀검토의견을 제시한 기관은 국회·대법원,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국립국어연구원, 한글학회 등 41개 기관·단체 등이며, 의견접수현황은 연 건수 3,609건<sup>37)</sup>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 대법원이 제시한 정밀검토의견(1991. 8. 5. 법무 제750호)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에서는 法制處原案에 대하여 대부분 바꿈말만 사용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7) 구체적으로는 ①立法·司法府 : 국회 141건, 대법원 293건 ②中央行政機關 : 법무부 및 대검찰청 186건, 재무부 103건, 농림수산부 102건등 ③地方行政機關 : 전북 566건, 경남 176건, 인천 500건등 ④研究機關 기타 : 국립국어연구원 358건, 한글학회 105건, 대한법률구조공단 54건 등이었다.



대상용어	법 제 처 원 안		정 밀 검 토 의 건		비 고
	바 꿈 말	정비의견	바 꿈 말	정비의견	
가위탁(假委託)	임시위탁	○	임시위탁	×	바꿈말만사용
가제(加除)	갈아끼움	○	갈아끼움	×	"
가출(家出)	임시반출 (내보냄)	○	임시반출 (내보냄)	×	"
개개(個個)	날날	○	날날	×	"
개임(改任)	다시 임명	○	다시 임명	×	"
개호(介護)	간호, 보호	×	"돌보기, 돌봐주기 보살핌"을 추가	→	권장사용
개조(改造)	다시 고침	○	다시 고침	×	바꿈말만사용
거수(擧手)	손들	→	손들	×	"
거증(擧證)	증거 들	→	증거 들	×	"
건조(乾燥) (이하 생략)	말림	→	말림	×	"

※ 바꿈말만 사용(×), 병행사용(○), 권장사용(→)

②법령용어순화편람 제4집 발간(1992)

그동안 법제처에서 발간한 세 차례의 「법령용어순화편람」에는 모두 1,820여개 용어가 수록되어 있었으나, 그곳에 수록된 많은 용어들은 완전하게 다듬어진 용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동안 法令審査過程에서 직접 사용하는데 적절치 아니한 용어도 있고, 점차로 법령을 쉬운 문장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청에 따라 이미 정비된 용어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말로 풀어쓰도록 재검토작업을 착수하게 되었다.<sup>38)</sup> 따라서 1,820여개 정비용어를 대상으로 總務處에서 발간한 「행정용어순화편람」과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간한 「국어순화자료집」 등을 중심으로 각부처 정비의견, 법제관 검토의견, 관련연구기관 검토의견, 각계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수집·대비하여 「법령용어정비 각계의견 대비자료집」을 발간하였다.<sup>39)</sup>

38) 재검토 대상건수는 전부 871건이었으며, 바꿈말만 사용하기로 한 용어가 663건, 행정용어순화편람과 차이가 있는 용어가 208건 등이었다.

39) 여기에 의견을 제시하였거나 검토에 참여한 기관은 41개 기관이며, 전문가(법제관 15, 국어학자 3) 등 18명으로 매우 심도있게 검토하였다.

第3章 우리나라 法令用語의 課題

法制處에서는 이 「각계의견 대비자료집」을 토대로 「법령용어심의회」를 개최하여 집중적인 심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심사한 用語는 2,955건('86년수룩 916건, '90년 수룩 589건, '92년 추가 1,450건)으로 매우 방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심사된 용어는 「행정용어바르게쓰기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 252호)」 제5조 및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總務處·文化部 등 관련기관 국장급으로 구성된 「행정용어순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보 등에 공고한 다음에 국무회의의 보고를 거쳐 정부차원에서 「행정용어순화편람」을 발간하였다.

(4) 法令用語의 標準化·明確化(1993~1994)

①법령용어정비대상자료집(안)의 작성

1993년부터 法制處에서는 제1차계획기간(1988~1990)의 「용어의 민주화」, 제2차계획기간(1991~1992)의 「용어의 평이화」에 이어 「용어의 표준화·명확화」와 「외래어의 정비」에 중점을 두어 순화업무를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法令用語(일상생활용어 포함) 772건 및 1993.2.1 이후 공포된 법령을 대상으로 110건, 외래어 138건 등 모두 1,020건을 선정하여 1993년에는 「법령용어정비대상자료집(안)」을 작성하였다. 대표적인 용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정비대상용어	정비된 용어	정비의견	사 용 례
가공(加工)한	첨가한, 덧붙인	○	형 §33, 부가가치세 §17, 특별소비세 부칙 §4, §9, §10, §32 관세 §32, 농산물검사 §3
가소물(可燃物)	탈 수 있는 물건	×	발명보호령 §1
가습기(可濕器)	실내습도조절기	×	의장규칙 별표
가승계(假承繼)	임시승계	×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7, §8, §10
가점(加點)	보탬점수	○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규칙 §4
(이하 생략)			국가유공자예우 §34, §70, 지방공무원 임용령 §32,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규칙 §14 등

정비대상용어	정비된 용어	정비의견	사 용 례
가스스토브(stove) 가이드레일(guid rail)	가스난로 안내궤도/선로	× →	의장규칙 별표 승강기제조및관리규칙 별표2 산업안전기준규칙 §100, §161, §163.
개스터빈(gasturbine) 걸스카웃(girl scout)	가스터빈/원동기 걸스카우트/소녀단	× ×	지방세규칙 <별표 2> 소년원및소년감별소급여규칙규 칙 <별표 3>
게임용 카드(game card) 경찰 마아크(mark) 구아테말라(guatemala) 그램(gram)	놀이용 딱지/카드 경찰마크/경찰표 과테말라 그램	× × × ×	의장규칙 별표 경찰표창규칙 <별표 2> 국외여비규정 <별표> 비고 재소자의류및침구제식등규칙<별 표 8>
그린색(green) (이하 생략)	녹색	→	군인복제<별도 1>

※ 바꿈말만 사용(×), 병행사용(○), 권장사용(→)

### ②법령용어정비 각계의견 대비자료집 작성

法制處에서 작성한 「법령용어정비대상자료집(안)」에 수록된 1,020개 용어(법령 용어 882건, 외래어 138건)에 대하여 법제관실에서 法令審査와 관련하여 정밀검 토하는 한편, 국회·법원·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등 55개 기관에 이를 배포(조사 01270-114, 1993.7.6)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 제관실 및 31개 기관에서 2,543건의 用語에 대하여 정밀검토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종합·정리하여 「법령용어정비 각계의견 대비자료집」을 작성하였다.<sup>40)</sup> 참고 로 法務部에서 제시한 검토의견('93.9.28, 행정 01270-207)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0) 의견접수현황으로는 ①法制官室 : 525건 ②中央行政機關 : 법무부 및 검찰청 157건, 외무부 189건, 내무부 63건등 ③地方行政機關 : 대구직할시 510건, 경북 132건, 전남 202건등이었다.

第3章 우리나라 法令用語의 課題

자료 집면 표시	대상용어	바 꿈 말	정비 의견			참 고
				바 꿈 말	정비 의견	
1	가공한	첨가한, 덧붙인	○	가담한, 가담하여, 거들어 준, 첨가한 덧붙인	×	형법상 의미는 다르므로 추가 의미를 알 수 있 으면 한글사용
	가점	보탬점수	○	덧점수/보탬점수	×	
2	가출소 강풍	임시출소 센바람	×	현행대로 사용 센바람	×	의미를 알 수 있 으면 한글사용
3	감찰 개정하다	감시하여, 살핌 재판을 열다	○ →	현행대로 사용 재판을 열다	×	의미를 알 수 있 으면 한글사용 여러 종류의 갱 을 적절히 표현 하고자 함
	갱구	구덩이입구	×	구덩이입구/굴입구	×	
4	경광등	경보표시등	→	경보표시등	×	
5	고성방가	큰소리로 노래부름	→	함부로 크게 노래 부름/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부름	×	
	이하	생략				

③각계 전문가자문과 법령용어심의회 개최

법제처 자체선정용어인 「법령용어정비대상자료집(안)」을 법제관실,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밀검토요청을 하고, 법제관실 및 각부처에서 제출한 정밀검토의견을 취합, 이를 종합정리하여 「법령용어정비 각계의견대비자료집('94.6.2, 조사 01270 -103)」을 발간하였다. 아울러 法制處案과 相關기관 의견이 다른 용어에 대하여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다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 「대비자료집」에 대하여 국어학자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專門家의 자문을 거친 후 법제처에서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실·국장, 相關법제관을 위원으로 하는 법령용어심의회를 개최, 각부처에서 정밀검토한 후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정비대상용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확정하였다. 특히 이번 用語審議

會에서는 바꿈말만 사용(×)하기로 한 용어에 대하여 더욱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고, 「일본식 표현용어」의 정비에 비중을 두었다.

④법령용어순화편람 제5집 발간(1994)

법령용어순화편람에는 제1집 부터 제4집에 걸쳐서 모두 2,955개의 용어가 정비·수록되었으나 法制處에서는 관련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제5차로 선정된 정비대상용어와 함께 2,955건의 용어에 대하여도 법령용어심의회에서 재검토하였다. 특히 법제처안과 행정용어순화편람('92.12)과 차이가 있는 用語들을 재심사하여 용어심의회에서 확정하였다. 法制處에서는 이 「법령용어순화정비(안)」을 토대로 1994년 12월 법령용어심의회를 개최, 최종적으로 3,880여건(외래어 282건 포함)을 심의·확정하여 이를 수록한 「법령용어순화편람 제5집」을 발간하고 관련기관 및 연구단체에 배포하였다.<sup>41)</sup> 제5집의 발간형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비대상용어	정비된 용어	정비의견	사 용 례
·가가호호(家家戶戶)	집집마다	×	근로기준령 §45
·가각(街角)	길모퉁이, 길모서리	×	도로구조·시설기준령 §26, 농어촌도로구조·시설기준규칙 §24, 지하도로시설기준규칙 §8
·가건물(假建物)	임시건물	○(×)	옥외광고물등관리령 §17, 항공규칙 §246
:가공(加功)	첨가한, 덧붙인, 가담한	→ ×(○)	형 §33, 부가가치세 §17, 특별소비세 §20, 관세 §32, 농수산물검사 §3 등
·가금(家禽)	집짐승, (집새)	→(×) ×(→)	수의사 §2, 가축점염병예방 §2, 가축전염병예방방법 §2, 조
·가급적(可及的)	되도록이면, 될 수 있는 대로	→(○) ×	수보호및수렵 §2, 축산 §2, 소득세령 §36 등 27건 한국은행 §76, 동물보호 §3, 공무원교육훈련령 §8, 지방공무원임용령 §334 등 33건

41) 「법령용어순화편람 제5집」에는 법령용어순화정비자료 3,880여건, 법령에서 한글·한자 사용기준 550건, 헌법에서 한글사용례 171건, 법령의 한글사용례 782건등 전부 5,383건이 수록되어 있다.

第3章 우리나라 法令用語의 課題

정비대상용어	정비된 용어	정비의견	사 용 례
* 가납(假納) · 가내(家內) · 가능(可能)한	임시납부, (임시로 냄) 집 안 할/될 수 있는	→(×) ×(→) →(○)	형소 §334 등 41건 자연공원 §16 건설기술관리 §36, 주택건설기준규정 §30, 항공령 §17, 어선설비규칙 §127, 등 65건
가도(假道) (이하 생략)	임시 도로	×	도시계획 §5, 도로 §48

※90정비(·), 92정비(\*), 94정비(:), 정비된 용어만사용(×), 병행사용(○), 권장사용(→)

이상 1985년부터 1994년에 걸친 「법령용어순화편람」 발간실적을 主體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령용어순화편람 발간실적(1985~1994)〉

발간연도	수 록 건 수	중 점 사 항
1995.7.1(제1집)	1,000건(88면)	○법률중에서 대상용어 선정
1986.12.29(제2집)	1,180건(116면) (1차1,000건+180건 추가)	○대통령령 중심으로 대상용어 선정 ○건설·수산업분야 등 특수전문분야의 용어정비에 주력함
1990.12.29(제3집)	1,820건(200면) (2차1,180건+640건 추가)	○헌법개정 등 법령을 민주화 이념에 맞도록 대폭 정비 ○법령용어 및 법령에 쓰이는 일상생활용어와 법령문장표기형식도 순화정비
1992.12.12(제4집)	2,955건(349면) (3차 1,820건+1,135건 추가) ※행정용어순화편람 - 8,673건 수록	○법제처·총무처·문화체육부 공동으로 『행정용어순화편람』 발간 ○용어의 평이화로 기본방향을 정하고, 어려운 한자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는데 중점 ○외래어 정비
1994.12.20(제5집)	3,880건(388면) (94년에 960건 추가)	○용어의 표준화·명확화에 중점 ○일본식표현용어 정비 ○외래어 정비

### Ⅲ. 몇가지 檢討課題

#### 1. 法令에서 한글사용범위의 확대

##### (1) 「法令制定過程에서의 用語·用字使用基準」의 제정

법령용어를 비롯하여 법령의 조문구성 등 법령을 기초함에 있어서 현재 大統領令·部令은 모두 한글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될 바 없으나, 法律의 경우는 한글·한자를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물론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法律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우리 법령을 우리 글자로 표기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리하여 法制處에서는 법령용어정비에 있어서도 이미 제정된 용어(漢字用語)를 한글로 풀어서 바꾸는 번잡을 피하고 한글의 사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으로서, 애당초 법률의 제정·개정과정에서부터 한글·한자사용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표기하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1988년 8월 「法令制定過程에서의 用語·用字使用基準」을 마련하여 국회 등 실무부서와 정부 각 부처에 배포한 바 있다. 이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과 「정부공문서규정」 및 「동 처리규칙」을 사용기준의 근거법규로 하여 用語·用字의 사용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國會와 협의하여 확정한 「法令에 있어서의 한글·漢字使用基準」을 정하여 구체적으로 한자용어 411건, 한자 805자를 예시하여 이를 반드시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였다.<sup>42)</sup> 나아가 이 기준은 1990년 12월 20일 법제처의 法令用語審議會의 개최와 국회협의를 거쳐 한글로 표기하여야 할 한자용어의 범위를 143개 추가하여 모두 550개 용어로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42) 또한 그 동안 한글맞춤법에 관하여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발표한 「한글맞춤법통일안」이 있었으나 학설이 각각 다르고 政府次元에서 확정된 통일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法令에 있어서 용어의 표기와 문장부호, 띄어쓰기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문교부)에서는 장기간의 연구와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1988년 1월 19일에 「한글맞춤법·표준어규정」을 확정·고시한 바 있다. 法制處에서도 새 한글맞춤법·표준어규정의 마련에 따른 법령용어의 표기방법에 관하여 문교부·한글맞춤법 담당교육연구관과 학계의 자문을 받아 「한글표기용례집(1988.5)」을 발간하여 각부처청의 法務擔當官會議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법령안 기초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배포하였다. 이 자료는 法令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315개 용어를 선정, 종전의 맞춤법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사용례(예컨대, 은익(×) → 은닉(○))를 제시하고 법령표기에서 새 맞춤법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2) 「한글·漢字使用基準」의 재정비

법제처에서는 현재 法律에서만 쓰이고 있는 「한글·漢字使用基準」이 일정한 원칙이 없고, 어려운 漢字를 아직도 많이 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자사용범위를 대폭 줄이고, 한글사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법제처에서는 1992년 5월부터 각계 전문가의 諮問과 법령용어심의회의 審議를 거쳐 법령에서 한글로 표기할 「용어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sup>43)</sup>

- 日常生活用語로서 漢字로 표기하지 아니하여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  
〈보기〉 共通, 交際, 感謝, 勿論, 模樣 등
- 常用漢字(1,800자 이내)가 아니거나, 보통 쓰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한자어  
〈보기〉 擁護, 紐帶, 顛覆, 綻露 등
- 동사·형용사·부사로 쓰이는 용어 가운데 漢字表記가 적합하지 아니한 용어  
〈보기〉 卓越한, 期必코, 粗雜한, 惹起하다, 疏忽하다
- 최근에 입법한 法令에서 한글로 표기한 용어  
〈보기〉 願하다(민법 §795) 등
- 중전의 한글표기용어와 쓰임이나 성격이 비슷한 용어  
〈보기〉 兼任(중전 한글표기용어) : 漏泄, 物件 등  
\*兼職(새로 선정한 용어) : \*漏出, \*物品 등

이러한 「한글표기용어 선정기준」에 의하여 일상생활용어로서 漢字로 표기하지 아니하여도 누구나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는 모두 한글로 표기한다는 방침을 설정하고, 1990년 12월에 마련한 「한글·漢字使用基準」에 포함되어 있는 550개 용어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1,226개 용어를 선정하여 법령용어심의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다.<sup>44)</sup> 아울러 현재 法制處에서는 이 기준안을 국회·대법원·문화부·총무부 등 관련기관에 정밀검토하도록 협의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들 관련기관의 협의를 마친 다음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다시 한번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를 확정하여 法律에서 한자사용범위를 최대한 축소시켜 보고자 추진중에 있다. 법제처에서 현재 마련하고 있는 「한글·漢字使用基準(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3) 이에 대해 諮問을 받은 전문가로서 박갑수(서울대교수), 정재도(한글학회 이사), 이오덕(국어학자) 등이다.

44) 그동안 漢字로 표기하던 용어들을 한글화한 대표적인 용어를 살펴보면 加入→가입, 價値→가치, 各個→각개, 各級→각급, 各自→각자, 簡潔→간결 등이다.



〈한글·漢字使用基準(案)〉

- ※ 기호표시 : ×표시 → 한글화 반대의견, ◇표시 → 재검토 등 보류의견  
 - (×대법):대법원, (×문화):문화부, (×국어):국립국어연구원,  
 (×박갑):박갑수(서울대교수)  
 - 성명표시가 없는 것은 법제처의 법제조사국장 및 법제관 의견임.

현재검토중인 『한글·한자사용기준(안)』 (총 1,226개 : 현행 550개, *표'92추가 : 676개)								
가	可能	*加入	*價値	各	各各	*各個	*各級 (×국어)	*各方面
	*各自	各種	*簡潔	干涉	*簡素	*干與 (◇박갑)	*簡易	間接
	*減輕 (×박갑, 국어, 문화)	堪當	*感謝	減少	勘案	*減量	減縮	講究
	*强要	*强勸 (×)	降下	*强行	*強化	…個	*個體	客觀的
	*離出	距離	*去來	拒否	*居所	拒絕	*居住	*舉行
	健康	*建設	健全	乾燥	*建築	揭記	*計算	揭示
	揭載	*激勵	堅固	結果	*結末	*缺如	*決定	*缺乏
	*缺陷	*結合	兼(하다)	*兼務 (×국어, 문화)	*兼業 (◇박갑)	*兼用		兼任
	*兼職	經過	*競技	經微	*輕視	經營	境遇	經由
	*輕易 (×문화, 국어, 대법), (××)		*競爭	*輕重	*經驗	*階級	*計算	*繫留 (×)
	繼續	繼承	揭示(板)	*計量	*季節	*系統	*計劃	高價 (×)
	*高級	*苦難	*高度	*高等	考慮	*固有	*故障	*固定
	*苦衷	*鼓吹 (×)	*高層	*苦痛	*困窮	困難	*空間	鞏固 (×)

第3章 우리나라 法令用語의 課題

	*空氣	共同	*空白	共用	公認	公正	控除	*共通	
				(×)		(×)	(×)		
	*公平	貢獻	*果敢	過去	*過多	*過渡	*過敏	*過密	
	*過分	*過少		*寡少		*過剩	*過重	關係	
	(×)	(×××), (×문화)		(×박갑, 문화, 대법)					
				(×××)					
	關係人	*關係者	*寬大	關聯	管理	*關心	關與	*管掌	
	*貫徹	關하여	管轄	*廣告(文,紙,板)	*交代	*交流		交付	
	*交際	*交友	*交替	*交換	區分	具備	構成(員)	*區域	
	*構造(的)	具體(的)	*具體化	*構築	求하다	*具現	*口頭	*口號	
	*區劃	*局面	*國產(品)	*局限	*群衆	*窮極(的)	勸告	*勸誘	
	*勸獎	*勸하다	*歸屬	*規格	*糾明	規模	均等	*均分	
							(×국어, 문화)		
							(◇박갑)		
	均衡	*克服	*極小(數,值,量)	極司	根據	勤務	*根本		
	*近處	金額	禁止	禁하다	*急激	*急難		*急務	
						(××), (×박갑, (×국어, 문화, 대법, 국어, 문화) 대법)			
	急迫	*急變	急速	*急增	期間	期待	基本	羈束	
								(×문화), (×)	
	寄與	記載	既存	基準	基礎	其他	忌避	*期必	
								(×)	
	期하다	機會	緊急	緊密	*緊張	*緊切			
						(×)			
						(×국어, 문화, 대법)			
								계 : 214 (125)	
나	濫用	納付	朗讀	…內	內部	內容	乃至	努力	*露出
	*濃厚	漏泄	*漏出	*能動(的)	*能力	能率(的)			
									계 : 15(5)

第2節 法令用語整備事業의 推進實績과 向後課題

다	<p>*多角(的) 多年間 *多大 *多發(的) *多變 *多少 多數 (×대법) (×국어, 문화,대법)</p> <p>*多種 且 *段階(的) *單純 *斷定 *團體 短縮 達成 達하다</p> <p>擔當 答辯 *當分間 當選 當時 當然 當初 當하다</p> <p>當該 *對價 *大綱 *待機 *對等(的) *大量 對備 對象</p> <p>代身 *對外(的) *代用(品) *待遇 對應 *待接 *對照 *大眾 (×)</p> <p>*對處 對替 *大體 *對置 *代表(的) 對하다 *對應 (×문화,대법)</p> <p>*大形(型) *大會 *道具 到來 逃亡 圖謀 *導入 *盜難 (×)</p> <p>*途中 *到着 *到處 *獨斷(的) *督促 *突然 *突入 *突出</p> <p>*同級 同等 同類 *動物 同時 同一 *同參 *動態</p> <p>*同行 ...等 *同級 *登場 *等閑視</p> <p style="text-align: right;">계 : 76(48)</p>
마	<p>磨勘 *莫論 *幕後 *滿期 滿了 *抹消 *亡失 *媒介 (×), (×국어,문화)</p> <p>每年 *每時 每月 每日 *每週 面積 *免除 *滅亡</p> <p>滅失 *命令(하다) 名目 明白 *名簿 *明細(書) 明示 (×문화)</p> <p>名稱 命(하다) 明確 *模倣 *模範 *矛盾 *模樣 *模擬</p> <p>募集 *目擊(者) *目的 *目前 *目標 *無料 *無償 *無條件</p> <p>*無限(定) *問答 *文明 紊亂 *文書 *文字 問題(點) *文化</p> <p>物件 *勿論 *物質 *物體 *物品 *未納 未達 未來</p> <p>未滿 未備 未洽 *民間 密接 *密着</p> <p style="text-align: right;">계 : 59(38)</p>

第3章 우리나라 法令用語의 課題

바	*剝奪	返納	*反對	反駁	反復	反映	*反應	*搬入	
	*頒布	反(하다)	返還	*發覺	發見	發給	發達	*發明	
	發付	發生	*發送	發展	發表	發(하다)	發行	發揮	
	方法	*防備	*方案	防止	*放置	妨害	*方向	*排奪	
	*背景	*配置	翻譯	繁雜	*煩雜 (×박잡)	*番號	範圍	犯(하다)	
	變更	變動	*變造	*變質	*變遷	*變化	*別個	別途	
	*併合	*竝行	報告(書)	保管	*普及	*保留	保有	保障	
	保全	補助	保存	補佐	保證	*補充	*普通	保護	
	服從	本來	*奉仕	*賦課	附近	負擔	不當	*附帶 (×), (×대법)	
	不得已	*部類	*部問	部分	*附屬	附與	*不適 (×)	不適當	
	不適合	不正	不足	*不注意	付託	附合	*符號	*分類	
	*分離	分明	*分別	*分散	*分析	分野	*分割	不可能	
	不可避	不可抗力	不拘	*不能	*不良	不利	不問	不發	
	不服	不分明	不備	不誠實	*不時	*不安定	*不完全	不應	
	不意	不利益	不出席	*不充分	不便	*不平	不必要	*備考 (×문화)	
	比較	*比例	*秘密	*非常(品,金,勤,口 등)	*費用	*比率	*備置		
		比(하다)							
	계 : 125(54)								
사	*事例	*些少한	事實	事業	使用	事由	事前	事情	寫眞
	*事態	事項	事後	*削除	*算定	*産業	…上	上記	相當

第2節 法令用語整備事業의 推進實績과 向後課題

	相對(方)	常時	喪失	相應	狀態	*相通	*上下	相互	相互間
	*狀況	生(기다)	省略	*生物	*生産	*生活	*書類	善良	*鮮明
	選定 (×)	*選擇	*設立	說明	*設備	*設置	…性	*姓名	*性別
	誠實	*成長	性質	性品	所管	消極(的)	*消費	所屬	所要
	*所謂	所定	*所重	所持	*疏通	*所轄	*疏忽	屬(하다)	
					(×), (×박갑, (× 국어, 문화)				
	*損害	*率先	送達	送付	送還	*手段樹立	*階伴	*受發	(×국어, 문화, 대법)
	*修繕	*手續	隋時	授與	*受容	*輸入	水準	*垂直	(×), (×대법)
	*收集	*蒐集	*輸出	受驗	修行	順序	純粹(한)	*純全(한)	(×문화)
	*順調	*順坦(한)	承諾	承服	承認	…時	*施設	始作	*市場 (×)
	*是正 (×)	*施策	*施行(日)	*植物	*新設	迅速	*信用	實施	*實定 (×문화, 대법)
	實際	*實踐	*實現	*實行	甚(하다)				
									계 : 109(57)
아	兒童	案	*案内	*安全	安定	斡旋	*惹起	若干	
	*約束	約定	*嚴格	*嚴密	*嚴守	嚴肅	嚴正	*嚴存	
	*嚴重	*業務	*業績	*業種	*業主	*業體	*與件	與否	
	餘裕	*如前	如何	*亦是	*力點	*逆行	*逆效果	*連結	
	*連繫	*研究	*連絡	*連續	*緣由	延長	*連接	*聯合 (×대법)	
	列舉	念慮	*永久	*零細	領收證	*營業	永遠	營爲	
	影響	例	*豫防	*豫備	*隸屬	*例示	例外	*豫約	

第3章 우리나라 法令用語의 課題

	*豫定	*擁護	完了	*完成	完遂	完全	…外	外部
	要件	要求	要求書	*要望	*要所 (×)	*料金	*要式	*要約
	要旨	要請	要하다	*用途	容易	憂慮	于先	優先(的)
	*偶然	*優位	*運動	運營	*危急	*危機	違反	委任
	委囑	*萎縮	*位置	爲(하다)	危險	*原來	*原理	*圓滿
	原因	原則	*願(하다)	圓滑	*援護	*紐帶	*流動(的)	有利
	*有名	有無	類似(品)	唯一	維持	*流通	*流行	*類型
	育成	*融通	隱匿	應答	應分	*應用	應(하다)	依據
	意見(書)	依賴	意思	*依存	依(하다)	以內	*移動	以上
	*理想(的)	*移送(하다)		以外	利用(者)	理由	利益	以前
	*移轉	*理致	以下	理解	履行	以後	*引繼	隣近
	*忍耐	*引導	*引受	*認識	引用	隣接	認定	因(하여)
	*日課	*一覽 (×)	*一般	*一方	一部	一時	一定	*一次
	一切	*一體	*一致	立脚	*任命	任務	*臨時	任意(的)
								계 : 158(84)
자	*資格	自己	*自動	*資料	*諮問	*自發	姿勢	自身
	*自然	自由	作成	*作業	*作用	*作戰	*作定	*殘高
	*殘額	*殘餘	*殘留	*殘存	*暫時	*潛在	*暫定	*雜務
	*雜種	將來	*帳簿	*場所	*裝飾	*障礙	*將次	再發
	*材料	*低調	*沮止	*抵觸	沮害	…的	積極(的)	適當

第2節 法令用語整備事業의 推進實績斗 向後課題

適用	*適應	適切	適正	適合	…前	*展開	前面 (×문화)
前日(月,年)	專門(的,性)		*全般(的)		*顛覆	全部	*全的
*全體	前後	*切感	*絕對(的)	*切實	*節約	*節制	*節次
*折喪	*節候 (×박갑)	*漸增	*漸次	*接近	*接待	*接續	接受
*接觸	*接合	*定價	*正刻	*精巧(한)	*定期(的)	正當	程度
整理	*精密(한)	停止	*正直	*定着	政策	定(하다)	
正確(度)	除去	提供	提起	*制度(的)	*題目	*諸般	提示
*提案	*制約	*提言	*提議	*第一	除外	*製作	*製造
*制止	提出	*製品	制限(的)	條件	*早急히	*早期	*助力
*調查	*造成 (×)	*早速한	*粗雜한	*助長	*調節	*造製	*組織
*調和	*尊敬	*尊嚴(性)	存在	尊重	*存置 (×국어,문화)	*存廢	*終結
從來	終了	種類(別)	從事	*從屬	*終熄	從前	*終止
*綜合	*座席	*挫折	主觀(的)	*主動(的)	*注力	*周邊	*周旋
*住所	*周圍	注意	*主張	*準據	*準備	遵守	*準用
*準하다	…中	*中堅	*中繼	中斷	重大	中毒者	*重視
*中央	重要(性)	重點(的)	中止	卽席	卽時	*增大	增加
證據	證明(書)	*增進	支給	*至大(한)	指名	*支配	持續(的)
遲延	支援	支障	指定	*支持	*遲進 (×대법)	地帶	*支出
*指彈	*指向	*職務	直前	直接	*直轄	*進度	*進展
*振興	進行	*質問	*質疑	*集中	*徵收		

附：190(120)

第3章 우리나라 法令用語의 課題

차	差等	*次例	差別	*差異	*看手	*着實(한)	*贊成	參加
	參考	參席	參與	參酌	*參照	*策動	*責任	*策定
	處理	*處方	處分	*賤待	*淺薄	*賤視	*天然	添記
	添付	*添書	貼付	*清潔	*清明	*清算	*清掃	*請(하다)
	(×대법)	(×국어, 문화)						
	締結	*體系	滯納	*滯拂	超過	招來	*超越	*招請
	促求	促進	囑託	攝影	*最高	最近	最大(限)	*最上
	最善	最小(限)	*最新	*最低	最終(的)	最初	最後	*最下
	追加	*追窮	抽象(的)	*趨勢	推進	推薦	*抽籤	*抽出
	*推測	*追後	*縮小	*蓄積	出庫	*出發	*出生	出席
	*出入	*出張	*出處	充當	衝突	*衝動	充分	充用
	充足	*取去		取扱	取得	趣旨	取下	取하다
		(××), (×박갑, 문화, 대법, 국어)						
	*親切	*侵入	*沈滯	侵害				
계 : 90(47)								
타	*打擊	*妥結	妥當	*墮落	打破	*卓越	*綻露	*脫落
	*探索	*探知	*態度	怠慢	*土臺	*討論	通告	通過
	*通例	*通論	通報	通常	通用	通知	通(하다)	特別
	特殊	*特有	*特異	特定	*特徵	特(히)		
계 : 30(16)								



第2節 法令用語整備事業의 推進實績과 向後課題

<p>파</p>	<p>破壞 破棄 把握 *派生 *破綻 判斷 *判別 判定                  *敗北 便利 便宜 *便益 *平素 廢棄 *廢止 *包括                  (×) (×)                  拋棄 包裝 包含 *輻輳 *表裏 表面 表示 *標準                  (××)                  豐富 必要</p> <p style="text-align: right;">계 : 26(11)</p>
<p>하</p>	<p>…下 *下降 *下揭 *下級 *何等 *下位 *下限                  (×박갑,문화,국어,대법), (×)                  *限界 限度 限(하여) 割當 涵養 *含有 *含蓄 *合格                  合理(的) *合致 合(하다) 恒久(的) *項目 恒常 *恒時 *解決                  該當 *解明 *解放 *解散 *解釋 *解消 害(하다) 行動                  *行方 行使 行爲 行(하다) *向背 向上 *虛無 *許與                  (×),(◇박갑)                  (×국어,문화)                  許容 虛偽 *革新 *現代 *現實 *現場 現在 顯著                  *協同 *協力 協助(調) *形成 *形式(的) *形態 形便 *惠澤                  湖水 *呼出 *互換 *酷使 *混亂 *混線 *洪水 *火災                  確固 *擴大 確立 確保 *擴散 *確信 確實 *確約                  (×)                  確認 *擴張 確定 擴充 *還給 *換起 還付 *還拂                  (×)                  *活動 *活力 *活性化) *活用 回復 回附 *回轉 *劃期(的)                  *劃一(的) *獲得 *橫斷 *效果 *效能 效力 效率(的) …後                  *後援 毀損 *訓練 攜帶 *携待 *休止 *休養 *吸收                  (×대법,박갑)                  吸煙 *興亡 *興奮 *興行 希望 *喜捨 犧牲 *稀釋                  (×),(×대법)                  *稀少</p> <p style="text-align: right;">계 : 111(69)</p>

## 2. 日本語式表記 法令用語의 정비

### (1) 日本式 法令用語整備의 필요성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에 의하여 한국의 統治權을 일본에게 빼앗긴 이후 일제는 「조선에서행할법령에관한건(1910.8, 칙령 제324호)」을 제정하여 日本 法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勅令」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입법사항은 조선총독부의 명령(制令)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령의 제·개정에는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天皇의 勅裁를 받아야 하며 임시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총독이 이를 즉시 발할 수 있으나 후에 勅裁를 받도록 하였다.<sup>45)</sup> 이에 따라 制令 제1호 「조선에있어서법령의효력에관한건((1919.10.8)」에서 ①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日本의 칙령, ②칙령에 의하여 의용되는 日本法律 및 조선총독부에서 발한 명령을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일제 통치 36년간 우리나라는 일본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다.<sup>46)</sup>

그 후 1945년 8월 15일 해방이후 부터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기까지 美軍政이 통치하는 과정에서 일제식민지법제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기에는 시세에 적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제법령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어서 부분적으로 日帝法令의 폐지를 선언하는 미군정법령 제11호 「日帝法規의 一部改正廢棄의 件」을 1945년 11월 9일 공포하였다.<sup>47)</sup> 이로써 미군정의 입법정책의 기본방침을 확정하였으나, 그러나 여전히 일제법령의 효력문제는 남아있고 또 폐지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법령에 대해서는 문제가 남아있었다. 이에 따라 미군정은 美軍政法令 제21호 「法律諸命令의 存續(1945.11.2 공포)」을 제정·공표하였고, 이 군정법령은 「모든 법

45) 제령은 총독부의 해당부서에서 입안하면 總督府 總務局企劃室에서 이를 심의하고 총독의 자문기관인 中樞院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제령은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天皇의 勅裁를 받아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총독부 총무국기획실은 제령등 법안의 입안·심의뿐만 아니라 이를 해석·적용까지 하였다. 張明根, 前揭論文, 120面.

46) 制令은 조선식민지배의 중추적 법형식으로 식민지배기간동안 총 676건이 공포되었는데, 이중 제령을 改正하는 제령을 제외하면 270건이다. 제령등 입법사항을 정한 법률과 행정명령등 식민지배법체계는 ①특히 조선에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한 法律과 勅令, ②勅令으로 조선에 시행된 법률, ③규정의 내용상 당연히 조선에 효력이 미친 法律과 勅令, ④합방당시 효력의 존속을 인정한 구한국법령 및 일본국법령, ⑤制令, ⑥조선총독부령, ⑦道令, ⑧道警務部令, ⑨警務總監部令, ⑩島令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朴秉濂, 「韓國法制史攷」, 法文社 1974, 433~436面 및 張明根, 前揭論文, 120面 참조.

47) 자세한 내용은 韓國法制研究會, 「美軍政法令總覽」, 131面 참조.

를 및 조선구정부가 발표하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규칙·명령·고시 기타 문서로서 1945년 8월 9일 실행중인 것은 그간 이미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 朝鮮軍政府의 특수명령으로 폐지할 때까지 모두 효력을 가지고 존속한다(동법령 제1조 전단)」라고 규정하였다.<sup>48)</sup>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점령지통치의 일반적 관행에 따르는 것으로, 미군정이 명시적으로 폐한 것을 제외한 일제의 법령은 잠정적으로 해방된 한국지역에 효력이 존속되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서<sup>49)</sup> 실제로 日本法令이 그대로 효력을 존속하게 되었다. 그 이후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으나 制憲憲法 제10장 부칙, 제100조에서 「현행법령은 이 憲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새로이 법률을 제정하기까지는 日本法令을 그대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sup>50)</sup>

이와 같이 日本法令은 한일합방(1910년)부터 1960년 초반까지 반세기 동안이나 우리 사회에 통용되었기 때문에 정치·경제·교육 등 각분야에 일본식 법령용어가 뿌리깊게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광복이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사회 각 분야에서 日帝의 깊은 뿌리를 청산하는 작업이 계속되어 왔으나 法令用語의 경우 아직까지도 그대로 상당부분 일본식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국민감정이나 시대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미 技術 및 學術用語로서 정착되어 사용되는 것은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法令에서 쓰이는 전문법령용어 또는 일상생활 공용어 중에서 법령에 표기되는 용어들을 될 수 있는대로 우리말로 순화·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동안 法制處에서는 「구법령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구법령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일본식 법령용어를 정비한 바 있고, 1983년도 부터는 「법령용어순화정비기준」을 제정하여 일본식 표현용어를 중심으로 어려운 漢字式用語, 비민주적 용어에 대한 순화·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정비한 일본어식 표기용어의 정비사례중 대표적인 것을 정리하여 소개하여 본다.

48) 이에 따라 1948년 4월1일에는 군정법령 제181호 「戰時特例에 관한 법령의 폐지 및 관계법령의 개정」을, 동월 8일에는 군정법령 제183호 「필요없는 法令의 폐지」를 제정공포하여 陸軍刑法, 海軍刑法, 集會取締令(이상 일본법령), 軍政違反에 대한 犯罪(미군정법령), 造船臨時不穩文書取締令, 造船臨時保安令(조선총독부제령), 保安法(대한제국 법령)을 폐지하였다.

49) 張明根, 前揭論文, 123面.

50) 대표적인 사례로 『민법』의 경우 1958년에, 『상법』은 1962년에, 『형법』은 1953년에 각각 새로 제정하였던 바, 그 동안에 일제하의 법령을 소위 『依用民法·商法』으로 불리우면서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2) 日本語式 表記用語 整備事例

일본말은 음으로 읽는 것이 있고(音讀), 뜻으로 읽는 것이 있다(訓讀). 일본사람들이 한자로 적고 그들 말로 읽는 것(訓讀)을 우리는 그대로 옮겨서 읽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法令用語중에 상당한 부분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假(かり) : 임시, 거짓, 일시적, 가짜

법령에서 『임시』의 뜻으로 일본식 용어인 『가(假)』를 쓰는 사례는 너무나 많다. 예를 들면 ①가납(假納)→임시납부(형사소송법 §334), ②가도(假道)→임시도로(도시계획법 §5), ③가병(假病)→피병(군형법 §41), ④가사용(假使用)→임시사용(주차장령 §10), ⑤가수금(假受金)→임시받은 돈(기업예산회계령 §2), ⑥가승계(假承繼)→임시승계(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7) 등이 대표적이다.

일 본 말	일본식 용어	정비된 용어(사용례)
假橋(かりばし)	가교(假橋)	임시 다리
假植(かりうえ)	가식(假植)	임시심기, 한때 심기
假處分(かりしょぶん)	가처분(假處分)	임시처분

※사용례

- 형사소송법 §334①……科料 또는 追徴에 相當한 金額의 假納을 命할 수 있다.
- 여기에서 ‘相當한’도 일본 법령에서 많이 쓰고 있으며, 우리 법령에서는 ‘해당하는’으로 고치고, ‘命할 수 있다’도 일본 법령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용어이며, 우리 법령에서는 ‘하게 할 수 있다’로 바꾸었다.

○ 看【みる(訓), かん(音)】 : 보다

『看』의 경우는 법령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간주(看做)하다’가 일본 법령 용어이다. 일본에서는 훈독(訓讀)으로 ‘미나스(みなす) : (보다, 가정하다)로 쓰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자음으로 바꾸어 음독으로 ‘간주하다’로 쓰기 때문에 적절한 표기가 아니다.

일본말	일본식 용어	정비된 용어(사용례)
看做す(みなす) 看過(かんか) 看病(かんびょう)	간주(看做)하다(유실물법 §2) 간과(看過)(민사소송법 §126) 간병(看病)(행형령 §102)	…로 보다, 여기다 보아 넘김 병간호, 병구완

※사용례

- 유실물법 §2③賣却費用을 控除한 賣却代金の 殘額は 拾得物로 看做하여 이를 保管한다.
- 여기에서 ‘控除’한, ‘拾得物’ 모두 일본식 표기용어이며, 뎀, 주운 물건으로 정비하였다.

○ 見 【みる(訓), けん(音)】 : 보다, 보살피다

『見』의 경우는 일본에서 ‘みる’로서 대부분 훈독(訓讀)으로 쓰이고 있으나, 우리말에서는 모두 한자음으로 읽고(音讀) 표기한다.

일본말	일본식 용어	정비된 용어(사용례)
見本(みほん) 見様(みよう) 見地(ほんち)	견본(見本)(주세법 §44) 견양(見様)(국채사무처리규칙 §10) 견지(見地)(국토이용관리법 §2)	본, 보기 서석, 보기, 본보기 관점, 살피는 처지

※사용례

- 국토이용관리법 §2 ……國土의 綜合的인 이용·管理에 관한 見地에서 土地를 그 機能과 適性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한……

○ 掲 【かかげる(訓), けい(音)】 : 내걸다, 게양하다, 신다

일본식 법령용어로 『掲』자가 많이 쓰이고 있다. 특히 『掲記』는 대표적인 일본식 표기용어인데 법령, 행정분야에서 크게 통용되고 있다.

일본말	일본식 용어	정비된 용어
掲記(げいぎ) 掲揚(げいよう)	계기(掲記)(회계정리법 §228) 게양(掲揚)(해군기지법 §9)	적어넣다, 규정하다, 신다 달다, 올린다

### 第3章 우리나라 法令用語의 課題

#### ※사용례

- 공장저당법 §39① 工場財團에 關하여 所有權保存의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不動産登記法 第40條第1項에 掲記한 書面外에 工場財團登錄을 提出하여야 한다.
- 여기에서 '關하여'는 일본 법령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될 수 있는대로 사용하지 않고 한글로 표기한다.

○ 經 【 たつ(訓), きょう(音) 】 : (기간, 때가)지나다

일본식 법령용어로 たつ(지나다)로 표기된 것을 우리 법령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經하다, 經하여'로 표기되고 있다.

· 經하다(たつ) → 거치다      · 經하여 → 거치어

#### ※사용례

- 귀속재산처리령 §9의2 .....賣却當時의 時價로서 적어도 2個以上の 金融機關의 鑑定에 依하여 管財委員會의 審査決議를 經하며 管財廳長이 이를 決定한다.

○ 供 【 そなえる(訓), こう, ぎょう(音) 】 : 바치다, 올리다

일본식 용어로 そなえる(바치다, 제공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것을 우리 법령에서 그대로 쓰고 있다. 「……에 供한(供え)」, 「……에 供하다(供える)」 등이 대표적인 일본식 법령용어에 해당된다. 일본 법령에서는 供하여, 承하여, 經하여, 請하여 등 한자약어가 많이 쓰인다.

· 供하다(そなえる) → 제공하다      · 供한 → 제공한

#### ※사용례

- 민법 §100①物件의 所有者가 그 物件의 常用에 供하기 爲하여 自己所有인 다른 物件을 이에 附屬하게 한 때에는 그 附屬物은 從物이다.

○ 課 【 かする(音) 】 : 부과하다, 매기다, 시키다

일본 법령에서 '세금 따위를 매겨서 내게 하다'의 뜻으로 '課する'라고 표기하는 것을 그대로 한자음으로 옮겨서 우리 법령에서 '課하다'로 쓰이고 있다.

· 課하다(かする) → 매기다      · 課하는 → 매기는

※사용례

- 군행형규칙 §23(작업의 종류) 수행자에 대하여는 작업을 과하되, 작업의 종류는 당해 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 校 【あぜ(訓), きょう(音)】 : 바로잡다

校(きょう)는 '바로잡을 교'로 쓰이며, 법령에서 '交合'(きょうでう) (교합)이란 용어가 종종 쓰이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수록도 되어있지 않고 있다.

· 交合하다 → (원본, 사본 등) 대조·확인 交合: 男의 結婚, 交授

※사용례

- 국제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 ~ 42호』 (최근 별지서식 개정으로 '대조·확인'으로 정비했음)

○ 基 【もとい(訓), き(音)】 : 토대, 기초, 기본

일본 법령에서 '의거하다, 기인하다' 등을 표기할 경우 基どく(もとづく)로 쓰인다. 이를 그대로 우리 법령에서 옮겨 '基한'으로 표기하고 있다.

· 基하다 → 의하다 (もとづく) (가등기담보법 §4)      · 基한 → 따른 바탕으로 한

※사용례

- 가등기담보법 §4②……擔保假登記가 經了된 경우에는 清算期間이 경과하여야 그 假登記에 基한 本登記를 請求할 수 있다.
- 위의 사용례에서 '經了된'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없는 용어이다. 일본 법령에서 어떠한 절차를 마치었을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우리 법령에서는 '...를 마친'으로 정비하여 쓰인다.

○ 賣 【うる(訓), ばい(音)】 : 팔다

'賣る(うる)'로 일본 법령에서, 賣上(うりあげ), 賣渡(うりわたす) 등을 그대로 우리 법령에서 옮겨다가 표기한다. 일본에서 훈독(訓讀)하는 것을 우리는 한자로 음독(音讀)하고 있다.

第3章 우리나라 法令用語의 課題

- |                                      |                                     |
|--------------------------------------|-------------------------------------|
| · 賣渡하다 → 사들이다<br>(かいうげる) (지방세법 §128) | · 賣上 → 팔음, 판내<br>(うりあげ) (수출조합법 §55) |
| · 賣買 → 팔고사기<br>(상훈법 §82)             | · 賣惜 → 사재기<br>(비료관리법 §10)           |

※사용례

- 수협조합령 §55 공매기간중에 매상한 채권총액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채권의 총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매상총액으로써 채권의 총액으로 한다.

○ 買 【かう(訓), ばい(音)】 : 사다, 구입하다

‘買う(かう)로 혼독하는 것을 옮겨서 우리는 한자로 읽고 표기한다. 『買上』(かいあげ)이 일본에서는 ‘가이아게’로 쓰이고 있으나, 우리는 이것을 한자로 ‘매상’으로 읽고 표기한다.

- |                                      |                                     |
|--------------------------------------|-------------------------------------|
| · 買受하다 → 사들이다<br>(かいうける) (지방세법 §128) | · 買入하다 → 사들이다<br>(かいいれる) (외자도입법 §8) |
| · 買受人 → 산사람<br>(산림법 §82)             | · 買占 → 사재기<br>(비료관리법 §10)           |

※사용례

- 지방세법 §128의2 가. 土地收用法 또는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 관한特例法에 의한 還買權의 행사로 買收하는 不動産에 대한 登記……

○ 未 【また(訓), み(音)】 : 아직, 여태까지

‘未だ(まだ)은 아직, 아직도, 여태까지의 뜻으로 쓰이며, 일본 법령에서 음독으로 未納(みのう), 未拂(みはらい) 등을 우리 법령에서 그대로 쓰고 있다.

- |                                   |                                       |
|-----------------------------------|---------------------------------------|
| · 未然 → 미리 앎<br>(みぜん) (풍수해대책법 §21) | · 未拂한 → 지급하지 아니한<br>(みはらい) (소득세령 §57) |
|-----------------------------------|---------------------------------------|

※사용례

- 농지개혁사업장리특별조치 §4(未拂補償金の支給) 政府는 農地 및 農地附屬施設에 대한 報償에 관하여는 農改法 第2條第2項의……



- 그 밖에 未到來, 未分明, 未完, 未濟, 未畢, 未洽 등 일본식표기 용어가 법령에서 그대로 한자음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 返 【かえす(訓), へん(音)】 : 돌려주다

일본 법령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返戻’ (へんれい)(반환), ‘返す’ (かえす)(되돌리다)를 그대로 한문글자로 옮겨서 우리 법령에서 쓰고 있다.

· 返하다 → 되돌려주다 (かえる) (수난구조법 §5)	· 返送 → 사들이다 (んそう) (수출물검사업 §16)
· 返還 → 되돌려줌 (へんかん) (유실물법 §1)	· 返信 → 답장, 회답 (へんしん)

※사용례

- 수난구조법 §5④……助力하여야 하며 救出된 遭難者の 保護와 引揚物品의 保管, 返還, 公賣 및 救護費用의 算定, 支拂, 回收 其他 死後處理에 關한 一切의 事務를 處理한다.
- 위의 사용례에서 ‘引揚’, ‘支拂’, ‘一切’ 등의 용어도 모두 일본식표기용어이다. ‘건짐’, ‘지급’(또는 치름), ‘모두’ 등으로 우리말로 표기한다.

○ 本 【もと(訓), ほん(音)】 : 근본, 바탕, 기초(책)

『本』(もと)은 훈독으로 일본 법령에서 근원·바탕·기초·이것 등을 표기할 때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음독(ほん)으로 本旨, 本會議, 本法 등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 법령에서 그대로 옮겨 쓰고 있다.

· 本旨 → 본래취지 (ほんし) (민법 §681)	· 本節 → 이 절 (ほんぶし) (지방세법 §33)
· 本務 → 맡은 일 (공무원수당규정 별표)	· 본수(本數) → 개비수, 그루수

※사용례

- 민법 §681(受任人の 善管義務) 受任人は 委任의 本旨에 따라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써 委任事務를 處理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우리 법령에서 ‘本’자를 쓰는 용어들은 本犯, 本條, 本章, 本件, 本權, 本家 등 수없이 많다. 本犯은 ‘본래의 범인’이 적합하다. 本犯을 ‘이 범인’으로 해석할 우려도 있다. 本家は ‘친정집’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 집’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第3章 우리나라 法令用語의 課題

이와 같이 순 우리말로 표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명확성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本案’의 경우는 ‘이 안전’ 또는 ‘원래의 안전’으로 상황에 따라서 바꾸어 쓸 수 있다.

○ 拂 【はらう(訓), ふつ(音)】 : 지불, 팔아버림

일본 법령에서 지불, 셈 등의 뜻으로 拂い(はらい)로 표기하고, 이와 같이 ‘하라이’로 혼독되고 있는 것을 우리 법령에서 한자로 그대로 옮겨서 표기하고 있다.

- |  |   |
|--|---|
| · 불입(拂入) → 납입, 납부<br>(はらいこむ) (지방세법 §137) | · 불하(拂下) → 매각<br>(はらいさげる) (도로운송차량법 §14) |
| · 불출(拂出) → 내어줌<br>(군수품관리령 §16)           | · 불식(拂拭) → 일소                           |

※사용례

- 지방세법 §137①의 1. 商事會社 기타 營利法人의 設立 또는 合併으로 인한 存續法人  
(1) 設立과 拂入

○ 上 【うへ(訓), じょう(音)】 : 위

『上』(じょう)로 음독한다. 일본 법령에서 표기하고 있는 『上』자와 관련있는 용어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  |                                       |
|--|---------------------------------------|
| · 상단(上端) → 위부분, 위쪽<br>(じょうたん) (여권령 §2) | · 상반신(上半身) → 윗몸<br>(じょうはんしん) (여권령 §5) |
| · 상변(上邊) → 윗변랍<br>(산림법 §82)            | · 상사(上司) → 웃사람<br>(법원조직법 §75)         |
| · 상신(上申) → 올림<br>(사면법 §11)             | · 상오(上午) → 오전<br>(국민투표법 §47)          |

※사용례

- 국민투표법 §47(夜間演說禁止) 夜間(下午 11時부터 上午 6時까지를 말한다)에는 演說會를 開催할 수 없다.

○ 手 【て・た(訓), しゅ(音)】 : 손, 익숙하다

『手』는 일본말로 訓讀하는 경우가 많으며, ‘손’ 또는 어떤 일에 ‘익숙하다’로

표기할 때 쓰인다. 일본 법령에서 ‘手續’, ‘手順’ 등이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 법령에서 그대로 옮겨 한자음으로 읽고 쓴다.

· 수세(手洗) → 손을 씻음 (てあらい) (건축령 §47)	· 수속(手續) → 절차 (てつづき) (조세범처벌절차법 §20)
· 수순(手順) → 순서, 절차 (てじゆん)	· 수제(手製) → 손으로 만든 (てせい) (부가가치세령 §32)

※사용례

- 행정대집행법 §3③非常時 또는 危險이 切迫한 境遇에 있어서 當該 行爲의 急速한 實施를 要하여 前2項에 규정한 手續를 取할 餘裕가 없을 때에는 그 手續를 거치지 아니하고 代執行을 할 수 있다.
- 그 밖에 ‘手’와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수교(手交) → 직접 줌 · 수장(手掌) → 손바닥 · 수제문서(手製文書) → 손으로 만든 문서

○ 乘 【 のせる, のる(訓), じょう(音) 】

『乘』은 버스 등 탈 것들을 ‘타다’ (のる), ‘태우다’ (のせる)로 일본 법령에서 쓰이는 것을 우리 법령에서 그대로 옮겨 쓰고 있다.

· 승입(乘入) → 탑승, 타기 (のりいれる) (어선설비규칙 §746)	· 승합(乘合) → 합승, 같이 탑 (のりあい) (지방세법 §196의5)
· 승강(乘降) → 타고내림 (のりあり) (군예식령 §12)	

※사용례

- 여객자동차터미널법 §2의3. “旅客自動車터미널” 이라 함은 旅客의 乘降을 위하여 道路의 路面 기타 一般交通에 사용하는 場所에서 旅客自動車運送事業用 乘合自動車를……
- 그 밖에 乘用, 乘船, 乘승 등 용어가 있다. 모두 우리말로 고쳐서 표기하기로 한다.

○ 示 【 しめす(訓), し(音) 】 : 가리키다, 보다

『示』는 가리키다, 나타내보이다 등으로 또는 모범, 본보기로 쓰인다. 일본 법령에서 示範, 示唆, 示方書 등이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 법령에서 한자로 옮겨 그대로 쓰고 있는 실정이다.

第3章 우리나라 法令用語의 課題

- 시범(示範) → 본보이기 (しはん) (영유아보육법 §2)
- 시사(示唆) → 미리 암시하여 알려줌 (しそ)
- 시방서(示方書) → 설명서 (건축법 §2)
- 시지(示指) → 둘째손가락

※사용례

- 건축법 §2의14. “設計圖書”라 함은 建築物의 建築·大修繕과 建築設備 및 工作物에 관한 工事用的 圖面·構造計劃書 및 示方書를 말한다.

○ 身 【み(訓), しん(音)】 : 몸

신병(身柄) 등 우리말에는 이러한 용어가 없고 일본의 ‘미가라’를 그대로 한자로 옮겨 사용하고 있다.

- 신병(身柄) → 신체, 신분 (みがら) (출입국관리법 §86)
- 신원(身元) → 출신 (みもと)
- 신병인수(身柄引受) → 사람 넘겨 받음 (경찰집행사무규칙 §32)
- 신상(身上) → 신분

※사용례

- 출입국관리법 §86(身柄의 引渡) ①檢事は 強制退去命令書가 발부된 拘束被疑者에 대하여 不起訴處分을 한 때에는 出入國管理公務員에게 그를 引渡하여야 한다.

○ 申 【もうす, さる(訓), しん(音)】 : 아뢰다

『申』은 훈독으로 일본 법령에서 『신립』(申立, もうしたてる)을 ‘모우시다데루’로 쓰이고 있다. 申立을 쓰지 않고 ‘신청’으로 바꾸어 쓰기로 하였다.

- 신립(申立) → 신청(申請)

※사용례

- 조세법처벌절차법 §9②……沒收 또는 沒取에 該當하는 物品에 對하여는 納付의 申立만을 할 것을 通告할 수 있다. ……情狀이 懲役刑에 處할 것으로 思料되는 때에도 또한 前項과 같다.
- 위의 사용례에서 申立, 思料는 전형적인 일본식표기 용어에 해당된다. ‘思料되는’을 ‘생각되는’으로 정비하였다.

○ 役 【 えき(音) 】 : 일, 직무  
 『役』자와 관련하여 일본식 용어로는 다음과 같다. 역할(役割)은 대표적으로 일본식 용어이다.

· 역할(役割) → 소입, 구실, 할일 (やくわり)	· 승합(乗合) → 합승, 같이 탑 (えきむ)
· 역원(役員) → 임원	· 역부족(力不足) → 힘이 모자람, 힘이 부침

※사용례

- 남녀고용평등법 §2(基本理念) 労働女性は 經濟 및 社會發展에 기여하며 다음 世代의 出産과 養育에 중요한 役割을 담당하는 者이므로 母性を 보호받으면서 性別에 의한……
- 그 밖에 ‘役’과 관련된 용어로 취체역(取締役), 감사역(監査役) 등이 있었으나 이사(理事), 감사(監査)로 정비하였다.

○ 屋 【 や(訓), あく(音) 】 : 집 옥  
 우리 법령에서 옥상(屋上), 옥내(屋内), 옥외(屋外) 등의 용어는 일본식 용어에 된다.

· 옥호(屋號) → 상점이름 (やごう)	· 옥외(屋外) → 집 밖 (おくがり)
· 옥내(屋内) → 집 안 (おくはい)	· 옥상(屋上) → 지붕 위 (おくじょう)

※사용례

-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3의5. 옥상간판 :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정방형·삼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引 【 ひく, ひける(訓), いん(音) 】 : 당기다  
 한자음으로 바꾸어 표기하고 있다.

· 인상(引上) → 올림 (ひきあげる)	· 인수(引受) → 떠맡음 (ひきうける)
· 인하(引下) → 낮춤, 내림	· 인취(引取) → 넘겨 받음
· 인수증(引受證) → 받음표	· 인수(引水) → 물 끌어들이м
· 인도(引渡) → 넘겨줌	· 인양(引揚) → 건짐
· 인출(引出) → 찾아감	

第3章 우리나라 法令用語의 課題

※사용례

- 공유수면관리법 §4①의4. 公有水面으로부터 引水하거나 公有水面에 注水하고자 할 때

○ — 【 ひと, ひとつ(訓), いち(音) 】 : 하나, 일

일본 법령에서 一時(いちどきに) (일시에, 한꺼번에, 동시에) 등의 뜻으로 쓰이는 것을 우리 법령에서 한자음으로 그대로 옮기어 쓰고 있다.

- |                             |                             |
|-----------------------------|-----------------------------|
| · 일시(一時)에 → 한꺼번에<br>(いちどきに) | · 일매(一枚) → 한장, 한잎<br>(いちまい) |
| · 일본조(一本釣) → 외줄낚시           | · 일신상(一身上) → 본인형편           |
| · 일체(一切)의 → 모든, 전부          | · 일본(一本) → (나무)한그루          |

※사용례

- 공무원연금법 §44(年金支給の特例) 年金인 給與를 받을 權利가 있는 者が 外國에 移民하게 된 때에는 本人이 願하는 바에 따라 年金인 給與에 같음하여 出國하는 달의 다음 달을 基準으로 한 年金額의 4배에 相當하는 金額을 一時에 支給받을 수 있다.

-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용어도 정비하였다.

- |                |                 |
|----------------|-----------------|
| · 일수(一手) → 한쪽손 | · 일단(一團) → 한무리  |
| · 일두(一頭) → 한마리 | · 일방(一方) → 한쪽   |
| · 일족(一足) → 한쪽발 | · 일체(一體) → 한덩어리 |

○ 立 【 たつ(訓), りつ(音) 】 : 서다(설립)

일본 법령에서 立會(たちあい - 다찌아이) 등 훈독(訓讀)하는 것을 우리 법령에서 그대로 쓰고 있다.

- |                         |                   |
|-------------------------|-------------------|
| · 입회(立會) → 참여<br>(たちあい) | · 입회인(立會人) → 참석인  |
| · 입목(立木) → 나무, 선나무      | · 입장(立場) → 처지, 관점 |

※사용례

- 토지수용법 §23①(土地調書 및 物件調書の作成) ① …土地調書 및 物件調書を 作成하여 이에 書名捺印하고 또한 土地所有者와 關係人을 立會시켜서 이에 書名捺印을 하게 하여야 한다.

○ 入 【 いる(訓), にゆう(音) 】 : 들어감

『入』은 일본 법령에서 훈독(いる)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 법령에서 入口, 入會 등으로 그대로 쓰이고 있다.

· 입회(入會) → (회)가입 (いりあい)	· 입구(入口) → 어귀, 들어가는 문 (いりぐち)
· 입어(入漁) → 고기잡이	· 입욕(入浴) → 목욕
· 입질(入質) → 질권 설정	· 입정(入廷) → 법정에 들어감

※사용례

- 변호사법 §53④第7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辯護士는 入會하고자 하는 地方辯護士會의 會員이 된다.

○ 作 【 つくる(訓), さく(音) 】 : 지을 작

『作』은 음독으로 사꾸(さく), 훈독으로 스꾸루(つくる)로 표기하며, 일본식 용어로 作物(すくりもの)로 훈독하는 것을 그대로 옮기어 우리 법령에서 표기하고 있다. 『作物』은 대표적인 일본식 용어이다.

· 작물(作物) → 농작물 (つくりもの)	· 작출(作出) → 만들다, 생산하다 (つくりだす)
· 작목(作木) → 농작물	· 작도(作圖) → 제도
· 작물(作物) → 글짓기	· 작업(作業) → 일

※사용례

- 영농기술훈련규정 §4의2. 作木별 전문기술훈련 : 농업분야의 특정작목이나 농업기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훈련

○ 殘 【 のにる(訓), ざん(音) 】 : 나머지

『殘』과 관련된 일본식표현용어로, 殘物(のにりもの)등 훈독하는 것을 그대로 옮겨서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고, 음독·훈독 혼용하는 것을 옮겨서 우리 법령에서 쓰이는 것도 많이 있다.

第3章 우리나라 法令用語의 課題

- |                            |                           |
|----------------------------|---------------------------|
| · 잔물(殘物) → 남은 물건<br>(のりもの) | · 잔고(殘高) → 남은 돈<br>(ざんだか) |
| · 잔무(殘務) → 남은 일            | · 잔여(殘餘) → 나머지            |
| · 잔재(殘在) → 남아 있는           | · 잔존(殘存) → 남아 있는          |

※사용례

- 증권거래법 §56(殘務의 終結) 證券會社가 第5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의 取消을 당한 때에는 그 證券會社가 행한 有價證券의 賣買 기타의 去來를 終結시켜야 한다.

○ 赤 【 あか, あかい(訓), 세키(音) 】 : 붉은 빛

『赤』은 훈독으로 아카이(あかい)로 일본 법령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赤字(적자 : あかじ - 아까지)를 우리 법령에서 한자음으로 그대로 옮기어 ‘적자’ 라고 표기하고 있다.

- |                            |                          |
|----------------------------|--------------------------|
| · 적자(赤字) → 손해, 결손<br>(あかじ) | · 적색(赤色) → 붉은색<br>(あかいろ) |
| · 적대(赤帶) → 붉은띠             | · 적목(赤木) → 통나무           |

※사용례

- 약사법 §46①의2. 劇藥 周圍에 赤帶를 두른 白地에 赤色으로 그 品名과 <劇>字를 記載할 것

○ 切 【 きる(訓), 세つ(音) 】 끊을 절

『切』자는 일본 법령에서 훈독으로 ‘절상’(切上 : きりあげる)를 우리 법령에서 그대로 옮기어 쓰이고 있다.

- |                             |                             |
|-----------------------------|-----------------------------|
| · 절상(絶上) → (값)올림<br>(きりあげる) | · 절하(絶下) → (값)내림<br>(きりおろす) |
| · 절엽(切葉) → 잎자름              | · 절취(切取) → 잘라 가짐            |
| · 절개(切開) → 찢, 자름            | · 절토(切土) → 흙깎기              |
| · 절사(切捨) → 끊어 버림            |                             |

※사용례

- 하천법 §25①의5. 土地의 掘鑿·盛土 또는 切土 기타 土地의 形狀變更



○ 種 【 たね(訓), しゅ(音) 】 : 씨, 심을 종

『種』자는 일본 법령에서 주로 음독(音讀)으로 쓰이고 있으나, 용어에 따라서는 훈독(訓讀)으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 법령에서 그대로 표기하고 있다.

· 종마(種馬) → 씨말, 씨밭이말 (たねうま)	· 종종(種種) → 갖가지 (くさぐさ)
· 종파(種播) → 씨뿌리기	· 종묘(種苗) → 씨모
· 종모우(種牡牛) → 씨수소	· 종서(種署) → 씨감자

※사용례

- 산림법 §111①의1. 造林・育林・種苗・林産物生産・觀賞樹栽培 기타 山林經營事業을 위하여 林野를 買收하고자 하는 者로서 당해 林野에 대한 5年이상의 山林에 관한 經營計劃書(이하 “山林經營計劃書”라 한다)를 제출한 者

○ 晝 【 ひる(訓), ちゅう(音) 】 : 낮 주

『晝』자는 일본 법령용어로 훈독(ひる - 히루)으로 표기되는 용어가 많으며, 대표적으로 『주간』(晝間 : ひるま)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훈독으로 쓰이는 것을 그대로 옮기어 우리 법령에서 쓰고 있다.

· 주간(晝間) → 낮 (ひるま)	· 주침(晝寢) → 낮잠 (ひるね)
· 주야(晝夜) → 밤낮	

※사용례

- 군인사법 §7②……委託教育을 받은 者는 그 數學期間의 2倍에 該當하는 期間(晝間勤務)를 하면서 夜間課程의 委託教育을 받은 者는 그 數學期間에 해당하는 期間을 그 義務服務期間에……

○ 支 【 かう(訓), し(音) 】 : 버틸 지

『支』자는 일본 법령에서 음독(音讀)으로 쓰이며, 대표적인 용어로는 ‘지拂’ (支拂)을 들 수 있다. 지拂은 대표적인 일본식 용어(しはらい)로 쓰이나 우리 법령에서는 지급(支給)으로 바꾸어 쓰기로 하였다.

第3章 우리나라 法令用語의 課題

- |                         |                       |
|-------------------------|-----------------------|
| · 지불(支拂) → 지급<br>(しはらい) | · 지지(支持) → 지탱<br>(しじ) |
| · 지변(支辨) → 증당, 갚음       | · 지장(支障) → 장애         |

※사용례

- 수난구조법 §20③의3. 運送賃을 支拂함이 없이 船中에 携帶한 旅客의 手荷物

○ 持 【もつ(訓), じ(音)】 : 가지다

『持』자는 '가지다'의 뜻으로 일본 법령에서 もつ(모쓰)로 혼독된다. 대표적인 용어로는 지출(持出, もちだす)을 들 수 있다. 우리 법령에서 그대로 옮겨 사용하고 있다.

- |                                |                              |
|--------------------------------|------------------------------|
| · 지출(持出)하다 → 가지고 나간다<br>(もちだす) | · 지입(持入) → 가지고 들어감<br>(もちこみ) |
| · 지분(持分) → 몫                   | · 지입금(持入金) → 들어온 돈           |

※사용례

- 외자도입법 §2의4. “外國投資家”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株式을 引受하거나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外國人을 말한다.

○ 替 【かえる, かわる】 : 바꿈

『替』는 바꿈, 교환의 뜻으로 쓰이며, 일본 법령에서 혼독으로 かえる, かわる(가에루, 가와루)로 읽으며 표기는 『替』로 한다.

- |                 |                 |
|-----------------|-----------------|
| · 체당(替當) → 대신지급 | · 체임(替任) → 교체임용 |
| · 체환(替換) → 교체발행 |                 |

※사용례

- 상법 §55②商人이 그 營業範圍 내에서 他人을 爲하여 金錢을 替當한 때에는 替當한 날 以後의 法定利子を 請求할 수 있다.

○ 此 【これ, この(訓), し(音)】 : 이 차, 이것

『此』는 대부분 훈독으로 일본에서 이것(これ, この : 고레, 고노)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우리 법령에서 그대로 옮겨 중국글자로 표기하고 읽는다. 대표적인 용어로 『此後』(こののち - 고노노지)를 들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후(此後) → 금후, 이후 (こののち)</li> <li>· 차한(此限) → 이것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제(此際) → 이 기회에 (このさい)</li> </ul>
--	---

※사용례

-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20의2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차후 다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借 【かりる(訓), しや(音)】 : 빌림

『借』는 훈독으로 かりる(가리루)로 읽고, 음독으로 しや(샤) 또는 しやく(샤꾸)로 읽으며, 일본 법령에서 훈독, 음독 모두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 법령에서 그대로 옮겨 한자로 표기하고 읽는다. 대표적인 용어로 借入, 借主 등을 들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입(借入) → 꾸, 꾸어들임 (かりいれ)</li> <li>· 차가(借家) → 셋집</li> <li>· 차주(借主) → 빌리는 사람</li> <li>· 차재(借財) → 돈꾸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입금(借入金) → 꾸돈 (かりいれきん)</li> <li>· 차임(借賃) → 셋돈, 임차료</li> <li>· 차용물(借用物) → 빌린 물건</li> <li>· 차물(借物) → 빌린 물건</li> </ul>
---	--

※사용례

- 민법 §950①의2. 借財 또는 保證을 하는 일  
- 그 밖에 '借'와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차수인(借受人) → 빌린 사람 · 차가(借家) → 빌린 집 · 차금(借金) → 돈을 빌림, 빚

○ 差 【さす(訓), さ(音)】 : 차이, 차등, 나머지

『差』는 주로 일본 법령에서 훈독으로 さす(사스)로 발음하고 표기는 중국글자로 한다. 우리 법령에서 일본식 용어를 한자로 옮겨 쓰고 있다. 대표적인 용어로는 差入(さしいる), 差出(さしだし)을 들 수 있다.

第3章 우리나라 法令用語의 課題

- |                          |                   |
|--------------------------|-------------------|
| · 차출(差出) → 뽑아냄<br>(さしだし) | · 차압(差押) → 붙잡아 둠  |
| · 차지(差止) → 금지, 정지        | · 차인(差引) → 빼냄, 공제 |
| · 차감(差減) → 빼냄            |                   |

※사용례

- 행정령 §133(차입물품등의 검사) ①소장은 재소자에게 송부하여온 물품과 교부를 허가한 물건은 교도관리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請 【 こう, うける(訓), せい, しょう(音) 】 : 청하다

『請』은 훈독으로 うけ(우께)로 읽고 표기는 請으로 하고 있다. 우리 법령에서 일본 법령표기의 훈독으로 쓰이는 것을 그대로 옮겨 쓰는 대표적인 사례는 請負를 들 수 있다.

- |                         |                              |
|-------------------------|------------------------------|
| · 청부(請負) → 도급<br>(うけおい) | · 청부업(請負業) → 도급업<br>(うけおぎょう) |
|-------------------------|------------------------------|

※사용례

- 민방위기본규칙 §17의1. 미국방성 군사비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와 초청청부업체 및 노무단에 채용된 미국정부예산종업원(주한미군부대에서 인가된 종사원의외에 작업량의 초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노무단에 채용된 종업원을 포함한다.

○ 追 【 おう(訓), つい(音) 】 : 쫓다

『追』는 훈독으로 오이(おい)로 쓰이고 있으며, 일본 법령에서 쓰는 ‘추월’ (오이고시) (追越 : おいこし)을 그대로 옮겨서 우리 법령에서 쓰이고 있다.

- |                           |                           |
|---------------------------|---------------------------|
| · 추월(追越) → 앞지르기<br>(おいこし) | · 추방(追放) → 내쫓다<br>(おいはなす) |
| · 추송(追送) → 추가로 보내다        | · 추불(追拂) → 추가지급           |

※사용례

- 개항질서법 §13④船舶은 路線안에서 다른 船舶을 追越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 밖에 ‘追’와 관련된 다음 용어는 정비하였다.
  - 추월(追越) → 앞지르기
  - 추인(追認) → 추후인정

- 추후(追後) → 이다음
- 추궁(追窮) → 캐물음
- 추징(追徵) → 뒷날징수

○ 取 【 とる(訓), しゅ(音) 】 : 취하다

『取』는 일본 법령에서 훈독으로 ‘도리’ (とり)로 발음되며, 대표적인 용어로 取扱(とりあつかう - 도리아스가우)을 들 수 있다. ‘취급’을 우리 법령에서 그대로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급(取扱) → 다루다 (とりあつかう)</li> <li>· 취합(取合) → 모으다</li> <li>· 취입(取入) → 끌어들임</li> <li>· 취출(取出) → 꺼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取)하다 → 얻다 (とり)</li> <li>· 취하(取下) → 철회</li> <li>· 취집(取集) → 수집</li> <li>· 취식(取食) → 먹음</li> </ul>
---	---

※사용례

- 소방법 §114의6.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방규정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사람

○ 下 【 した(訓), か(음) 】 : 내림

『下』는 훈독으로 した(시다), おり(오리) 등으로 쓰이며 일본 법령에서 下請(したうけ - 시다우께) 등 훈독하는 것을 우리 법령에서 그대로 옮겨서 사용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청(下請) → 하도급 (したうけ)</li> <li>· 하명(下命) → 명령</li> <li>· 하차(下車) → 차에서 내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륙(下陸) → 짐재림</li> <li>· 하달(下達) → 알림</li> </ul>
---	---

※사용례

- 검역법 §8② 航空機에 대하여는 内港即時로 檢疫調査를 하여야 한다. 萬一檢疫官의 到着이 遲延되는 境遇에는 當該航空機의 長은 檢疫區域에 隔離 또는 待機시킬 條件으로 乘客과 何物의 下陸을 許可할 수 있다.

○ 何 【 なに, なん(訓), か(음) 】 : 어떤, 무엇

### 第3章 우리나라 法令用語의 課題

『何』는 일본식 용어로서 훈독으로 何等(なんら)으로 쓰이는 것을 우리 법령에서는 그대로 쓰이고 있다.

- |                             |                                |
|-----------------------------|--------------------------------|
| · 하등(何等) → 아무런, 어떤<br>(なんら) | · 하인(何人) → 누구, 어떤 사람<br>(なにびと) |
| · 하시(何時) → 어느때, 언제          | · 하처(何處) → 어디, 어느 곳            |

○ 割 【わる, わり(훈), かつ(음)】 : 가르다

『割』은 일본 법령에서 훈독으로 割當(わりあて) 등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 법령에서 그대로 옮겨 쓰이고 있다.

- |                         |                              |
|-------------------------|------------------------------|
| · 할당(割當) → 배정<br>(わりあて) | · 할인(割引) → 각음, 예누리<br>(わりびき) |
| · 할척관세(割尺關稅) → 가격연동관세   |                              |

※사용례

-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66②政府는 第1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에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輸送施設의 輸送施設을 無料 또는 割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提供하는 者에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金을 지급할 수 있다.

## IV. 向後推進方向

지금까지 法制處에서 추진하여 온 법령용어순화정비업무의 추진배경과 주요실적을 종합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법령용어정비 제1차 계획기간(1988~1990)에는 법령용어 또는 법령에서 사용하는 생활용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권위적·비민주적 용어를 모두 민주적인 용어로 순화·정비하는 「용어의 민주화」에 추진목표를 두어, 이 기간 동안 640여건의 용어를 정비하였고, 종전에 정비한 용어를 포함하여 모두 1,820여건을 수록한 「법령용어순화편람」을 발간한 바 있다. 제2차 계획기간(1991~1992)은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는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

말로 풀어쓰는 「용어의 平易化」에 중점추진목표를 두어, 이 기간 동안의 정비실적은 1,135건으로 종전에 정비한 용어(1,820여건)을 포함, 모두 2,955건을 총무처와 공동으로 「행정용어순화편람」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제3차 계획기간(1993~1994) 동안에는 용어의 표준화·명확화 및 외래어의 정비에 중점을 두어 순화업무를 추진하여, 1994년에 960여건과 기존의 2,955건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모두 3,880여건으로 「법령용어순화편람(제5집)」을 발간하고 관련기관 및 연구기관에 배포하였다. 또한 법령에서 「한글·한자사용기준」에 관하여서도 계속적으로 한글화범위를 확대하여 550건의 한자어를 한글화 하였고, 현재 676건을 추가하여 모두 1,226건의 한자용어를 한글화 하고자 추진중에 있다.

법제의 민주화는 우선 법령의 내용면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합당하여야 함은 물론 더 나아가서 그 형식적인 면에서 법령의 표기가 국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널리 알려져 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제처에서 법령용어를 쉽게 쓰도록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하는 사업이야말로 우리나라 「법제의 민주화」 및 「법의 생활화」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령용어를 쉽게 표기하고 법령문장을 누구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법령용어를 비롯하여 법령에 쓰이고 있는 생활용어와 전문용어들은 우리나라 문화가 역사적으로 한자문화권으로서 한자식 표기가 많으며, 근대문명 이후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일본식 표현도 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고도로 복잡화되고 있는 산업사회 및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의 새로운 「전문용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고, 이것들이 제도적으로 우리말로 적당하게 표준화되지 않은채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법령문장의 표현은 입법취지에 맞아야 하고, 알기 쉽고 명확하여야 하며, 문장 하나하나가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령 전조문이 논리적·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작품으로서 고도의 입법기술을 요구하는 전문적 작업이기도 하다. 법령이 아무리 알기 쉽게 표현되었다 하여도 그 내용에서 정확성이 결여되었다면 입법에서 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고 오히려 혼란만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령용어정비업무의 추진방향도 이미 학설이나 관행상 정착된 전문법령용어의 경우 설사 어려운 한자어로 표기되었다 하여도 함부로 풀어쓰지 아니하고 그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상생활공용 법령용어에 대한 정비대상용어의 선정은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거쳐서 신중을 기하며, 이를 순화·정비할 경우에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어문정책을 관장하는 문

화체육부(국립국어연구원, 국어심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일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개방화시대에서 「법령의 한글화」 사업이야말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당면과제이며, 이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한글사용범위를 계속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외국의 문물이 홍수처럼 밀려옴에 따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분별한 외국어·외래어(특히 서양말)의 사용으로 언어생활에 혼란이 오고 있다. 그 결과 학문, 기술, 산업·경제 등 각 분야에서 사용되는 외래어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용되고, 이것이 법령문장 표기에서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법령용어의 표준화와 명확화에도 문제가 된다.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와서 국어처럼 변한 말을 의미하고 있으나 국어처럼 변한 말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바른 어형이 무엇인가조차 알 수 없는 말들이 법령에 쓰이고 있다. 이러한 용어는 특히 산업·기술 또는 의약관계 법령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법제처에서는 외래어는 가능한한 쓰지 않기로 정비기준(제8호)에서 정하고,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국어연구원 등 전문기구의 자문을 받아서 사용하고, 이미 사용중인 외래어도 점차로 정비해 갈 계획이다.



## 第4章

# 結 論



## 第4章 結 論

## 1.

法の世界는 법적 사고의 영역을 원리로 전개하는 특수한 문화의 세계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法的 言語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는 달리 비교적 명확하고 기호적인 개념이 중시될 뿐 아니라 형식에 중점이 주어져 操作的 價値가 있는 특별한 전문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專門言語가 그러하듯이 법적 언어도 일상언어로 부터 떨어져서는 아니되며, 무엇보다도 대중적이고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 국민이 法規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그 사회에서 법은 의미를 상실하고 사회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법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民主的 法治國家에 있어서는 일반국민에게 이해가능한 법규범이 정립되고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법규범은 遵守可能性이 상실되고 법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법치국가의 궁극적 목표인 자유와 정의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法術이라는 것은 원칙으로 개개의 구체적인 것을 그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사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성질을 지는 것에 일반적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법령의 표현은 어느 정도 일반적·추상적 용어나 包括的인 價値概念을 포함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법실제적인 관계상 대상사항의 내용과 상응하여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법령자체가 지닌 專門技術性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불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제약조건이 존재가 간결하고 명료하며 함축성있는 법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나 그것이 법령에 대한 理解可能性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법령에 대한 理解可能性을 높이는 것은 실제적·법기술적인 표현과 일반언어적인 의미간의 상충, 법적·전문과학적으로 통용되는 개념과 일상언어적인 표현간의 상충, 내용적 명확성의 요청과 언어적 다의성의 상충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법령문의 理解可能性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서 법령용어와 문장에 대한 언어학적인 관점을 도입하여 몇가지 관점을 정리하여 보았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몇가지 관점이 法術이 실용적인 것으로서 일반 국민에게 이해가능한 것으로서 전달될 수 있는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

## 第4章 結 論

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나, 여기에서는 일단 法令用語 및 文章에 대한 일반론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일반론적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前提條件에 불과하나, 우리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개선과 향상을 위해서는 그와 같은 이론적인 전제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여기에서 간략하게나마 몇가지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결국 사회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하는데 있어서 언어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은 우수한 법규범을 定立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사회규범으로서의 법을 일반인에게 친숙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에 대한 이러한 基本認識의 획득은 오늘날의 법치국가에 부여된 과제를 수행하는데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법질서의 갈등을 해소하고 법의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 2.

法言語와 日常言語간의 괴리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에게 법률용어를 이식시켜 주었던 일본을 포함한 非西歐圈國家 전반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장기간 서구의 지배를 받아온 국가에서는 법이란 植民統治手段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고 강요된 억압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법의 용어도 전부 植民本國의 언어로서 모든 사법과정이 국민의 일상언어와는 별개의 언어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가 장기간 경과한 후 독립을 맞이하면서 직면한 과제는 外來語로 된 법을 여하히 자국어로 표현하는가 하는 것이었으며, 이같은 과제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우리의 법률용어는 우리 말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고 거의 전부가 日本의 植民統治를 통하여 일본법이 시행되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 법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유리되고, 법률용어가 일상언어와 단절이 생기었다.

法の 定立은 그 국가의 언어, 풍습, 가치관과 같은 그 국가의 고유한 문화위에서 이루어질 때 그 법률은 국민생활에 널리 적용될 수 있으며, 법규범이 生活規範으로서 정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는 우리의 언어감각과 언어생활과는 전혀 다른 일본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률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우리의 法令用語는 상당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한 한자어와 문어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국민의 법생활을 둔감하게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 學界와 實務界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법률용어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법률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규범으로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

여 왔으나, 아직도 우리 법령 및 법률서적에는 난해한 漢字語와 일본식 표현과 용어, 낱설은 번역어들로 가득차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우리의 法言語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단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우나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정부차원에서 법령용어정비를 위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法制處의 법령용어정비사업의 추진과정과 주요실적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으나, 이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의 法令用語와 文章의 개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적인 연구를 법제처는 물론 법학자·법조계 및 국어학자 등과 함께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3.

이 연구를 통하여 획득한 基本認識을 토대로 일반인에 대한 법령의 일반적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기본적인 指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물론 여기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지침은 확고한 것이 아니며, 단지 관심방향을 제시하는 것임을 알려둔다.<sup>1)</sup>

○ 절대적 명제는 理解性이다. 모든 입법자는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교육자로서

1) 여기에 제시한 指針은 Fritz Schönherr이 제시한 「Hinweise für die sprachliche Gestaltung juristischer Texte」에서 주요한 부분을 선정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F.Schönherr, 「Hinweise für die sprachliche Gestaltung juristischer Texte」, in : W.Barfuß(Hrsg.), Sprache und Recht, aaO., S.10~18 참조. 또한 William N.Eskridge/Philip P.Frickey가 제시한 입법안작성의 九戒名은 ①명료성이외에 다른 신을 섞이지 말라 ②애매성을 탐하지 말라 ③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모호성을 품지 말라 ④법원이 그대의 입법의사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제정 법해석의 원칙들을 기억하라 ⑤지나치게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융통성을 죽이지 말라 ⑥가능한 한 중언부언을 피하라 ⑦가능한 한 간결한 일상용어와 의미를 사용되되 간결성의 이상 앞에 명료성과 정확성을 희생시키지 말라 ⑧그대 입법의 부모의 뜻을 받들어 그대 입법 및 그 후손이 살있는 동안 그대 입법의 부모의 뜻을 적절히 섬길 수 있도록 하라 ⑨훌륭한 입법안 작성이란 실은 훌륭한 입법안 반복작성임을 항시 기억하라. 자세한 것은 崔大權, 「立法學研究 -立法案作成을 중심으로-」, 法學(서울대) 제35권3·4호, 1994, 68~69面 참조. 그리고 현재의 우리법언어의 현실과 관련하여 ①법률언어는 철저히 현재 통용되는 일상언어의 의미를 특수화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예컨대 일반시민들 사이에 통용되지 않는 희한한 한자말, 특히 일본법률언어는 법률말놀이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된다. ②법률말놀이를 전문지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전개해나가는 법률가집단이 기존의 법률말놀이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법률말놀이의 창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화공동체로 짜여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문성은 특정집단이익의 편파적 충족을 은폐하고 보호하는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③시민사회에 법률가들의 전문적인 법률말놀이가 가져오는 실제결과가 편파적인 것인지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상돈, 「법률해석 -말놀이에의 구성적 참여」, 前掲論文, 193面 참조.

## 第4章 結 論

자각하여야 하며 일반 국민에게 가능한 한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 법령의 이해가능성은 간결한 文章과 명료한 配列을 통하여 촉진된다.
- 모든 법규범은 언어적으로 標準的이어야 하며 모범적이어야 한다.
- 법령은 가능한 한 간결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단어는 직접 법령의 目的과 상반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 外來語의 사용은 단지 뜻이 같은 단어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 전문적인 표현이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一般的 言語慣例는 가급적 피하되, 이 경우에도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규범적인 내용이 아닌 敎訓的인 표현법이나 단순한 動機를 묘사하는 것은 법령문에 적합하지 않다.
- 하나의 조문에 다수의 條文構造가 포함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본질적인 요점만을 표현하여야 하며 지엽적인 것은 법령문의 有用性을 해친다.
- 지나치게 간결한 附加語는 이해성을 방해한다.
- 문장의 성분은 그 의미로 體系的으로 정돈한다.
- 주문은 主體에서 객체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동형보다는 能動型을 선택하는 것이 이해성을 높인다.

# 附 錄

- 법령용어순화정비기준
- 법령에서 한글·한자사용기준
- 법령의 한글사용례





## 법령용어순화정비기준

1. 한자용어는 가능한 한 한글용어로 풀어 쓴다. 그러나 한글로 풀어쓰므로써 오히려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대로 쓴다.
2. 일상생활공용용어는 중등교육을 받은 정도의 사람이면 누구나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는 가능한 한 쉬운 용어로 바꾸어 쓴다.
3.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용어와 국민감정이나 시대성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
4. 표현이 너무 간단하여 알기 어려운 용어 또는 간략하게 쓴 약어는 가능한 한 알맞게 풀어 쓴다.
5. 발음이 같고 뜻이 다른 용어는 가능한 한 서로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적절한 말로 바꾸어 쓴다.
6. 같은 용어라도 쓰는 곳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용어는 가능한 한 그 뜻이 명백해지도록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
7. 고유명사는 학술·기술분야의 전문용어로서 우리의 언어감정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관계부처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이에 맞는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쓴다.
8. 외래어는 가능한 한 쓰지 아니한다. 그러나 바꾸어 쓸 적절한 우리말 용어가 없는 것은 그대로 쓴다.
9. 문화체육부 기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국어순환운동에 의하여 결정된 용어는 검토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쓴다.

## 법령에서 한글·한자사용기준

이 기준은 법제처에서 국회와 협의하여(1984. 8. 21) 확정한 용어와 헌법 기타 다른 법률의 한글사용례를 추가하여 「법령용어심의회」에서 채택한(1990.12.20) 기준임.

가	可能 各 各各 各種 干涉 間接 堪當 減少 勘案 減縮 講究 降下 …個 改良 個人 客觀的 距離 拒否 拒絕 健康 健全 乾燥 揭記 揭示 揭載 堅固 結果 兼任 兼하다 經過 輕微 經營 境遇 經由 繁留 繼續 繼承 高價 考慮 困難 鞏固 共同 共用 公認 公正 控除 貢獻 過去 關係 關係人 關聯 管理 關與 關하여 管轄 交付 區分 具備 構成 具體的 求하다 勸告 歸屬 規模 均等 均衡 極히 根據 勤務 金額 禁止 禁하다 急迫 急速 期間 期待 基本 羈束 寄與 記載 既存 基準 基礎 其他 忌避 期하다 機會 緊急
나	濫用 納付 朗讀 …內 內部 內容 乃至 努力 漏泄 能率的
다	多年間 多數 但 短縮 達成 達하다 擔當 答辯 當選 當時 當然 當初 當하다 當該 對備 對象 代身 對應 代替 對하다 到來 逃亡 圖謀 同等 同類 同時 同一 …等
마	磨勘 滿了 每年 每月 每日 面積 減失 名目 明白 明示 名稱 明確 命하다 募集 紊亂 問題 物件 未達 未來 未滿 未備 未洽 密接
바	返納 反駁 反復 反映 反하다 返還 發見 發給 發達 發付 發生 發展 發表 發하다 發行 發揮 方法 防止 妨害 翻譯 繁雜 範圍 犯하다 變更 變動 別途 報告 報告書 保管 保有 保障 保全 補助 保存 補佐 保證 保護 服從 本來 附近 負擔 不當 不得已 部分 附與 不適當 不可避 不可抗力 不拘 不利 不問 不發 不服 不分明 不備 不誠實 不應 不意 不利益 不出席 不便 不必要 比較 備置 比하다
사	事實 事業 使用 事由 事前 事情 寫眞 事項 事後 …性 …上 上記 相當 相對 常時 喪失 相應 狀態 相互 相互間 生기다 省略 善良 選定 說明 誠實 性質 所管 消極的 所屬 所要 所定 所持 屬하다 送達 送付 樹立 隨時 授與 水準 受驗 遂行 順序 純粹한 承諾 承服 承認 …時 始作 迅速 實施 實際 甚하다
아	兒童 案 安定 斡旋 若干 約定 嚴肅 嚴正 與否 餘裕 如何 延長 列舉 念慮 領收證 永遠 營爲 影響 例 例外 完了 完遂 完全 …外 外部 要件 要求 要求書 要旨 要請 要하다 容易 憂慮 于先 優先 優先的 運營 違反 委任 委囑 爲하다 危險 原因 原則 圓滑 有利 有無 類似 唯一 維持 育成 隱匿 應答 應分 應하다 依據 意見 意見書 依賴 意思 依하다 以內 以上 以外 利用 理由 利益 以前 以下 理解 履行 以後 隣近 引用 隣接 認定 因하여 一部 一時 一定 一切 立脚 任務 任意

자	自己 姿勢 自身 自由 作成 將來 再發 抵觸 沮害 …의 積極 適當 適用 適切 適正 適合 …前 前面 前日 專門 專門性 全部 前後 接受 正當 程度 整理 停止 政策 定하다 正確 除去 提供 提起 提示 除外 提出 制限 條件 存在 尊重 從來 終了 種類 種類別 從事 從前 主觀的 注意 遵守 準하다 …中 中斷 重大 中毒者 重要 重点 中止 卽席 卽時 增加 證據 證明 證明書 支給 指名 持續 遲延 支援 支障 指定 遲滯 直前 直接 進行
차	差等 差別 參加 參考 參席 參與 參酌 處理 處分 添記 添附 貼付 締結 超過 招來 促求 促進 囑託 攝影 最近 最大 最大限 最小 最小限 最終 最初 最後 追加 抽象的 推進 推薦 出庫 出席 充當 衝突 充分 充用 充足 取扱 取得 趣旨 取下 取하다 侵害
타	妥當 打破 怠慢 通告 通過 通報 通常 通用 通知 通하다 特別 特殊 特定 特히
파	破壞 破棄 把握 判斷 判定 便利 便宜 廢棄 拋棄 包裝 包含 表面 表示 豐富 必要
하	…下 限度 限하여 割當 涵養 合理的 合하다 恒久的 恒常 該當 害하다 行動 行使 行爲 行하다 向上 許容 虛偽 現在 顯著 協助 形便 湖水 確固 確立 確實 確認 確定 擴充 還付 回復 回附 效力 效率의 …後 毀損 携帶 吸煙 希望 犧牲

※ 위 표에 없는 용어의 한글·한자표기기준

- ① 위 표에 없는 용어도 한글전용원칙에 따라 가급적 한글로 쓴다.  
다만, 한글로 표기할 경우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용어는 한자로 쓸 수 있다.
- ②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의 법령에서는 한글·한자혼용기준이 통일되어야 한다.
- ③ 복합어는 모두를 한자 또는 한글로 쓴다(보기:利害關係 또는 이해관계).
- ④ 중간점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일반혼용원칙에 따라 혼용한다  
(예:보고·보·檢査).
- ⑤ 위 표에 없는 용어는 한자·한글표기는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제안자의 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심의과정에서는 되도록 바꾸지 아니하기로 한다.

## 법령의 한글사용례

이 자료는 법령의 한글화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수립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령용어정비」를 추진함에 있어서 한자식 표기를 한글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법제처에서 채택하여 사용한 자료와 「현행헌법」의 한글사용례를 통합하여 편집한 것임

- ※근거자료 : 법령의 한글화 작업시 채택용어(1969)  
 법령용어의 통일(1974)  
 한글·한자사용기준(1984)  
 제6공화국헌법의 한글사용례(1987)

( ㄱ ) 부

총 782 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各 各	각 각	勘 案	참 작
架 橋	교 량	減 資	자본의 감소
可 能	가 능	減縮하다	감축하다(줄이다)
假 病	피 병	講 究	강 구
加하고	보태고	降下하지	내리지
各 種	각 종	改 良	개 량
干涉(不干涉)	간섭(불간섭)	改 善	개 선
(...로)看做하다	(...로)보다	個 人	개 인
間 接	간 접	改 過	(잘못을)뉘우침
看做한다.	본 다	開裝하다	포장을 풀다
堪 當	감 당	開坑當初	갱을 처음 사용하기
減 耗	줄어들, 닳음		시작할 때
鑑하여	비추어, 살피어	介護를	보호를
客觀的	객관적	繼 承	계 승
거마비(車馬費)	교통비	繼承할 수 있다	계속할 수 있다
拒 否	거 부	계출(屆出)	신 고
拒 絶	거 절	高價인	비 산
健康한	건강한	考 慮	고 려
健 全	건 전	苦 味	쓴 맛
鍵 錠	자물쇠	困 難	곤 란
乾 燥	말리다	鞏 固	공 고

계승: 끊어지 않고 늘 갈래의 이어감  
 끊어진것은 다시 이어서 해감 184  
 전부터 내려오는 일을 계승함

계승: 갱이내 있었기에 뒤를 이어 받음  
 등계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揭記	게기	空船	빈 배
揭示	게시	供與하다	제공하다
掲載하다	실다	共用	공동사용
犬	개	公正	공정
堅固한	튼튼한	控除한	뺀
結果	결과	公認된 計理	공인회계
兼하다	겸하다	士의 保證	士의 인증
經過	경과	貢獻	공헌
輕微한	경미한	共히	같이 함께
經營	경영	過去	과거
境遇	경우	課하다	과하다
經由	거처	(過半數의 贊成으로 써)決定하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써)의결하다
警標	경고표시	課金	요금
繫留된	계류된	罐	통
繼續	계속	均衡	균형
關係	관계	極히	극히
關係人	관계인	根據	근거
關聯	관련	勤務	근무
關與	관여	金額	금액
管理케	관리하게	禁止	금지
寬恕	(쓰이지 않기로 함)	乃	및
官有財産	국유재산	急迫	급박
管入	관에 넣음	금하는	걸치는
關한	관한	既納額	이미 납부한 금액
管轄, 所轄	관할	既納한	이미 납부한
交付하다	교부하다	寄與	기여
橋梁	다리	寄留抄本	주민등록표 초본
溝渠	도랑	記載	기재
救命筏	구명벌(뗏목)	既存	기존
區分(區分하여)	나누다(나누어)	起終點	시발점과 종점
具備하여야	구비하여야	基礎	기초
構成	구성	其他	기타
具體的	구체적	其他人	그외 사람
求한다	구한다	忌避	기피
軌條	레일	既히	이미
卷尾	책끝(명부 끝)	期한다	기한다
歸屬	귀속	緊急	긴급
均等	균등		

乃 이기내 補助 內의 故也

및의 故也. 內의 故也. 內의 故也.

附 錄

(L) 부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裸 麥 落 下 難 溶 이 고 納 付 토 록 內 徑 內 에 內 容	쌀보리 낙하, 떨어지다 잘 녹지 않고 납부하도록 안지름 ...안에 내 용	乃 至 冷 후 努 力 龔 啞 漏 水 하지 아니하 도 록 能 率 的	내지 식힌후 노력 귀머거리 아이 물이 새지 아니 하도록 능률적

(C) 부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多 年 間 多 大 汗 但 且 端 數 擔 當 答 辯 擔 保 에 供 하 다 畚 當 時 當 然 當 月 當 日 當 初 來 到 來 逃 亡 圖 謀 島 嶼 豚 同 等 汗	다년간 다대한 다 만 우수리 담 당 담 변 담보로 제공하다 논 당 시 당 연 그 달 그 날 당 초 도 래 도 망 도 모 섬 돼 지 동등한	當 하 다 당 해 大 豆 大 麥 對 備 對 象 大 聲 을 大 錢 對 應 代 替 代 하 는 對 한 徒 過 同 時 (他)圖 書 館 同 額 의 同 一 汗 同 一 戶 籍 等	당하다 당 해 콩 (겉)보리 대 비 대 상 큰 소리를 대 금 대 응 대 체 갈음하는 대 한 경 과 동 시 (다른)도서관 같은 액의 갈 은 같은 호적 등

(口) 부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馬	말	明 示	명 시
末 尾	끝부분	名 稱	이 름
滿 了	만 료	明 確	명 확
每葉의 丁數를	장마다 매수를	募 集	모 집
末 尾	끝	目 睹하다	보 다
網	그 물	猫	고양이
每年(日)	매년(일)	錨 銷	닻 철
每 月	매 달	紊 亂	문 란
盲 兒	눈먼아이	問 題	문 제
名變更(名義變更)	이름변경	物 件	물 건
綿 量	솜 량	물色해서	색을 나타내서는
面 積	넓 이	未達하는	달하지 못하는
滅 失	멸 실	米 糠	쌀 겨
名 目	명 목	未 滿	미 만
明 白	명 백	未 備	미 비
未 洽	미 흡	密接한	밀접한
憫 諒	동정받을 만한		

(日) 부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剝離하지	벗기지	發 行	발 행
返 納	반 납	發 揮	발 휘
返려하다	반려하다	方 法	방 법
反 駁	반 박	防 止	방 지
反 復	반 복	妨 害	방 해
返 附	도로 돌려보냄	背 面	뒷 면
返附返還하다	다시 돌려보내다	白 色	흰 색
反 映	반 영	翻 譯	번 역
反하여	반하여	範 圍	범 위
返 還	반 환	犯 罪事項	범죄사실
發 見	발 견	犯하다	범하다
發 給	발 급	變 更	변 경

附 錄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發 達	발 달	別段의	다 른
發 付	발 부	別 途	따 로
發 生	발 생	報 告	보 고
發生한 地	발생한 곳	保 管	보 관
發 展	발 전	寶玉石	보석과 옥석
發 表	발 표	保 有	보 유
發하다	내리다	保 障	보 장
保 全	보 전	分界하다	구분하게 하다
保 存	보 존	分明한	분명한
補佐하다	보조하다	(의) 分은	(의) 몫은
補 綴	보 수	分 野	분 야
保 持	유 지	分하여	나누어
保清衣	위생의	不可避	불가피
補하다	보하다	不 拘	불 구
保 護	보 호	拂려하다	환급하다
普通話聲을	보통 이야기 소리를	不 問	불 문
服 從	복 중	不 發	불 발
本 旨	본 뜻	不 服	불 복
附 近	부 근	不 備	불 비
負 擔	부 담	不 意	불 의
不 當	부 당	不利益	불이익
不得已	부득이	拂 入	납 입
部 分	부 분	不 知	(쓰지 않기로 함)
附 與	부 여	不 便	불 편
部 印	청 인	崩 落	무너져 내림
不 正	부 정	鼻	코
不 足	부 족	比 較	비 교
附하다	붙이다	備 置	비 치
附 合	부 합	比하여	비하여

(入) 부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思料하는	생각하는	狀 態	상 태
四捨五入	반올림	相互間	상호간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砂 礫	자 갈	霜 害	서리피해
事 實	사 실	生킨다	생킨다
事業部分	사업부분	省 略	생략
使 用	사 용	生 枝	(생)나뭇가지
詐僞의 方法으로	사기나 위계의 방법으로	生 汗	있 는
事由로 因하여	사유로 말미암아	書類標目	서류목록
事前에	미 리	諸 尾	처음과 끝
事 項	사 항	書式○○號	별지서식 ○○호
祥 記	자세히 기재함		서식
上記者	위 사람은	署熱한	덥고 뜨거운
相 當	상 당	書 狀	서 류 <i>222</i>
相 對	상 대	鼠 族	쥐
桑 樹	뽕나무	石 礫	자 갈
喪失, 失하다	잃 다	選 定	선 정
上 午	오 전	設 示	(쓰지 않기로 함)
上位部	윗부분	誠實히	성실히
相違없이	틀림없이	所 管	소 관
相 應	상 응	消 極	소 극
桑 田	뽕나무 밭	所 屬	소 속
上 肢	팔	所要하는	필요로 하는
所定の	소정의	小 滴	작은 방울
掃 除	청 소	受 驗	응시하다
所持하고	가지고	數 回	몇 번
所 轄	관 할	純粹한	순수한
屬한다	속한다	習 癖	나쁜 습성, 버릇
送 達	송 달	承 諾	승낙
送 付	송 부	承 服	승복
松 脂	소나무진	承 認	승인
隨 道	터 널	乘 汗	곰 한
受領時에	받는 때에	(俸給)時에	(봉급)때에
修了한 자	수료한 자	始 作	시 작
收得하다	받 다	示顯한	나타낸
樹 立	수 립	食 料	음식물
樹 枚	여러 장	申入證	청약서
手 續	절 차	迅 速	신 속
樹 實	나무열매	新 型	새로운 형
		實 施	실 시

✓ 育尾  
頭尾

隨

附 錄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授與 受有者는 水準 手指 修行	수여 갖고 있는 자는 ✓ 수준 손가락 수행	實際 十指 十趾	실제 열손가락을 열발가락을

(○) 부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蛾 兒童遊園 啞兒 啞者 案 斡旋 約定 兩眼 兩耳 魚油 堰 嚴肅 餘望 與否 女壻 餘裕 如何한 鉛 役員 煙草 列舉 要旨 要請 要한다	나방 어린이 놀이터 병어리 아이 병어리 안 알선 약정 양쪽눈 <i>눈</i> 두귀 물고기 기름 독 엄숙 (쓰지 않기로 함) 여부 사위 여유 어떠한 납 임원 벽돌 연장 담배 열거 요지 요청 요한다	念慮 獵具 獵期 領收濟 永遠히 營爲 影響 例에 例外 瓦斯 完了 完了日 完了치 完本 完遂 完全한 外 外徑 要件 要件을 關하다  要求 腰部 有故時 留念하다 宥恕	염려 사냥도구 사냥시기 영수필 영원히 영위 영향 예예 예의 가스 완료 마친 날 완료하지 원금 완수 완전한 외 바깥지름 요건 요건을 갖추지 못하 다 요구 허리부분 사고가 있을 때 유념하다 용서

一位 : 첫 번째 지기, 두기  
 二位 : 두 번째 지기, 두기  
 三位 : 세 번째 지기, 두기

附 錄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容易하며	쉬우며	乳 牛	젖 소
憂 慮	우 려	遺 漏	빠뜨림
牛 馬	소와 말	有 無	유 무
右上側의	오른쪽 위의	類似한	비슷한
優先하여	우선하여	有恕하다	용서하다
優遇上	후하게 대접하는	有熱의	열이 있는
雨 裝	비 옷	唯 一	유 일
郵便料	우편요금	唯 持	유 지
運 營	운 영	陸 稻	밭 벼
原 因	원 인	育 成	육 성
原 則	원 칙	隱 匿	은 닉
垣 柵	울타리	應 答	응 답
圓 滑	원 활	應하여	따 라
月 當	매 월	意 見	의 견
違 反	위 반	依하여	따 라
園 繞	둘러싸인	耳 孔	귓구멍
委 囑	위 촉	移記하여야	옮겨 적어야
委員會의 答問	위원회의 자문	以 內	이 내
爲한다	위 한다	裏面(背面)	뒷 변
危 險	위 험	以 上	이 상
利 息	이 자	隣近管轄支廳長	가까운 관할 지청장
耳 語	귓속말	忍 容	(쓰지 않기로 함)
易燃性的	불붙기 쉬운	隣佑人	이웃사람
以 外	이 외	隣 接	인 접
利 用	이 용	認 定	인 정
理 由	이 유	因한다	인한다
利益(不利益)	이익(불이익)	인환중의 類	인환중 따위
移積하다	옮겨 쌓다	一方이	한쪽이
以 前	이 전	一 部	일 부
異種의	다른 종류의	一束으로	한묶음으로
以 下	이 하	一定한	일정한
履行(不履行)	이행(불이행)	逸出할	달아날
以 後	이 후	1	하 나
2 位	두자리	1 滴	한방울
2條의 橫線不分明	두줄의 橫線 불명	任 務	직 무
함으로	하지 아니함으로	臨度하다	출석하다
翌年(度)	다음해	任 地	근무지

附 錄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翌月	다음달	任意로	임의로
翌日	다음날	立脚	입각
翌會計年度	다음 회계연도	入浴	목욕
隣近	인근	孕胎	임태

(스) 부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子	자, 아들	適當(不適當)	적당(부적당)
自己	자기	摘要欄, 備考欄	참고란
自力으로 自辯하다	자력으로 자변하다	適切	적절
姿勢	자세	適正	적정
自身	자신	適合(不適合)	적합(부적합)
磁製	도자기제	…前	…전
自~至	~부터 ~까지	田	밭
作成	작성	栓	마개
殘餘의	남은(나머지의)	前價로 放賣	싱가로 방매
殘刑期	남은 형기	前面	앞면
蠶病	누에병	專門性	전문성
蠶體	누에	全部	전부
蠶兒	누에	轉寫	복사
蠶品種	누에의 품종	丁數	장수
雜用水用器	물통	呈色해서는	색을 나타내서는
將來	장래	呈示	제시
掌理하다	처리하다	停止	정지
再發	재발	呈하고	나타내고
低減하다	(쓰지 않기로 함)	定한다	정한다
抵觸	저촉	正確	정확
沮害	저해	除去	제거
積極	적극	提供	제공
提起	제기	諸關節	모든 관절
諸般	모든	朱線	붉은선
提示	제시	注意	주의
除外	제외	舟車馬	배와 차와 말
提出	제출	遵守	준수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除 限 制 條 件 足 跡 足 指 尊 重 縱 終 了 種 類 從 事 從 前 左 記 事 項 左 側 胸 主 觀 的 朱 抹  周 壁 朱 書 支 援 支 障 池 井 指 定 的 件 遲 滯  없 이 紙 片 地 穴 直 徑	나 눈 제 한 조 건 발자국 발가락 존 중 세 로 종 료 종 류 종 사 종 전 다음 각호의 사항 왼쪽 가슴 주관적 붉은 색으로 말소 하 다 주위벽 홍색글씨 지 원 지 장 연못, 샘 지정령 지체없이 종이조각 땅 굴 지 림	準하다 ...中 重激한 中 斷 重 大 中 毒 者 重敍하다 重 要 的 重 點 的 中 止 重하다 卽 席 卽 時 證 據 證 明 (證票)를 提出하다 遲達된다고 持 續 指示를 發하다 直立停止하게 直 前 直 接 塵 芥 眞 菌 塵 埃 塵 垢 執行除刑	준한다 ...중 무겁고 힘든 중 단 중 대 중독자 (풀어 쓰기로 함) 중요한 중점적 중 지 중하다 즉 석 즉 시 증 거 증 명 (증표)를 제시하다 늦게 배달된다고 지 속 지시를 내리다 바로 서게 직 전 직 접 티끌, 먼지 곰팡이 티끌, 먼지 먼지와 때 이미 집행한 형기

(ㄷ) 부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次年度 此 等 遮 面 施 設 差 別	다음연도 이 들 <i>이것들</i> 풀어쓰도록 함 차 별	茱 田 柵 垣 處 理 脊 椎	채소밭 울타리 처 리 등 뼈

附 錄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次式에	다음식에	尺 數	척 수
借 主	차용인	尺 柱	자의 기둥
此旨를	이 를	天 盤	천정판
此限이 아니다	예외로 한다	천 程	거리(잇수)
參 加	참 가	添 附	첨 부
參 考	참 고	添書, 添記	첨 기
參 席	참 석	綴目에	사이에
參 酌	참 작	締 結	체 결
參 與	참 여	遞傳의(방법)	(쓰지 않기로 함)
草 根	풀뿌리	出 庫	출 고
超 過	초 과	出 席	출 석
硝 子	유 리	充 當	충 당
促 求	촉 구	衝 突	충 돌
囑 託	촉 탁	充 分	충 분
撮 影	촬 영	充 用	충 용
最近地	가장 가까운 거리에	充 足	충 족
最 大	있는 곳	取 扱	취 급
最 小	최 대	取 得	취 득
最直近間	최 소	取渡할	받아넘길
最 初	가장 가까운 시기	趣旨를	뜻 을
最 後	최 초	取 下	취 하
追 加	최 후	取하다	취하다
抽象的	추 가	值	값
推 進	추상적	齒磨用品	칫솔, 치약
推 薦	추 진	侵 奪	(쓰지 않기로 함)
	추 천	侵 害	침 해

정말은 번역 부분이  
충분

秤

秤

(E) 부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睡 具	침벨는 그릇	他 處	다른 곳
他 局	다른 국	打 破	타 파
他 物	다른 물건	脫 漏	누락, 빠짐
怠慢하다	게을리 하다	通 知	통 지
兎	토 기	通하여	통하여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土 砂 通 告 通 報 通 常 通 用	흙과 모래 통 고 통 보 통 상 통 용	特 別 特 殊 特 定 特 히	특 별 특 수 특 정 특 히

(표) 부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破 棄 把 握 判 斷 判 定 便 利 便 宜한 廢 棄 杵 平 易한 抛 棄 包 裝	파 기 파 악 판 단 판 정 편 리 편리한 폐 기 저 울 쉬 운 포 기 포 장	包 含 幅 員 表 面 表 示 標 札 豐 富 皮 革 必 要 畢하지 必 히	포 함 너 비 앞 면 표 시 표시판, 표쪽지 풍 부 가 족 필 요 마치지 만드시

杵 비등한것

장미같은것, 나무이름같은

杵 지등한  
백등한

(ㅎ) 부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下記와 如히 下 端 下 落하여 荷物, 貨物 荷 造 下 肢 下 請 限	아래와 같이 아래쪽 끝 떨어져 화 물 포 장 다 리 하도급 한	下腹部 ...下에서 下 午 하자(瑕疵) 現 在 顯著히 血 痕 狹小한	아랫배 부분 ...아래에서 오 후 흙 현 재 현저히 핏자국 협소한

附 錄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寒冷한	춥고 차가운	享受與否	(쓰지 않기로 함)
限한다	한한다	形便上	형편상
割當	할 당	湖 水	호 수
涵養	함 양	呼唱하다	호창하다
恒久的	항구적	靴 類	구두따위
恒 常	항 상	確 立	확 립
海	바 다	確 保	확 보
該 當	해 당	確 實	확 실
懈 怠	태 만	確 認	확 인
害하다	해하다	確 定	확 정
行 動	행 동	擴 充	확 충
行 使	행 사	還付하다	반환하다
行 爲	행 위	繪 具	그림 그리는 도구
行하다	행하다	回 附	회 부
向 上	향 상	回 復	회 복
許 與	풀어 쓰도록 함	廻行할	거쳐서 올
虛僞의	거짓의	橫	가 로
許 容	허 용	橫 道	건널목
革	가 죽	效率的	효율적
後	후	欠 缺	흠
後面肩部	뒤쪽 어깨부분	吸 煙	흡 연
後側양팔굽	뒤쪽 양팔꿈치	希 望	희 망
毀 損	훼손	犧 牲	희 생
携 帶	휴 대		



## 參 考 文 獻

### 【國內】

- \* 姜熙遠, 『이른바 一般條項에 관한 基礎法哲學的 理解』, 高鳳法學 창간호, 1994.
- \* 權寧敏, 『立法實務』, 研修社, 1977.
- \* 高昌鉉, 『市民生活과 法律』, 東亞法學(동아대) 제3호, 1986.
- \* 국립국어연구원, 『국어순화자료집(1977~1991)』, 1991.
- \* \_\_\_\_\_, 『국어순화자료집』, 1992.
- \* 國會事務處, 『法制實務』, 1990.
- \* 김봉주, 『개념학 - 의미론의 기초』, 한신문화사, 1992.
- \* 金芳漢, 『언어학의 이해』, 민음사, 1994
- \* 金承烈, 『법령한글화사업에 관한 소고』, 法制 제227호, 1988.4.
- \* 金鎔珍, 『舊法令整理事業에 관한 小考』, 法制 제218호, 1988.1.
- \* 金鎮宇, 『人間과 言語』, 集文堂, 1992.
- \* 大韓民國國會 法制司法委員會, 『法律案審査事例集 - 體系·形式·字句 -』, 1991, 1993.
- \* 대한민국 정부, 『행정용어순화편람(제1집~제4집)』, 1985.
- \* \_\_\_\_\_, 『행정용어순화편람』, 1992.
- \* 文仁龜, 『韓國法の 實相과 虛像』, 三知院, 1985.
- \* 문화체육부, 『생활외래어 순화집』, 1994.
- \* 朴鈞炳, 『立法技術講座』, 國民書館, 1970.
- \* 배종대, 『우리 법학의 나아갈 길 : 형법학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창간호, 1989.
- \* 法制處, 『法令立案審査基準』, 1989.
- \* \_\_\_\_\_, 『법령용어순화편람(일상생활공용법령용어)』, 1994.
- \* \_\_\_\_\_, 『法律教育教材』, 1993.
- \* \_\_\_\_\_, 『法制處史』, 1983.
- \* \_\_\_\_\_, 『法制處四十年史』, 1988.

## 參考文獻

- \* \_\_\_\_\_, 『한글표기용례집(법령용어정비 참고자료)』, 1988.
- \* \_\_\_\_\_, 『민주발전을 위한 법제개혁』, 1990.
- \* 사회교육연구회, 『행정용어 바르게 쓰기 편람』, 1993.
- \* 서울특별시, 『法務行政實務』, 1991.
- \* \_\_\_\_\_, 『법령용어정의규정집』, 1995
- \* 申珥撤, 『法令用語整備 推進沿革과 實績 -法制的 民主的 發展을 위한 推進過程 分析』, 法制 제286호, 1989.
- \* \_\_\_\_\_, 『새 한글맞춤법·표준어규정 개정의 개요와 법령용어표기』, 法制 제 224호, 1988.3.
- \* 신근호, 『법령순화사업의 발전방향과 관련사례연구』, 法制 제423호, 1993.9.
- \* 沈憲燮(譯) Arthur Kaufmann, 『法과 言語(Recht und Sprache)』, 法學(서울대) 제25권 2·3호, 1984.
- \* \_\_\_\_\_, 『一般條項小考 - 分析的 素描』, 法學(서울대) 제30권1·2호, 1989.
- \* 윤철홍, 『한국민법학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과 사회 제3호, 1990.
- \* 立法技術研究所(編), 『法令作成의 常識』, 法令編纂普及會, 1990.
- \* \_\_\_\_\_, 『法制實務研修資料集』, 法令編纂普及會, 1989.
- \* 이상돈, 『법관의 말행위와 올바른 법 - 고도산업사회에서의 법률적용의 대화이론적 재구성 -』, 저스티스 제25권2호, 1992.2.
- \* \_\_\_\_\_, 『법률해석 - 말놀이예의 구성적 참여 -』, 저스티스 제27권2호, 1994.12.
- \* 李鍾洙, 『現代法治國家에 있어서 法律의 過剩과 國民의 法感情』, 延世大 석사논문, 1988.
- \* 李宗基, 『法에 대한 言語科學의 照明』, 서울대 석사논문, 1981.
- \* 李鍾河, 『法과 말』, 現代民商法の 研究(威廷 李在澈박사 화갑기념), 法文社, 1984.
- \* 이혁주·김창수, 『法官과 裁判』, 고시계사, 1987.
- \* 이희성·안병희, 『한글맞춤법강의』, 신구문화사, 1994.
- \* 鄭鍾休, 『民法典과 法言語 - 法律用語와 條文構造를 中心으로-』, 司法行政, 1988. 5/6/7.
- \* 曹圭昌, 『韓國民法과 獨逸民法의 關係 -우리 民法典의 難解性을 中心으로-』, 韓獨法學 제4호, 1983.
- \* 崔大權, 『立法學研究 - 立法案作成을 중심으로-』, 法學(서울대) 제35권3·4호, 1994.
- \* \_\_\_\_\_, 『制定法の 解釋』, 法學(서울대) 제30권1·2호, 1989.
- \* 崔鍾庫, 『歐美法受容과 韓國法文化』, 사상과 정책, 1989 가을호.

- \* \_\_\_\_\_, 『韓國에서의 西洋法の 受容과 變容』, 法學(서울대) 제33권2호, 1992.
- \* \_\_\_\_\_, 『韓國의 西洋法受容史』, 博英社, 1983.
- \* 韓國法史學會, 『法, 그 속에 잔존하는 日帝遺産의 克服』, 광복50주년기념학술대회 자료집, 1995.5.12.
- \* 韓國法制研究院, 『立法理論研究(I) -立法基礎理論과 立法技術』, 1991.
- \* \_\_\_\_\_, 『立法理論研究(II) - 立法過程의 理論과 實際』, 1994.
- \* \_\_\_\_\_, 『94 國民法意識調査研究』, 1994.
- \* 한상범, 『韓國의 법문화와 日本제국주의의 잔재』, 교육과학사, 1994.
- \* 한인섭, 『권위주의적 지배구조와 법체제』, 사상과 정책, 1989 가을호.
- \* 홍승우, 『언어학의 의미론입문』, 청록출판사, 1988.

## 【國 外】

### 1. 日本文獻

- \* 山田 晟, 『立法學序說 -體系論の試み』, 有斐閣, 1994.
- \* 小島和夫, 『やさしい法令用語の解説』, 公職研, 1994.
- \* 田島信威, 『法令用語の基礎知識』, ぎょうせい, 1991.
- \* \_\_\_\_\_, 『法令の用語』, ぎょうせい, 1988.
- \* \_\_\_\_\_, 『法令の解讀法』, ぎょうせい, 1990.
- \* 碧海純一, 『法と社會』, 中央公論社, 1990.
- \* \_\_\_\_\_, 『法と言語』, 日本評論社, 1965.
- \* \_\_\_\_\_, 『法と言語再考(1)~(6)』, 法學協會雜誌 第110卷 5號・6號・7號・9號・10號・11號, 1992.
- \* 林 大・碧海純一, 『法と日本語』, 有斐閣, 1985
- \* 森脇 勝, 『民事基本法の現代語化作業』, NBL 第536號, 1994.1.
- \* 星野英一 外, 『座談會 : 法律の現代語化をめぐる』, ジュリスト 第994號, 1992.2.
- \* 柳田幸三, 『民事訴訟法典の現代語化の研究について』, ジュリスト 第994號, 1992.2.
- \* 日本法哲學會(編), 『法と言語』, 法哲學年報 1980.

## 参考文献

### 2. 獨逸文獻

- \* Bachmann, Susanne /Jahnel, Dietmar/Lienbacher, Georg(Hrsg.), 『Gesetzgebungs-verfahren und Gesetzesqualität. Symposium anlässlich des 50. Geburtstags von Heinz Schäffer』, Wien 1992.
- \* Baden, Eberhard : 『Gesetzgebung und Gesetzesanwendung im Kommunikationsprozeß.Studien zur juristischen Hermeneutik und zur Gesetzgebungslehre』, Baden-Baden 1977.
- \* Barfuß, Walter(Hrsg.) : 『Sprache und Recht. Aufsätze und Vorträge』, Wien 1985.
- \* Böhret, Carl/Hugger, Werner : 『Der Praxistest von Gesetzentwürfen』, Baden-Baden 1980.
- \* Bundesakademie für öffentliche Verwaltung(Hrsg.), 『Praxis der Gesetzgebung. Ein Lehr und Lernhilfe』, Regensburg 1984
-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Hrsg.), 『Mehr Recht durch weniger Gesetze?』, Köln 1987.
- \* Kirchhof, Ferdinand : 『Rechtspflicht zur Zusatzveröffentlichung Kommunalen Norem』, DÖV 1982, S.399f.
- \* Großfeld, Bernhard : 『Sprache und Recht』, JZ 1984, S.1f.
- \* \_\_\_\_\_ : 『Sprache, Recht, Demokratie』, NJW 1985, S.1577f.
- \* Hass, Rudolf : 『Recht und Sprache. Festschrift zum 10 jährigen Bestehen der Deutschen Anwaltsakademie』, München 1989.
- \* Hill, Hermann : 『Einführung in die Gesetzgebungslehre』, Heidelberg 1982.
- \* Hirsch, Ernst E. : 『Die steuerung des menschlichen Verhalten』, JZ 1982, S.44f.
- \* Höhn, Ernst : 『Praktische Methodik der Gesetzesauslegung』, Zürich 1993.
- \* Hugger, Werner : 『Gesetz -Ihre Vorbereitung, Abfassung und Prüfung. Ein Handbuch Praxis und Studium mit einer Einführung von Carl Böhrt』, Baden-Baden 1983.
- \* Isensee, Josef : 『Mehr Recht durch weniger Gesetz』, ZRP 1985, S.141f.
- \* Kaufmann, Arthur/Hassemer, Winfried(Hrsg.) : 『Einführung in die Rechts-

- philosophie und Rechtstheorie der Gegenwart』, 4 Aufl., Heidelberg, 1985.
- \* Kindermann, Harald(Hrsg.) : 『Studien zu einer Theorie der Gesetzgebung 1982』, Berlin/Heidelberg/New York 1982.
  - \* Klug, Ulrich(Hrsg.) : 『Gesetzgebungstheorie, juristische Logik, Zivil- und Prozeßrecht』, Berlin/Heidelberg/New York 1978.
  - \* Lambrecht, Klaus : 『Generalklauseln und technischer Fortschritt』, DÖV 1981, S.700f.
  - \* Larenz, Karl :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5 Aufl., 1983.
  - \* Maassen, Hermann : 『Die Freiheit des Bürger in einer Zeit Ausfernder Gesetzgebung』, NJW 1979, S.1474f.
  - \* Obermeyer, Klaus : 『Über das Rechtsgefühl』, JZ 1986, S.3.
  - \* Öhlinger, Theo(Hrsg.) : 『Recht und Sprache. Fritz Schönherr Gedächtnissymposium 1985』, Wien 1986.
  - \* \_\_\_\_\_ : 『Methodik der Gesetzgebung. Legistische Richtlinien in Theorie und Praxis』, Wien/New York 1982
  - \* Rebinder, Manfred : 『Rechtskenntnis, Rechtsbewußtsein und Rechtsethos als Problem der Rechtspolitik』, Jahrbuch für Rechtssoziologie und Rechtstheorie, Bd.3, 1972.
  - \* Rüdiger, Jürgen(Hrsg.) : 『Studien zu einer Theorie der Gesetzgebung』, Berlin/Heidelberg/New York 1976.
  - \* Schäffer, Heinz(Hrsg.) : 『Gesetzgebung und Rechtskultur. Internationales Symposium Salzburg 1986』, Wien 1987.
  - \* Schäffer, Heinz/Triffterer, Otto(Hrsg.) : 『Rationalisierung der Gesetzgebung. Jürgen Rüdiger Gedächtnissymposium』, Baden-Baden 1984
  - \* Schmidt, Jürgen : 『Einige Bemerkungen zur Präzision der Rechtsprache』, Jahrbuch für Rechtssoziologie und Rechtstheorie, Bd.2, 1972.
  - \* Schreckenberger, Waldemar(Hrsg.) : 『Gesetzgebungslehre. Grundlagen-Zugänge-Anwendung』, Stuttgart/Berlin/Köln/Mainz 1986.
  - \* Schneider, Hans : 『Gesetzgebung』, 2Aufl., Heidelberg 1992

## 参考文献

- \* Strouhal, Ernst : 『Fachsprache Gesetz : Sind Verständlichkeit und juristische Präzision Gegensatz?』, ZG 1986, S.117f.
- \* Weiß, Hans Dietlich : 『Verrechtlichung als Selbstgefährdung des Rechts』, DÖV, 1978, S.606f.

### 3. 英文文献

- \* Block, Gertrude : 『Effective Legal Writing』, 3rd., Mineola, 1986.
- \* Dickerson Reed : 『The Fundamentals of Legal Drafting』, 2nd., Boston, 1986.
- \* Christie, Georg C. : 『Vagueness and Legal Language』, Minnesota Law Review, Vol.48, 1964.
- \* Maags, Gregory E. : 『Reducing the costs of Statutory Ambiguity : Alternative approaches and the Federal Courts Study Committee』, Harvard Journal on Legislation Vol.29, 1992.

연구보고 95-1 法令用語에 관한 研究 - 用語整備를 위한 基礎理論 -

---

1995년 7월 10일 印刷

1995년 7월 15일 發行

發行人 白 南 辰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주) 한국컴퓨터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전 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값 5,000 원

